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29호 2010. 9

차 례

특집 한일 강제병합 100년 재조명

한일강제병합 100년 I – 강제병합을 둘러싼 국제관계

최정수 ■ 특사 태프트의 제2차 대일방문과 미일조약체제, 1907~1908

– 한국병합을 중심으로 7

김원수 ■ 4국협조체제와 한일병합의 국제관계, 1907~1912

– 영국의 동맹협상외교와 연계하여 55

마크 오랑주(Marc Orange) ■ 1910년 일본의 조선 병합에 대한 프랑스의 태도 97

한일강제병합 100년 II – 강제병합 관련 조약의 재검토

토쓰카 에쓰로오(戸塚悦朗) ■ 한국 강제병합 과정에 대한 재조명

– 한일구조약의 불법·무효성에 관한 법학적 연구 135

김창록 ■ 1910년 한일조약에 대한 법사학적 재검토 197

성재호 ■ 조약법을 통해 본 1910년 병합조약의 무효

– 강제에 의한 조약의 효력을 중심으로 227

논문

김덕진 ■ 1587년 損竹島 倭變과 壬辰倭亂 267

이재령 ■ 냉전체제 형성기(1945~1948) 中華民國의 한국인식

– 국민당 언론의 한국 기사를 중심으로 309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346

Contents

Special Issue Reexamining Japan's Forced Annexation of Korea in the Wake of the 100th Anniversary

Geopolitic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Japan's Forced Annexation of Korea

Choi, Jeongsoo ▮ A Presidential Envoy Taft's visiting Japa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Treaty System between U.S.A. and Japan, 1907~1908: in Focus on the Annexation to Korea 7

Kim, Wonsoo ▮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Quadruple Entente System and the Japanese Seizure of Korea, 1907~1912: Related with British Entente Policy 55

Marc Orange ▮ Attitude of France toward the Annexion of Korea by Japan in 1910 97

The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Reexamined

Totsuka, Etsuro ▮ Reexamining the Process of Japan's Annexation of Korea Focusing on Illegality of the Prewar Treaties Forced on Korea by Japan 135

Kim, Changrok ▮ A Legal-Historical Reappraisal on the 1910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197

Sung, Jaeho ▮ Study on the Issues Regarding 1910 Annexation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in International Law 227

Articles

Kim, Deokjin ▮ A Study on Japan's Invasion of Sonjukdo in 158 267

Lee, Jaeryoung ▮ China's Understanding toward Korea in the Formative Period(1945~1948) of the Cold War System: Focusing on Korea-related Reports of Chinese Nationalist Party Mass Media 309

특집 1

한일강제병합 100년 I
— 강제병합을 둘러싼 국제관계



특사 태프트의 제2차 대일방문과 미일조약체제, 1907~1908

- 한국병합을 중심으로 -

최정수 | 고려대학교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선임연구원

I. 머리말

한일병합(1910. 8. 22)이라는 비극이 일어난 지도 100년이 되었다. 오늘 사회 분위기를 보면 우리에게 이제 이 사건은 한편에서는 교훈으로 남아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청산되어야 할 과거로만 남은 듯하다. 과연 이 사건의 실체는 모두 밝혀진 것일까. 일본이 어떻게 해서 한국을 열강의 국가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었을까. 개항시부터 병합시까지 중요한 사건들의 흐름이 보여 주는 것을 재구성하면 일본의 한국병합 드라마는 의외로 간단하게 전개되었다. 일본은 한국을 놓고 경쟁자들과 두 차례의 국운을 건 청일전쟁(1894~1895) 및 러일전쟁(1904~1905)에서 승리했으며, 열강과 한국문제와 관련하여 각종의 협정을 체결했다.¹⁾ 이 같은 사실은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편에서는 실력

※ 투고일: 2010년 7월 9일, 심사일: 2010년 8월 11일,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27일.

1) 1876~1910년에 일본이 한국과 관련하여 열강과 체결한 조약, 협정 및 동맹은 국회입법조사국이 발행한 『舊韓末條約彙纂』에 따르면, 대략 20개이다. 국회입법조사국 편, 1989, 『舊韓末條約彙纂』 上中·下(이하 『舊韓末條約彙纂』으로 약함). 그러나

으로 이를 입증해야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열강의 승인을 얻어야만 했음을 보여 준다.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는 데 두 차례의 전쟁의 역할과 비중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기까지 열강의 승인을 얻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특히 1905~1910년에 일본과 열강 간에 체결된 협정들에 대한 해석은 극단을 달린다. 한편에서는 이 협정들을 열강의 승인이 필요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로 해석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전면 부정한다.²⁾ 후자의 논리는 이렇다. ‘러일전쟁으로 한반도에서 경쟁자가 제거되었다. 따라서 이후 한일병합은 일본이 그동안 지녀 왔던 야망을 진행시켰을 뿐, 국제정황에 영향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반면 ‘사실상 한국문제는 러일전쟁으로 결판났다. 미국은 태프트-가쓰라협정(1905. 7. 27)으로, 영국은 제2차 영일동맹(1905. 8. 12)으로, 러시아는 포츠머스강화조약(1905. 9. 30)에서 각각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1905년이 아니라 1910년에 병합했는가. 그것은 다른 문제 때문에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 기간에 미국과 두 차례의 위기를 겪었기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을 것이다. 예컨대 이 글에서 다룬 미일중재조약 및 루트-다카하협정은 『舊韓末條約彙纂』에 등장하지 않는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2) “일본의 한국병합은 …… 어디까지나 당초에 내세워진 일본의 한반도 지배 목표를 관철시키는 것이었지, 국제관계의 상황 변화에 따라 강구된 대응의 결과는 결코 아니었다. 국제관계는 오히려 본래 세운 목표를 실현하는 시기 결정에 참고되었을 뿐이었다.” 이 주장은 그 증거로 한국병합론이 일찍부터 일본의 지도층 사이에 공유되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① 청일전쟁시 福澤諭吉의 조선의 보호국화 주장, ② 1907년 “해아(헤이그) 밀사사건” 직후의 일본 지도자들의 한국병합론, ③ 희생양을 필요로 하는 후발 자본주의의 속성, ④ 일본이 한국병합문제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거론한 시점은 1910년 4월 11일 新러일협약을 위해 러시아 외상을 만났을 때였다는 점, ⑤ 일본의 병합 승인 작업이 1910년 2월부터 시작되었다는 점, 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열강의 저항이 거의 없었다는 점, ⑦ 그나마도 주일 영국대사가 “한영 간에 체결된 관세율이 병합으로 변동될 것인지에 대한 확인과 협상”이 주류였으며, 그것도 “5월 19일 자 이후의 열강의 반응으로는 영국의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점 등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태진 편저, 1995,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보호조약에서 병합조약까지』, 까치, 181~182, 189~191쪽.

때문이다. 한번은 ‘전쟁위기(war scare)’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했던 이민문제로, 다른 한번은 달러 외교(dollar diplomacy)로 각각 그렸다는 것이다. 전자의 사건은 신사협정(1908. 2)과 루트-다카히라협정(1908. 11)을 통해서 해결되었으며, 후자의 사건은 철도를 통한 만주 중립화안을 들고 나오으로써 유럽 열강으로 하여금 공동전선을 형성케 하고, 나아가 일러로 하여금 협정(1910. 7. 4)을 체결케 했는바, 이때 러시아가 한국병합을 승인함으로써 마침내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는 데 반대할 세력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일병합조약은 국제정황의 산물이었다’는 결론이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기 위해서는 열강의 승인이 필수적이었다는 주장에 견해를 같이한다. 그러나 필자는 두 주장 모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1905년 이후 한국병합시까지 일본은 열강이 이전부터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으며, 다른 문제만 가지고 씨름한 것일까.” 왜냐하면 한국병합이 국제정황의 산물로 주장하든, 그것을 부정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열강이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권리는 사실상 1905년에 소멸되었으며, 따라서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는 데 있어서 이 점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는 식의 주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당시의 사료는 기존 연구결과와 반대로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는 데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열강의 한국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결론을 가리키고 있다. 연구자가 검토한 사료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유럽 열강과 일본 간에 한국문제를 놓고 체결한 보호국협정의 내용은 모두 “한국과 통상조약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러시아가 병합을 인정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문서(제2차 일러협정, 1910)에서도 일본은 통상조약상의 권리를 보장해 주었다. 병합 승인은 구두로 받고, 한국에서 차지한 기득권(한러통상조약, 1884)은 문서로 약속해 준 것이다. 영국 또한 일본의 한국 지배정도를 한국의 보호국화만을 인정한다고 제한하고, 이를 병합시까지 일관되게 유지했다.³⁾ 러시아는 보호국에서 병합 승인으로 나

3) 『舊韓末條約彙纂』 上中, 205쪽.

아갔지만, 한국과의 통상조약에 관한 한 영국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고수했다.⁴⁾ 요컨대 열강은 보호국 문서를 통해서 한국과의 통상조약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지배 범위를 보호국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할 수 있었다. 비유하자면 열강의 입장에서 보호국 협정은 한국과의 통상조약의 보장을 일본에게 받은 셈이 되었다.

둘째, 그렇다면 장본인인 일본인은 ‘보호국 협정=지배권의 획득’으로 보았을까. 아니면 ‘지배권의 제한’으로 받아들였을까. 일본인들은 후자로 보았다. 한국과 열강 간의 통상조약 때문에 보호국 협정은 한국을 지배하는 데 족쇄라는 입장이었다. ‘한국 지배의 일대 장벽=통상조약’이라는 다음 문서는 그것을 보여 준다.

제국의 대한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우리의 실력을 확립하고 더욱 확고하게 장악하는 데 있다. …… 러일전쟁 이래로 한국에 대한 우리의 권력은 점차로 증대되는 중에 있으며, 재작년에는 한일협약(정미 7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면목을 크게 일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우리의 세력은 아직도 확고하다고 말할 수 없다. …… 제국으로서 장차 그 나라에서 …… 안팎으로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세력을 수립하도록 힘써야만 한다. 이를 위해 제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방침을 확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첫째,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합병을 단행해야 한다. 한국을 합병하여 제국의 판도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실력을 확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대내외의 정세를 살펴서 적당한 시기에 단번에 합병을 단행하여 반도를 명실공히 우리의 판도하에 두고, 또 한국과 다른 외국들과의 조약관계를 소멸해 버리는 것은 제국의 백년대계라고 할 것이다.⁵⁾

셋째,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데 일대 장벽이 한국과 열강 간의 통상조약이었음은 1905~1910년에 미일 간에 한국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확

4) 『舊韓末條約彙纂』 上中, 218쪽.

5) 야마베 겐타로 저, 안병무 역, 1991, 『한일합병사』, 범우사, 266~267쪽.

인할 수 있다. 1905~1908년에 미일 간에는 한국문제에 영향을 미친 모두 6개의 조약 및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6개 모두가 모두 한국병합과 관련하여 보면 병합의 대전제가 되는 한미통상조약을 소멸시키는 과정에 다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중에 ‘국가 간의 계약적 합의(contractual engagements)’⁶⁾를 의미하는 조약과 협약은 각각 2개와 1개로 모두 3개였고, 다른 3개는 외교협정이었다. 그리고 3개는 직접적으로, 다른 3개는 간접적으로 각각 한국문제를 처리했다. 그것을 시간의 순서로 배열해 보면 미국이 한미통상조약을 포기해 간 과정은 ① 미국의 한미통상조약개정권 포기(태프트-가쓰라협정, 1905. 7. 27) → ② 이민문제에 대한 일본의 양보(신사협정, 1908. 2) → ③ 한미통상조약을 근거로 한 미국의 중재재판권 포기(미일중재조약, 1908. 5. 5) → ④ 한국 내 미국인에 대한 사법권의 일부 포기(미일상표협약, 1905. 5. 19) → ⑤ 한국의 영토주권 승인권 포기(루트-다카히라협정, 1908. 11. 30) → ⑥ 한일병합조약 추진(미일신통상조약, 1911) 등으로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1905~1910년에 미일 간에 한국문제와 관련된 6개의 조약 및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모두 미국이 대일 특사외교를 벌였다는 것이다. 처음 두 차례는 한국병합 전인 1905년과 1907년에, 나머지 한 차례는 한국병합 후에 각각 시도되었다. 제1차 및 제2차는 국방장관 태프트가, 제3차는 전임 대통령이 된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각각 하야시[林董] 외상과 다카히라[高平] 주일 미국대사를 상대로 각각 도쿄와 워싱턴에서 특사외교를 전개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제1차 특사외교시에는 태프트-가쓰라협정을, 제2차 특사외교시에는 신사협정, 미일중재조약, 미일상표협약, 루트-다카히라협정 등을, 제3차 특사외교시에는 미일신통상조약을 각각 결과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특사외교시마다 일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미국에게 전달했으며,

6) ‘국가 간의 계약적 합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treaty(조약)’, ‘convention(협약)’, ‘pact(협정)’, ‘act(결의)’, ‘declaration(선언)’, ‘protocol(의정서)’ 등이 그것이다. J. L. Brierly, 1963, *The Law of Nations: 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Law of Peace*,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317(이하에서 *The Law of Nations*로 약함).

미국은 그것을 문서로 확인해 주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1905년에 일본은 보호국화를 요구했고,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태프트와 가쓰라의 회담 내용을 추인함으로써 협정이 되었다. 1908년에 체결된 3개의 문서 또한 1907년 태프트의 방문시 일본이 한국 병합의사를 꺼낸 후 1908년 3개의 조약 및 협정을 통해 승인해 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를테면 1908년의 미일조약 및 협정은 '제2의 태프트-가쓰라협정'과 같았다는 것이다. 제1차 미일협정이 한국의 보호국화를 사전에 인정했다면, 제2차 미일조약 및 협정은 병합을 사전에 승인하는 효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10년 병합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미일은 신통상조약개정 협상을 벌였는데, 이를 통해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미일통상조약으로 한미통상조약은 소멸되었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얻어냈던 것이다. 이러한 증거들 역시 “1905년 태프트-가쓰라협정 이후에는 미국의 대한정책이 없었다. 병합시까지 이를 일관되게 유지했기 때문이다”는 통설을 의심케 하고 있다.⁷⁾

위의 증거들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 보게 한다. 첫째,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열강 간에 체결된 통상조약을 소멸시키지 않고는 어려웠다는 점, 둘째, 그리고 미국의 대한정책은 1905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이었으며, 병합 후에야 종식되었다는 점, 따라서 1905~1910년의 대한정책은 대일정책을 통해 투사되었다는 점, 셋째,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는 데 있어서 어느 열강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 넷째, 한국병합조약이 한국-열강 간의 통상조약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단행되었다는 점 등을 보여 준다.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연구자는 이를 검증하기로 했다. 이 문제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동안 한국병합 경위의 실체를 아직 밝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해에 오류가 있음도 알

7) 나가타 아키히미 지음, 이남규 옮김, 2007, 『미국, 한국을 버린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한국』, 기파랑, 201~204쪽; 야마베 겐타로 저, 안병무 역, 1991, 앞의 책, 262쪽; 최문형, 2004, 『국제관계로 본 러일전쟁과 일본의 한국병합』, 지식산업사, 414, 417~418쪽.

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여기서는 한미통상조약이 붕괴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 열강 간의 통상조약을 제거하기 위해 병합조약이라는 극단의 방법을 쓰게 된 이유는 별도의 논문을 통해 입증하기로 한다. 하나의 연구에서 모두 다루기는 지면의 제약문제도 있고, 또 논리상으로도 한미통상조약의 붕괴과정을 먼저 보여 주는 것이 다음 연구물의 이해를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한일병합시에 미국이 한 역할’이란 주제의 전편의 성격을 지닐 것이다.

즉 이 연구의 목적은 1907~1908년에 수행된 미국의 대일정책이 일본의 한국병합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는 데 있다. 특히 한미통상조약이 붕괴되어 가는 과정에 연구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그 경우 첫째, 일본이 열강과 한국 간의 통상조약이 한국 지배의 장벽으로 생각했는지를 보여 주고, 둘째, 미국은 한미통상조약을 스스로 철회하려고 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으며, 셋째, 일본의 한일병합에 미국이 수행한 역할을 구명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장에서는 태프트의 대일방문에서 한국문제가 왜, 어떤 식으로 거론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미일 간에 한국문제가 1905년에 종식된 것이 아님을 알려 주자는 것이다. 이어 제3장에서 이 무렵의 미국이 추구하고 있던 세계적 차원의 신조약체제를 소개할 것이다. 그것이 태프트 방문의 배경이자, 1908년 미일조약체제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운명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미국이 일본에게 조건 없이 양보하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1908년 미일조약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조약 및 협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아울러 4개의 조약 및 협정들 간의 상호 작용성을 검토할 것이다. 4개의 협정 및 조약이 하나의 중재조약체제(본체와 세부 실행 수칙)를 이루면서 한미통상조약을 소멸시켰다는 점을 보여 주자는 것이다.

II. 특사 태프트의 일본 방문과 ‘한국-이민문제 교환론’

국방장관 태프트는 대통령 루스벨트의 지시를 받고 1907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본을 방문했다. 태프트의 일본 방문은 단기간(5일간, 1907. 9. 28~10. 2)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 정부의 위정자들과 수차에 걸쳐 집중적으로 접촉했다. 도착 당일 오후부터 일본 언론과 기자회견을 한 이후 출발 직전까지 일본의 고위 인사, 즉 천황, 현직 수상 사이온지, 전직 수상인 가쓰라 및 외상 하야시와 연이어 면담 및 회담을 했다. 본격적인 미일회담은 태프트가 도착한 이틀 후인 9월 30일 도쿄의 제국 호텔에서 오찬을 겸해 시작되었으며, 다음 날 인 10월 1일까지 외상 하야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태프트의 방문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우선 미국과 일본 간에는 일본인 차별문제로 ‘전쟁위기(war scare)’가 감돌고 있을 때였다. 이 무렵 미국은 일본인 노동자의 미국 본토이민을 제한하려고 했고, 이에 일본은 국민 감정을 내세우며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이다. 사실 미일 간의 위기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듯이 1907년에 일어난 것이 아니며, 러일전쟁 중에 이미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은 일본인의 해양진출 야망과 능력을 경계했다. 특히 대통령 루스벨트는 하와이 거주 일본 성인의 숫자가 미국인보다 많다는 점을 염려했다. 그리고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을 통해 일본의 해군력이 탁월한 원양작전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유사시 하와이를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루스벨트가 일본을 견제해야 한다고 보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미국이 제안하고 주도하는 제2차 헤이그 평화회담(The Second Hague Peace Conference, 1907. 6. 15~10. 27)이 개최 중이었다. 뿐만 아니라 소위 ‘외교혁명(diplomatic revolution)’이라고 부르는 국제정세의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 해에 일불협상(1907. 6. 10), 일러협상(1907. 7. 30), 영러협상(1907. 8. 31) 등이 체결됨으로써 러불동맹, 영일동맹, 삼국동맹 등으로 정족지세를 이루던 국제역학이 ‘영일러불 대 독오이’라는 양대 무장화된 블록으로 나뉘어졌다. 특히 아시아 및 태평양에서는 일본을 축으로 하여 영

러블이 일종의 군사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자칫 미국의 국제적 고립을 뜻할 수 있었다. 유럽 열강이 일본의 우의에 기대어 태평양 및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식민지의 안전을 담보하고 철수함으로써 이제 미국은 이 지역의 이익을 단독으로 방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1907년에 이르러 미국은 외교적 곤경에 빠지고 있었는데, 태프트의 도쿄 방문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방문 시기뿐만 아니라 파견 인물 및 파견 방식 또한 이 회담에서 미국이 중요한 문제를 거론할 것임을 예고했다. 우선 루스벨트는 외교를 관장하는 국무장관 루트가 아니라 국방장관 태프트를 파견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일반적인 외교 관행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더욱이 외교에 관한 한 태프트는 루트에 못 미칠 정도가 아니라 미숙하다는 것이 워싱턴 정가의 일반적인 평가였다. 그렇다면 루스벨트는 왜 태프트를 특사로 선정했을까. 무엇보다도 태프트가 일본이 선호하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후술하겠지만 미국이 체결한 일본과의 협정들은 중재조약을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따라서 협정은 외교관 및 정치가들 간의 신뢰에 그 준수여부를 의존했다. 태프트는 이 점에서 적격자였다. 특히 그는 2년 전인 1905년에도 특사로 파견되어 태프트-가쓰라협정을 체결한 장본인이기도 했다. 그때에도 일본은 태프트의 파견을 원했으며, 이 때문에 루스벨트는 당시 필리핀 총독이던 태프트를 본인이 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 끝에 특사 임무를 수행하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태프트의 각서 교환에 대해 추인함으로써 일본에게 믿을 만한 인물로 각인되었던 것이다.⁸⁾ 따라서 태프트의 파견은 계산된 임명이었다. 일본이 신뢰하는 인물을 파견함으로써 일본의 의중을 파악하자는 것이다.

‘특사(special envoy)’라는 파견 방식 또한 의도된 결과였다. 특사 파견은 미국 의회의 사전 승인은 물론 사후 보고도 할 필요가 없었다.⁹⁾ 태프트-가쓰

8) 태프트-가쓰라협정은 태프트의 단독 작품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린 바 없지만, 한국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과 생각이 같았기에 태프트가 단독으로 이런 합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9) 특사외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특사는 대통령에게만 보고를 하며, 국무성에

라협정이 한동안 의회 도서관에 감추어져 보관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직 국무장관을 특사로 파견한다는 것은 관례에도 벗어나지만, 미일이 갈등을 겪고 있는 시기에 국무장관을 파견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었다. 그리고 루트를 파견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보내거나, 회담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무렵 미국 의회는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미국의 운명에 심각한 결정을 단독으로 하지 않을까를 염려하여, 대통령의 외교권을 견제하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사외교는 공개적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에 적합한 외교 방식이었다. 그리고 태프트의 방일조차도 감추어졌다. 국방장관으로서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안보태세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필리핀을 향해 가는 도중에 일본을 들렀기 때문이다. 일본 방문 후 태프트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다시 필리핀으로 향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마디로 방일 시점 및 방식 그리고 태프트가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공개하기 어려운 그러나 매우 중요한 외교 현안이 다루어질 것임을 예고하게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태프트와 일본 위정자들의 만남에서 무엇이 논의되었을까. 태프트의 회담 기록 및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종합하여 재구성하면 그것은 다음 네 가지였다. 이민문제, 만주문제, 한국문제, 필리핀 문제, 그리고 미일전쟁 위기 등이었다. 안건별로 다음과 같은 골자의 의견이 교환되었다. 도착 이틀 후인 9월 30일에 있는 외상 하야시와의 첫 번째 회담에서 태프트는 먼저 러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를 축하한 후, 포츠머스 평화조약을 통해 일본은 세계 열강의 일원이 되었음을 주지시켰다. 양국이 외교적 방법에 의해 긴장관계를 풀 수 있다면서, “일본과 미국 간의 전쟁은 근대문명에 도전하는 범죄가 될 것이다”고

는 일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조약 체결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원의 승인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특사외교는 비밀외교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대통령의 병기고에 있는 가장 중요한 외교 무기이다. Dexter Perkins, 1968, *The American Approach to Foreign Policy*, New York: Atheneum, pp. 160~165. 뿐만 아니라 특사 임명 및 파견시에도 상원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Richard W. Leopold, 1962, *The Growth of American Foreign Policy: A History*, New York: Alfred A. Knopf, Inc., p. 246.

했다. 그런 후 태프트는 한국문제를 거론했다. 미국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후진국에 대한 정의, 문명화 및 복리” 정책을 신뢰하고 있다면서 “왜 일본은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개혁 계획을 심각하게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전쟁을 바라야만 하는가”라며 반문했다.¹⁰⁾ 이는 유사시 미국이 한국문제에 개입할 수 있음을 은근히 경고한 것과 같다.

동시에 태프트는 “우리는 열강이 법과 질서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정부를 지닌 국가들의 문제에 개입하여, 그러한 국가들이 국가적 의무를 다하도록 도움으로써, 세계의 진보를 위해 활동해야 하는 시기에 살고 있다”면서 일본의 한국 지배를 미국은 당연히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¹¹⁾ 즉 태프트는 미국이 일본의 한국 지배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한 후, 그러나 미국은 문명 열강이 비문명 약소국을 지도해야 함을 당연히 생각한다는 점을 주지시킴으로써 일본의 양보를 끌어내려고 했던 것이다.

일본은 태프트의 발언이 지닌 의미를 즉각 알아챘다. 다음 날인 10월 2일에 열린 두 번째 회담에서 고무라 외상이 밝힌 일본의 입장이 그것을 보여 준다. 먼저 고무라는 일본이 이민문제를 양보할 수 있음을 전달했다. 다만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방식으로 조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일본인 스스로가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고무라는 사견임을 전제로 그 대가로 일본이 미국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한국병합 승인임을 밝혔다. “외상으로서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개인의 자격으로 말하자면, 한국병합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재정적 이유와 아울러 이토와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의 반대가 존재한다.”¹²⁾

태프트와 고무라의 회담은 이때 미국이 일본의 한국병합의 가능성을 내다

10) Henry F. Pringle, 1939, *The Life and Times of William Howard Taft*, New York: Farrar & Rinehart, Inc., p. 303.

11) Ralph Eldin Minger, 1975, *William Howard Taft an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The Apprenticeship Years 1900~1908*,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p. 157.

12) Ralph Eldin Minger, 1975, p. 161.

보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미국은 태프트가 일본을 방문하기 10여 일 전에 주일 미국 대리대사로부터 한국병합에 관련된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책임자로 취임한 이토가 ‘일본은 한국병합 의도가 없다’는 점을 공표했고, 이를 주일 미국 대리대사 도지(Dodge)가 1907년 9월 19·20일에 루트(Root) 국무장관에게 보고했기 때문이다.¹³⁾ 사실 미국은 병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한국병합을 용인할 수 있음을 이미 1905년에도 일본에 전달한 바 있다.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배상금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을 때, 중재를 섰던 루스벨트가 일본 특사 가네코 겐타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조만간(sooner or later) 일본은 한국을 가질(take) 수 있다”고 발설한 바 있기 때문이다. 가네코는 훗날 자서전에서 루스벨트의 발언을 놓고 “이때 한국병합의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어 태프트는 미국 또한 전쟁을 바라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전쟁은 미국을 1년 또는 그 이상 군사국가로 전환시킬 것이고, 호전적인 정책을 수립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10년간 전례없는 경제적 번영을 누려 왔고, 따라서 그것을 잃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일각에서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이나 다른 열강에 매각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필리핀을 바라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미국은 필리핀 국민들에 대한 약속 때문에 다른 열강에 매각할 수 없다.

태프트는 일본과의 회담 내용을 정리 한 후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1907년 10월 14일 장문의 보고서를 본국에 제출했다. 다음과 같은 요지였다. ① 미일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 태프트는 “일본은 미국과 전쟁 회피를 강렬히 원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일본은 미일전쟁을 수행할 만한 재정적 상태

13) 러시아 외상 사조노프(Sergei D. Sazonov)는 1908년경부터 일본의 한국병합을 예상해 왔다는 것이다. Department of State, U.S. ed., 1987,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1834~1950*, Institute of Asian Culture Studies Hallam University, p. 37, 주 1(이하에서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로 약함).

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② 필리핀의 안전에 대해서도 “일본과의 평화의 가능성을 낙관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외상 하야시는 일본은 필리핀에 야심이 없으며, 다만 미국이 매각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고 전해왔기 때문이다. ③ 이민문제에 대하여 태프트는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사건은 선정적인 저널리즘의 결과이지, 결코 미국인의 정확한 감정을 나타낸 것은 아니라’고 전했는 바 이에 하야시는 “일본 여론은 미국 이민에 대해 아주 작은 관심만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유럽인들에게는 허용되면서 일본인만을 제한하는 어떤 조약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태프트의 보고서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내가 보건대 일본인들은 일본인 이민 제한을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그것을 조약 속에서 공공연하게 명기하지만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가능하다. 하야시가 미국인의 일본인 배척을 조약 형태로 명문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일본 정부는 여권 발급을 스스로 자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기 때문이다.”¹⁴⁾

④ 한국문제에 대해 태프트는 하야시[林董]로부터 “일본이 바라는 것은 한국병합이다”라고 전해 들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그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덧붙였다. “일본은 한국문제에 지나칠 정도로 매몰되어 있으며, 현재 수준을 넘는 정책으로 나아가는 데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¹⁵⁾

한국병합과 관련하여 태프트의 대일방문과 회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미국이 먼저 한국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이 문제가 태프트-가쓰라협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며, 미일 간에 협의 대상임을 주지시켰다는 것이다. 둘째, 이에 대해 일본은 한국병합 의지를 밝히는 한편, 이민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양보할 태세가 되어 있음을 전달했는데, 이로써 한국문제와 이민문제는 협상 테이블에서 교환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상호 확인했다. 셋째, 그리하여 태프트의 대일방문 후 불과 4개월 만인 1908년 2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4개의 협정 및 조약, 즉 신사협정 → 중재조약 → 미일상표협정 → 루

14) Ralph Eldin Minger, 1975, p. 159.

15) Ralph Eldin Minger, 1975, p. 161.

트-다카히라협정 등이 잇달아 체결되었던 것이다. 이어서 미국이 당시에 구상하고 추진했던 세계조약체제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그것이 일본과 1908년 조약체제를 구축케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Ⅲ. ‘중재조약체제’ 대 ‘통상조약체제’ 대 ‘군사동맹체제’와 한국

태프트의 방문을 통해 이민문제와 한국문제 간에 교환구도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민문제만을 양보받기 위해서 미국이 한국문제를 꺼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이민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것은 전쟁위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태프트도 지적했듯이 러일전쟁으로 국력을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개입으로 배상금을 한 푼 받지 못한 일본이 이민문제를 가지고 당장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미국으로서 이민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민문제가 미국과 일본 간에 중재재판조약을 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 있었다.

미국에게 중재재판조약은 매우 중요했다. 유럽식 세계체제를 해체하고 미국식 세계체제를 만들자는 원대한 구상의 핵심장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편에서는 통상조약체제를 세계체제로 강화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유럽식 세력균형체제를 약화시키는 지렛대와 같은 제도였다. 국가 간의 분쟁을 법으로 해결한다면, 전쟁으로 해결하지는 군사동맹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에서 오는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 강대국 간은 물론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통상조약은 공평성을 확보하여 그야말로 세계평화체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약소국이 문호개방을 꺼리는 이유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점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처럼 중재조약은 미국의 모든 외교 독트린과 이상을 모두 함축하고 있었다.

문제는 일본과 중재조약을 체결하려면 선행하여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 했다는 데 있다. 하나는 미일 간의 이민문제요, 다른 하나는 한국문제였다. 만약 미일중재조약을 체결한다면 일본은 미국의 이민차별에 대해, 반면 미국은 한미통상조약을 근거로 각각 법적 재판청구가 가능해진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자의 경우를 각각 고민했다. 따라서 미일중재조약을 체결하려면 미국은 일본이 이민문제를 중재재판에, 일본은 미국이 한국문제를 중재재판에 각각 회부하지 않는다는 상호 보장이 필요했다. 바로 여기서 미일중재조약과 한미통상조약은 거래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조건이 미국의 대한정책의 방향을 ‘한미통상조약 보전 정책’에서 ‘한미통상조약 포기 정책’으로 전환하게 한 것이다. 사실 미국이 중재조약망을 가동시키기 전까지 한국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국제정세의 변화와 미국이 신 세계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하면서 마침내 러일전쟁기부터 한미통상조약을 포기하는 방향전환을 하였던 것이다. 1882~1904년까지 미국의 대한정책을 한미통상조약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면 다음 3단계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1) 제1기(한미수교기): 한미통상조약의 정치적·전략적 의미가 강조되었던 시기이다. 왜냐하면 첫째, 미국은 한국에 대한 ‘조기 국가승인(strong asia)’을 통해 한반도의 식민지화를 차단하고, 둘째, 중국의 해체를 막고, 셋째, 한반도를 신설될 태평양 항로의 중요 거점으로 만들어, 넷째, 유럽식 통상조약체제¹⁶⁾가 이 지역을 세력권 및 이익권으로 분할(weak asia)하여 식민지화하는 것을 막는다는 의도하에 한미통상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태평양 및 아시아를 미국식 통상망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해 이 점을 알 수 있다. ① 우선 미국이 한미통상조약을 서둘렀던 이유는 병인양요와 그 후의 프랑스의 한국 보호령 발언이었다.¹⁷⁾ 미국은 이를 중시했다.

16) 칼 슈미트 지음, 최재훈 옮김, 1995, 『대지의 노모스』, 민음사, 255~256쪽.

17) 1866년 병인양요를 일으킨 프랑스가 1867년에 “군대를 파견하여 한반도를 보호령

한국 보호령화 의사를 청에게 통보했다는 것은 중국에서 한반도를 분할한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본토까지도 장차 그런 식으로 나누어 차지하겠다는 점을 예고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② 미국은 한반도의 지정전략적 가치도 중시했다. 남북전쟁 후 미국 본토의 대륙횡단철도와 서부해안에서 아시아로 가는 태평양 항로를 연결시켜, 즉 철도와 기선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교통망(바다의 실크로드)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그것이 한국의 지리적 가치를 중시하게 했다. 이는 중요했다. 이 무렵 미국이 동아시아로 오기 위해서는 대서양 → 지중해 → 인도양 → 중국해의 루트, 즉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항로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증기선의 출현으로 미국의 서부 → 태평양의 직항로가 만들어졌다. 신설항로만큼은 유럽에 내줄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다. ③ 한미통상조약의 내용이 유럽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한국에게 유리했다는 점에서도 한반도를 미국식 통상망에 포섭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불평등한 치외법권을 개정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한 점, 거중조정조항을 명기한 점 등은 처음에 유럽이 한국과 체결하려고 했던 유럽식 통상조약과 달랐다. 유럽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명시했다. 불평등조약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치외법권을 개정한다는 일체의 조항이 없다. 거중조정(good offices) 조항도 유럽 열강은 넣을 생각이 없었는데, 미국 때문에 명기해 줄 수밖에 없었다. 타이러 데넷(Tyler Dennett)이 한미통상조약을 “1898년 필리핀 병합 이전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로 평가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¹⁸⁾ 한마디로 한미통상조

으로 삼겠다”는 의사를 청에게 통보하는 한편, 미국에게는 “이 군사토벌에 동참할 의사가 있느냐”고 타진해 왔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한국 보호국화 계획을 알아챈 이후 미국은 본격적으로 한미통상조약을 추진했다. 즉 국무장관 시워드(Seward)가 수립한 한미통상조약 협상 계획(1868), 아시아함대 사령관 로우(Frederick F. Low) 제독에게 내린 통상조약체결명령(1870), 한국 개항을 위한 사절단을 파견하자는 미국 양원의 합동결의안 추진(1878), 슈펠트 제독의 아시아 및 아프리카 파견(1878) 등이 그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마침내 1882년 5월 5일 이홍장의 도움을 받아 한미통상조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p. 9~12.

18) 수교직전인 1881년 11월 14일 미국무장관 제임스 블레인(James Blaine)은 공식문

약은 유럽식 통상조약체제의 동진운동과 미국식 통상조약체제의 서진운동¹⁹⁾이 한반도에 충돌한 결과였다.

(2) 제2기: ‘임오군란-청일전쟁기’이다. 이 시기의 미국은 한미통상조약의 전략적 의미를 감추고, 경제적 의미만을 추구한다는 전략을 추진했다. 한반도에 일어난 각종의 변란 및 정변을 보면서 ‘한반도=아시아의 발칸’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스트롱 아시아’ 정책에 입각한 한미통상조약은 ‘엄정중립(strict neutrality)’이라는 이름하에 경제적 이권이나 보장받자는 전략으로 초점을 이동시켰다. 사실 통상조약체결을 추진하면서 미국은 한미통상조약을 유지시킨다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깨달았다. 중국이 한국을 대리하여 조약체결 당사자로 나섰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스스로 중국의 종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²⁰⁾ 이어 미국은 임오군란, 갑신정변, 청일전쟁 등의 일련의 사태를 목격하면서 한국이 한미통상조약을 안보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²¹⁾ 이는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노선인 고립주의에 배치되었다. 이 시기의 미국이 한국을 아시아의 발칸으로 보면서 자국 외교관들에게

서를 통해 한미통상조약 체결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중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통상을 위하여 문호개방 의사가 있다면 미국은 한국과 기꺼이 우호관계를 수립할 것이다.” Claude A. Buss, 1983, 「한미관계: 초기를 중심으로」, 『한미수교 1세기의 회고와 전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2~73쪽.

19) 한미통상조약은 이 무렵 미국이 그동안 교류가 없었던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통상망을 구축하자는 계획의 일환이었다.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 11.

20) 한미통상조약 교섭시에 이홍장은 조약문구에 속방조건 즉 “조선(한국)은 청 제국의 속국이다(Chosen/Korea being a dependent state of the Chinese Empire)”를 넣으려고 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대신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미국무성에 제출해도 미국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선에서 타협을 보았다.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 12.

21) 갑신정변 당시 미국무장관 베이어드(Beyard)가 주한 미국대리공사 폴크(Foulk)에게 보낸 훈령이 그것을 보여 준다. “서울은 청·일·러 등이 충돌하는 적대적인 음모의 중심지이니, 엄정중립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이후에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동아시아에 구축된 이해의 대립구도로 보아 조선은 전쟁터로 전락할 수 있다. 조선으로 하여금 미국이 유일한 동맹국으로 여기게 만들 언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 14, 25.

엄정 중립을 유지할 것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주지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때의 인식은 한국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은 국가 간의 조약 및 협정을 국내 정치적 압력과 국가생존을 위한 ‘열강 끌어들이기’ 전략으로 악용한다는 인식이 미국 위정자들에게 심어지기 시작했음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즉 ‘한국=국제전쟁의 원인제공국’이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대한 인식의 변화는 수교 전과 수교 직후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과 비교해 보면 긍정적 평가에서 부정적 평가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러일전쟁기에 미국이 한미통상조약의 폐기를 결심하는 데 중요한 심리적 요소로 작용했다. 청일전쟁기의 미국의 다음과 같은 대한 인식은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잘 보여 준다.

열강의 개입으로 주권국으로서의 자주성이 파괴된다면, 미국은 조선 영토 내에서 미국인의 생명, 이익 및 통상 등 한미조약상의 의무를 열강이 대항해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조선과 열강 간의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현재 또는 장래에 한미조약에 의해 주어진 합법적인 거주 및 통상권을 보장받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미국은 오직 조약상의 의무 준수를 요구할 뿐이다. 한마디로 미국은 수교 당시 획득한 “조약상의 독립(Korea's treaty independent)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²²⁾

(3) 제3기(문호개방 선언기): 의화단사건과 미서전쟁을 계기로 중국을 미국 식 통상망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문호개방(1899, 1900)’이라는 외교독트린으로 선언되었고, 다른 하나는 미청통상조약(1903. 4. 8)로 표출되었다. 두 정책 모두 일관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으로부터 만주를 분리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전자는 ‘영토보전’이라는 용어 속에서, 후자는 ‘조약’이라는 국제법의 개념 속에 그러한 미국의 의지를 담아냈다. 전자가 외교선언이었다면, 후자는 국제법 그 자체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미통상조약을 재examine해야 하게 되었다.

22)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 14, 16, 22.

즉 문호개방선언의 적용 범위를 한국으로 확장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처음에 미국은 배제시키는 태도를 취하였다.²³⁾ 그러나 한국에서 용암포사건이 일어나고, 러시아의 제2차 만주 철병거부를 계기로 미청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다시 한미통상조약과 미청통상조약을 연계시켜 보자는 전략이 나왔다. 만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 한반도였고, 이 지역에서 이미 러일이 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까지 가세함으로써 국제분쟁의 양상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한반도의 불길은 만주로 넘어갈 것이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수교 초기와 같은 한미통상조약의 전략적 의미가 다시 살아났다. 압록강을 경계로 양편에 위치한 의주와 그 대안의 만주를 묶어서 개방지역으로 하자는 것이다.²⁴⁾ 즉 한미통상조약과 미청통상조약을 통해 일종의 완충지역을 만들어 보자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영일이 동맹을 배경으로 용암포까지 개항지역의 확장을 주장하고 러시아가 이에 강력하게 반대함으로써 미국은 계획을 철회하고 말았다.

그러는 동안 한미통상조약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는 별도로 이러한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련의 국제적 사건이 발생했다. 그 사건의 여파는 당장은 아니었지만, 마치 쓰나미처럼 장차 한미통상조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미서전쟁(1898), 의화단사건(1899), 제1차 헤이그평화회의(1899), 영일동맹(1902), 제2차 베네수엘라위기(1902) 등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었다. 그것은 단독으로 또는 상호 작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한미통상조약을 폐기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한반도를 바라보는 새로운 두 가지 시선이 등장하였다. 하나는 군사 전략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정책을 수립하자는 움직임이다. 즉 ‘한반도를 일본이 차지하게 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러시아의 남하를 막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서전쟁, 의화단사건을 통해 태동하였으며, 영일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새

23) 1899년 주한 미국공사 알렌(Horace N. Allen)을 통해 고종이 요청한 문호개방선언의 한국 확대, 즉 “한국의 영토보전을 보증해 달라”는 호소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p. 25~26.

24)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p. 27~28.

로운 정책 중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새롭게 등장중인 국제법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다는 것이다. 제1차 헤이그평화회의에서 3대 의제 중의 하나로 중재재판제도가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설립 취지는 국가 간의 분쟁을 무력이 아니라 법으로 해결해 보자는 것이었다. 문제는 통상조약이 가장 중요한 재판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법적 해석을 둘러싼 분쟁을 중요한 재판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주권에 새로운 개념이 창출되었다. 국가의 재판권이 그것이다. 이는 주권 개념의 혁명적인 변화였다. 이전에는 '주권=전쟁권'은 동의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의 주권 개념을 부정하는 '주권=재판권'이라는 대항개념이 탄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약체결권은 매우 중요해졌다. '조약체결권=국가재판권'을 의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약체결권=국가재판권'이라는 개념은 기존의 통상조약을 강력한 제도로 만들었다. '통상조약'은 국가의 주권 중에 '조약체결권'을 행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통상조약체결권=국가재판청구권'의 논리가 성립된다. 그리하여 '통상조약체결권=법적 개입권'을 의미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한미통상조약=한국문제에 대한 법적 개입권'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으며, 더욱이 한미통상조약은 제1조에 거중조정조항을 넣음으로써 1899년 이전의 거중조정조항은 개입권이 아니었지만, 1899년 이후의 거중조정은 '개입권' 그 자체가 되었다. 전자는 분쟁당사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지만 개입권으로 전환되지만, 후자는 분쟁당사국의 동의 없이도 개입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중재조약을 체결해야 함은 물론이다. 바로 이러한 조건은 일본이 열강과 한국 간의 통상조약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한국문제가 힘으로만 결정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중재재판제도는 세계정치를 미국과 유럽 간의 대결구도로 양분되게 했다. 유럽과 미국이 각각 구상하고 있는 중재재판제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은 '법률가'의 재판을, 유럽은 '정치가 및 외교관'의 흥정을 각각 추구했다. 전자는 '판결'을 내리자는 것이고, 후자는 '타협'을 해보자는 것이다. 전자는 '정의·부정의'의 원리를, 후자는 '힘'의 논리를 주장했다. 양자의 논리는 타협할 길이 없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집행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를 놓고 결정적으로 맞섰다. 전자는 세계법정 또는 국제경찰 창설을 주창했다. 반면 후자는 침묵했다. 군사동맹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식 중재재판제도와 유럽식 중재재판의 대립은 실제로는 ‘중재재판제도와 군사동맹’의 대결이 되고 말았다. 전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후자가 해체되어야만 했다. 그리하여 이미 통상조약체제를 놓고 미국식 대 유럽식으로 대결 중인 세계는, 다시 중재재판제도를 놓고 맞섰다. 그리고 군사동맹체제에 대해서도 국제경찰이나, 군사동맹이나를 놓고 대치했다. 세계는 3중의 대결장, 즉 통상조약의 장, 중재조약의 장, 군사동맹의 장 등 3개의 장에서 미국과 유럽이 격돌하는 형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법의 논리(국제법 · 조약체제) 대 힘의 논리(군사동맹)’의 싸움이었으며, ‘미국 대 유럽의 싸움’이었다. 이제 세계 어디에서든지 미국과 유럽이 이해관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3개 체제의 동시 충돌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다. 이미 한반도에서 1882년에 통상조약체제를 놓고 미국과 유럽은 1회전을 치른 바 있다. 이제 중재조약체제는 한반도에서 2회전을 치를 판이었다. 그곳에 바로 중재조약체제 구축에 가장 필요한 일본이 있었고, 동시에 타도해야 할 영일군사동맹과 러불군사동맹이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1차 헤이그 중재재판조약체제는 이미 한국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시작했다. 먼저 칼을 빼어든 것은 러시아였다. 초청권을 지닌 러시아가 한국을 배제함으로써²⁵⁾ 유럽식 통상조약체제가 약소국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될 것인지를 예고했다. 미국은 즉각 그 의미를 알아챘다. ‘초청과 배제’를 이용해 초청받지 못한 전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자는 전략임을 눈치챈 것이다. 약소국과 아시아를 망라하여 참석한 국제법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국가 간의 분쟁에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주권을 부정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국가자격을 박탈당한 셈과 같았다. 이에 미국은 중남미 18개국이 초청받을 수 있도록 1차 헤이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가들이 회의

25) 아마도 이 무렵 일본과 니시-로젠 협정 체결로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양분했기 때문이다.

취지에 찬성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고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따라서 미국은 제2차 평화회의를 반드시 개최해야만 했다. 그래야만 1차에서 배제되었던 중남미 국가를 불러들여 국가로 인정받게 만들 수 있었다. 이러한 조건이 결국 미국으로 하여금 제2차 헤이그평화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초청 여부를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헤이그평화회의가 한국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풍과 같은 잠재력을 지녔다고 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시기의 미국이 한국을 중재조약망에 끌어들여야 한다고 보았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통상조약체결국은 중재재판체결국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식 중재재판조약체제였다. 그러나 결국 미국과 통상조약국인 한국의 가입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한미통상조약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졌다. 반면 유럽은 통상조약체제와 중재조약체제를 분리시켜야만 했음이 분명하다. 약소국이 통상조약을 근거로 한 중재재판제도를 통해 식민지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막아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소국과의 통상조약은 유지하면서, 중재재판조약체제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만 했다. 더욱이 유럽의 입장에서 약소국이 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들을 희생물로 하여 성립되어야 할 동맹도 불가능해진다. 한마디로 중재조약체제는 약소국의 독립여부를 결정할 운명의 여신이었다. 그리고 미국 및 유럽과 통상조약을 동시에 맺고 있는 한국에게 중재조약체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건 불을 보듯이 뻔했다. 그리하여 한반도에는 세 가지 국제체제, 즉 1880년에 정착한 통상조약체제, 1890년대 말에 생긴 중재조약체제, 1900년 초에 한반도를 무대로 하여 성립된 군사동맹체제 등 3대 국제체제가 미국식과 유럽식으로 나뉘어 대결 또는 잠복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러일전쟁이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했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한다는 점, 일본의 군사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이전부터 한국 정책을 결정할 요소로 정해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책을 실행하게 했다. 그리하여 제1차 미일중재조약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1903년 말과 1904년 전반기에 매우 중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1903년 9월에는 한반도를 대러 군사기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승인하고, 개전 초에

는 제1차 한일의정서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미국은 한미통상조약을 폐기하는 자체 논리를 마련했다. 한국이 일본에게 스스로 외교권을 넘겼으니, 한미조약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법률논리였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한국보호국조약 및 병합조약에도 그대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병합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미통상조약은 소멸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제2의 삼국간섭을 막기 위해 독일 및 프랑스에게 전쟁 개입을 경고하며 뤼순과 한국문제는 끝났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경고했다. 한국은 일본의 보호국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전후 한국문제는 보호국이라는 분위기가 열강 간에 조성되었다.

그런 후 미국은 연두교서(1904. 12)를 통해 일본 및 열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세계는 이제 국제경찰을 창설하고 각자는 문명의 보안관으로서 무능국가 및 비행국가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재조약체제는 국제경찰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후에 재편될 수 있는 군사동맹체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와 같았다. 특히 극동지역을 지칭하면서, 이 지역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일본에게 우호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한 후 미국은 일본, 영국, 프랑스 등 3국에게 중재조약체결을 제의했다. 3국은 즉각 수락했다. 미국과 영불일이 전후체제를 구축한다면 영국과 프랑스는 군사동맹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일본 역시 종전을 위해 미국의 중재를 기대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회의 견제로 실패했다. 그리하여 ‘통상조약 + 중재조약 + 국제경찰’은 ‘세계연방’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이의 성패는 기존의 군사동맹체제를 해체하는 것에 달렸다. 미국은 중재조약체제의 중심 국가들을 영불일 등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제 국제경찰국이 되어야 했다. 즉 계획상 국제법체제 대 군사동맹체제가 맞서는 형국이 되었다.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국을 빼야만 했다. 여기서 미일중재조약 대 한미통상조약은 양립불가가 되었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를 마련하고 루스벨트는 미일중재조약을 제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실패했다.

하지만 미국은 개의치 않고 중재조약체제를 계속 추진했다. 전쟁으로 중단

된 헤이그평화회의가 열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영일동맹이 미국을 가상의 적국으로 삼는 것을 막아야 했고, 러일이 강화를 계기로 제후하는 것을 차단해야 했다. 모로코로 가서 프랑스를 구출하고, 포츠머스에 개입하여 친일반러적인 중재를 했으며, 그 와중에 태프트-가쓰라협정을 체결해 주었던 것이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조약체결권을 박탈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제2차 회의는 미국이 개최권을 가지고 있었다. 초청국 선정은 개최국의 특권이었다. 그때 한미통상조약국인 한국을 초청하지 않을 명분이 없었다. 따라서 일본으로 하여금 참가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한국의 조약체결권을 박탈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회의 참석 자체를 막아야만 했다. 아울러 한미통상조약 제1조 거중조정조항의 부담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었다. 미국이 조약체결권 박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태프트-가쓰라협정을 체결해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러시아가 예비초청국 명부에 한국을 포함시켰음을 알아챈 미국이 이를 일본에게 사전에 누설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의 참석을 봉쇄토록 한 것에서 미국의 이러한 '한국의 국가자격박탈' 전략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의 국제체제는 군사동맹체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1907년에 이르러 영일러블 간에 4대국 군사동맹체제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헤이그평화회의의 시작을 전후하여 구축됨으로써 평화회의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그리고 이들 동맹체제가 결국 평화회의를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내게 만들었다. 이에 미국은 군사동맹체제 해체가 시급해졌다. 태프트의 방일 결정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의 임무는 이미 군사동맹체제로 넘어간 일본을 다시 조약체제로 끌어내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있었다. 이미 1905년에 보호국 카드를 씹먹은 미국에게 남은 카드는 병합 카드 밖에 없었다. 일본에서 한국과 이민문제 교환문을 제시한 것은 바로 미일중재조약의 장애를 제거하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907년에 태프트와 하야시 사이에는 이민문제(신사협정)와 한국병합의 교환, 즉 한미통상조약 폐기와 미일중재조약체결이라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Ⅳ. 제2의 태프트-가쓰라협정

태프트의 방일 회담의 성과는 곧 나타났다. 일본이 신사협정(Gentleman Agreement, 1907. 11. 16~1908. 3. 25)을 통해 이민문제를 조건 없이 양보했기 때문이다. 외교사가 프레드 웰본(Fred W. Welborn)도 지적했듯이 협정의 내용으로 볼 때 미국이 원했던 것을 일본이 대신 행한 것과 같다.²⁶⁾ 다음은 신사협정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미국은) 일본과 다음과 같은 협정에 도달했다. 미합중국 본토로 오는 일본인 이민 노동자들을 억제하는 현재의 정책은 지속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은 양국 정부의 협조하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미국 본토로 오는 비노동자 일본인이나 노동자일 경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미국 내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자, 미국 내 거주하는 자의 부모, 아내 및 자녀와의 상봉, 미국 내 농장에 이미 취업을 하고 있는 자 등에게만 여권을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²⁷⁾

즉 일본은 미국 본토로 가는 노동자에게 여권 발급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식의 협정은 일반적 협정의 관례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의 양보에 대하여 미국은 무엇을 양보한다는 식의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간의 협정은 ‘외교적 협상물(quod pro quo)’을 놓고 ‘주고받음(give & take)’이 일반적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로써 일본과 중재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중요한 장벽 중의 하나가 제거되었다. 사실 이민문제 차별은 중재조약을 체결하려는 미국의 딜레마였다. 일본과 중재조약을 체결하면 도쿄 정부는 미국의 이민자 차별법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하나는 미국 헌법과 이민제한법이 충돌한

26) Fred W. Wellborn, 1970, *Diplomatic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New Jersey: A Littlefield, Anams & Co., p. 232.

27) 유기식, 2002, 『미국의 대일이민정책연구』, 도서출판 태일사, 28~29쪽.

다는 헌법 재판청구요, 다른 하나는 중재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둘 다 미일 통상조약에 의거하여 재판청구가 가능하다. 이민 차별법이 헌법과 저촉된다는 점은 미국 헌법이 통상조약을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즉 이민자 차별법(국내법)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통상조약을 위반했다는 법리이다. 중재재판조약문은 재판청구가 가능한 가장 주요한 대상을 통상조약을 둘러싼 분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두 계약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해석이나 법적 본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그리고 외교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지 않는 분쟁은 1899년 7월 29일에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중재법정에 회부한다. 다만 양 계약국 간의 분쟁이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s), 독립(independence), 국가의 명예(honour)에 대한 것일 경우, 그리고 제3국의 이익에 관련될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²⁸⁾

그렇다고 해서 이민제한법을 폐기할 수는 없었다. 일본인 이민자의 저임 노동력이 백인 노동자를 축출하고 있다는 점도 경계했지만, 그보다도 독자적인 문화를 지님으로써 미국인의 정체성에 녹아들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분열 원인 중의 하나로 보았다. 서부를 미국의 새로운 정신적 구심점으로 만들어 태평양 시대에 대비하자는 것이 미국 위정자들의 포부였다. 서부에 일본인들이 대거 이주할 경우 그 지역은 미국인들의 정체성을 상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미국이 일본인 노동자 이주를 먼로독트린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마디로 이민자 제한법을 철회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과 중재재판조약을 체결하면서 이민자 차별법을 유지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봉착한 것이다. 모순된 성격을 지닌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동시에 잡을 것인가. 바로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일본이 신사협정으로 이민문제를 양보해 온 것이다.

28) 이 조약은 모두 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1조이다. 나머지 3개 조항은 중재재판의 절차에 대한 조항이다. 外務省 編纂, 1908, 『日本外交文書』一卷, 138~140쪽(이하 『日本外交文書』로 약함).

그리하여 중재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장벽이 제거되었으며, 그 결과 신사협정이 체결된 지 불과 2개월도 안 되어 중재조약이 성사되었다.²⁹⁾ 중재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미통상조약을 폐기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중재조약문의 단서 조항이 바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양 체결국 간의 분쟁이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s), 독립(independence), 국가의 명예(honour)에 대한 것일 경우” 중재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을 일본의 사활적 이익으로 보장해 주면 되었다.³⁰⁾

문제는 “한국은 일본의 사활적 이익”이라는 점을 중재조약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의회의 비준을 얻어야 하는 문서에 미국은 한미통상조약을 포기했다고 명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바로 여기서 협정이 사활적 이익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중재조약이 체결된 지 불과 2주 만에 체결된 상표협정과 그로부터 다시 6개월여 만에 성사된 루트-다카히라협정이 그것이다. 먼저 상표협정의 주요 골자이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발명, 특허,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하여 현재 일본국에서 시행하는 것과 동일한 법령을 본 조약의 실시와 동시에 한국에서도 시행한다. 이 법령은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에게도 일본인이나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2조: 미합중국 정부는 미국인들이 한국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특

29) 일본은 1908년 5월 5일 미국과 중재조약을 체결했다. 비준은 1908년 8월 24일에 이루어졌으며, 조약유효기간은 5년이었다. 일본은 이후 세 차례 더 연장했다. 1913년, 1918년, 1923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후 연장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다만 수속상의 문제와 미일 간에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될 뿐이다. 日本外交史辭典編纂委員會, 1992, 『日本外交史辭典』, 外務省外交史料館, 18쪽.

30) 더욱이 미국은 개전 직후인 1904년과 6월에 두 차례나 일본 특사 가네코에게 ‘한국은 일본의 탁월한 이익’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려 왔기 때문이다. 이때 가네코 특사에게 루스벨트는 한국에서 ‘최고의 이익(paramount interest)’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일본외교사사전』은 vital interest를 탁월적 이익으로 번역한다. 그러나 한국의 법률책은 이를 사활적 이익으로 번역했다. 일본 외교문서는 ‘간절(懇切)한 이익’으로 번역하고 있다.

허발명, 등록의장, 등록상표 또는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시에는 한국에 있는 일본 재판소의 재판관할권에 전속된다. 그 경우 미합중국의 재판관할권은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미합중국의 소속지의 인민은 본 조약의 적용상 미국 인민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으로 한다.

제4조: 한국 신민으로서 미합중국의 법령에 정한 절차를 이행할 때에는 동국 내에서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하여 미국 인민과 동일한 보호를 누린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상호의 보호에 관하여 1883년 3월 20일 파리에 서 조인된 만국공업소유권보호조약에 따라 미국인은 한국에서도 일본의 판도 내에서도 같이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³¹⁾

미일 간에 체결된 이 협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① 무엇보다도 일본이 그토록 바랐던 치외법권의 일부 포기가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은 태프트가 일본을 방문하기 1년 2개월여 전인 1906년 시점에서 일본이 한국의 사법권을 박탈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 주일 미국 대사 라이트(Wright)가 1906년 7월 6일 자로 국무장관 루트(Root)에게 보고한 치외법권 관련 문건은 그것을 보여 준다. “일본은 최근(1906. 6) 한국 거류 일본인에게 적용되는 재판소 체제를 구축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이 조치로 열강은 치외법권을 포기하게 될 것으로 보도했다”(Wright to Root, 1906. 7. 6).³²⁾

② 또한 상표협약을 통해서 미국은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일본법이 적용됨을 공식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미일 간의 국제법의 성격을 지닌 ‘협약’의 형식을 통해서 한국과 한국인에게 일본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인의 국적을 박탈한 것과 같다. 더욱이 ‘협약(convention)’은 ‘국가 간의 계약적 합의’의 일종으로서 ‘조약(treaty)’에 이어 국가 간에 격식을 차릴 때 사용

31) 『舊韓末條約彙纂』上中, 268~269쪽.

32)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 30, 주 2.

하는 용어이다.³³⁾ 일본은 이를 조약으로 간주했다. 협약의 미국 측 원문은 ‘convention’으로 기재한 반면, 일본은 ‘조약’으로 번역했기 때문이다.³⁴⁾ 실제로 상표협약은 ‘비준(ratification)’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조약과 다름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 협약은 제6조에서 1883년 파리에서 체결된 ‘만국공업소유권보호협약(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을 한국 내 미국인에게도 적용한다고 함으로써,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대리하여 국제 조약체결권이 있음을 인정한 셈이 되었다.

③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미일상표협약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치외법권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한미통상조약을 중재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점을 전달한 것과 같다. 미일상표협약이 중재조약과 불가분 일체의 관계를 이루면서 한국인의 국제법상 제 권리를 박탈하고, 한미통상조약에 근거한 미국인의 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병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일본은 루스벨트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점을 염려했다. 한국의 외교권 박탈을 인정한 태프트-가쓰라협정은 조약과 같은 구속력이 없었다. 그것은 당해 정부만 구속했으며, 외교적 친분관계가 강력한 구속 근거였다.³⁵⁾ 더욱이 미국으로부터 한국문제에 대한 입장을 문서상으로 표시한 것은 상표협약밖에 없었다. 아울러 만주문제에 대한 미국의

33) J. L. Brierly, 1963, p. 317.

34) 『舊韓末條約彙纂』 上中, 270, 272쪽.

35) ‘신사협정(Gentlemen Agreement)’은 국제법과 같은 조약이 아니다. 따라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1815)의 조약법(Law of Treaties)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신사협정은 앵글로 색슨의 전통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인들이나 외교관들 사이에 체결된 협정’을 칭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그 실행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것을 체결한 당사국들의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신의(good faith)에 기초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것이다. Rudolf Bernhardt ed., 1999,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2, Amsterdam: Elsevier, pp. 546~548; ‘신사협정’을 ‘비구속 협정(Non-binding Agreement)’으로 분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Rudolf Bernhardt ed., 1999,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3, pp. 607~610.

입장도 확인하고 싶었다. 일본으로서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없었다. 공화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가 문호개방 신봉자인 태프트였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알고 싶었다. 지금까지 미국은 문서상으로 외교권과 일부 사법권 박탈을 인정하고 한미통상조약을 중재재판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 주었다. 따라서 영토주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만 확인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생각은 모두 확인하는 셈이었다. 그리고 이 점은 미일통상조약 개정을 앞두고 대미협상을 준비 중인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국제법상 병합을 타국으로부터 사전에 공식적인 문서로 받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합을 한 후, 미국과 신통상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병합을 승인받는 셈이었다. 미국이 한국을 병합한 새로운 지위의 일본과 협상하고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 영토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확인해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로 이러한 일본의 요청에 응하여 체결된 것이 바로 루트-다카히라협정(Root-高平 Agreement, 1908. 11. 30)이었다. 여기서 미국은 한국을 일본의 ‘영토적 속국’으로 인정해 주었다. 다음은 이 협정의 내용이다.

- ① 미일 양국 정부는 태평양에서 통상 무역의 발달을 장려한다.
- ② 양국 정부의 정책은 어떤 침략적인 경향에 의해서 영향받지 아니하며 위에 언급된 지역에서 현상을 유지하고 중국에서 상공업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원칙을 옹호할 것을 규정한다.
- ③ 양국 정부는 위에 언급된 지역에서 상호 간에 소유한 영토를 서로 존중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³⁶⁾

협정문에서 한국은 ‘언급된 지역 내에서(in said region)’ 체약 양국에게 속하는 ‘영토적 속국들(territorial possessions)’에 대한 상호존중(조약문 제3조)으로 표현되었다. ‘언급된 지역’은 제1조에 따르면 ‘태평양(Pacific Ocean)’이

36) 설동은, 1986, 「만주문제를 둘러싼 T. 루스벨트의 대일외교: 루트-高平협정의 성립배경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9~40쪽.

며, 그 안에 위치한 미일 양국의 대표적 ‘영토적 속국’이 필리핀과 한국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더욱이 영토적 속국이란 용어는 당시의 국제사회에서 열강이 협정을 통해 영토 분할을 할 때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영토적 현상유지(territorial status quo)’라는 개념과 같다는 것이다. 오히려 영토라고 하지 않고 영토적 속국들이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한국=일본령’이라는 의미가 분명해졌다. 영토와 영토적 속국을 분리하여 사용함으로써 영토는 일본 본토를 뜻할 것인 바, 그렇다면 영토적 속국들이 어디를 지칭하는 용어인지는 물을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미통상조약 때문에 한국을 일본 영토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쓸 수 없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루트-다카히라협정은 비밀협정이 아니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 협정에서 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을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절대로 약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이 이 협정을 얼마나 중시했는가는 이를 통해 러시아와 한국병합 협상을 벌일 수 있었다는 점, 일개 당의 대통령 후보에 불과한 태프트에게 이 협정의 승계 여부를 협정 체결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점 등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재조약 재판대상에서 배제시킨 ‘사활적 이익’은 법률적 효력을 지닌 개념이다. 이 개념이 중재재판조약문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알아보자. 우선 이 개념은 ‘조약의 종료(discharge of treaties)’와 관련된 것이다. ① 조약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만 효력을 인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다. 왜냐하면 조약의 준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조약이 유효기간을 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³⁷⁾ ② 그러나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을 명시했지만, 기한 만료 전이라도 조약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 과연 어느 일방이 조약을 파기할 수 있는가는 국제법상 쟁점이었다. 왜냐하면 그 경우 ‘합의는 구속한다’는 국제법의 공동체 유지의 대전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국제법 학자들은 대부분이 국제적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하는 두 가지 원칙을 인정하고 있었다. 하나는 ‘事情變更의

37) J. L. Brierly, 1963, p. 334.

原則(clausula rebus sic stantibus)'이요, 다른 하나는 '緊急 또는 死活的 利益의 原則(the principle of necessity or vital interests)'이다. 전자는 조약상의 의무는 그 조약이 체결될 당시의 일반적인 제 조건이 계속되고 있는 한 국제법상의 효력을 가지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즉 모든 조약에는 “조약은 사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갖는다고 규정한 조항이 묵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³⁸⁾ 후자는 “아무도 불가능한 일을 이행할 것을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격언이다. 이러한 원칙들을 계속 밀고 나가면 논리귀결로서 “국가는 언제든지 어떠한 조약이라도 거부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리를 보유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사정변경의 원칙과 사활적 이익의 원칙과 같은 조약파기의 법리는 이론에만 머물지 않았다. 1848년의 프랑스는 1815년의 비엔나조약을, 1871년의 러시아는 크림전쟁의 결과로서 부과된 바 있는 러시아 함대의 통로를 제약한 ‘해협 조약’을 각각 파기하였는바, 그때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원칙은 그 파기 이유였다.³⁹⁾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열강의 정치가들은 조약 파기의 법리를 공유함으로써 ‘조약 의무의 불이행을 국제법상 권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던 것이다. 다음은 그것을 보여 준다.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모든 조약은 유럽의 (국제)정황 속에서 한정된 지위를 지닐 뿐이라는 언명에 불과하다. 만일 사정이 그대로 존속한다면(rebus sic stantibus)이라고 하는 留保는 항상 암암리에 양해되고 있다”⁴⁰⁾고 말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입장이었다. 영국의 『타임스』지는 1896년 1월 11일자 기사에서 영국의 제임슨 침공(보어전쟁) 때 어느 계관시인이 읊은 시를 게재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강압적 어구로 시작된다. “법률가와 정치가들로 하여금 그들의 머릿속에서 법률문제를 고민하게 내버려 두라. 우리들에게 칼과 안장, 그리고 총만 있으면,

38) J. L. Brierly, 1963, p. 334.

39) Edward Hallett Carr, 1964,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Harper & Row, p. 182, 185.

40) Edward Hallett Carr, 1964, p. 182.

무엇을 개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⁴¹⁾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루스벨트의 다음과 같은 언설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는 스스로가 판단하여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 조약을 엄숙하고도 공식적인 방식(official manner)으로 파기할 권리를 갖는다. 이것은 마치 국가가 충분한 이유에 의하여 전쟁을 선언하고 또는 다른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⁴²⁾ 이처럼 조약을 무효화하는 법리, 즉 사정변경의 원칙과 사활적 이익은 국제법 학자들에 의해서 이론화되고, 정치가들에 의해서 실행되었으며, 마침내 중재조약을 통해 국제법으로 명문화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일본과 중재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사활적 이익’이라는 국제법은 한미통상조약을 소멸시키는 법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왜냐하면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통상조약은 명문으로 종료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았다. ‘종료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통상조약’은 “조약에 관한 국제법의 문제 가운데 가장 곤란하고 또한 실제상으로도 중요한 문제였다.”⁴³⁾ 왜냐하면 이러한 조약은 논리귀결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첫째, 일방 당사국이 어떤 사정하에서라도 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약을 폐기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며, 둘째, 어떤 법의 원칙의 작용에 의해 조약을 폐지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였다. 전자에 대해 만약 그것이 무기한의 조약이라면 타방 당사국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후자에 대해서는 ‘조약의 구속력’은 ‘조약의 신성’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다는 주장과 ‘사정변경의 원칙’ 및 ‘사활적 이익의 원칙’에 해당될 경우 조약의 구속력은 상실한다는 주장이 맞섰다.⁴⁴⁾ 한미통상조약은 바로 이러한 조약의 종료에 대한 국제법상의 법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복판에 있었다.

41) Edward Hallett Carr, 1964, p. 184.

42) Edward Hallett Carr, 1964, p. 182.

43) J. L. Brierly, 1963, p. 330.

44) J. L. Brierly, 1963, pp. 330~331.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과 중재조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미통상조약에 대해 ‘조약의 신성’보다는 ‘조약의 구속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사정변경의 원칙’과 ‘이익의 원칙’을 적용한 셈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미국은 일본과 중재조약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약소국인 한국과의 통상조약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활적 이익이라는 국제법 원칙이 통상조약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탈출장치였으며, 이로써 미일통상조약과 한미통상조약은 거래가 성립될 수 있었다.

미국은 여기서 그칠 수 없었다. ‘한국=일본의 사활적 이익’이라는 점을 중재조약에 명문화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점을 일본에 알려 주는 별도의 후속조치가 필요했다. 그것이 미국이 일본과 체결한 상표협약과 루트-다카하라협정이었다. 즉 이 두개의 협정은 중재조약에 명시된 사활적 이익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조치였던 셈이다. 요컨대 1908년에 체결된 미일 간의 4개의 조약 및 협정은 일본이 한국병합을 하려면 반드시 제거해야만 한미통상조약을 법률적으로 폐기하는 조치와 같았다. 중재조약과 두 개의 추가협정을 결부시켜 보면 한미통상조약을 중재재판에 회부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분명히 보이게 된다. 1908년에 미일 간에 체결된 조약체제가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병합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법률적 승인 의미를 지녔다고 보아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1908년의 미일중재조약 및 후속협정들은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병합을 위해 필수적인 치외법권 폐기를 예고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일본이 미국에게 ‘한국에서 치외법권의 폐지를 예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데서 그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에 대해 주일 미국 대사가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서(1909. 7. 27)의 요지이다.

일본은 1909년 7월 12일 자로 ‘한국의 사법권 및 감옥사무를 장악한 협정(기유각서)’을 체결했다. 직후 일본 외무성 차관은 주일 미국 임시대리대사 월슨(Huntington Wilson)과 가진 사적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협정이 일단 발효된 후 일본은 한국에서 자국의 치외법권을

포기하는 문제를 고려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열강 또한 일본을 전례로 삼아 치외법권 포기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⁴⁵⁾

뿐만 아니라 1908년의 미일조약체제가 한미조약을 폐기하는 사전조치였다는 점은 한국병합 이후 미국이 취한 태도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이 일본의 한국병합 직후에 한미통상조약은 정지되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기 때문이다. 1910년 미국 시민 카바노(Kavanaugh)가 한국(평양)에서 일본인에게 체포당했을 때, 국무성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 주재 미국 총영사에게 “그 사건을 국무성에 보고하고, 이 문제에 대한 별도의 훈령을 받을 때까지 그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1910. 11. 21).⁴⁶⁾

이후에도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1912년 3월에 임시국무장관 윌슨(Huntington Wilson)은 한 일반 시민의 다음과 같은 질의에 대해 “한국 내 일본 사법권은 원칙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일본에게 있음을 인정해 왔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3월 22일 자 한국 내 치외법권에 대한 귀하의 질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이렇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지만, 다른 모든 정부가 그래 왔듯이 미국 정부 또한 한국 내 일본 사법권은 원칙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일본에게 있음을 인정해 왔다(1912. 3. 27).⁴⁷⁾

1915년 11월 한국 내 ‘미국 시민의 조약상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법적 지위’를 묻는 한 질문에 대해 국무성은 “이들 권리들은 1911년 2월 21일에 체결된 미일통상항해조약(The United States-Japanese Treaty of Commerce and

45)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 30, 주 2.

46)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 34, 주 1.

47)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p. 33~34.

Navigation)에 규정되어 있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1915. 11. 5).⁴⁸⁾ 즉 한국 내 거류 미국인들은 한미통상조약이 아니라, 미일통상조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일이 신통상조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다른 열강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영국 정부는 1911년 2월 7일 한국 거주 자국민에게 “한국에서 영국의 재판권은 합병 당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통보했으며, 프랑스 또한 1911년 6월 27일 자국민에게 프랑스의 재판권 포기를 통보하였는데서 그것을 알 수 있다.⁴⁹⁾ 이처럼 1908년 미일 중재조약을 체결하고 한국을 사활적 이익이라고 간주한 이후 일관되게 한미통상상에 보장받은 미국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아가 한미통상조약은 미일통상조약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을 천명했다. 중재조약과 한국병합이 교환되었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요컨대 미국과 일본 간에 1908년에 성립된 조약체제는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수행한 역할을 1907~1908년에 있었던 태프트 특사의 일본 방문 회담과 1908년에 미일 간에 체결된 4개의 조약 및 협정을 통해서 추적했다. 이를 통해서 ① 일본이 한국과 열강 간의 통상조약을 한국병합의 장애물로 간주했던 이유, ② 미국이 한미통상조약을 스스로 폐기한 동기, ③ 한일병합에 미국이 수행한 역할 등을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 미국의 대한정책은 1905년

48)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 34.

49)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 34, 주 1.

태프트-가쓰라협정으로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일본이 당연히 한국을 지배해야 한다”는 미국의 대한정책의 기초는 한일병합시까지 일관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해 연구자도 견해를 같이한다. 그렇다고 해서 “1905년 이후에는 미국의 대한정책이 없었다”는 식의 결론은 재고해 보아야 한다. 대한정책의 기초가 정해져 있다는 것과 한국이 외교적 협상물(*quid pro quo*)로서 가치가 없다는 것은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1905년에 사용한 카드는 보호국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병합에 대한 사전 승인은 또 다른 외교 카드가 될 수 있었다. 1907년의 태프트의 대일방문과 1908년에 체결한 일련의 조약 및 협정이 모두 한국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은 그 증거에 다름 아니다. 기존 연구가 1905~1910년의 미국의 대한정책을 간과한 이유는 이 시기의 대한정책이 대일정책 속에서 수행되었다는 점과 한미통상조약이 일본의 한국 병합의 장벽이었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이 1907~1908년에 일본에 대해서 취한 정책은 일본의 한국병합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1908년에 미국이 일본에게 미일조약체제를 통해 허락한 한국에 대한 지배 범위는 다른 열강이 1905~1907년에 허용한 그것보다도 내용상으로 명료하고 구체적이며, 시간적으로도 가장 이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① 미국은 미일상표협약(1908. 5. 19)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민들에 대한 일부 재판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나머지 열강은 병합 후에 포기했다. 영국은 1911년 2월 7일 자로, 프랑스는 1911년 6월 27일 자 한국 거주 자국민에게 “한국에서 그들의 재판권의 효력이 합병 당일로 소급하여 정지되었음”을 통보했던 것이다.

② 미국은 루트-다카히라협정을 통해 ‘한국=일본의 영토적 속국’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영국은 병합 전에 영토주권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한 적이 없다. 러시아는 병합을 구두로만 승인했을 뿐이다. 그리고 제1차 일러협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제1차 일러협정의 어디에도 영토문제에 대한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

③ 미국은 태프트-가쓰라협정으로 ‘조약체결권’ 박탈을 허용한다고 분명히 했지만, 나머지 열강은 정치상·경제상 보호를 인정한다고 했을 뿐, 외교권의

박탈을 분명한 어구로 인정한 열강은 없다. 오히려 러시아는 1905년 시점에서 보호국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조약체결권 박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러시아가 1907년 제1차 일러협정을 통해서 ‘을사조약을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④ 중재조약을 통해서 미국은 한미통상조약을 근거로 한 중재재판 청구권을 포기했다. 따라서 한미통상조약의 거증조정권을 포기한 셈이 되었다. 나아가 미국은 ‘한국=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으로 간주함으로써 한미통상조약을 법률적으로도 포기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활적 이익 조항은 “아무도 불가능한 일을 이행할 것을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격언으로서 이 당시 국제사회에서 ‘조약의 중도 해지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어 왔다. 그리고 사활적 이익은 중재조약에 명문화됨으로써 국제법이 되었다. 즉 사활적 이익은 조약을 소멸시키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조약을 소멸시키기 위해 전쟁, 합의, 병합 등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리하여 미일중재조약 체결로 미국은 한미통상조약을 스스로 폐기하고 철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고, 일본은 이 조약의 체결로 한미통상조약을 신경 쓰지 않고 병합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되었다.

⑤ 무엇보다도 미국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서 다른 열강이 보호국화 정도를 승인하면서 내걸었던 조건, 즉 통상상의 권리보장에 대해 한번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과 러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영국은 동맹국이었지만, 영일동맹에서 통상상의 기득권 보장을, 러시아는 패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보다도 많은 조건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일러협정시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요컨대 1905~1908년에 미국은 한미통상조약을 폐기하는 실질적이고도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미국에 비견될 정도의 조치를 취해 준 열강은 병합 전은 물론 병합 후에도 없다. 오직 보호국화 조치만을 외교적으로 승인했을 뿐 미국처럼 외교권, 사법권, 영토권 등에 대한 외교적 승인 및 법률적 조치를 취해 준 열강은 더욱이나 없다. 한일병합과 관련하여 미국의 역할을 재평가해야 하는 이유이다.

요컨대 1907~1908년에 미국이 일본에게 허용한 제 권리들과 1905년에 미

일협정이 양도한 조약체결권을 합치면 그것이 일관되게 지향하는 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한미통상조약상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통상조약상의 권리를 인수분해하면, 조약체결권 + 사법권 · 치외법권 + 통상권 + 중재재판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조약체결권은 통상조약체결권과 동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자를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전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의 포기만 가지고도 사실상 통상조약권은 부정된다고 하겠다. 비록 일부 사법권을 포기했지만, 미국인을 아시아인의 재판소에 세운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통상권은 처음부터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으므로 포기한 셈이다. 통상조약을 기반으로 하는 중재재판권의 포기 또한 통상조약의 존립 그 자체를 포기한 것과 같다. 특히 한국을 일본의 사할적 이익으로 간주했다는 것은, 사할적 이익이 조약소멸권을 뜻하는 법률적 개념이라는 것을 안다면, 한미통상조약은 법률적으로 소멸한 것과 같다. 한국을 일본의 영토적 속국으로 간주한 것 역시 통상조약체결국의 의무인 “상대국의 영토보전과 독립을 존중한다”는 대명제를 파괴한 것이다. 한마디로 한미통상조약은 1905년에 외교적으로 부정된 후, 1908년에 법률적으로 소멸되었던 것이다.

셋째, 일본은 미국이 주는 대로 받아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미통상조약의 제 권리를 마치 소시지처럼 여러 토막(salami, 슬법)으로 나누어 미국에게 사전에 이를 직간접적으로 통보함으로써 미국의 행동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문서로 받아 낸 후, 이를 토대로 다시 열강과 한국에게 승인받는 작업에 나섰다는 것이다. 1905~1908년에 미국이 취한 조치와 1904~1910년에 일본이 취한 조치가 시간상으로는 선후관계에, 내용상으로 인과관계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행동양식이 보인다는 점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이 먼저 한국에서 원하는 지배범위에 대한 운을 띄면, 미국이 먼저 협정 및 조약으로 그것을 인정해 주고, 그 다음 일본은 한편에서는 열강에게서 협정으로 보장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에게 강요하여 조약 및 협정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① 보호국화할 때에 일본은 러일전쟁 발발과 더불어 제1차 한일의정서를 강요하여 외교권을 박탈했

다(1904. 2. 23). → 그러자 미국은 일본 특사를 불러 한국의 보호국화를 구두로 인정했다(1904. 3월과 6월). → 그리고 이를 전쟁 중에 프랑스와 독일에게 통보했다(1904~1905). → 종전 무렵 태프트 특사를 파견하고 태프트-가쓰라 협정으로 조약체결권 박탈을 문서화했다. → 이에 일본은 영국과 동맹을 통해, 러시아와는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통해 보호국화를 문서화한 후 → 끝으로 일본은 한국과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일단락 지었다.

② 한국병합시에도 마찬가지였다. 먼저 일본은 한국을 병합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미국의 귀에 들어가게 한다. → 제2차 태프트의 방일시 일본은 한국병합의사를 전한다. → 1908년 미국은 일본에게 문서를 통해 한국문제를 국제재판소로 회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일중재조약으로, 한국 거주 미국인에 대한 사법권의 일부 포기의를 미일상표협약으로, 한국=일본의 영토적 속국이라는 점을 루트-다카히라협정을 통해 각각 전달했다. → 이에 일본은 한편에서는 한국 정부로부터 사법권을 포기한다는 기유각서를 받아 내고, 다른 한편에서는 청·러와 국경협상을 추진하고 문서화할 수 있었다. → 그리고 최종적으로 병합조약으로 마무리 지었다. 요컨대 일본은 자신이 원하는 한국 지배범위를 먼저 언론 및 외교관을 통해 흘리고 이를 미국과 협상하여 문서로 보장받은 후, 끝으로 미국에게서 문서로 양도받은 권리를 반드시 곧바로 한국에게 문서로 강요하고 받아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병합의 최대 장벽은 한국-열강 간의 통상조약이다”는 일본 위정자의 고민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

넷째, 일본은 왜 통상조약을 최대 장애로 간주했을까. 그것은 통상조약의 가치가 높아져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재재판제도로 통상조약은 국가재판권을 의미하게 되었다. 즉 통상조약을 근거로 법적 공동간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① 미국은 이를 주도하는 국가였고, ② 유럽 열강은 통상조약상의 권리를 동맹과 구별했다. 따라서 스스로 철회할 리가 없다. ③ 실제로 중재재판은 많지는 않지만 약소국의 식민지화 기도를 저지한 적이 있으며, 일본은 동맹국 영국으로부터 제소당한 후 패배한 전력이 있다. 일본이 통상조약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끝으로, 그렇다면 미국은 도대체 왜 열강과 달리 한미통상조약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앞장서서 일본의 한국 지배를 주선하는 한편, 스스로 한미통상조약을 폐기하는 일대 양보조치를 취하였을까. 이 시기의 미국의 행동은 통설과 같은 세력균형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한미통상조약을 포기한 미국이 반대급부로 취하려고 했던 것이 명확히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루스벨트가 한반도를 일본이 차지하게 하고 러시아와 맞서게 함으로써 만주 진출을 노렸다는 식의 해석은 전형적인 유럽식 세력균형의 패러다임에 따른 해석이다. 루스벨트가 의화단사건을 보면서 ‘일본으로 하여금 한반도를 완충지대로 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한다’고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이용해 ‘만주로 진출’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는 학자들의 상상력이 존 헤이 국무장관의 문호개방과 결합하여 만들어낸 허구이다. ‘러일 세력균형론’을 말한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되었고, ‘문호개방’을 선언한 헤이가 그 밑에서 국무장관을 했으니까, 당연히 양자가 결합했으리라고 보고, ‘문호개방을 위한 러일 세력균형과 한국의 완충지대화’=‘미국의 대한정책’이라는 각본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후 연구자들이 아무런 비판이나 사료 검증 없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 기업인들이 외교를 결정했다”는 수정주의 학풍이 가세하면서, 마침내 “만주 개방을 위해 한국을 희생시켰다”는 그럴듯한 학설이 제국주의 시기의 미국의 대한정책을 상징하는 논리로 정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미통상조약의 포기 이유를 알려면, 먼저 한반도에 3개의 국제체제가 작동 중이었다는 점과 아울러 그러한 3개의 국제체제가 한국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해야만 한다. 통상조약체제는 ① ‘국가승인’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 점은 중요하다. 국제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일본은 통상조약의 이러한 점을 이용해 한국병합을 추진받았다. ‘선 한일병합조약체결 → 후 미일통상조약체결’은 ‘한일병합추진’의 의미를 지닌다는 공식이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한일병합을 통해 ‘한국을 병합한 일본’과 다른 열강이 통상조약을 체결할 경우 그것은 국가승인, 즉 병합승인이 되기 때문이다. ② 중재조약체제는 어떤가. 이는 국가자격을 재심사하게 했다. 법률적 능력이

부족해도 치외법권으로 통상조약은 가능했지만, 중재재판제도는 달랐다. 재판 받을 자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할 능력도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재재판제도와 통상조약체제는 일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중재재판체제에 들어올 능력이 없다.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단골이 되어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분쟁원인제공국으로 보았다. 따라서 중재조약체제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 따라서 기존의 통상조약체제에서도 빼버려야 했다. 바꾸어 말하자면 미국과의 통상조약체제에 의해서 가장 먼저 국가자격을 인정받았던 한국은 미국에 의해 가장 먼저 국가자격을 공식적으로 박탈당한 최초의 국가였으며, 이 점에서 일본보다 빠르다. 그러나 유럽은 그렇지 않았다. 양립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중재재판제도는 열강 간에만 행사하고, 약소국은 배제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미통상조약을 폐기해야 하느냐를 고민해야만 했지만, 유럽 열강은 그대로 두자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③ 군사동맹체제가 한일병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별도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 기존 연구의 많은 성과물이 있기 때문이다. ④ 그러나 군사동맹체제와 국제법체제가 격돌했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 별개 노선을 걷던 3개 국제체제가 충돌한 곳이 바로 러일전쟁기와 이후의 한반도였다. 미국이 한미통상조약의 일부 포기를 근거로 먼저 일본과 제1차 중재조약체제 구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러자 바로 유럽이 반격에 나서서 한반도에서 조약체결권을 포기하면서 일본을 포섭하였다. 이에 미국은 재반격에 나서 1908년에 미영불일 간에 4개국 중재조약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하여 한반도에는 통상조약체제, 중재재판조약체제, 군사동맹체제가 격돌하는 세계 유일의 현장이 되었다. 미국은 보호국 카드를 이용했으니, 남은 것은 병합 카드뿐이었다. 1908년의 미일조약체제는 그 결과였다.

요컨대 한일병합은 국제법체제 대 군사동맹체제, 다시 말해서 ‘미국 대 유럽’의 격돌의 산물이었다. 러일대결이나 영러대결로는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차지할 수 있었는지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러일전쟁 전부터 전쟁기 내내 미국이 일본을 군사적·재정적·외교적으로 지원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호개방을 거부했음에도 미국의 지원이 계속되

었다는 점은 기존의 설명 방식, 즉 러일·영러 대결의 구도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 러일전쟁을 ‘유럽 대 미국’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다. 하물며 일본에게 한국을 차지하고 난 후 법률적인 소유로 전환하는 작업이 왜 중요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 보는 것조차 어렵다. 전쟁을 국제법에 맞추어 개전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이 전후의 전리품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전리품에 걸린 옵션을 제거해야만 하며,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제법의 논리 대 힘의 논리’ 대결의 구도 속에서 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아울러 조약과 협약 등의 국제법적 성격을 가진 국가 간의 계약 행위와 외교관 및 정치인 간의 계약에 불과한 협정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통상조약체제를 협정으로 무효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게 될 것이고, 그 경우 일본의 한일병합 조치가 국제법이 허용한 외교협정으로는 불가능한 통상조약체제를 소멸시키기 위한 최후의 합법적 수단이었음을 알 수 없게 된다. 한국문제는 1905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사료〉

Roosevelt, Theodore, Elting E. Morison ed., 1951-1954, *The Letters of Theodore Roosevelt*, vols. 8, Massachusettes, Harvard University Press.

Roosevelt, Theodore, 1997, *The Works of Theodore Roosevelt*, vol XV, A H-Bar Enterprises Copyright.

Taft, William Howard, 1914, *The United States and Peac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국회입법조사국 편, 1989, 『舊韓末條約彙纂』 上中.

〈단행본〉

나가타 아키히미 지음, 이남규 옮김, 2007, 『미국, 한국을 버리다』, 기파랑.

야마베 겐타로 저, 안병무 역, 1991, 『한일합병사』, 범우사.

유기식, 2002, 『미국의 대일이민정책연구』, 태일사.

이태진 · 사사가와 노리가츠 편, 2009, 『한국병합과 현대: 역사적 국제법적 재검토』, 태학사.

칼 슈미트 지음, 최재훈 옮김, 1995, 『대지의 노모스』, 민음사.

최문형, 2004, 『국제관계로 본 러일전쟁과 일본의 한국병합』, 지식산업사.

Bernhardt, Rudolf ed, 1999,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2, Amsterdam: Elsevier.

Brierly, J. L., 1963, *The Law of Nations: 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Law of Peace*,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arr, Edward Hallett, 1964,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Harper & Row.

Department of State, U.S. ed., 1987,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1834-1950*, Institute of Asian Culture Studies Hallym University.

Leopold, Richard W., 1962, *The Growth of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Alfred A. Knopf.

- Minger, Ralph Eldin, 1925, *William Howard Taft an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The Apprenticeship Years 1900-1908*,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Perkins, Dexter, 1968, *The American Approach to Foreign Policy*, New York: Atheneum.
- Pringle, Henry F., 1939, *The Life and Times of William Howard Taft*, New York: Farrar & Rinehart, Inc.
- Wellborn, Fred W., 1970, *Diplomatic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New Jersey: A Littlefield, Anams & Co.

日本外交史辭典編纂委員會, 1992, 『日本外交史辭典』, 外務省外交史料館.

〈논문〉

- Buss, Claude A., 1983, 「한미관계: 초기를 중심으로」, 『한미수교 1세기의 회고와 전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설동은, 1986, 「만주문제를 둘러싼 T. 루즈벨트의 대일외교: 루트-고평협정의 성립배경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수, 2000, 「T. 루즈벨트의 세계정책」,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BSTRACT]

A Presidential Envoy Taft's visiting Japa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Treaty System between U.S.A. and
Japan, 1907~1908: in Focus on the Annexation to Korea

Choi, Jeongso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role of the treaty and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in 1908 about the annexation to Korea in 1910. Taft, as U.S. presidential envoy, have visited at Tokyo for negotiation with Japan from September, 28th to October, 2th, 1907. The subjects for a meeting is as follows: First, Japanese immigration problems Secondly, the Philippines security question Thirdly, the problem of the annexation to Korea. In this conversation, Japanese Foreign Minister said that Japan want to annex to Korea. This meeting in 1907 result to the conclusion of four treaties and agreements between two nations, that is, Gentlemen Agreement(1908. 2), Arbitration Treaty(1908. 5. 5), Convention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protection in Korea of Inventions, Designs, Trade-marks and Copyrights(1908. 5. 19), and Root-Takahira Agreement(1908. 11).

A network of the treaty and agreements in 1908 effects on the annexation to Korea by Japan. Japan conceded to America's demand of the prohibition of the Japanese immigrant workers to United States. United States repay to admit Japan control to Korea in return for Japanese concession about immigration problems. Arbitration Treaty

between U.S-Japan change Korea-U.S. Commercial Treaty, 1882, that has become a dead letter.

Through Convention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protection in Korea of Inventions, Designs, Trade-marks and Copyrights, U.S.A concede their extraterritoriality in relation to this Convention in Korea to Japan. The U.S.A permit that Japan come into a territorial posses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Root-Takahira Agreement. I arrive at two conclusion; The one is that United States of America open the door to Japan for the annexation to Korea in the treaty and agreements between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in 1908. The other is that each of four treaty and agreements which U.S.A conclude with Japan in 1908 play a decisive roll for annexation to Korea in 1910, because every treaty is the complementary and follow-up measures one another in the relation between cause and effect.

keywords

Arbitration Treaty, Convention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protection in Korea of Inventions, Designs, Trade-marks and Copyrights, Gentlemen Agreement, Root-Takahira Agreement, Taft

4국협조체제와 한일병합의 국제관계, 1907~1912

- 영국의 동맹협상외교와 연계하여 -

김원수 |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I. 머리말

일본의 한국병합은 한반도와 만주에서 청일전쟁·러일전쟁을 겪으며 단계적으로 진척되었다. 진출에서 점령으로, 보호국화에서 병합단계로 급속히 전개되었는데, 그 과정을 국제관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영국의 동맹협상외교(entente diplomacy)정책과 연동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제1차 영일동맹은 일본의 만한정책과 러일 개전외교를 실체화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한국조항을 수정한 제2차 영일동맹은 한국의 보호국화와 연계되고 있다. 한편 1907년 중반, 불일협상, 러일협약, 영러협상의 체결로 구축된 4국협조체제(quadruple entente system)는 일본의 제3차 한일협약 체결 및 간도 진출과 연동되고 있다. 이후 4국협조체제의 상호 작동성은 간도협약, 제2차 러일협약, 일본의 한국 강점기도뿐만 아니라 병합 이후 한국조항을 삭제한 제3차 영일동맹, 미영 중재조약 및 제3차 러일협약과 긴밀히 연계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

※ 투고일: 2010년 7월 5일, 심사일: 2010년 8월 11일,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27일.

가 있다.¹⁾

지금까지 한일병합을 둘러싼 국제관계사 연구들을 살펴보면, 러일관계, 미일관계를 중심으로, 그리고 영국과 관련해서는 제1·2차 영일동맹을 둘러싼 한영관계 및 한국 보호국화 과정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졌다. 특히 모리야마 시게노리[森山茂徳], 나가타 아키후미[長田彰文], 화이트(J. A. White), 두우스(Peter Duus), 최문형, 이태진, 운노 후쿠주[海野福壽] 및 최근 러일협약과 한일병합을 다룬 최덕규, 이토 히로부미와 한일병합을 다룬 이성환·이토 유키오[伊藤之雄] 및 일본의 만한정책을 舊외교의 형성과 관련하여 재구성한 지바 이사오[千葉功], 일본의 한국보호국화 과정과 헤이그 밀사사건, 제3차 한일협약을 위요한 영국의 대한·대일정책과 영·일관계를 조명한 가타야마 요시타카[片山慶隆]의 연구가 주목된다.²⁾ 한편 영국과 관련해서는 한국 보호국화 시기를 다룬 기존 연구로 신상용, 구대열, 정진석, 이안 니시(Ian Nish), 원철, 한승훈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신상용은 영국의 외교체제 변화에 따른 영일

1) 외교혁명, 4국협조체제와 간도문제, 간도협약과의 연동성에 대해서는 김원수, 2009, 「4국협조체제와 간도협약의 국제관계」, 『동북아역사논총』 26, 동북아역사재단; 김원수, 2010a, 「외교혁명과 간도협약의 국제관계」, 『백산학보』 86, 백산학회 참조. entente는 양파트/동맹/협상/협약 등 어의로 사용되는데, 이 글에서는 이 시기 영국의 'entente diplomacy'는 '동맹협상외교'로, 'quadruple entente system'은 군사적 성격이 강한 '4국협조체제'로 명기한다.

2) 森山茂徳, 1987, 『近代日韓關係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森山茂徳, 1992, 『日韓併合』, 吉川弘文館; 長田彰文, 1992, 『セオテアルズバルトと韓國』, 未來社; J. A. White, 1995, *Transition to Global Rivalry—Alliance Diplomacy and the Quadruple Entente, 1895~1907*, Cambridge; Peter Duus, 1995, *The Abacus and The Sword*, California; 최문형, 2004, 『국제관계로 본 러일전쟁과 일본의 한국병합』, 지식산업사; 이태진, 1995, 『일본의 대한제국강점-보호조약에서 병합까지』, 까치; 海野福壽, 2000, 『韓國併合史の研究』, 岩波書店; 최덕규, 2009, 「간도문제와 일본의 한국병합」, 『한국사연구』 145, 한국사연구회; 이성환·이토 유키오 편저, 2009, 『한국과 이토히로부미』, 선인; 千葉功, 2008, 『舊外交の形成』, 勁草書房; 片山慶隆, 2005, 『韓國保護國化をめぐる國際關係史1902-05: イギリスの對韓・對日政策を中心として』, *Discussion Paper Series 008*, Center for European Research, 21th Century COE Programme, Hitotsubashi University; 片山慶隆, 2009, 「ハーグ密使事件・第三次日韓協約をめぐる日英關係」, 『一橋法學』 第8巻 第1號.

동맹의 체결 과정과 일본의 한국 지배 과정의 연계에 주목하였다. 구대열 및 정진석은 『大韓毎日申報』를 중심에 두면서, 日·韓·英의 외교관계도 분석하고 있다.³⁾ 이안 니시는 영국의 대일정책, 영일동맹에 관한 연구에서, 영일동맹 교섭과 러일개전 전의 교섭을 상세하게 분석하였고,⁴⁾ 원철은 을사늑약의 배경이 된 열강들의 합의사항이 제2차 영일동맹과 태프트-가쓰라(Taft-桂) 각서였다고 파악했다. 한승훈은 앞서 가타야마 요시타카와는 다른 시각에서 제2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한국을 초청함으로써, 한국 보호국화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려고 했던 러시아의 대한정책이 좌절되는 과정에서 영국의 대한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⁵⁾

그렇지만 개별 연구의 특성상, 이 시기 영국의 대한·대일정책이 전반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으며,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 과정에서 영국이 어떠한 역할을 결과하였는지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 더구나 보호국화 이후 병합에 이르는 시기의 영국의 대한·대일정책이나 영러대립의 영향 및 외교혁명의 여파나 4국협조체제와 연계하여 한일병합문제를 접근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여기에는 기실 한일병합은 1905년 이후의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는 의미가 약화되어 4대국과 미국, 중국 등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설정하기는 어렵다는 기존의 국제정치적 시각의 영향도 간과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다각적인 측면에서 학제적인 연구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가 “일본의 한국병합에 의해 ‘외교문제로서 한국

3) 신상용, 1986, 「영일동맹과 일본의 한국침략」, 역사학회 편, 『러일전쟁전후 일본의 한국침략』, 일조각; 구대열, 1986, 『제국주의와 언론-배설·대한매일신보와 한영일관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정진석, 1987, 『대한매일신보와 배설-한국문제에 대한 영일외교』, 나남; 구대열, 1995, 『한국국제관계사연구』 전2권, 역사비평사. 이 책은 통사로서 이 시기의 기술을 간단, 명료하게 취급하고 있다.

4) Ian, H. Nish, 1986, *The Anglo-Japanese alliance: The Diplomacy of Two Island Empires, 1894~1907*, The Athlone Press; Ian, H. Nish, 1985, *The Origin of the Russo-Japanese War*, Longman.

5) 원철, 2006, 「주변열강의 한반도 문제 협의와 을사조약」, 『역사학보』 192; 한승훈, 2007,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와 영국의 대한정책」,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와 대한제국, 그리고 열강』,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문제는 소멸되었다”고 논하고 있지만,⁶⁾ 실제로는 1911년, 영일 간의 제3차 영일동맹교섭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조항이 삭제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 동맹이 미영중재조약 및 제3차 러일협약과도 긴밀히 연동됨에 착목하여, 기존의 1910년까지로 한정된 한일병합연구의 시간적 범주를 1912년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일본의 한국병합을 러일전쟁의 사후처리라는 관점에서 보았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러일전쟁 이후 국제관계의 분기·전환점(turning point)이 1907년의 외교혁명(diplomatic revolution)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주목하고,⁷⁾ 이후 전개된 4국협조체제의 상호 작동성을 영국의 동맹협상외교와 연계하여 동 시기의 만한문제를 재조명함으로써 한일병합을 둘러싼 국제관계사의 전후 맥락을 새로이 재구성하려 하였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까지 한일병합문제를 러일전쟁과 포츠머스 강화체제의 역사적 산물로 시대구분하고 획일화한 기존의 단선적인 역사담론의 틀을 넘어서려는 데 있다. 즉 외교혁명과의 연계성을 다각적으로 추적함으로써, 한국 보호국화의 강화, 간도와 만주 현안문제 해결 및 한일병합 과정에 있어서 러일전쟁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1907년의 외교혁명에 의한 국제관계 시스템의 유동성 또한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러일전쟁 및 한일병합과 관련한 국제관계사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려는 것인 동시에, 서구 중심 또는 타자 중심에서 접근한 간도 및 한일병합 담론을 넘어서려는 것이다.⁸⁾ 곧 1910년의 한일병합이 한반도의 식민지화뿐만 아니라 동아

6) 千葉功, 2007, 「列強への道をたどる 日本と東アジア情勢-日清, 日露戦争」, 川島眞・服部龍二, 『東アジア國際政治史』, 名古屋大學出版會, 80쪽. 한편 모리야마 교수는 “조선을 병합하는 것은 조선문제로 인해 외교문제가 생길 우려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조선문제에 있어서 외무성의 발언권의 상실을 의미하였다”고 논하고 있다(森山茂徳, 1987, 앞의 책, 251쪽).

7) ‘외교혁명’은 유럽 국제정치사에서 18세기 후반 7년전쟁과 오스트리아 계승전쟁 당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간의 화해를 상징하는 용어이지만, 다른 한편, 제1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된 3국협상과 3국동맹의 양대 진영을 구축한 국제관계의 대변화를 의미하는 용어로도 활용된다.

8) 러일전쟁, 간도문제와 글로벌히스토리와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김원수, 2010b, 「간도문제와 간도협약의 글로벌히스토리」, 『사회과교육』 49-1,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

시아 세력판도의 변화 및 열강의 세계정책의 중요 기점으로 작용한 글로벌한 사건이었음을 밝힘으로써 한국 중심의 글로벌·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를 구상하려는 것이다.

II. 4국협조체제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화

러일전쟁 이후 전 지구적 국제관계의 전환점은 1907년의 외교혁명이었다. 동년 6월 10일에 불일협상, 7월 30일에 러일협약이 체결되고, 뒤이어 영러협상이 체결됨에 따라 영러 대립을 근간으로 한 그레이트 게임(The great game)이 종식되고 4국협조체제가 구현되었다. 이 체제는 러불동맹과 영일동맹 두 체제 간의 강력한 결집체였다. 전자는 러불동맹을 기점으로 하여 영불협상과 영러협상으로 연결되고, 다시 스페인이 모로코에 관한 협상에서 이 계열에 속하게 되며, 삼국동맹에 속한 이탈리아도 식민지협정에 의해서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후자는 제1차 영일동맹을 기발점으로 하여 불일협상, 다시 제1차 러일협약으로 이어져, 이것을 연쇄한 계열로서, 유럽과 극동에서의 두 개의 협상계열이 하나로 결집체를 이룬 것이 영러협상이었다.⁹⁾

이 결합체는 유기적인 체계를 갖춘 布陣이라는 점에서는, 비스마르크 체제보다 우월할지언정 결코 뒤지는 것은 아니었다. 영러협상의 성립을 계기로, 지금까지 수세기에 걸쳐 세계정책상의 호적수였던 영·불·러의 3대 강국이 동일진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는 것은 전대미문의 현상으로서, 이는

회; 김원수, 2007, 「글로벌히스토리와 역사들의 지평을 넘어서」, 『서양사론』 92, 한국서양사학회.

9) 김원수, 2009, 「4국협조체제와 간도협약의 국제관계」, 267쪽; 김원수, 2010b, 앞의 글, 78쪽.

새로운 20세기에 걸맞는 외교혁명의 실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¹⁰⁾ 이 협조체제는 유럽에서는 삼국협상국에게 대독 포위망을,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일본에게 대미견제를 가능케 해 주었다. 특히 일본의 4국협조체제 참가는 반독진영에의 가입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독일을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같은 4국협조체제 구축에 소외감을 느낀 것은 독일뿐만이 아니었다. 미국과 청국도 마찬가지였다.

이 시기 독일은 모로코사건 이후 유럽에서는 영불의 대독 포위망에 빠져 있었고, 극동에서는 4국협조체제라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탈피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였다. 러일전쟁 후 일본 군부를 중심한 적극적인 대륙·만한 진출은 독·미·청 3국의 사이에 反日이라는 제휴조건을 찾아낼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1907~1908년에 카이저는 4국협조체제의 포위망에 대응해 독·미·청 간의 3국동맹제휴를 기도하였다.¹¹⁾ 한편 미국 역시 문호 개방정책과 중국의 영토보전원칙을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후 일본의 만주 독점화 정책을 우려하였고, 하리만의 만주철도 건설구상, 오렌지 계획 등으로 이를 견제하고 있었다.¹²⁾ 중국 역시 1907년에 구축된 동북아시아의 4국협조체제에 대하여 중국 분할을 위한 사전 조치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특히 러·일 간에 남만주와 북만주 및 몽골에서 상호 영향력을 인정한 제1차 러일협약은 이러한 의구심을 확실하게 만들었다.¹³⁾ 이에 중국은 미·독과 새로운 동

10) 黒羽茂, 1982, 『日露戦争史論－戦争外交の研究』, 杉山書店, 222쪽.

11) Mehnert Ute, 1996, "German Weltpolitik and the American Two-Front Dilemma: The 'Japanese Peril' in German-American Relations, 1904~1914,"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 82, No. 4; Richard F. Szimpl, 1998, "Keiser Wilhelm II and the Attempt to Form a German-American-Chinese Alliance against Japan," *Nanzan Review of American Studies*, Vol. 20.

12) 入江昭, 1995, 「轉換期の日美關係1896~1914」, 細谷千博 編, 『日美關係通史』, 東京大學出版會, 58~61쪽; William Braisted, 1954, *The United States Navy in the pacific, 1897~1909*, Austin, pp. 204~207.

13) Charles Vevier, 1968, *The United States and China, 1906~1913*, New York, p. 43; Rene Albrecht-Carrie, 1973, *A Diplomatic History of Europe since the Congress of Vienna*, New York, pp. 256~258.

맹구상에 접근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 영일동맹국인 영국은 영러협상을 통해 러시아와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 세력범위를 정한 이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는 동맹국 일본을 대독 포위망의 일환으로서 이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영미 공조가 필요할 때에도 미국의 반일정책을 지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일본의 중국 진출은 유리한 데 반하여, 미국은 극동에서 국제적 고립을 맞볼 수밖에 없었다. 비록 일본이 러일협약을 통해 관계개선을 모색하였지만 러시아의 팽창주의적인 정책은 여전히 영국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였다. 영국은 교역열강(trading powers)으로서 이미 중국에서 특권과 불평등조약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미국의 입장과는 달랐다. 따라서 영국은 러시아의 적극적인 공세와 미국과 독일이 표방하고 있는 반일 행동 사이에서 중재자적인 위치를 유지하려 하였다.¹⁴⁾

그렇다면 영국의 동맹협상 외교체제는 어떻게 만한문제와 연동되었는가. 먼저 전후 일본의 한반도 보호국화 강화 과정에서 나타난 영일관계를 헤이그 밀사사건과 제3차 한일협약의 국제관계와 연계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Ⅲ. 제3차 한일협약 전후의 국제관계와 영국의 대일 지원

러일전쟁 前後, 일본의 대륙정책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만한 불가분 일체론에 입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미의 만주 정책과는 공조나 타협이 불가하였다. 때문에 일본은 그 대안으로 미국과는 태프트-가쓰라 각서(agreed memorandum), 영국과는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 대륙정책의 발판으로서 한

14) Christia L. Davis, 2009, "Linkage Diplomacy—Economic and Security Bargaining in the Anglo-Japanese Alliance, 1902~23," *International Security*, pp. 33~1; David Dallin, 1950, *The Rise of Russia in Asia*, Holis & Carter.

반도를 확보하고, 만몽에로의 진출의도를 갖게 되었다. 1905년 11월 7일, 불법적인 을사늑약을 통해 대한제국을 보호국화하고 동년 12월 22일의 청일조약 체결로 기존의 만한철도 이권을 확보한 조치에 연이어 관동도독부의 군정서를 통한 만주 점령기도,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설립, 제국 국방방침의 수립, 관동도독부 관제 공포 등의 만주 진출작업을 추진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 같은 일본의 독점적인 만주 선점조치에 대해 영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은 즉각적으로 대응하였다. 1906년 3월 19일, 주일 영국 공사 클로드 맥도널드(Claude MacDonald)와 26일의 주일 미국 대리공사 헌팅턴 윌슨(Huntington Willson)의 대일 항의 및 카이저(Keiser)의 주독 중국 대사 잉쇼우[蔭昌]를 통한 중국과의 양탕트 의사타진 시도도 바로 그것이었다.¹⁵⁾ 이에 일본으로부터는 대러 접근이라는 외교적 수단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러일협약의 계기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비록 포츠머스 강화로 남만주에서의 이권을 포기하였지만,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1906년 초반까지는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특히 을사늑약의 부당성과 불법성 및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끊임없이 제기함으로써, 한국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려고 했다. 그 일환으로 러시아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한국을 공식 초청 대상으로 선정했던 것이다.¹⁶⁾

하지만 영국은 제2차 영일동맹(1905)의 3조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도(guidence), 감독(control), 보호(protection) 조치를 취할 권리를 승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시도에 대해서 앞서 일본의 만주 정책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태도와는 달리 일관되게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 정책을 지지했다. 오히려 영국은 러시아의 한국에 관한 독립국으로서의 지위 주장을 반박함으로써,

15) 馬場明, 2003, 『日露戦争後の満洲問題』, 東京: 原書房, 1~20쪽; 日本外務省 編纂, 1956, 『日本外交文書』 第39卷, 1冊, 日本國際聯合協會, 195~199, 204~212, 212~213, 219~220項(以下『日本外交文書』로 略함).

16) 1906년 초반 러시아 외상은 초청장을 배포하였다. 한국은 명단에 올라가 있었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응답을 받지 않았다고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쿤 드 웨스터, 2008, 「1907년 헤이그 특사의 성공과 좌절」, 『한국사학보』 제30호, 317쪽).

간접적으로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를 지지해 주었고, 러시아가 제기한 한국문제가 국제사회에 공론화되는 것을 차단했다. 이를 통해서 영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에 의한 러시아 견제정책을 유지했다.¹⁷⁾

이 같은 영국의 대일 지원의 배후에는 인도 국경방위의 완충국인 아프가니스탄, 페르시아, 티베트의 고질적인 정치적 불안정이 러시아의 개입 위험성을 상존케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기존의 카스피해 철도와 오렌버그-타시켄트 철도(1906년 완공), 사마르칸트-테즈메니 철도(건설예정)를 근간으로 하는 러시아의 철도전략망은 영국의 머리 위에 달린 다모클레스의 검(sword of Damocles)이라고 부른 하딩지(Charles Hardinge)의 비유처럼 인도 방위의 일대 적신했었다.¹⁸⁾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인도 주둔 영국군의 역량 의심, 즉 육군 군사력의 부족과 고질적인 인도 국경의 불안정과 영러관계의 악화 및 전후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 우려는 영국 정부와 CDI가 안고 있던 최대의 문제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공수동맹으로서의 제2차 동맹국인 일본과의 관계유지는 필연적인 것이었다.¹⁹⁾

그러나 1906년 4~6월을 전후하여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이는 동년 4월의

17) 한승훈, 2008, 「을사늑약을 전후한 영국의 대한정책」, 『한국사학보』 30, 고려사학회.

18) Berly J. Williams, 1966, "The Strategic Background of the Anglo-Russian Entente of 31. August 1907," *The Historical Journal*, Vol. ix, No. 3, pp. 363~365.

19) 신상용, 1986, 「영일동맹과 일본의 한국침략」, 역사학회 편, 60~61쪽. 이 시기의 영국은 유럽문제와 아시아문제, 그리고 외교문제와 군사문제가 야기하는 연쇄반응을 겪고 있었다. 영국이 외교적·군사적으로 중대한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보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따라서 이 같은 새로운 양상들은 영국의 대외정책, 특히 인도 방위문제와 더불어 전후 일러 화해로 인한 극동에서의 고립의 가능성으로 인해 딜레마에 빠졌다. 그 대안은 바로 영일동맹의 확대뿐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동맹의 성격의 전환과 동맹의 범위 확대가 필수적이었다. 즉 방어적인 성격에서 공수동맹으로의 전환과 두 나라가 동시공격을 받을 때만 작동되던 기존의 동맹을 한 나라와 단독 전투시에도 적용되도록 수정하는 것이었다. 랜스다운이 동맹갱신 발의 때부터 이 두 문제에 역점을 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알헤시라스 국제회의에서 영국이 모로코에서 프랑스의 우월권을 인정하고, 3B정책과 페르시아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었던 독일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영국, 러시아, 프랑스 간의 협조가 모색되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동년에 에드워드 그레이(Edward Grey)와 알렉산드르 이즈볼스키(Alexander Izvolsky)가 양국의 외상에 취임하게 됨에 따라, 영러관계 및 일러관계의 개선이 순조로이 진행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동년 6월, 주일대사 맥도널드는 “러시아 정부가 최근에 일본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러시아 정부는 처음 단계에서 한국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초대했으나, 일본의 반대로 인해서 즉각 초대를 철회시켰다”고 그 분위기를 언급하고 있었다.²⁰⁾ 기실 러시아 정부는 1906년 6월 7일 도쿄 대사관을 통하여 한국의 제2차 평화회의의 참가여부를 일본 정부에게 물었다. 일본 정부는 을사늑약에 따라 한국은 참가할 수 없다고 회답하였다. 이에 1906년 10월 9일 러시아 대사가 일본 정부에게 한국의 참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서 이 문제는 종료되었다.²¹⁾

이처럼 영러 및 일러 관계개선의 여파는 거의 즉각적으로 한국문제에 반영되었다. 이제 러시아는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려고 했던 을사늑약의 부당성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문제를 스스로 철회하고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이었다. 이어서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한국의 초대를 철회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영국은 일본의 동맹국으로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실제로 1907년 6월 15일에 헤이그 평화회의가 개최되었을 당시, 영러, 러일, 불일 간의 외교교섭은 타결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더 이상 한국문제를 거론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6월 29일 헤이그밀사의 참가 거

20) Memorandum communicated by Japanese Charge' d' Affaires, August 10, 1906, FO, 371/179, (22), p. 108.

21) 쿤 드 퀘스터, 2008, 앞의 글, 317~318쪽.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러일 간의 교섭 내용은 최덕규, 2008,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와 러시아의 대한 정책」, 『한국사학보』 제30호, 374~380쪽.

부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헤이그 특사 파견 문제로 고종이 퇴위했을 때, 주한 영국 총영사 코번(Henry Cockburn)은 순종의 즉위식에 참석함으로써, 다시금 영국은 일본의 동맹국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했던 것이다.²²⁾

그러나 7월 23일, 일본의 원로 내각회의에서 러일협약안이 결정되고, 하루만인 24일, 제3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한국병합은 성립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병합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동년 3월부터 7월에 걸친 러일협약을 위한 교섭에서 러시아는 일본의 한반도 병합을 무보수로서는 승인하지 않는다²³⁾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제3차 한일협약은 러일협약안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7월 19일 고종의 양위에서 24일 협약 체결까지의 유예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후 영일동맹을 주축으로 한 4국협조체제는 일본의 만한정책과 어떻게 연동되는가. 4국협조체제하의 영일관계는 공동보조를 취하는 한편, 일본은 간도협약으로 간도를 포기한 대가로 만주철도 이권을 확보하고 한반도 강점을 위한 사전계획을 구체화하였다. 그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22) 片山慶隆, 2009, 앞의 글; 한승훈, 2008, 앞의 글.

23) 『日本外交文書』 40-1, 131, 169項(1907. 7. 23); 러일협약과 러시아의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최덕규, 2008, 「러일협약과 간도협약(1905~1910)-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을 중심으로」, 『국제학술회의 〈동북아 평화와 21세기 한·몽관계: 러일협약을 회고하며〉』, 몽골 울란바토르: 몽골국립대학교 참조.

IV. 간도협약 전후의 국제관계와 영국의 대일 지원

상문했듯이 전후 일본은 군부를 주축으로 간도를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한 만주 독점화를 기도하고 있었고, 동시에 한국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또한 1906년과 1907년 초에 걸쳐 간도문제에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개입하고 있었다.²⁴⁾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 통치의 안정과 러시아의 복수전을 우려하여, 사전에 대러 방어망을 형성하거나, 러일 양국의 완충지대를 설치한다는 정치·군사상의 고려에서 나온 것이었다.²⁵⁾ 따라서 간도문제는 애초부터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 강화와 만주 독점화 기도와 연동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와 만주에서의 세력 범위를 획정할 필요가 있었고, 러일협약의 발단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일본이 러일협약에 시종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고, 이로써 일본의 간도 진출 기도와 만한문제는 연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²⁶⁾

따라서 1907년 4월 13일로 계획된 이토의 간도 파견대 진출계획도 7월 30일 러일협약이 조인되고 난 후인 8월 18일에서야 결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 배경에는 일본 제국정부 특파재무위원(Special Financial Commission of the Imperial Government)인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清]가 파리에서 불·일

24) 1906년 6월, 林權助 주한 공사는 청국 공사로 부임 전 이토 통감을 만나 간도 조선인 보호문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후 조선 정부가 간도주재 조선인 보호를 요청하였다. 이를 구실로 이토는 1906년 12월 외무대신 하야시 다다스에게 일본 정부가 관리를 간도에 파견해 조선인을 보호하고 또 청국 정부에 그 취지를 통고할 필요가 있음을 신청하였다. 당시 이토는 주선 주차군을 지휘할 권한을 가진 통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인 주도권을 쥐고 이 계획의 실현을 도모하였다. 이는 이토가 기안한 간도 독무청 편제와 간도 헌병대 편제에서 명료히 보이고 있다.

25) 寺本康俊, 1999, 『日露戰爭以後の日本外交』, 信山社, 222~255쪽; 角田順, 1967, 『滿洲問題と國防方針』, 原書房, 680쪽; 森山茂徳, 1987, 앞의 책, 243~245쪽.

26) 김원수, 2010b, 앞의 글, 72~74쪽.

간에 교섭 중이었고, 프랑스가 러·일 간의 교섭을 중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고로 간도 파견대 진출계획은 8월 18일, 한국 군대의 해산을 단행함과 동시에 통감부 간도 임시파출소 개설을 청국에 통보하고, 19일 사이토 스에지로[齊藤季治郎] 소장이 회령에서 용정으로 들어갔다. 이에 대해 청국은 공식 항의했고 이로써 간도문제를 둘러싼 청·일 간의 교섭은 본격화되었던 것이다.²⁷⁾

하지만 그 와중에 불일협상과 러일협약, 영러협상으로까지 진전된 1907년 외교혁명의 4국협조체제는 독일을 강하게 자극하였다. 특히 불일협상은 카이저의 독미청 양탕트 구상의 ‘직접적인 자극(the direct stimulate)’이 되었는데, 그것은 오직 두 조인 당사국의 각자 세력범위에서 중국의 영토보존에 관한 상호 약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 지역 언론들은 서명국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이 같은 협상의 적극적·공격적인 성격(aggressive nature)을 비난하였다.²⁸⁾ 당시 중국은 4국협조체제의 성립이 중국 분할의 사전 조치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특히 남만주와 북만주 및 몽골에서 상호 영향력을 인정한 제1차 러일협약은 이러한 의구심을 배가하였다.²⁹⁾

이에 독일의 빌헬름 2세(Wilhelm II)는 4국협조체제의 결함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1907~1908년에 중국에서 반일정책에 동조하는 미국에게 독미청 3국 동맹 구상을 호소하였고, 미국을 끌어들이려 적극적이었다. 미독 간의 협조분위기는 이민문제를 둘러싸고 미일관계가 소원해지는 동안 계속 유지되었고, 1908년 2월의 신사협정 체결 이후 중재조약(5. 5), 상표조약(5. 19) 체결에 이어 루트-다카히라[Root-高平]협정(11. 30) 체결로 잠정적인 미일 화해무드가 조성되는 과정에서는 한층 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호소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미독 유화 제스처는 1907년 10월에 위안스카이[袁世凱]의 지시에 따라 미국과 청국 간의 동맹가능성을 타진할 것을 지시한 이후부터, 1908년 가을에 청국이 독미청동맹 교섭을 위한 밀사로서 봉천 순무 당소의(唐紹儀)

27) 김원수, 2009, 앞의 글, 271쪽.

28) Richard F. Szimpl, 1998, p. 3.

29) 김원수, 2010a, 앞의 글, 256쪽.

를 미국에 파견하고 있는 시점까지 순풍의 뜻을 달고 있었다. 당시 청국 정부는 미국의 의화단 배상금 감액조치에 대한 사례사로서 당소의를 미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의 방미에는 미국 봉천 영사 스트레이트(Willard Straight)와 친척시킨 만주 차관계획에 관한 미국 정부 및 자본가와의 직접교섭 목적과 빌헬름 2세가 제창한 독미청동맹에 대한 청국 측의 협상조건을 미국 측에 제시하려는 계획이 함께하고 있었다.³⁰⁾

이처럼 1907년의 외교혁명으로 조성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새로운 변화는 독일의 독미청 3국동맹 구상이라는 대일 견제를 가동시켰고, '만주관 삼국간섭'³¹⁾의 가능성에 직면한 일본은 대안조치로서 영일동맹을 골수로 한 동맹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악화된 일미관계를 개선, 태프트-가쓰라각서의 후속조치를 서둘러 미일 협조체제를 복원하는 것뿐이었다. 1908년 11월 30일, 워싱턴에서 미국무장관 루트와 다카히라 간에 「태평양방면에 관한 일미교환공문」(루트-다카히라협정)이 체결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독미청 동맹교섭을 위해 당소이가 워싱턴에 도착하기 전에 미일협정체결을 서두르고자 했던 제2차 가쓰라 내각의 외상 고무라가 취한 외교적 선행조치였고, 이로써 포츠머스 강화 이후 악화일로에 있던 미일관계는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³²⁾ 당시 이 같은 국제관계의 연동성에 대해 南山大學(Nanzan University)의 스키피(Richard F. Szimpl) 교수는 루트-다카히라협정이 독미청 3국동맹 구상을 잠정적으로 저지하는 데 '결정적인 타격(a fatal blow)'³³⁾을 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30) 義井博, 1977, 『カイザードイツの世界政策と第1次世界大戦』, 清水書院; 寺本康俊, 1999, 앞의 책; 馬場明, 2003, 앞의 책, 48쪽; Richard F. Szimpl, 1998, pp. 8~12.

31) 이에 대해 최덕규 박사는 "청국이 북만주를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를 제외한 청·미·독 3국동맹기도에 착수한 것은 '만주관 3국간섭'의 재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고 논하고 있다. 최덕규, 2009, 「간도문제와 일본의 한국병합」, 『한국사연구』 145.

32) 김원수, 2009, 「4국협조체제와 간도협약의 국제관계」, 278쪽.

33) Richard F. Szimpl, 1998, p. 12.

이제 일본은 루트-다카히라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일미관계를 개선한 이상, 대외정책 결정에서 미국의 만주 문호개방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같은 현실은 일본의 만주 독점화 기도와 병행하여 추진된 간도 영유권 주장과는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일본의 만한문제와 간도문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은 수정될 여지가 있었다. 아울러 그 같은 결과는 다른 한편, 향후 만주에서의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미일 간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실제로 일본은 루트-다카히라협정 체결 직후에 곧바로 간도문제를 포함한 만주 현안문제 타결에 착수하여 1909년 1월 초부터 2월 17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청일회담을 개최하였고, 이 교섭에서 2월 6일, 간도문제에 대해 영유권 포기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청일 간의 교섭은 조선인의 법적 지배문제를 둘러싸고 교착상태에 빠졌다.³⁴⁾ 이 같은 일본의 수정된 조치가 당시 미일 간의 현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심층적이고 미시적인 실증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이 같은 일본의 조치는 용정춘에 통감부 임시파출소를 설치하여 간도 영유권을 확보하려 한 기존의 정책에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본의 정책전환의 보다 직접적인 배경으로 1908년 말부터 1909년 초에 걸친 청국 내부의 정치적 변화도 간과할 수 없다. 1908년 11월 14일과 15일에 연이어 서태후와 광서제가 붕어하고, 醇親王에 의해 원세개 일파가 축출되고 동삼성의 서세창, 당소의 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구미열강의 만주에 대한 간섭이 현실화할 개연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만주뿐만 아니라 보호국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문제였기 때문에 일본의 당로자들은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었다.³⁵⁾

하지만 3월 22일, 간도문제를 비롯한 만주현안에 대한 청국의 헤이그 중재

34) 노영돈, 2005, 「러일전쟁이후 간도영유권문제의 처리」, 정성희 외, 『러일전쟁과 동북아의 변화』, 선인, 201~203쪽.

35) 森山茂德, 1987, 앞의 책, 243쪽.

재판회부 통보 조치는 이보다 더한 충격이었다. 이 소식은 곧바로 『런던타임스(The Times)』에 보도되었고, 1909년 3월 31일 자 『뉴욕타임스』에 기사화되었다.³⁶⁾ 일본 정부는 25일, 즉각적으로 이 조치에 공식 항의하는 한편, 고무라 외상은 영국 대사에게 만주현안을 중재재판에 付託한 부당성을 설명하고, 다카히라 주미대사는 만주 諸案件을 중재재판에 의탁한 청국의 제안에 대해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양 정부를 설득하는 외교조치를 병행하였다. 당시 그레이 외상은 일본 정부가 중재제의를 거절했음을 알고 있으며, 중국의 제의를 지지할 조처를 취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밝히는 한편, 일본 외무성은 청의 조치가 실행 불가능한 것이고, 외교 예우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재차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였다.³⁷⁾

헤이그 중재재판 의탁 件에 대한 對日 통고는 사실상 청일 간의 외교 교섭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간도문제 및 만주현안에 대한 제3국의 개입과 간섭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청의 외교 제처는 열강의 만주문제 개입을 이용하여 일본과의 교섭을 유리하게 전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반면에 일본에게는 만주 문호개방을 주장하는 열강, 특히 유럽 협조체제에 대항하여 중재조약체제의 구축을 지향하는 미국의 세계정책과 미독 유대를 근간으로 4국협조체제에 대항하려 한 독일의 세계정책이 만주문제에 개입될 가능성을 낳는 것이었다. 즉 중재재판 회부문제는 청일 양국 간의 사안을 넘어서는 국제문제(international affair)로 간도 및 만주현안을 국제 이슈화한 것으로서, 그것은 일본에게는 청일전쟁 직후의 삼국간섭과 견줄 만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판도를 전환시킬 수 있는 외교적 위기로 인식되었던 것이다.³⁸⁾

실제로 1908년 말과 1909년 초에 일본의 당로자들은 만주에 대해 열강의 간섭이 현실화될 경우, 만주에 국한되지 않고 보호국인 조선에까지 그 영향이

36) 『日本外交文書』 42-1, 244~246, 248~249, 262~264項; *New York Times* (March, 31, 1909).

37) 김원수, 2010a, 앞의 글, 262쪽.

38) 김원수, 2010a, 앞의 글, 262~263쪽.

미칠 것인지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독일의 독미청동맹 기도가 가시화될 경우, 영일동맹은 그 상대적 균형(counter-balanced)이 될 것임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³⁹⁾ 따라서 일본 정부로서는 戰後 대륙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총체적인 지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곧이어 1909년 3월 말부터 5월 중순에 걸쳐 취해진 일본의 한반도 병합을 위한 사전조치와 만주6안건 교섭을 위한 대청정책 구안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개입을 우려한 동맹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대영·대러 접근 기도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 가운데 최우선적 사항은 한반도 강점을 위한 실질적인 선행조치였다. 동년 3월 말 고무라 외상이 가쓰라 수상에게 한국 병합방침안을 건의하고 4월 10일 靈南坂회담에서 이토 통감이 가쓰라, 고무라와 함께 한국 합방에 동의한 사안이 바로 그것이었다.⁴⁰⁾ 다음으로 만주문제, 즉 만주6안건 교섭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4월 29일,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 「제2 대청정책」을 작성하여 가쓰라, 고무라, 데라우치에게 송부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아울러 간도문제 및 만주현안에 대한 제3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영일동맹의 결속력 강화를 모색하였다. 1909년 5월 13일 이토와 맥도널드의 회담 및 가쓰라와 맥도널드의 회견은 영국의 대일 오해 배제 및 동맹 강화에 관한 일본 당국의 고심을 해결하는 실마리였다.⁴¹⁾ 특히 가쓰라 수상과 맥도널드의 회견에서는 영일동맹 및 중국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입장이 전달되었다. 여기서는 일청 간의 현안 사안인 ① 간도문제, ② 신법철도 문제, ③ 경봉철도를 봉천성으로 연장하는 문제, ④ 대석교지선문제, ⑤ 무순 인대 탄광문제, ⑥ 철도연선 광산문제, ⑦ 중재재판 附託의 제의 문제, ⑧ 동청철도 부속지 내의 행정권 문제, ⑨ 남만주철도 부속지에 있어서 행정권 문제 등에 관하여 의

39) Richard F. Szimpl, 1998, p. 11~12; 김원수, 2010a, 앞의 글.

40) 김원수, 2010a, 앞의 글, 284쪽; 上擔外憲一, 2000, 『暗殺・伊藤博文』, ちくま新書, 196쪽.

41) 김원수, 2009, 「4국협조체제와 간도협약의 국제관계」, 280~282쪽; 鹿島守之助, 1958, 『日本外交政策の史的考察』, 鹿島研究所, 266쪽.

견교환이 있었다.⁴²⁾

이 같은 정책전환의 기초를 마련한 후, 일본은 본격적으로 만한문제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하였던 것이다. 우선 한국문제에 관하여 이후 7월 6일, 일본 각의에서는 일한병합을 결정하고, 시기만을 미정하였다. 이어 동월 12일, 기유 각서를 체결, 한국의 사법권과 감옥사무 전권을 일본에 위임시키고, 한국에서 영사재판권 폐지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뒤이어 한국중앙은행에 관한 한 일각서조인, 군부의 폐지에 이은, 호남의병에 대한 만한대토벌 작전 개시 등의 조처들을 단행하였다. 동시에 만주문제에 있어서는 만주 경영의 주축으로서 안봉철도(안동-봉천)의 개축과 길회철도(길림-회령) 부설과 관련하여 8월 6일, 일본이 일방적으로 중국에게 안봉철도 개축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발하였다. 그것은 협계였던 안봉선을 국제표준궤(4피트 8인치)로 개축하여 경부선 및 경의선과 연결하려는 것으로서, 戰前 만한 불가분일체론에 입각하여 가쓰라-고무라 외교체제가 구상하였던 일본의 한반도와 만주를 관통하는 대륙종관철도구상의 후속편과 같은 것이었다.⁴³⁾

다른 한편 동맹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대영·대러 접근 기들도 본격화되었다. 6월 14일, 한국통감에서 물러난 이토는 일본 각의가 병합방침을 결정할 즈음 러시아 방문을 계획하였다. 이것은 구대륙의 러독영불과 협력하는 것으로 중국의 보전을 기도하는 것으로서, 신대륙(미국)의 횡포를 방지한다는 ‘신구대륙대치론(新舊大陸對峙論)’⁴⁴⁾을 주장하고 있던 고토 신페이(後藤新平)의 권유

42) G. P. Gooth & H. W. V. Temperley ed., 1926~1938, *British Documents on the Origins of World War 1894~1914*, Vol. VIII, London: H. M. Stationery Office, pp. 467~470(이하 B. D VIII로 약함); 『日本外交文書』 42-1, 275項.

43) 고무라 외교체제의 대륙종관철도구상에 대해서는 김원수, 1998, 「일본의 경의철도 부설권획득기도와 용암포 사건」, 『한일관계사연구』 9, 한일관계사학회; 정재정, 1999, 『일제침략과 한국철도(1892~1945)』, 서울대학교출판부.

44) ‘신구 대륙대치론’은 신대륙(미국)의 발흥에 대하여, 구대륙(유럽)이 결합해야 한다는 적극적 진출론의 입장에서 이를 설명한 독일인 에밀 시아르크의 이론에서 발원하고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고토는 이 이론을 아시아에까지 확장하여, 미국에 대한 유럽과 아시아의 연합을 주장하였다. 이 경우 구대륙을 결합시키는 수단으로서 고토가 논한 것이 러일 양국의 제휴였다.

에 따른 것이었다. 고토는 러일 제후를 위해 러시아 재상 코코프초프와의 회담을 진언하였다.⁴⁵⁾ 그러나 이토가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대한의병 참모총장 안중근에 의해 저격됨으로써 실패로 끝나고, 이듬해를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영일 간의 공조 분위기는 금제철도(錦齊, 금주-치치하르)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통해 모색되었다. 1909년 7월 20일, 영국 외상 그레이는 주영 일본 대사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와의 회견에서 남만주철도는 일본이 러시아와 싸워 얻은 유일한 전리품임을 인정하였다. 이후 8월 13일 그레이는 주청 영국 공사 조던(J. A. Jordan)에게 청일 양국이 만주의 철도발전을 위해 공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청이 이를 수용한다면 일본은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8월 20일 가토가 청과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오에 따라 그레이 외상은 조던 공사에게 주청 일본 공사 이주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와 어떤 조치를 취할지 협의하도록 지시했다. 마침내 1909년 9월 2일 영국 외무성 관리 룸볼드(Horace Rumbold)는 가토가 비록 금제철도가 신법철도(신민둔-법고문)보다 남만주철도에 위협적이지만, 일본이 금제철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청국이 신법철도를 포기하는 데 동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그레이 외상에게 보고하였다.

이 같은 영일 간의 신법철도 포기를 둘러싼 논의와 청일 간의 교섭결과는 9월 4일, 청일 간에 체결된 만주5안건에 관한 청일조약문 제1조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로써 만주 현안문제는 마침내 9월 4일 '간도에 관한 청일협약'과 '만주5안건에 관한 청일협약' 체결로 귀결되었다. 아울러 간도문제 또한 간도에 관한 청일협약 제1조에서 두만강을 청·한 양국의 국경으로 설정하였고, 제4조에서 잡거지 거주 한인에 대한 일본의 영사재판권을 배제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1905년의 북경조약의 실질적인 작업은 완성되었고, 간도 영유권은 청국에 양도되고, 한국과 중국의 국경은 확정되었다. 이처럼 간도문제와 만주현안 처리를 둘러싼 청일 간의 외교교섭에 있어서 교착상태에 있던 청일 간의 대화가 재개된 데에는 일본의 동맹국이었던 영국의 세계전략상 동아시아

45) 北岡伸一, 2007, 『後藤新平』, 中央公論社, 111~112쪽.

에서 요구되는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일정 수준의 역할이 간과될 수 없다.⁴⁶⁾

기실 간도문제와 만주현안의 국제관계를 살펴보면, 청일 당사국뿐만 아니라 영일동맹을 근간으로 한 4국협조체제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동되고 있었다. 직접적인 군사 개입의 가능성은 적었지만, ‘만주관 삼국간섭’을 우려한 일본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전 지구적인 상호 관련성과 유동성을 불리하게 보고 있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한국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토 통감의 만주문제협의회(1906)에서의 생각과 같이, 이 시기의 일본 정책당로자들에게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간도 및 만주문제의 조속한 해결뿐만 아니라 한국 강점을 서두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⁴⁷⁾

그렇다면 간도협약 이후 영국의 동맹협상외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한 문제와 연동되었는가. 한일병합, 미영중재조약, 제3차 영일동맹 및 제3차 러일 협약과 연계하여 살펴보자. 이 과정에서 한국문제는 공식적으로 소멸되고, 영일관계가 소원해지는 반면, 러일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4국협조체제의 변화에 따른 결속력이 약화되었고 한편으로는 영미 양국의 새로운 협조체제관계가 성립되었다.

46) 김원수, 2010a, 앞의 글, 265~266쪽.

47) 필자의 논거와는 달리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의 近代日鮮關係의 연구성과를 계승하여, 조선 식민지화 과정을 국제관계로 접근한 모리야마 시게노리[森山茂徳] 교수는 “간도에 관한 청일협약에 의해서 일본은 길장철도를 조선의 회령까지 연장 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것에 의해 조선병합을 곧바로 행할 가능성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고무라 외상은 이때 조선의 조급한 병합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고 논하고 있다. 모리야마 시게노리 지음, 김세민 옮김, 1994, 『근대일본 관계사연구-조선식민지화와 국제관계』, 현음사, 263쪽; 森山茂徳, 1992, 『日韓併合』, 日本歴史學會 編, 吉川弘文館, 196쪽.

V. 한일병합 전후의 국제관계와 영국의 대일전제

일본은 기존의 한반도와 남만주의 세력권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하여, 1909년 9월 4일 중국에게 다양한 철도부설권을 요구하는 만주5안건의 일청협약 및 간도협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간도문제를 포함한 만주문제는 일청 간의 교섭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았다. 만주 및 간도협약에 나타난 일본의 공격적인 남만주 정책은 중국은 물론 미국과 러시아에게 새로운 위기의식을 제공했다. 중국이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해 錦愛철도(錦州-아이훈) 부설을 위한 스트레이트와의 가계약을 서두른 것과,⁴⁸⁾ 주청 미국 공사 플레처(Henry P. Fletcher)가 청일 간의 만주협정 제4조항에 대해 문호개방과 만주에서의 상업적 기회균등 원칙을 들어 우려를 표명한 것,⁴⁹⁾ 러시아 외상 이즈볼스키 역시 주러 일본 대사 모토노 이치로[本野一郎]에게 일본의 최근 대청 외교가 러시아에 대항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사례들⁵⁰⁾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처럼 당시 제국주의 열강이 이 문제의 귀추에 얼마나 민감하였는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입장은 강경하였다. 러일전쟁 이전에 러시아가 일련의 한국 중립화 제안을 통해 만주문제에 직접 개입하였듯이, 이번에는 간도협약 직후인 1909년 11월 16일, 미국 국무장관 녹스는 만주철도의 중립화안 제기를 통해 만주문제에 직접 개입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만주철도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포츠머스 강화조약 제7조와 루트-다카히라협정의 상업상의 기회균등 규정에 의거하여, 남만주와 북만주를 세력권으로 확보한 일본과 러시아를 축출하고, 국제자본 신디케이트를 구축하려는 것으로서, 요컨대 달러외교를 통해 미국이 만주철도를 관할하려는 것이었다. 이 같은 미국의 대일 견제조치는 동북아시아

48) 정성화, 2005, 「윌라드 스트레이트의 뉴프론티어-20세기 초 미국의 만주정책」, 정성화 외, 『러일전쟁과 동북아의 변화』, 선인, 185쪽.

49) Chargé Fletcher to the Secretary of State, September 6, 1909, FRUS, 5767/99~101.

50) 『日本外交文書』 42-1, 358~360項.

아에서 기존의 러일 간의 충돌위기를 다소 감소시키는 반면, 미일 간의 충돌위기를 가시화하고 있었다. 그 캐스팅보트는 러시아와 영국이었지만 영일동맹국인 영국은 뒷짐을 지고 있었다. 1910년 1월 21일, 러일 양국은 공동으로 녹스의 중립안에 대한 거부의를사를 표명한 각서를 전달하는 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대미 회담안을 둘러싼 러일 간의 공조는 양국관계를 공식화하기 위한 협약체결의 계기가 되었다.

한편 당시 일본은 대미 견제를 위한 러일 접근과 더불어 영국과 접촉하며 한일병합과 관련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1910년 5월 19일, 주일 영국 대사 맥도널드가 그레이에게 보낸 전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에서 보호정책의 후속편으로 일본의 한국 병합 가능성을 전해 들었으며, 시기는 아직 미정임을 전했다. 현재 일본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이해를 위해 노력 중이다. 병합은 만주철도 중립화에 대한 일본의 거부에 대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성명에 근거해 윤색되어질 것이다. 일본 외상은 맥도널드에게 이미 1907년의 러일협상 교섭과정에서 러시아는 일본에 의한 최종적인 병합(eventual annexation)을 묵인하였으며, 아마도 기타 열강이 이에 반대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재차 병합일자를 물었지만 확답을 피하고, 일본 외상은 동맹국에게 혼란을 주지 않을 것을 확신해 줄 것임을 주지하고 있다”⁵¹⁾ 고 일본의 병합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 같은 한일병합의 움직임은 동년 6월 들어 취해진 일본의 관련 조치들에서 분명해졌다. 일본 각의의 병합 후 조선에 대한 시정방침 결정(6. 3), 가쓰라 수상의 한국 병합계획 공포(6. 18), 일본 식민통치를 위한 특별부서 설치 칙령 반포(6. 21), 한국 경찰 사무위탁에 관한 일한각서조인(6. 24), 이완용의 수상 복귀(6. 30)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처럼 한일병합조약이 서명되기 2개월 전에 이미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공식 공포되었다.

그 와중에 7월 4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즈볼스키와 모토노 간에는 제2차 러일협약이 체결되었다. 당시 러일협약 체결 전 이미 영국과 프랑스는 비

51) B. D VIII, pp. 467~470.

밀협약을 포함한 사전통보를 받고 있었다. 이 협약은 미국무장관 녹스의 '만주 철도중립화'로 표출된 미국의 만주정책에 대항하여 러일 양국이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그것은 러시아에게는 한국을 몽골과 교환하였음을 의미했다. 반면 일본에게는 한국병합을 위한 최종적인 필요조건의 충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일본으로서는 한국병합을 위한 러일 간의 한국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었던 것이다.⁵²⁾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무성은 새로운 러일협약이 기본적으로 미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비밀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의심을 품었다. 미국의 언론은 심하게 반발하였다. 한편 독일 역시 반발하였다. 페테르부르그로부터의 메시지 여백에 카이저는 “도둑놈들!”, “전리품의 분할이다”, “뻔뻔스럽다”, “상식 밖의 일이다”, “참고 기다리자!”고 그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었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미국과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까지 토로하였다.⁵³⁾

반면에 동맹국인 영국의 입장은 이와는 달랐다. 기실 제2차 러일협약이 성립되었다는 통보가 전해지자, 이를 후인 7월 6일, 외상 그레이는 일단 러일협약이 극동의 평화를 담보하지만 문호개방정책과도 부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대외적인 외교 제스처에 불과하였다. 7월 14일, 그레이 외상은 주영 일본 대사에게 영국은 일본이 한국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방해하지 않겠음을 언급하고, 일본의 관세를 한국에 적용하는 데 대해 영국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었음을 상기시켰으며, 기존의 한영 간의 통상조약이 병합 이후에도 효력을 가지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⁵⁴⁾ 나아가 동월 19일, 그레이는 맥도널드에게 “오늘 주영 일본 대사가 나에게 외상 고무라

52) 千葉功, 2008, 앞의 책, 217쪽; 森山茂徳, 1987, 앞의 책, 248~249쪽; 海野福壽, 2000, 앞의 책, 355, 365쪽.

53) *Die Grosse Politik der Europäischen Kabinette 1871~1914*, XXXII, 112 in David Dallin, 1950, p. 102.

54) B. D VIII, p. 489(No. 392, Foreign Office, July 14, 1910, Sir Edward Grey to Sir C. Macdonald).

가 한국병합 가능성에 대한 나의 언급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알려 왔다. 고무라는 병합 결정 시한에 대해 나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려고 하고 있다. 그 시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그는 내가 제기한 질문에 대해 나에게 문제를 설명하려 한다”⁵⁵⁾고 전문하였다.

요컨대 일본 정부는 독일과 미국의 도전에 대하여 러일 간에 러일협약을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국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곧바로 한반도에서 병합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을 개시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모든 계획들은 급속히 완료되었다. 제2차 러일협약이 체결된 후 곧바로 일본은 공식적으로 한국 병합절차를 개시하였다. 7월 23일, 데라우치[寺內正毅]가 서울에 부임하여, 31일 이완용·박제순 등과 합병문제를 밀의하고, 8월 16일 데라우치는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합병조약안을 제시, 동월 22일 데라우치와 이완용 사이에 합병조약이 조인되기에 이르렀다. 28일, 일본 외무성은 한국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보호통치는 조선의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고 국가를 통치해야 하는 일본에게 부여된 책임은 한국을 일본제국에 완전히 병합하도록 하였다고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러시아는 이러한 병합의 보상으로 외몽골과 신장을 점령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만주철도 중립화 기도는 역으로 만주에서 러일의 제후를 강화하고, 부산물로서 일본의 한국병합을 단행하게끔 이르게 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영일동맹을 제국 외교의 골수로 한 가쓰라-고무라에 의해 구축된 4국협조체제와의 관계강화의 결과였다. 이는 제2차 러일협약 체결 당시 영일동맹과의 관계에 대하여 고무라 외상이 가토 주영 일본 대사에게 보낸 전문에서도 분명하다. 그는 “제국 정부가 영일동맹을 제국 외교의 골수로 하는 방침은 본건으로서도 추호의 변경이 없음은 물론이다. …… 제국 정부는 그에 의해서 영일동맹을 보익하고, 이로써 동양에서 영원한 평화유지를 기대하려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또한 고무라 외상은 새로운 러일협약은 “영국 정부가 이미 승인한 이전 러일협약의 논리적 결과에 속하며, 러일 양국이 본 협약에 의거

55) B. D VIII, pp. 483~485(No. 386, Tokio, D., July 2, 1910, R. July 30 1910, Sir C. Macdonald to Sir Edward Grey).

하여 장래에 분쟁의 원인을 근절하여 동양 평화의 유지에 최유력한 보장을 주는 것”이라 하며, 영일동맹과 러일협약의 관계설정을 분명히 하였던 것이다.⁵⁶⁾

하지만 4국협조체제의 관계강화의 결과로 얻어진 일본의 한국병합초치는 이로써 완결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곧이어 4국협조체제의 중추인 영일동맹, 그것의 효력을 묻는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 대응조치는 미국에 의해 시도되었다. 1910년 8월 5일, 태프트 대통령의 영국과의 중재조약을 체결하려는 시도가 바로 그것이었다. 당시 미국은 만주철도 중립화가 실패한 원인이 영일동맹에 있다고 보고 있었다. 특히 영일동맹의 조문상에는, 일미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영국은 일본과 함께 미국과 전쟁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태프트는 이러한 악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국과 중재조약의 체결로서 영·일 對 미국이 전쟁할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한편 그레이 외상 역시 이를 통해 미국과의 전쟁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대독일 견제를 위한 자유를 유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영일동맹으로 말미암아 미국과의 전쟁에 끌려 들어간다는 영국 여론의 두려움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영국으로서는 미국과의 중재조약체결의 난제는 영일동맹과 중재조약을 어떻게 결부시키냐에 있었다. 이에 그레이는 일본의 동의를 얻어 영일동맹을 개정하고, 미국과의 중재조약을 체결할 여지를 만들 것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9월 26일, 그레이는 미국과 중재조약을 위한 비공식 교섭을 시작하였음을 일본에게 통고하면서 영국 측 대안에 대한 일본의 의견을 구하였다. 그 제1안은 중재조약에 ‘영일동맹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라는 조건을 붙여, 영일동맹의 기한이 되었을 때, 연장하는 경우에는 영일동맹을 중재조약에 저촉하지 않게끔 수정하는 것이었다. 제2안은 일본도 중재조약에 가맹하는 것을 미국에 제안하려는 것이었다.⁵⁷⁾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제1안에 찬성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56) 『日本外交文書』 43-1, 114, 126~128, 138項.

57) Hotta-Lister, Ayako, 2002, “The Anglo-Japanese Alliance of 1911,” *Discussion Paper No. IS/02/432*; B, D VIII, p. 503, 541, 543; 『日本外交文書』 44-1, 333~335, 390~393項.

하고, 1911년 1월 17일, 고무라는 가토 대사에게 영일동맹 개정교섭을 개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교섭의 주안점은 ① 신동맹협약의 기한은 10년으로 한다. ② 체당국의 한쪽과 중재조약을 맺은 나라에는 동맹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다. ③ 현행조약의 한국에 관한 규정과 러일전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다. ④ 일본이 국경부근에 보유한 특수이익을 영국이 승인한다는 것이었다.⁵⁸⁾

한편 영국은 1911년 6월 20일, 미국의 중재조약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영일동맹 교섭에 대해서는, 일본이 요구하는 예외조항을 설치하는 건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의 국경부근에서의 특수이익에 대해서도 승인하지 않았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을 병합했기 때문에, 일본의 국경부근이라면 만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과의 협조으로 축을 옮긴 영국으로서 미국이 반대하는 일본의 만주에서의 특수이익을 승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현행 제2차 영일동맹조약의 한국에 관한 규정과 러일전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⁵⁹⁾

그런데 이 같은 영일 간의 동맹개정 교섭과정은 기존의 제2차 영일동맹안과 비교하여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그것은 2차 시기와 마찬가지로 양국 간에는 특히 한국조항 삭제에 관한 문제가 3차 영일동맹 교섭과정의 주요 안건이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한국문제처리를 최종적으로 다룬 공식적인 외교교섭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로써 한국문제는 이후 수십 년 동안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다루는 협상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완결되어 배제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영국이 삭제에 동의하였는가. 기존의 해석들은 영국의 한반도 내에서의 이해 유지라는 데에 귀결되고 있지만 그 같은 해석은 당시의 동아시아 국제관계 및 전략을 고려해 볼 때, 좀 더 확대 해석의 여지가 있다.

58) 『日本外交文書』 44-1, 341~345項.

59) B. D VIII, pp. 504~507. 한국에 관한 부분은 없지만 일본이 요구한 국경지역의 특수권익은 일본의 팽창을 지지하는 것으로 중요한 문제였다. 이를 영국이 조정하고 일본이 받아들인 것이다.

영국은 상기 ③의 “현행조약의 한국에 관한 규정과 러일전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다”는 일본 측 제의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주지하다시피 1905년 제2차 일영동맹갱신의 핵심은 일본 측으로서는 한국문제의 재수정이었다고, 이는 전문 2조와 비밀조항 3항으로 규정되었다. 당시 동맹을 개정함에 있어 1905년 5월 22일의 일본 측 제출의 수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정되고 있다. 즉 “일본은 한국에서 특수하고 탁월한 정치적, 군사적 및 상업상의 이익을 보유하므로 영국은 일본이 제 권익을 옹호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타당하고 또 필요하다고 사유되는 지도, 감독, 보호의 조치를 한국에서 취할 권리를 승인한다. 단 항상 이와 같은 조치가 열국의 상공업에 대한 기회균등의 주의와 저촉되지 않을 것을 요한다”는 것이었다.

위의 조문 중에 지도, 감독, 보호는 한국에 대하여 일본이 취할 방침을 나타내 보인 것이지만, 이 방침의 실천이야말로 제2차 일영동맹의 갱신에 즈음하여, 일본이 의도한 진정한 목적이었다. 또 일본의 수정안에서의 ‘단’ 이하는 영국의 의견에 따른 것이지만, 그것은 영국이 한국에서의 제3국의 현행 조약을 무시한 일본의 행동이 일본과 제3국의 전쟁으로까지 발전하였을 경우에 그 외중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우려한 데서 나온 것이다. 결과는 본 동맹의 발효에 의해서 얻어지는 일본만의 이익이 너무 현저하게 되었다. 고로 영국이 특히 인도의 방위를 내세워 영일 양국의 균형을 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하지만 제2차 영일동맹이 체결된 1905년의 상황과 현재 1911년 들어 동아시아의 국제적 정황은 완전히 달랐다. 일본의 한국병합에 이은 만주 진출 및 아시아 본토에 대한 야욕은 영국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제2차 러일협약 이후의 만한지역 및 몽골지역에서의 러일의 적극적인 활동은 부담이었다.⁶⁰⁾ 그러므로 일본의 한국조항 삭제요구에 대한 영국의 동의는 일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물론 한국조항의 삭제는 영국이 포츠머스조약과

60) British interests in Japan and Korea(Hansard, 27, March, 1911), HL Deb 27 March 1911, vol. 7, cc. 617~33.

제2차 영일동맹에서 규정한 조정(control)에 한정한 한국조항과는 상반되는 일본의 한국병합을 묵계적으로 승인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한반도로부터 손을 뺄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영국의 한국에 대한 무조항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며 이는 일본과의 사슬을 끊고,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유럽에서의 대독 저지와 러일의 아시아 독점을 저지하려는 시도였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중재조약보다 동맹협약의 개정을 먼저 논의하는 선에서 양보하고, 1911년 7월 13일에 가토와 그레이 간에 제3차 일영동맹이 조인되었다.⁶¹⁾ 뒤이어 영미중재조약이 1911년 8월 3일에 조인되었다. 이로써 미국은 영일의 공동공격에 대해 조약상의 방패를 얻었지만, 미 상원은 이의 비준을 거부하였다. 이즈음 1911년 10월 10일, 신해혁명이 발발하였고, 일본은 새로운 중국 정세에 대응키 위해, 24일의 각의에서 중국 정책을 결정하였다. 그것은 만주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일본에게 유리한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유보하고, 중국본토에 세력을 부식하는 데 힘을 주력하며, 만주에 관해서는 러시아와 공동보조를 취하여 일본의 이익을 옹호하고, 영국과는 영일동맹의 정신을 철저히 하는 데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러시아와 중국 간에는 외몽골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일본은 이 기회를 이용해 제3차 러일협약체결을 시도하였고 1912년 7월 8일에 사조노프 외상과 모토노 대사 간에 제3차 러일협약이 조인되었다. 이 협약은 비밀협약만으로서, 만주의 분계선을 내외몽골 경계선의 종단까지 서쪽으로 연장하고, 내몽골을 동경 116도 27분에서 동서로 분할하여 그 동쪽을 일본의 세력범위로 하였다. 이 협약 역시 체결 전인 7월 3일, 러일 양국 정부로부터 영불 양국 정부에 사전에 통보되었다. 이에 영국은 중국의 독립과 무역상의 문호개방주의를 해치지 않는 한 이견이 없다고 회답하였고, 프랑스 정부도 같은 취지로 회답하였다.

이처럼 러일의 관계는 만몽을 둘러싼 세력범위를 확정하여 제휴가 강화되고 있었던 데 비하여, 영일동맹은 만주와 중국본토에서 일본과 대립하고 있는

61) 『日本外交文書』 44-1, 341~345項; 『日本外交文書』 44-2, 369~383項.

미국을 그 대상으로부터 제외하고 있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러일협약이 외교적 협력에 있어서 동맹적 성격을 가지게 된 데 반하여, 영일동맹은 애초의 방어적 준군사협력관계라는 마땅히 있어야 할 내용이 없어져 협상과 같은 성격이 되어 영일동맹의 空洞化를 낳게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미영중재조약의 성립과 제3차 영일동맹의 개정은 동북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영미 양국의 새로운 협조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에, 영일관계가 이전과는 달리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일본 해군의 최대 관심사인 대미전쟁에 있어서 영일동맹은 적용되지 않게 될 정도로 그 의미가 변질되고 있었다. 바로 이 같은 4국협조체제의 주축이었던 영일동맹의 균열과 함께 한국문제 역시 조약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후 동아시아 외교무대에서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것이다.

Ⅵ. 맺음말

현실 국제정치의 운용이라는 기존의 관점에서 보면, 한일병합은 1905년 이후의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는 의미가 약화되어 4대국과 미국, 중국 등의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설정하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1907년의 외교혁명에 의해 조성된 4국협조체제 또한 일본의 한국 병합과정에 직접적으로 연동되고 있는 사실에 착목하였다. 이를 위해 한일병합을 러일전쟁의 산물로 보았던 기존의 일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4국협조체제의 상호 작동성을 영국의 앙탕트 외교와 연계하여 재조명해 보았다. 특히 ‘외교문제로서의 한국문제’가 1911년의 제3차 영일동맹조약에서 공식적으로 소멸되며, 3차 영일동맹이 미영중재조약 및 제3차 러일협약과도 긴밀히 연동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기존의 1910년까지로 한정되고 있는 한일병합 연구의 시간적 범주를 1912년까지로 확대하였다. 그 대요는 다음과 같다.

20세기 초 영국의 외교전략은 주변지역들과의 동맹협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제국의 틀을 유지하고 식민지세계를 정립하려 했다. 특히 영국이 일본과 구축한 동맹체제와 프랑스 및 러시아와 맺은 협상체제는 외교혁명이라 할 만큼 새로운 국제관계 및 외교전략의 틀을 변화시켰고, 유럽 본토는 물론 세계 전 지역의 세력판도에 영향을 주었다. 한일병합 전후 동북아시아의 경우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영국의 세계정책이 미친 일련의 국제적 변동과 일본의 행동에는 동맹과 협조를 통한 상호 이해가 작동되고 있으며, 그것의 추진속도와 결속력의 강약에 따라 일본의 한국병합이 진척되고 있음이 밝혀진다. 제1차 영일동맹은 일본의 러일 전쟁외교와 만한정책을 현실화하였으며, 한국조항을 수정한 제2차 영일동맹은 한국의 보호국화와 연계되고 있다. 한편 1907년의 일불, 일러, 영러의 4국협조체제는 제3차 한일협약과 간도문제, 일본의 사전 병합조치, 간도협약, 일본의 한국병합뿐만 아니라 나아가 병합 이후 한국조항을 삭제한 제3차 영일동맹, 미영재판조약 및 제3차 러일협상과 긴밀히 연동되고 있다. 이 일련의 과정에 영국은 동맹국으로서의 의무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불일협상과 러일협약 및 영러협상을 통해 미국의 만주 진출과 독미청 동맹구상 및 러시아의 전쟁위협을 제어한 다각적인 동맹협조체제의 구축을 전제로 한 실천계획이 뒷받침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의 한국병합의 전반 과정은 영국을 중심한 제국주의 열강과 일본의 다계적인 동맹협조체제 구축과정에서 나타난 세계체제의 변화과정의 부산물이었다.

요컨대 한일병합문제는 만주를 둘러싸고 영일·러불동맹을 주축으로 한 4국협조체제를 중심으로 미국, 독일, 중국이 그 외연을 이루고 있었던 국제관계의 산물이었다. 이는 1910년 8월 29일 시점에서 일본이 한국병합을 단행한 당시 국제관계적 정황에서 분명해진다. 만주6안건 교섭과 병행하여, 한반도 병합을 위한 사전 조치과정에서 영국과 일본은 사전 접촉을 통해 간도와 만주 문제를 조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한국병합과 만주에서의 상호이익을 상쇄하였다. 신법철도의 사례는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가 일본에게 불리하게 조성되고 있음을 인식한 결과였다. 특히 간도협

약 직후 미국의 만주철도 중립화안과 이에 대응한 러일의 제2차 러일협약의 체결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만주문제가 한국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토의 만주문제협의회에서의 생각과 같이, 이토의 죽음 이후 일본 정책당로자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만주문제뿐만 아니라 한국병합을 서두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4국협조체제의 관계 강화의 결과로 얻어진 일본의 한국병합조치는 이로써는 완결되지 못하였다. 비록 제2차 러일협약체제를 수립하고 한국을 병합했지만, 오히려 미일 간에는 전쟁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동맹국이었던 영국이 미국과의 중재조약을 통해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미일 간의 전쟁을 상정하여 제3차 영일동맹개정을 통해 동맹의 적용범위를 명백히 한 것은 바로 이 같은 미일 간 대립구도에서의 탈피와 러일의 동맹화를 견제한 대국적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영국은 미국이 반대하는 일본의 만주에 있어서의 특수이익을 불승인하였지만, 현행 제2차 영일동맹조약의 한국에 관한 규정과 러일전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이로써 ‘외교문제로서의 한국문제’는 소멸, 종결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다른 한편 4국동맹협조체제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영일동맹을 주축으로 한 동맹협조체제를 통해 프리랜드를 누려온 동아시아 지역 열강(regional power)으로서 일본의 지위가 영·미의 세계정책 테두리의 주변부에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일본이 다시 그 지위를 추구하려면, 글로벌 파워(global power)에 도전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자료〉

HANSARD, British Interest in Japan and Korea HL Deb 27 March 1911, vol 17, cc 617~33.

HANSARD, Railway Enterprise in China HL Deb 08 November 1909, vol 4, cc 535~9.

HANSARD, British Commercial Right in Korea HL Deb 28 July 1910, vol 19, c 2317.

〈단행본〉

강동진 저, 반민족문제연구소 편, 1995, 『한국을 장악하라-통감부의 조선침략사』, 아세아문화사.

구대열, 1986, 『제국주의와 언론-배설·대한매일신보와 한영일관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구대열, 1995, 『한국국제관계사연구』 전2권, 역사비평사.

김기정, 2003, 『미국의 동아시아개입의 역사적 원형과 20세기 초 한미관계연구』, 문학과지성사.

김영흠, 1988, 『미국의 아시아외교 100년사-20세기 미국·아시아관계』, 신구문화사.

김진식, 1990, 『인도에 대한 영국제국주의 정책의 한 연구』, 지식산업사.

박준규, 1986, 『한반도 국제정치사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역사학회 편, 1984, 『일본의 침략정책사연구』, 일조각.

역사학회 편, 1986, 『러일전쟁전후 일본의 한국침략』, 일조각.

이성환·이토 유키오 편저, 2009, 『한국과 이토히로부미』, 선인.

이태진, 2004, 『일본의 대한제국강점-보호조약에서 병합까지』, 까치.

이태진 외, 2003, 『한국병합의 불법성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정성화 외, 2005, 『러일전쟁과 동북아의 변화』, 선인.

정재정, 1999, 『일제침략과 한국철도(1892~1945)』, 서울대학교출판부.

정진석, 1987, 『대한매일신보와 배설-한국문제에 대한 영일외교』, 나남.

최덕수, 2010, 『조약으로 본 한국근대사』, 열린책들.

최문형, 2004, 『국제관계로 본 러일전쟁과 일본의 한국병합』, 지식산업사.

크리스토퍼 하워드 저, 김원수·김상수 역, 1995, 『대영제국의 영광스러운 고립』, 한양대학교출판부.

한상일, 1980, 『일본제국주의의 한 연구-대륙낭인과 대륙팽창』, 까치글방.

鹿島守之助, 1958, 『日本外交政策の史的考察』, 鹿島研究所.

東アジア近代史學會 編, 2008, 『日露戦争と東アジア世界』, ゆまに書房.

ルネ・ジロ(Rene Girault) 著, 度邊啓貴 他 譯, 1998, 『國際關係史 1871~1914-ヨーロッパ外交, 民族と帝國主義』, 未來社.

馬場明, 2003, 『日露戦争後の滿洲問題』, 東京: 原書房.

木畑洋一, 2008, 『イギリス帝國と帝國主義』, 有志舎.

北岡伸一, 2007, 『後藤新平』, 中公新書 881, 中央公論新社.

寺本康俊, 1999, 『日露戦争以後の日本外交』, 信山社.

山田郎, 2009, 『世界史の中の日露戦争』, 吉川弘文館.

森山茂徳, 1987, 『近代日韓關係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森山茂徳, 1992, 『日韓併合』, 吉川弘文館.

上擔外憲一, 2000, 『暗殺・伊藤博文』, ちくま新書.

石井修, 2004, 『國際政治史としての 20世紀』, 有信堂.

小林道彦, 1998, 『日本の大陸政策 1895~1914-桂太郎と後藤信平』, 南窓社.

五百旗頭眞, 2008, 『日美關係史』, 有斐閣.

外務省 編, 1966,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上卷, 原書房.

外務省 編, 1966, 『小村外交史』, 原書房.

宇野俊一, 2006, 『桂太郎』, 吉川弘文館.

衛藤藩吉, 2004, 『近代東アジア國際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義井博, 1977, 『カイザードイツの世界政策と第1次世界大戰』, 清水書院.

李盛煥, 1991, 『近代東アジアの政治力學-間島をめぐる日中朝關係の史的考察』, 錦正寺.

日本外務省 編纂, 1956, 『日本外交文書』 第39卷, 1冊, 日本國際聯合協會刊.

日本外務省 編纂, 1956, 『日本外交文書』 第40卷, 1冊, 日本國際聯合協會刊.

日本外務省 編纂, 1956, 『日本外交文書』 第42卷, 1冊, 日本國際聯合協會刊.

林權助, 1935, 『わか70年を語る』, 第一書房.

長田彰文, 1992, 『セオテアルズバルトと韓國』, 未來社.

- 川島眞・服部龍二, 2007, 『東アジア國際政治史』, 名古屋大學出版會.
- 千葉功, 2008, 『舊外交の形成』, 勁草書房.
- 秋田茂, 2003, 『イギリス帝國とアジア國際秩序—ヘゲモニー國家から帝國的な構造
的權力へ』, 名古屋大學出版會.
- 平間洋一, 2000, 『日英同盟』, PHP新書.
- 海野福壽, 2000, 『韓國併合史の研究』, 岩波書店.
- 和田春樹, 2009, 『日露戰爭—起源と開戦』上, 岩波書店.
- 和田春樹, 2010, 『日露戰爭—起源と開戦』下, 岩波書店.
- 黒羽茂, 1987, 『日英同盟の軌跡』上・下, 文化書房博文社.
- Bartlett, C. J., 1984, *The Global Conflict 1880~1970—The International Rivalry of
the Great Powers*, Longman.
- Beale, H. W., 1968, *Theodore Roosevelt and Rise of America to World Power*,
New York: Collier Books.
- Braisted, William, 1954, *The United States Navy in the pacific, 1897~1909*,
Austin.
- Churchill, R. P., 1939, *Anglo-Russian Convention of 1907*, The Torch Press.
- Conroy, Hilary, 1960, *The Japanese Seizure of Korea: 1868~1910*,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Dallin, David, 1950, *The Rise of Russia in Asia*, Holis & Carter.
- Esthus, Raymond, 1967, *Theodore Roosevelt and Japa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Gillard, D., 1977, *The Struggle for Asia 1828~1914—A Study in British and
Russian imperialism*, Methuen & Co., Ltd.
- Gooth, G. P. & Temperley, H. W. V. ed., 1926~1938, *British Documents on the
Origins of World War 1894~1914*, Vol. VIII, H. M. Stationery Office.
- Holme, John R., 2006, *Theodore Roosevelt and World Order: Police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Washington DC: Potomac Books, Inc.
- Iriye, A., 1977, *From Nationalism to Internationalism: U. S. Foreign policy to
1914*, London.
- Lepsius, Johannes, et al., 1922, *Die Grosse politik der Europaischen Kabinette*,

1871~1914, XXV.

Lo, Hui-Min ed., 1976, *The Correspondence of G. E. Morrison*, 3 vols, Cambridge.

Lower, John, 1994, *The Great Powers, Imperialism, German Problem, 1868~1925*, Routledge.

Minger, Ralph Eldin, 1925, *William Howard Taft an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The Apprenticeship Years 1900~1908*,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Murray, Gilbert, 1915, *The British Foreign of Sir Edward Grey, 1906~1915*, Oxford at the Clarence Press.

Nearing, Scott and Freeman, Joseph, 1925, *Dollar Diplomacy-A Study in American Imperialism*, B. W. Huebsch and The Viking Press.

Nish Ian, H., 1966, *The Anglo-Japanese Alliance: The Diplomacy of the Two Island Empires 1894~1907*, The Athlone Press.

Steinberg, John W., Menning, Bruce W. Van Der Oye, David Schimmel Penninck and Wolff, David ed., 2005, *The Russo-Japanese War in Global Perspective: World War Zero*, Boston.

Thompson, Willie, 1999, *Global Expansion-Britain and its Empire, 1870~1914*, Pluto Press.

Tompkin, Rosmary, 1975, *Anglo-Russian Diplomatic Relations 1907~1914*, Denton Texas.

United States Patent Office, 1909, *Protection Extended to Patents, Designs, Trade-marks and Copyrights in China, Japan and Korea*,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Vevier, Charles, 1968, *The United States and China, 1906~1913*, New York.

White, John A., 1995, *Transition to Global Rivalry-Alliance Diplomacy and the Quadruple Entente, 1895~1907*, Cambridge.

Zabriski, Edward H., 1973, *American-Russian Rivalry in the Far East*, Greenwood.

〈논문〉

김보연, 2005, 「1902년 제1차 영일동맹 체결원인과 의미-영제국세계전략의 지역적전개」, 『세계정치』 26-1,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 김상수, 1990, 「영국의 대일동맹정책」, 『역사학보』 126, 역사학회.
- 김상수, 1991, 「영국의 고립청산외교-영일동맹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원보, 1988, 「미국의 친일정책이 일본의 한국침략에 미친 영향-1880~1910」, 『단국대 미소연구』 1.
- 김원수, 1986, 「용암포사건과 일본의 대응」, 역사학회 편, 『러일전쟁전후 일본의 한국 침략』, 일조각.
- 김원수, 1989, 「러일전쟁과 국제관계의 변화」, 『수선사회』 4, 서울교육대학 사회과교육과.
- 김원수, 2004, 「한국의 러일전쟁 연구와 역사교육의 과제」, 『역사교육』 90집.
- 김원수, 2007, 「글로벌히스토리과 역사들의 지평을 넘어서」, 『서양사론』 92, 한국서양사학회.
- 김원수, 2009, 「글로벌히스토리과 러일전쟁연구의 지평확대-압록강위기와 재접속」, 『서양사학연구』, 한국서양문화사학회.
- 김원수, 2009, 「4국협조체제와 간도협약의 국제관계, 1907~1909」, 『동북아역사논총』 26, 동북아역사재단.
- 김원수, 2010a, 「외교혁명과 간도협약의 국제관계」, 『백산학보』 86, 백산학회.
- 김원수, 2010b, 「간도문제와 간도협약의 글로벌히스토리, 1907~1909」, 『사회과교육』 49-1,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 김종현, 2008, 「러일전쟁과 동북아 국제질서의 재편」, 김영수 외 지음, 『동북아시아의 갈등과 대립-청일전쟁에서 한국전쟁까지』, 동북아역사재단.
- 김태준, 2008, 「영일동맹의 결성과 러일전쟁의 외교사적 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김현수, 1994, 「19세기 영국의 외교정책: 위대한 고립책(Splendid Isolation Policy)」, 『서양사론』 43, 한국서양사학회.
- 석화정, 2004, 「러일협약과 일본의 한국병합」, 『역사학보』 184, 역사학회.
- 설동은, 1986, 「만주문제를 둘러싼 T. 루즈벨트의 대일외교-루트-高平협정의 성립배경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상용, 1986, 「영일동맹과 일본의 한국침략」, 『러일전쟁전후 일본의 한국침략』, 일조각.
- 원철, 2006, 「주변열강의 한반도 문제 협의와 을사조약」, 『역사학보』 192.

- 윤정현, 2010, 「영일동맹의 종식과정에 나타난 영제국의 군사전략적 변화와 연속성」, 『세계정치』 30-2,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 이기백 편, 1996, 「특집-일본의 대한제국 침탈의 불법성」, 『한국사시민강좌』 제19집, 일조각.
- 이성환, 2000, 「간도협약과 한일합방」, 『대한정치학회회보』 제8집 1호.
- 이일걸, 1996, 「간도분쟁과 국제관계」, 『정치외교사논총』 제14집.
- 이항준, 2008, 「영일동맹과 제정러시아의 극동정책-1902년 일본의 대리협상안과 한국중립화방안을 중심으로」, 『사람』 30, 수선사학회.
- 최덕규, 2009, 「간도문제와 일본의 한국병합」, 『한국사연구』 145, 한국사연구회.
- 최덕규, 2008, 「1907년 헤이그평화회의와 러시아의 대한정책」, 『한국학보』 30, 고려사학회.
- 최정수, 2000, 「T·루즈벨트의 세계정책」,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정수, 2008,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와 미국의 세계평화전략-국제경찰과 약한국가 처리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30, 고려사학회.
- 한승훈, 2008, 「을사늑약을 전후한 영국의 대한정책」, 『한국사학보』 30, 고려사학회.
- 홍진호, 1998, 「러시아의 독불등거리외교에 대한 일연구」, 『역사학보』 158, 역사학회.
- 小川原宏幸, 2000, 「日本の韓国保護政策と韓国におけるイギリスの領事裁判權-ベッセル裁判を事例として」, 『駿台史學』 第110號.
- 入江昭, 1995, 「轉換期の日美關係 1896~1914」, 細谷千博 編, 『日美關係通史』, 東京大學出版會.
- 千葉功, 2008, 「日露戰爭と日本外交」, 東アジア近代史學會 編, 『日露戰爭と東アジア世界』, ゆまに書房.
- 키스·니얼슨, 2004, 「日露戰爭と國際關係-英國の戰略的外交政策」, 『日露戰爭と世界』, 防衛廳防衛研究所.
- 片山慶隆, 2005, 「韓國保護國化をめぐる國際關係史1902-05: イギリスの對韓・對日政策を中心として」, *Discussion Paper Series 008*, Center for European Research, 21th Century COE Programme, Hitotsubashi University.
- 片山慶隆, 2009, 「ハーグ密使事件・第三次日韓協約をめぐる日英關係」, 『一橋法學』 第8卷 第1號.

- Baker, Dwright Condo, 1927, "Germany and the Far East, 1895~1908," Ph. Dis. University of California.
- Davis, Christia L., 2009, "Linkage Diplomacy-Economic and Security Bargaining in the Anglo-Japanese Alliance, 1902~23," *International Security*, 33-1.
- Edwards, E. W., 1966, "Great Britain and the Manchurian Railways Question, 1909~1910,"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Vol. 81, No. 321.
- Hajimu, Masuda, 2009, "Rumors of War: Immigration Disputes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American-Japanese Relations, 1905-1913," *Diplomatic History*, Vol. 33, No. 1.
- Hall, L. J., 1929, "The Abortive German-American-Chinese Entente of 1907~8,"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1, No. 2.
- Hotta-Lister, Ayako, 2002, "The Anglo-Japanese Alliance of 1911," *Discussion Paper No. IS/02/432*.
- Hunter, Janet, 2003, "The Anglo-Japanese Alliance and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Economy," *Discussion Paper No. IS/03/443*.
- Kim, Wonsoo, 2007, "The Yongampo Incident and the Origin of the Russo-Japanese War," Власть и общество в России-во время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и революции 1905-1907, олериус пресс.
- Kahn, Helen D., 1954, "The Great Game of Empire; Williad D. Straight and American Far Eastern Policy," Unpublished Ph. Dis. University of Stanford.
- Mehnett, Ute, 1996, "German Weltpolitik and the American Two-Front Dilemma: The Japanese Peril in German-American Relations, 1904~1917,"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 82, No. 4.
- Murray, John A., 1975, "British Policy and Opinion on the Anglo-Russian Entente, 1907~1914," Ph. Dis., Duke University.
- Nish Ian, H., 2002, "The First Anglo-Japanese Alliance Treaty," *Discussion Paper No. IS/02/432*.
- Nish Ian, H., 2003,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Anglo-Japanese Alliance," *Discussion Paper No. IS/03/443*.
- Steed, David, 2002, "The Second Anglo-Japanese Alliance and The Russo-Japanese War," *Discussion Paper No. IS/02/432*.

Steed, David, 2003, "Anglo-Japanese Alliance and America Hegemony,
Discussion Paper No. IS/03/443.

Szippl, Richard F., 1998, "Keiser Wilhelm II and the Attempt to Form a
German-American-Chinese Alliance against Japan," *Nanzan Review of
American Studies*, Vol. 20.



[ABSTRACT]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Quadruple Entente System
and the Japanese Seizure of Korea, 1907~1912:
Related to the British Entente Policy

Kim, Wonso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consider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Quadruple Entente System & the Japanese Seizure of Korea from 1907 until 1912 from the global historical perspective. This work will reveal clearly that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had been influenced by the Interconnection of the Quadruple Entente system made by the Western Powers and Japan. It was a multilateral system. In this research, I specially focus on the Interaction of British entente diplomacy and Japanese foreign policy in Korea & Manchuria in this period. It will broaden the horizon of studies on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Chapter 1 connects the Quadruple Entente System with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rly the 20th century. Chapter 2 addresses the Anglo-Japanese relations with the 3rd Korea-Japanese Agreement. Chapter 3 concerns Anglo-Japanese relations related to the Gando Agreement. Chapter 4 describes Anglo-Japanese relations related to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Brief summary is as follows

After the Russo-Japanese War, the Japanese-French Agreement, the Russo-Japanese Agreement, and the Anglo-Russian Convention were concluded in 1907. This Quadruple system was to bring about the

End of “the Great Game”. After that, in East Asia, the Quadruple Enetente system based on the Anglo-Japanese Alliance constructed and in Europe, the Triple Entente system operated. Interaction of the Quadruple Entente was forced to threaten and encircle Germany in Europe as well as to restrict American Expansion in the Asian Pacific. Therefore Germany actively made a plan for a German-American-Chinese Alliance. Nevertheless, Japan had free hands in the Northeastern Asia region under British diplomatic assistance. Such an International change in East Asia was able to shape the realizing of the Japanese Plan to annex Korea and to occupy Manchuria including the Gando region from 1907 until 1912.

Therefore the Japanese Seizure of Korea has been not only influenced by the Quadruple system based on the Anglo-Japanese Alliance, but also controlled by the Intervention and the Restriction of Germany and America. Such actions were proved by Kaiser's Plan for German-American-Chinese Alliance Connection from 1907 to 1909, Theodore Roosevelt's Initiative on the Root-Dakahira Agreement in 1908, Knox's Neutralization Plan for the Manchurian railway in 1909, Anglo-Japanese preliminary contacts with Gando and Manchurian problems in 1909 and Anglo-American Arbitration Treaty after the Japanese Seizure of Korea. All these measures revealed that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was influenced by the Interaction of the Quadruple system. It was the Imperial struggle for Reestablishing the Sphere of Influence in East Asia.

But the Japanese seizure of Korea was not completed. The reason was that the aftermath of the Annexation of Korea was to increase the threat of war between America and Japan. This caused the 2nd Russo-Japanese Conven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Quadruple system.

Counteraction was immediately taken by the Taft Administration suggesting an Arbitration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In the aftermath of this, the 3rd Anglo-Japanese Alliance was concluded in 13th, July, 1911. In this course, the clauses related with Korea and the Russo-Japanese War were eliminated. It was the last diplomatic action for the Korean Problem taken by Japan. In these measures, the Korean problem was officially resolved.

In the course of events, British Entente policy was unwavering support. But the conclusion of the Arbitration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was to bring about the change of the Quadruple Entente system based on the Anglo-Japanese alliance. Now Anglo-Japanese relations were estranged, but the Anglo-American diplomatic relationship was renewed. This meant that Japan's Regional power was challenged.

keywords

the Russo-Japanese War, the 3rd Korea-Japanese Agreement, the Gando Agreement, the Great Game, Diplomatic Revolution, the Quadruple Entente, German-American-Chinese Alliance, Manchurian-Korean Problem, the Root-Dakahira Agreement, the Japanese Seizure of Korea, the 3th Anglo-Japanese Alliance, The Arbitration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1910년 일본의 조선 병합에 대한 프랑스의 태도

마르크 오랑주 | 전 프랑스 국립학술연구재단 연구원

I. 머리말

프랑스는 1886년 6월 4일 서울에서 체결된 우호·통상 및 항해 조약으로 조선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프랑스는 이 조약에 가장 나중에 서명한 서구 국가들 가운데 하나였다. 사실, 그 이전 30년 동안 양국 관계는 적잖이 파란을 겪었다. 1866년 강화도 연안에 로즈(Roze) 제독을 파견한 일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조선 조정과 가톨릭 세력, 더 정확히 말하면 프랑스 선교사들 사이에 타협책을 만들었다는 공로가 있었다. 로즈의 파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 주재 외교관들뿐 아니라 선교사들의 요구가 갈수록 강하게 제기되었던 그 이후 20년 동안, 프랑스는 조선에 무력으로 개입하기를, 그리고 종종 위협하면서도 성공을 기약하기 어려운 (코친차이나반도 사태의 경우에서와 같은) 원거리 군사작전에 자신을 내맡기기를 거부했다. 청 군대가 통킹에 있는 프랑스군에 대적하게 된 이른바 랑 손(Lang Son) 사태가 알려지면서, 쥘 페리

※ 투고일: 2010년 7월 8일, 심사일: 2010년 8월 9일,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27일.

(Jules Ferry)¹⁾의 2차 내각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²⁾ 이렇게 볼 때, 가톨릭 선교사들을 지원하려고 조선 땅의 군사적 모험에 몸을 내맡긴다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었다.³⁾

1886년 이후, 프랑스 정부는 더 이상 조선에 얽히지 않으려고 했다. 프랑스의 정책은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말썽을 -특히 청과- 일으키지 않는 데에 기조를 맞췄다면, 나중에 청이 쇠퇴했을 때에는 일본과 충돌하지 않으려는 데에 기조를 두었다. 게다가 프랑스가 조선과 조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조선 조정의 중요한 고문직들은 이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최초의 서울 주재 프랑스 외교관인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 1853~1922)에게 프랑스는 조선에 중요한 정치적 이해를 두지 않는 점과 그가 왕의 총애를 받아야 하며 종교 보호자로 활동하는 데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켰다.⁴⁾ 모든 갈등을 피하고 그러면서도 조선에서 프랑스의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콜랭 드 플랑시는 차라리 조선에 전문가들(예를 들어 건축가, 엔지니어, 법학교수)을 오게 하려고 애썼다.⁵⁾

1) 프랑스의 정치인(1832~1893), 두 차례에 걸쳐 수상을 역임했다.

2) Marc Ferro, 1994, *Histoire des colonisations*, Seuil, Paris, pp. 128~130; Charles-Robert Ageron, 1978, *France coloniale ou parti colonial?*, PUF, Paris, p. 302 참조.

3) 원칙적으로, 크리스티교의 발전은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진행되어야 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인도차이나나 중국에서 교회는 정복과 동시에 세력을 확장했다고 말할 수 있다. “세속적인 공화국하에서, 프랑스 외무부는 ‘가톨릭 선교사 보호령의 철저한 방어자’라는 이러한 외교적 전통을 이어왔으며, 종교적 설명은 그 지역에서의 자신들의 팽창을 그런 식으로 정당화했다. Dominique Borne and Benoit Falaize eds., 2009, *Religions et colonisation Afrique-Asie-Océanie-Amériques(XVIe-XXe siècles)*, Les éditions de l’Atelier, Paris, p. 335에 게재된 Claire Thran Thi Lien, “Religions et pouvoir colonial dans les pays de l’Indochine”, p. 190을 참조하라. 식민 당국은 자주 가톨릭 선교사들의 프랑스 문명 전파 활동을 높게 평가했다. 그런 점에서 가톨릭 보호령을 소홀히 다룰 수는 없었다.

4) 외무부, 프랑스 외교 문서고(이하 M. A. E.), *Correspondance politique, Corée*, Vol. 1, 1888, fol. 4 à 8을 보라.

5) Marc Orange, 2006, “Collin de Plancy et les conseillers français,” *Souvenirs de Séoul*, Paris/Séoul, pp. 100~107을 보라. 이후로도 계속되었던, 조선에서 프랑스가 보인 이러한 절제된 태도는 러시아와 우애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프랑스의 바람

이렇게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프랑스의 태도는 조선의 합병(1910) 때까지 계속될 것이었다. 극동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외교에서 조선이 그저 주변적인 위치만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확실히 지나친 듯하지만, 청과 일본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청과는 오랫동안 분쟁(종교문제, 코친차이나 지역 정복 때의 군사적 문제)이 있기는 했지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었고 프랑스는 그로부터 생겨난 이득을 잃고 싶지 않았다. 훨씬 더 평등한 관계였던 일본에 관해서 보자면, 순식간에 이 나라가 극동지역의 주역으로 여겨졌다. 서양인들이 보기에, 청에 맞서서(1895), 그리고 나서는 특히 러시아에 대해서 거둔 승리(1905)는 일본에게 유럽 문명에 동화될 줄 알고 거기서 이득을 끌어낼 줄 아는 새로운 강국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일본의 역동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건대, 일본이 청을 능가하게끔 할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맺음말에서 1904년에서 1908년 사이에 출판된 책들에서 몇 구절을

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콜랭 드 플랭시에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러시아 동료와 의견조정을 해야 한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환기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조선에 자유로운 활동의 장을 가졌음이 분명했다. Jean-Claude Allain, 2005, “L’affirmation internationale à l’épreuve des crises,” Jean-Claude Allain, Françoise Autrand, Lucien Bély et al., *Histoire de la diplomatie française*, Perrin, Paris, p. 1050, pp. 690~691 참조.

러시아와 알력을 빚지 않으려는 이러한 바람은 역사적 이유들로 설명할 수 있다. 독일이 승리한 1870년의 보불전쟁 이후, 독일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k, 1815~1898)는 프랑스를 외교적인 차원에서 고립시키려고 했으며 그러기 위해서 그는 이른바 삼제동맹(독일의 빌헬름 1세,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프란시스 조제프,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2세)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정책을 세웠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동맹은 몇 년간 유지되었지만 발칸반도에서 벌어진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대결을 거치면서 해체되었다. 러시아 황제는 프랑스에 그다지 호감을 갖지는 않았지만, 1877년 독일과의 협정 이후로는 발칸반도에서 독일이 중립성을 지키는 대신에 프랑스에 대해서 중립성을 지킬 것을 약속하였다. Gérald Arboit, 2009, “Renseignements et diplomatie au XIXe siècle: aux origines du rapprochement franco-russe en 1877,” *Revue d’histoire diplomatique*, n° 1, pp. 3~20 참조.

1898년 n° 7-8 (7~8월)의 *Archives diplomatiques*, pp. 210~234에서 오토 폰 비스마르크-손하우젠과 관련된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발췌해서 인용할 것이다. 이 책들은 일본의 역할을 경제 발전, 질서와 규율 의식, 문명의 전파자로 여기거나 때로는 무자비한 체제를 도입하기는 했으나 그러기에 가능했던 평정자로 여기며 환호를 보낸다. 이러한 평정이 그 자체로는 평온한 교역 증대를 이끌어낼 것이 틀림없었다. 이 당시의 많은 통치자가 이러한 시각을 공유하였고, 이러한 시각은 도쿄와 서울에 주재하는 많은 외교관의 시각과 같은 것이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조선에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프랑스로서는, 일본이 조선에 영향력을 확대해 갈 때 일본에 맞서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사실, 일본은 그 시기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프랑스에 모든 편의를 제공했다. 더구나 조선 병합 당시에 프랑스는 일본과는 논의가 매우 어렵게 흘러갈 수도 있을 중요한 통상 조약의 갱신을 앞두고 있었다. 프랑스의 외무부 장관은 병합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이 통상회담에서 교환조건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행사하는 점증하는 영향력을 프랑스가 인정해 가는 이 과정은 1905년에 시작되어 결국 1910년에 프랑스가 조선에서 거의 물러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II. 1905년 을사보호조약과 프랑스의 수동적 태도의 시작

이러한 프랑스의 수동적 태도는 1905년에 일본이 보호령 설치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조치들을 취했을 때에 분명히 나타난다. 조선 대표부가 조선으로부터 모든 주권을 빼앗으려는⁶⁾ 일본의 정책을 고발하기 위해서 1905년 9월 초 프랑스 외무부에 보낸 각서는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 11월에 보내진 다른 호

6) M. A. E., nouvelle série, *Corée, politique intérieure, Affaires intérieures sous le protectorat japonais, 1905~1906*, fol. 22 à 24 (4 septembre 1905)를 참조하라.

소문들도 마찬가지였다.⁷⁾ 콜랭 드 플랑시 역시 파리에 여러 차례 전갈을 보냈다. 그는 거기서 수시로 긴박한 상황, 조선의 의병활동, 조선 황제로 하여금 보호조약에 서명하도록 하려고 이토 히로부미가 방한한 사실 그리고 사용되어진 압력 수단 등에 관해서 기술하였다. 또한 그는 소문과는 달리 조선 황제가 프랑스 대사관에 피신하러 오지는 않았다는 점을 덧붙였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프랑스와 일본 사이의 좋은 관계에 해를 끼칠 뿐이었기 때문이다.⁸⁾ 실제로, 혹시나 프랑스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파리 주재 일본 대사관은 1905년 11월 22일에 비공식적으로 보호조약의 원문을 건넸으며, 그러면서 “양국 간에 존재하는 특별히 진심 어린 관계”를 감안하여, 이 조약이 모든 열강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될 때까지 조약문을 기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⁹⁾ 조약문이 공식적으로 배포되었을 때에는, 프랑스는 조선과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들에 주재하는 자신의 외교 대표부들에게 각 나라들의 반응이 어떠냐고 문의하는 일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¹⁰⁾ 프랑스가 일본의 주장에 설득되었음이 거의 분명하다.¹¹⁾

7) 예를 들어 조선 정부의 전보문은 우회하는 방식으로 파리 주재 조선 대표부에 보내진 다음 조선 대표부가 이를 프랑스 외무부에 전달했는데, 거기에는 “프랑스 정부의 호의와 정의”에 호소하였으며 “그대들이 보호조약이 체결된 조건들을 프랑스 정부에 분명히 밝히고 그대들이 국제법에 호소하면서 우리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의 태도에 반대해서 항의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써여 있다. Cf. *ibid.*, fol. 43 (21 novembre 1905).

8) Cf. *ibid.*, fol. 38 à 40 (20 novembre 1905).

9) Cf. *ibid.*, fol. 51 (22 novembre 1905).

10) Cf. *ibid.*, note du 24 novembre 1905.

11) 일본은 자신의 안전과 평안과 연관된 이유로 조선의 정치적·군사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정당화하였다. “지금까지 취해진 조치들은 순전히 조언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경험은 한 방향의 조치들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조선의 신중하지 못하고 중잡을 수 없는 행동은—특히 국제적인 사안의 영역에서 나타나는—과거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풍요로운 원천이었다.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현 상태를, 제약이나 규제 없이, 유지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새로운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일본이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일거에 끝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게 된 것은 일본 스스로에게 그리고 극동의 전반적인 평화를 바라는 자신의 진실한 희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조약이 다른 열강들의 정당한 상공업적 이해관계에는 피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덧붙여졌다. Cf. *ibid.*, fol 52.

조선인들의 항의는, 그것이 전보나 편지든 어떤 형식이건 파리의 외무부에 직접, 혹은 서울의 플랑시에게 전해진 경우였던 간에, 아무런 회답도 얻지 못했다. 그렇지만 파리 주재 조선 공사는 “프랑스 정부가 조선이 독립과 영토의 온전함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서, 외무부 장관에게 프랑스 정부의 호의와 정 의에 호소하러 갔다.”¹²⁾

또한 일본이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모든 법 규정들을 우롱했는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국제법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다.¹³⁾ 민영환이 자살하기 얼마 전에 쓴 절망적인 편지를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프랑스 장관을 수 신인으로 하는 이 편지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을 맺는다. “아! 장관님! 우리 조선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백성들의 충성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요!”¹⁴⁾ 프랑스인들은 이 모든 호소들에 눈감아 버렸다.

미합중국의 예를 따라 프랑스는 자신의 공사관을 단순한 영사관으로 바꾸 는 것을 받아들였으며, 조선 사람들과 관련된 사안에 관해서는 조선 외무부를 통감부로 대신하는 새로운 규정들을 적용하였는데, 통감부는 다른 나라의 대 표들과 말썽을 일으키지 않으려 애썼다.¹⁵⁾

유일한 문제는 프랑스가 자기 국민들이 조선으로 가기 위해서 조선 외무부 의 합의하에 그들에게 교부해야 했던 여권을 발부하는 문제였다. “단순히 지방 당국에 알릴 목적으로 한자와 한글로 된 1886년 조약 발췌문을 담은”¹⁶⁾ 이라고 불어로 쓰인 이 여권들은 어쨌거나 조선 당국이 사증을 준 것이었다. 프랑스는 가톨릭 선교사가 중요한 수혜자들이었던 이 특전에 상당히 집착을 보였다. 일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1년으로 기한이 제한된 여권을 그들 자신이 교부하기를 요구했으며, 또한 여권에 행선지가 명기되기를 바랐다. 이 마지막 조항은 일본

12) Cf. *ibid.*, fol. 43.

13) 전 총리대신인 조병세가 콜랭 드 플랑시에게 1905년 11월 26일 자로 보낸 편지, *ibid.*, fol. 77 à 79를 참조. 또한 민영환, 민영규와 다른 이들이 역시 콜랭 드 플랑 시에게 보낸 11월 28일 자 편지, *ibid.*, fol. 80을 참조.

14) 1905년 11월 30일에 받은 편지. Cf. *ibid.*, fol. 81.

15) Cf. *ibid.*, fol. 92 à 95 (16 mars 1906).

16) Cf. *ibid.*, fol. 132 verso (16 mars 1906) et fol. 138 (may 24th, 1906).

이 원칙적으로 조선의 방방곡곡에 적용해야 했던 1886년 조불조약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조항이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긴 논의가 진행되었다. 마침내 프랑스 영사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일본 여권을 소지할 것을, 하지만 시간이나 거주지의 제약 없이 소지하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선교사들은 그들 입장에서 상당히 완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후에야 자신들의 주소 변경을 알리는 데에 동의했다. 비록 외양을 살리기는 했지만 프랑스는 이처럼 일본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굽혔다.

1906년 한 해 동안, 서울 주재 영사 업무를 맡고 있던 베르토(Berteaux)는 일본이 어떻게 개혁 프로그램들을 확대해 가면서 점차 조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조선인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의 몇몇 조치들이 조선인들에게 해가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7월 6일에는 자신들을 무조건적인 병합으로 끌고 갈 위험이 있는 조선인들의 태도를 한탄하기도 했다.¹⁷⁾ 며칠 후(7월 18일)에 그는 다시금 조선인들이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음을, 하지만 그들의 항의가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적고 있다.¹⁸⁾ 베르토는 처음에는 조선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외국인까지도 겨냥하고 있었던 일본인들의 책략에 주목한 훌륭한 관찰자로서의 모습을 보여 준다. 최고법원 설립은 외국인 사법권을 폐지하게끔 만들 것이었으며,¹⁹⁾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외국어 학교에 대한 일본의 새로운 규정은 ‘엄격한, 그렇지 않으면 귀찮게 하는

17) “조선인들은 이미 별로 애를 써보려 하지도 않으며, 자신을 추스르기를 바랄 수 있기는커녕 악습의 희생물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악습 앞에 영원히 좌절하고 있다. 새로운 행정제도가 이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 제도는 이 나라에서 국가 경제발전엔 훌륭한 보조장치 역할을 하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가 이러하다면, 덧붙여진 규정은 손에 쥐고 있는 훌륭한 무기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일본인들이 그것을 이용할 유일한 이들이 될 것이고, 이 나라는 점령과 무조건적인 병합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백성들은 파멸과 소멸의 길로 이르게 될 것이다.” Cf. *ibid.*, fol. 176 à 179 (6 juillet 1906).

18) “조선인들은 그 본성이 꽤나 평온하고 소심하여, 일본 당국이 도입한 탄압조치 앞에서 금세 폭력적인 방식을 포기하고는 과거의 아름다운 꿈을 떠올리는 자신들의 입맛에 더 맞는 방식에 굴복해 버린다.” Cf. *ibid.*, fol. 194 à 197 (18 juillet 1906).

19) Cf. *ibid.*, fol. 226~227 (26 août 1906).

조치들'로 교사들의 기를 꺾어 놓으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²⁰⁾

같은 해에 외국 대표부들 주위에서 또 다른 저항들이 일어났지만 그 이상의 성과를 낳지는 못했다.²¹⁾

1907년은 조선에게 중대한 해였다. 1월부터 일본은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였고,²²⁾ 좀 더 나중에는 고종 황제의 퇴위로 그 힘을 더욱 강화할 것이었다. 프랑스의 태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해 초에 권재중이라는, 안동(경상북도)의 옛 관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영사관에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장문의 항의문을 보내왔다. 거기서 그는 조선인이 그 희생자가 되고 있는 모든 학대들을 기술하였으며 그 또한 국제법에 호소하였다.²³⁾ 이 편지는 아무런 회신도 받지

20) Cf. *ibid.*, fol. 243~244 (septembre 1906). 영사는 외국인 교사들이 좀처럼 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들의 사과는 그들의 노력의 결과에 근거해서 파고들게 되는 치열함 속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 입장에서, 즉 조선에서의 우리의 영향력이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감소하는 것을 슬퍼하며 바라보는 관찰자로서, 우리나라 사람 마르텔(Martel) 씨에게 자신의 위신이 아니라면 다른 것들은 고려하지 말고 최대한 고분고분하게 인내심을 지키라고 충고하는 쪽에 가깝다.” 프랑스는 당시에 마르텔이 운영하는 단 하나의 프랑스 학교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학교는 이후로도 한동안 유지될 것이었다. 1911년 가을, 조선의 초등교육 개혁은 서울에 있는 외국어 학교들을 폐지하게끔 만들었다. 마르텔은 그때에 프랑스어 교육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약속만을 받았을 뿐이다. Cf. M. A. E., nouvelle série, *Corée, politique étrangère, Dossier général: étrangers en Corée IV, 1905~1916*, fol. 249 (12 septembre 1911). 11월에 그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것이었는데, 그것은 다음 달 말에 끝나는 계약 종료 때까지 지불될 것이었다. 그는 또한 일본의 성보(Trésor sacré) 작위를 받았다. Cf. M. A. E., nouvelle série, *Corée, politique étrangère, Relations avec la France, Français en Corée II (1903~1916)*, fol. 175 (7 novembre 1911).

21) 예를 들어 익명의 누군가가 프랑스 영사관의 뜰에 던져 놓은 항의문을 보라. Cf. *Politique intérieure II* (op.cit.), *ibid.*, fol. 258~259.

22) 조선의 행정개혁이란 글 내용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Cf. M. A. E., nouvelle série, *Corée, Politique intérieure III, Affaires intérieures sous le protectorat japonais, 1907~1908*, fol. 18 à 28.

23)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일본은 황제와 그 대신들을 억압하였으며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었다. 일본은 국가의 모든 일의 운영에 개입하였다. 일본은 우리 영토를 유린했으며 우리의 재산을 약탈하였다. 우리 국가의 존망, 우리 동포의 생사 자체가 더 이상 우리의 손아귀에 있지 않다. 국제법은 이러한 잘못을 비난하고 있다. 일본인들이 이러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음은 너무나 명백하다. 따라서 만국의 모

못할 것이었다.

당시에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일본 당국과 프랑스 영사관 사이의 좋은 관계였다. 5월에, 영사인 블랭(Belin)은 박세순이 이끄는 정부의 사퇴를 알리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황제의 신임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편지에서 그는 미국 선교사와 일본 지방 당국 사이에 생겨난 마찰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자신도 일본인과의 좋은 관계를 갖는 것에 만족하는 것 말고는 다른 수가 없었다.²⁴⁾ 일본 주재 프랑스 대사인 제라르(Gérard)도 정부의 사퇴와 새로운 정부 구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새 정부는 통감부와 더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이러한 협력에 다다르기 위해서 이토가 추

든 열강들은 국제법에 근거해서 이 법에 반하여 저질러지는 모든 잘못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며, 아무도 이러한 명백한 위반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기에 -분명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내 스스로는 국제법이 바야흐로 사라지는 것인지, 세상에 자신의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인지, 사람들이 일본의 힘과 위력 앞에서 떨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것인지 묻게 된다. 올바른 이성에 그렇게 반대되는 행동이 이웃들 사이의 싸움처럼 알려지고 각자가 자신 안에 무관심하게 갇혀 지낸다면, 세상에 자신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법과 원칙을 자신의 발밑에서 짓밟으면서 폭력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혼란과 약탈의 씨를 뿌릴 것이고 유사한 불행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이는 열강들이 한마음으로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Cf. *ibid.*, fol. 12~13 (23 janvier 1907).

- 24) “조선에서 일본의 기획이 완전하게 확립되는 것은 확실히 느리고 어려운 일이지만, 확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기획은 역행하는 움직임에 극복하는 진보와 문명의 사명이다. 내 입장에서, 내게 맡겨진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령의 행정기관과 공식적인 관계를 갖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으며, 기꺼이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본 통감부로부터 호의 어린 정중한 접대를 받고 있으며 독립체제 때부터 시작된 갈등거리들을 해결하기 위해 내 주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보면 이 접대는 더욱 부각된다.……이토 후작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스스로 이집트에서의 영국의 관리체제와 튀니지에서의 프랑스의 관리체제를 모델로 삼고 있다. 다른 한편 일본 정부는 가장 경험이 많고 자신의 정부 인물 중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이토에게 이 임무를 맡기면서, 이렇게 시도된 어려운 시련을 식민 보호령의 개화자적 활동이라는, 지금까지 서구 열강에게만 한정되었던 영역에서 새로운 승리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였는지를 보여 주었다.” Cf. *ibid.*, fol. 29 à 31 (23 mai 1907).

진하는 정책과 식민 보호령의 ‘개화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²⁵⁾

이 시기에, 조선에 프랑스인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청산해야 할 이해관계가 있었고 일본의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일본 당국을 거쳐야만 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어내고는 했다. 이 어려움들을 무마시키는 임무를 맡은 영사는 자신이 이토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서구 열강으로부터 멀어지기를 바라지 않았던 이토는, 도쿄 주재 프랑스 대사가 언급하듯이, “이 나라에서 우리 국민과 우리의 이해관계에 가장 호의적인 대접을 제공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다.²⁶⁾

조선의 일들과 관련된 얼마 되지 않는 사례들 중 좋은 예는 이용익이 러시아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비밀리에 임무를 띠고 거기로 파견되었을 때 취해진 조치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 영사관은 이용익의 비망록을 전달하는 일을 거들도록 부탁을 받았다. 영사는 이를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 행낭들이 러시아에 전달되지 않도록 대처했는데, 법규상으로는 외교관들이 외무부가 전달하는 행낭 이외에 다른 어떤 암호 전문도 자신의 공식적인 자격으로 보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²⁷⁾ 두 달이 약간 못 되서 이용익이 사망한 이후에, 어

25) Cf. *ibid.*, fol. 32~33 (28 mai 1907).

26) Cf. *ibid.*, fol. 15 A~15 B (30 mai 1907).

27) Cf. M. A. E., nouvelle série, *Corée, politique étrangère, Dossier général: étrangers en Corée*, 92-93 (26 janvier 1907). 영사의 처신은 쉽지 않다. 그는 일본인들과 좋은 관계였지만 동시에 왕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는 후자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는데, 왜냐하면 왕실이 서울 주재 프랑스 대표부의 집기 양도에 해당하는 돈을 가능한 한 빨리 결제하기 위해서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는 일본인들이 황제의 측근들 속에 밀정을 놓았다는 의심을 가졌다. 조선인들의 전갈을 전달하는 데에 몸을 사려야 하는 것은 이미 1904년에도 있었다. 2월에 이범진은 러시아 주재 프랑스 대사를 통해서 조선 황제에게 전보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외무부 장관 델카세(Delcassé)에게 연락을 취했다.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에게 일정 정도의 권력을 이양하는 협정에 억지로 서명하게 하자, 델카세는 조선의 군주는 권력의 일부를 잃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나는 우리가 분명코 그처럼 쓸데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Cf. M. A. E., nouvelle série, *Japon, Prise en charge par la France des intérêts russes en Japon et en Corée, 1904~1905*, carton n° 94, dossier Guerre russo-japonaise -Neutralité, sous-dossier Communication et plis

떠한 전보도 영사관의 중개를 거쳐서 조선 황제에게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규는 유지되었다.²⁸⁾ 파리는 전보로 이러한 거절을 승인하였다.²⁹⁾

여름 동안 헤이그 회의가 열렸다.³⁰⁾ 세 명으로³¹⁾ 구성된 조선 대표단이³²⁾ 조선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다른 대표단들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그들은 회의에 참석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다행히도 『레클레르 (l'Eclair)』지에서 일하는 기자인 르 블랑제(Le Boulanger)가 현지에서 있었는데, 그는 조선 대표단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나서 “조선의 불평. 헤이그 회의는 힘이 법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가?”라는 제목을 단 장문의 기사를 실을 것이었다. 그 기사에는 일본에 대한 조선 대표단의 항의와 그들이 서구 국가들의 도움에 거는 기대가 나타나 있다.³³⁾ 기사는 헤이그 회의가 조선

destinés au gouvernement coréen, ministre de Corée à St Pétersbourg, télégramme du 10 mars 1904.

28) Cf. *ibid.*, fol. 94 (24 mai 1907).

29) “나는 (전보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필요한 지침을 내렸다. 어떤 실수가 일어난 후로도 지침들이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와 연락을 삼가주십시오.” Cf. *ibid.*, fol. 95 (23 mars 1907). 영사가 받아들이는 표면적인 동의는 그에게는 외무부의 엄중한 주의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외무부는 그가 상당히 신중하지 못한 일을 범했으며 조선의 계약에 간여하고 거기에 도움을 주는 일은 프랑스 관리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음을 환기시키고자 했다. Cf. M. A. E., nouvelle série, *Corée, politique étrangère, Relations entre la France et la Corée II, 1903~1916*, fol. 93 et 94-95.

30) 회의는 6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되었다. 44개국에 논의에 참가하였다.

31) 이우중, 이상설, 이준이 그들이다.

32) 일본 주재 프랑스 대사인 제라르는 ‘헤이그 회의에 파견된 자칭 조선 대표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도쿄와 서울 양쪽 모두에서 보호령 정치에 미친 재앙적인 결과와 조선 황제가 처하게 된 어려운 상황을 강조하였다. Cf. *ibid.*, fol. 96~97 (11 juillet 1907).

33) 이 기사의 말미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을 수 있다. “그(조선 대표)가 헤이그에 나타난으로써, 대표단들의 추상적인 논의의 한가운데에서 생생한 문제 하나가 제기되었다. 힘을 압도하는 국제법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끔찍할 정도의 현실주의자들이 내뱉는 가장 끔찍한 말이 늘 옳은 것이고 힘이 법을 압도하는 것인가? 사방에서 정치가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에 조소를 보낸다. 그 유일한 존재 근거가 법을 힘보다 우위에 두려는 것을 목청 높여 주장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인 법정 앞에서 헤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끝을 맺었다. 불행히도 조선 문제는 교묘히 따돌려졌다.

하지만 조선 대표단이 네덜란드에 파견된 것이 국지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도, 조선의 일본화 과정을 가속화시켰던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파견된 사람들은 황제의 직속 사절로, 따라서 1905년 조약과 실질적인 보호령화 과정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여겨졌다. 더구나 고종은 그때까지 조선에 보호령을 설치하는 1905년 11월 18일의 조약에 자신의 옥새를 찍지 않고 있었다. 한편 이는 헤이그로 향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부 조선인들에게 조약의 일방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끔 했다. 이토가 조선 황제로 하여금 옥새를 찍도록 강요하도록 결정했으며, 조선 황제가 이를 따르기보다는 차라리 7월 19일에 퇴위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은 어쨌든 사실이다.³⁴⁾ 퇴위가

그도 마찬가지인가? 그렇다면 조선 대표단이 제기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회의에서 그들을 요리조리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기사는 M. A. E., nouvelle série, *Corée, politique intérieure III, Affaires intérieures sous le protectorat japonais, 1907~1908*, fol. 41에 있다.

- 34) 그의 후계자인 황태자 이척은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는데, 아주 좋은 평판을 누리지는 못했다. 그가 1907년 1월에 32세의 나이로 혼인했을 때, 외교사절들이 피로연에 초대받았다. 프랑스 영사인 조세프 블랭은 이 피로연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황태자가 신체장애자이며 직계 후손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Cf. M. A. E., nouvelle série, *Corée, Questions dynastiques et cour, 1897~1917*, fol. 143~144 (25 janvier 1907). 그의 부친이 일본의 최후통첩 이후 퇴위했을 때, 조선의 언론(7월 19일자 공보)에 한 포고령이 공포될 것이었다. 프랑스 외교 문서고(cf. *ibid.*, fol 150~151)에서 발견된 이 포고령 번역문의 여백에는 다음과 같은 논평이 덧붙여져 있다. “이 아들은 불쌍한 바보이다.” 영사는 즉위식에 대해 보고할 때, 다음과 같이 썼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새로운 왕의 통치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이척 전하는 아시아 나라에서라고 해도 군주가 가져야 할 타고난 재능과 지적인 자질이 전혀 없다. 모든 관점에서, 그는 자신의 신민에게서 거의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Cf. *ibid.*, fol. 157 (21 juillet 1907).

1907년에서 1909년 사이에 세계 일주를 했던 앙리 라브루(Henri Labrousse)는 『일본 제국주의(*L'impérialisme japonais*)』(Paris, Librairie Ch. Delagrave, 1911, p. 332)라는 자신의 책에서 신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초상화를 제시했다. “굵힐 줄 모르는 전 황제를 대신해서, 그의 장자로 33세 나이이지만 유약한 성격과 성격을 지녔으며 정신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절반은 환자이며 일본의 고분고분한 앞잡이인 이척이 명목상의 군주가 되었다. 이토는 새 황제를 훈육시켰

신속히 파리에 알려졌다.³⁵⁾ 또한 일본 주재 프랑스 대사에게도 통보되었는데, 그는 파리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올렸다. “내가 보기에, 일본 정부가 자신의 보호령을 재편하고,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³⁶⁾ 보호령을 강화하고 행정 권력을 통감부의 수중으로 이관하는 새로운 협정이 며칠 뒤에 체결되었다.³⁷⁾

데, 새 황제는 자신들의 왕과 조국에 충성한 죄밖에 없는 조선 대표단을 처벌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시작으로 선왕의 측근들 가운데에서 조선인들로 하여금 나라를 지키도록 주도한다고 의심되는 애국자들을 처했다. 국제여론을 놓고 보자면, 대체로는 이 무자비한 강탈에 항의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신은 너무 높은 곳에 계시고, 조선은 너무 멀리 있다.……”(pp. 218~219).

라브루는 뒤이어 선왕을 위해서 마련된 연회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이 행사가 아무 일도 없이 진행되도록 내버려두었다. 그들은 전혀 행사가 금지하지 않아도 될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른쪽에 새 군주, 채무자, 생산물을 챙기기만 하면 되었다. 이들의 나약한 의지와 지적인 무기력증-기이한 성적인 무기력증으로 더 복잡해진-은 일본인들에게 국가 장악을 보장하였다. 나는 시동보다 요란하게 치장한, 볼품없는 이 군주가 뺨은 축 처지고 눈빛은 꺼질 듯한 채 지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마차로 시민과 서양인이라는 태양을 가리러 온 군주보다 더 무기력하고 더 고분고분하고, 더 복종적인 군주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다.”(pp. 239~240). 1911년에 출판되기는 했지만, 이 책은 1908년 1월부터 등장한 여러 잡지에 실려진 기사들을 토대로 하였다. 1907년 11월 16일 편지에서 블랭은 새 황제는 같은 궁궐 안에서 자신의 아버지만을 만날 수 있으며, 그들은 이전처럼 더 이상 매일 만날 수는 없었다고, 왜냐하면 그것이 일본에 대한 저항 위험을 줄이기 때문이라고 보고한 점은 흥미롭다. 하지만, 특히 새 궁궐은 외국 공관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는 도피하여 외국 공관에 도피처를 마련할 위험을 피하려는 것이었다. Cf. *Corée, Questions dynastiques et cour, 1897~1917*, fol. 164.

35) Cf. *Corée, Politique intérieure III, Affaires intérieures sous le protectorat japonais, 1907~1908*, fol. 46 (21 juillet 1907).

36) Cf. *ibid.*, fol. 47 (21 juillet 1907).

37) 조선인들은 이 협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 협정은 “조선 백성의 행복과 번영을 증진시킬 의도에서 조선에 부와 힘을 줄 목적으로”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기 때문이다. Cf. *ibid.*, fol. 54~55.

Ⅲ. 프랑스, 조선 독립 상실의 방관자

조선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들이 프랑스에는 거의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않았다. 일본에 도움이 되는 이 보강조치는 조선이 행한 규칙 위반의 논리적 결과일 뿐이었다. 『르 탕(*Le Temps*)』 지는 “가엽고도 온순한 조선”이라는 동정어린 제목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별로 애정 어린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인용해 볼 만하다. “……이 반란은 게다가 그저 한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조선인들은 모든 계속적인 노력이나 모든 조직적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운명과 그들 자신에게 걸맞은 미래를 갖는다.” “최근에 이토 후작이 조선 정부에 말하기를, 오늘날 조선은 독립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많은 조선인이 나라가 독립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은 한 국가가 그 자체로, 자신 스스로의 노력으로만이 독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열강도 그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선이 독립을 원한다면,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목표에 맞추어 지식과 필요한 힘을 갖추는 것이다.” 조선은 힘과 지식을 갖추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조선이 그것을 하고 싶었을지라도 어쩌면 그것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굴뚝새가 백조와 똑같이 걸으려 한다면, 금세 가랑이가 찢어질 것이다. 일본인들의 행정적 재능에 비해서, 조선인들의 빈약한 노력은, 그중에서도 부패와 무기력은 보잘것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르 탕』지는 일본인들의 업적을 칭찬하면서 글을 이어갔다. 그중에는 “……어느 것도 그들의 감시를 피할 수 없었다. 수력을 이용하는 데에서 매춘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계획, 규정, 개혁, 새로운 제도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했다.” 일본이 조선 내 프랑스 기업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는 점에 흡족해 하고서, 이 신문은 덧붙이기를 “……그리고 정치적 관점에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개입은 포츠머스(Portsmouth)조약 이래로 예견되었

으며 모든 열강이 암묵적으로 받아들인 사안이다. 일어난 일은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문명세계의 의도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은 舊 조선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사는 현실정치에 대해서 다소 냉소적이지만 인상적인 다음의 문장으로 끝을 맺는다. “모든 것이 일부에게는 고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치에 관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³⁸⁾ 프랑스 외무부 문서고에 소장되어 있는 이 기사를 보는 것은 흥미롭다. 기사는 다음과 같이 여론뿐만 아니라 외무부의 견해를 상당히 잘 정리하였다. 조선은 독립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문명세계에 자신을 열어놓기 위해서는 강하게 종속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 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무관심을 좋게 평가하고 있다.³⁹⁾

이어지는 서신들에서, 도쿄 주재 프랑스 대사와 서울 주재 영사는 일본의 관련 당국을 조선에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하세가와(Hasegawa) 장군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저 구경꾼으로서 사실들을 기술하는 데에 만족하고 있다.

이때부터 일본에 의한 조선의 병합 문제는 예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제라르가 외무부 장관에서 보낸 편지를 참고해 보면, 일본 황제를 배알하러 일본으로 돌아갔던 이토 히로부미는 병합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확신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조선에 일정한 독립성을 부여할 후견체제에 더 끌렸던 것처럼 보인다.⁴⁰⁾

38) Cf. *ibid.*, fol. 76. 이 신문 기사는 1907년 7월 29일 자 것이다. 「가엸고도 온순한 조선」이라는 기사 제목은 1904년에 출판된 같은 제목의 조르주 뒤크로(Georges Ducros)의 책(H. Champion, Paris)을 참고로 삼았다. 조선을 상당히 어렵게 그린 이 당시 서구에서 나온 대부분의 글들과는 달리, 이 책은 조선과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감정이입을 보이고 있다.

39) 1907년 7월 30일 자 편지에서, 영사인 블랭은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개괄한 후에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토 후작은 내게 여러 번에 걸쳐서 그리고 간구하듯이, 조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한 공화국 정부의 태도와 프랑스의 여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사람으로 황제를 만나보기를 부탁했다.” Cf. *ibid.*, fol. 77~78.

40) “……이토 후작은 오늘 대사관에까지 찾아온 방문 동안 조선의 보호령 재편에 대해서 아래에 요약한 내용들을 내게 확인해 주었다. 그는 덧붙이기를 자신의 직무의

미국 주재 프랑스 대리대사와 같은 다른 프랑스 외교관들은 훨씬 더 현실 주의적인 자세로 사태를 바라보았다. 상황은 다를지라도 이 대리대사는 영국의 통제하에 놓이게 된 이집트와의 유사성을 보았으며 일본의 관리체계는 “이성적이고 문명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⁴¹⁾

1907년 말과 1908년은 일본인들에게 쉽지 않은 시기였다. 일본 황태자의 서울 방문(1907. 10)이 일본인들이 내놓은 좋은 의도에 대해서 조선인들이 품고 있는 불신을 없애지는 못했다.⁴²⁾ 여러 편지들이 조선인들의 저항이 커져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가 은자의 제국에서 봉착하는 저항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본의 개혁적인 작업을 조선의 독립과 현 왕조를 유지하는 일과 타협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조선에 순차적으로, 처음에는 읍면 단위에서 그리고는 군과 현에서 대표제의 체계를 도입할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하지만 조선 민족 스스로가 그러한 불가능한 시도에 굴복하지 않으며 자살과 같은 저항 상태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여기서 일본의 여러 정부 인사들에게는 조선 운명의 결정적인 종말로 여겨졌던 무조건적인 병합은 모든 다른 해결책이 결단코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에만 후작의 현재 계획을 대체할 것이다.” Cf. *ibid.*, fol. 90, verso (18 septembre 1907).

41) “……텔엘케비르(Tel-El-Kébir) 전투 이전의 이집트인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인들은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열강의 놀라운 군사적인 우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인들이 1895년에 베이징까지 밀어붙였다면, 그들이 무크단(Moukdan)을 함락시킨 다음 아무르강 너머까지 러시아인들을 쫓아버렸다면, 조선인들은 마히드(Mahid)의 참패가 이집트인들에게 심어 주었던 것과 유사한 종교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일본인들을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다못해 금전적인 배상금도 규정하지 않은 포츠머스 평화에 아시아인들에게 일본인들의 뛰어난 수 없을 만큼 큰 힘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하는 데에는 그리 적당하지 않았다. 이 조약은 조선인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허약한 봉건군주에게 굴욕을 던져 준 시모노세키(Shimonoseki)의 평화보다 더 미미한 영향을 끼쳤다. 그런 점에서 조선의 형식적인 병합은 일시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며 이 나라는 단지 일본 관리체제의 합리적이고 문명화된 체계가 적용되는 것만을 지켜볼 뿐이다.” Cf. *ibid.*, fol. 91~92(22 septembre 1907). 영국과 프랑스가 1876년에 이집트의 행정에 개입한 일은 위라비(Urabi) 대령이 이끄는 민족주의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위라비 대령은 운하 지역에서 북쪽에 공격을 시도했고 텔엘케비르(1882년 9월 13일)에서 영국에 패배하였다(프랑스는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 영국은 프랑스인과 오스만 투르크인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 별다른 자격 없이 자신의 지배지를 설치하는 데에 이 승리를 이용했다.

42) 도쿄 주재 프랑스 대사는 이 여행에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발견하였다. “일본의 황실만이 조선 황실이 겪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고 있으며 하세가와 장군⁴³⁾이 취한 탄압조치에 맞서 첨예한 애국주의 감정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⁴⁴⁾ 이러한 저항은 일본의 결연한 태도에 전혀 해를 가하지 못했다. 게다가 일본은 언론에 등장할 수 있는 설명들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했다.⁴⁵⁾ 이처럼 사람들은 1907년 말에는 사법제도 개편, 그리고 1908년 전반기에는 동양척식회사의 창설을 목도했는데, 특히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은 동양척식회사를 조선 흡수의 결정적인 도구로 평가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발전의 수단도 볼 수 있었다.

일본인들은 새 군주인 이척이 나라의 남쪽을 여행한 일을 자발적인 의지인양 그리고 그가 완전한 자유를 지녔다는 증거인 것처럼 제시하였는데, 그 여행은 그리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⁴⁶⁾ 그리고 며칠 뒤에 그가 조선의 북쪽 지

있으며 조선 황실이 미래에 대해서 갖는 불안감을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다.” Cf. *ibid.*, fol. 99 à 101 (24 octobre 1907). 그는 또한 자신의 편지에서 이 여행은 일본 황제가 일본에 가장 협조적인 조선 대신들에게 최고의 일본 훈장을 부여한 경우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43) Cf. *ibid.*, fol. 108~109, 1907년 11월 6일 영사의 편지. 한편 그는 파리 주재 일본 무관을 지냈던 아카시(Akashi) 장군의 서울 부임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이 장교는 우리에게 진정한 우애의 감정을 털어놓았으며 이러한 사정은 매우 즐거운 일이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우리 선교사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44) 1908년 6월 10일, 일본 대사는 파리에 보고서를 보냈는데 거기서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조선의 폭동에 관한 소식은 종종 과장되었다. 사실, 작년부터 폭동 기간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현재로는 모든 철도뿐만 아니라 중요한 지역에서 교역이나 통신에서 질서가 확립되었다. 가와조쿠(조직적 폭도)가 갈수록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무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단지 패배한 지역에서뿐이었다. 하지만 내무부에서 보낸 증원군 덕분에 사람들은 그 나라의 완전한 평안을 얻으리라 기대할 수 있었다.” Cf. *ibid.*, fol. 135.

45) 서울 주재 프랑스 영사는 법령으로 규정된 조선과 일본의 합병은 일본이 토지 재산에 발을 들여놓는 행위를 감추려는 속임수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뒤이어 전개될 일본인 이주는 그 당시 인구가 너무 많았던 일본에 도움이 되리라는 점을 그리고 이주민이 일본에게는 무시할 만한 숫자이지만 “이웃한 제국의 영토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강력한 발효 효과가 될 것”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Cf. *ibid.*, fol. 142~143 (7 septembre 1908).

46) “……지방민들은 사람들이 추구해 온 군주적 유명이라는 생각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현 황제의 도덕성에 부여할 만한 가치에 어떤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그들의 깊은 속내로는 내면적 권력의 상징이 어떻게

방으로 새로운 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 일본인들은 이번에는 황제가 기꺼이 여행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⁴⁷⁾

프랑스의 입장은 대략적으로 1909년 4월 17일 자 『르 피가로(Le Figaro)』지의 한 기사로 잘 요약되었는데, 일본이 자신의 영토에서 거둔 발전을 높게 평가할 뿐 아니라 조선에서 행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냈다. 일본인들의 과도한 행위들은 단지 과정 중의 실수로만, 혹은 요컨대 문명화 작업과 비교해서 별 일이 아닌 것으로 여겨졌다. 게다가 『르 피가로』지는 르로와-볼리외(P. Leroy-Beaulieu)가 『프랑스 경제학자(L'Econimiste français)』지에 게재한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는 일본에 찬사를 보내면서 일본인들이 저지를 수도 있었을 과도한 행위들이 종종 조선인들의 태도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⁴⁸⁾

해도 전 황제에게로 결집되었다. 그들에게 전 황제는 애국주의적 요구의 상징물이었다.” M. A. E., nouvelle série, *Corée, politique intérieure, IV, Affaires intérieures sous le protectorat japonais, 1901~1924*, fol. 10~11 (14 janvier 1909).

47) Cf. *ibid.*, fol. 16~17.

48) 1908년 9월에 게재된 이 논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에서의 일본의 식민화 작업을 사람들이 완전히 평가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행정활동과 공공사업 이외에, 일본인 이주민들이 수행한 일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이미 분쟁 이전부터 다수였고 분쟁 이후로는 해마다 수천 명씩 이주하고 있다. 어쨌든 간에, 재정과 화폐 유통에서 질서 확립, 조세 납부와 사법 행정에서의 악습 폐지, 사법권과 행정권의 분리는 무시할 수 없는 성과이며 이미 좋은 방향으로 실현된 것처럼 보인다. 승자들이 때때로 강압적인 면모를 보이지 않는지, 그리고 그들이 공공업무에서 조선인들에게 내어줄 자리를 지나치게 줄이지는 않았는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기존 행정의 혐오할 만한 전통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많은 유럽인들도 행정과 재정의 지나친 과잉에 빠져들었다.” 피에르 르로와-볼리외(1871~1915)는 에콜 폴리테크닉 출신으로 수차례 아시아를 여행한 교수였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1873년에 창간한 『프랑스 경제학자』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기고하였다. 1900년에는 『아시아의 혁신, 시베리아-중국-일본(La rénovation de l'Asie, Sibérie-Chine-Japon)』(Paris: Librairie Armand Colin, p. 182)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거기서 식민지를 갖지 못한 일본의 좌절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식민지를 갖기에 일본은 너무 낡은 세계에 너무 늦게 도착했다. 업신여길 정도는 아니지만 포르모스(Formose) 하나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은 일본에게는 쓰라린 일

더욱이 프랑스는 일본인들의 식민체계를 비판하기에는 좋은 처지가 아니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일부 여론으로부터는 조선인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유약한 입장을 취한다는 평가를 자주 받으면서도⁴⁹⁾ 복수심으로 가득한 조선인들의 증오를 무력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었는데, 그 나름대로는 영국이 이집트에서 사용한 식민지 관리체계를 모방하려고 시도했다.⁵⁰⁾ 그가 죽은 후

이다.”(p. 303).

- 49) 이러한 여론은 요코하마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던 시마다 사부로(Shimada Saburo)가 1909년 4월 4일 『타이요(Tai-yo)』지에 「조선의 통감부-허울뿐인 행정」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한 기사에 잘 요약되어 있다. “나 역시 처음에는 조선인들은 불평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며 우선은 그들에게 모든 면에서 부드럽게 대하는 방식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일본에 사는 조선인들에 관해서, 그들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서 보게 된 몇 가지 예들은, 내 자신이 직접 겪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심어줄 수 있게 하는 데에는 때로는 유연하게 때로는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그리고 이들을 우리의 지시에 완전히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사용하는 것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명령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따르게 만들어야 한다. 그들이 그럴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흡족한 마음을 내비칠 것이요, 그들이 그러기를 거부한다면, 그리고 그럴 마음이 있다고 해도 너무 부족하다면, 내 생각에는 이 백성들을 지배할 다른 방법이 없기에 이들을 결코 후원하지 말고 강하게 단련하도록 분명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 내가 ‘이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몇몇 조선인들의 경우에서 영감을 얻은 탓이지만 사법적인 조치가 조선에 대한 정부의 규칙으로서 모두에게 구분 없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사의 완역을 보려면 Cf. *ibid.*, fol. 46 à 54. 조선에 대한 그리 비판적이지 않은 글 역시도 종종 조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 가령, 장 드 네탕쿠르-보브쿠르(Jean de Nettencourt-Vaubecourt)는 자신의 책인 『싱가포르에서 모스크바까지 지그재그로(En zigzag de Singapour à Moscou)』(Plon-Nourrit et Cie, Paris, 1905, p. 321)의 9장 「조선 7백 킬로미터(해안에서 해안으로)」에서 사람들이 조선에서 발견하는 전차와 같은 모더니즘은 매우 허위적인 것이며 거기서 국민적 기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p. 235)고 쓰고 있다. 또한 “조선은 너무도 무기력하고 상상력이 결핍되어서 여러 가지 필요에서 여전히 중국 여와 놀라울 정도로 힘찬 노동력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 50) 프랑스어 신문인 『레트왈 벨즈(L'Etoile Belge)』지는 1909년 5월 2일에 「조선의 일본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일본인들의 업적에 찬사를 보냈다. “그들은 조선에서 영국인들이 이집트에서 했던 것과 거의 같은 성과를 구현했다.” 그리고 “질서 체제로 무정부 상태”를 대체했다. “개혁은 많은 관습을 흘려 놓았고 많은 악습과 특권을 쓸어버렸다. 당연히 저항은 있었다. 일본인들은 그 저항들을 매우 엄격하게 억눌렀는데, 결론적으로 그들의 관리체계는 마치 영국의 지배가 이집트

(1909. 10)에는, 특히 튀니지⁵¹⁾와 마다가스카르⁵²⁾에서 얻은 성과들 때문에 프랑스식 식민경영체계를 선호하는 흐름이 생겨날 것이었다. 프랑스는 이 두 나라에, 특히 마다가스카르에서 신속한 체계에 의존하였는데, 그것은 그 지역의 모든 반대세력을 억누르고 과거를 백지상태로 만들면서 다른 민족들에 주장한 바 있던, 완전한 병합에 마지막 걸림돌이 되는 치외법권을 폐지하게 하는 것이었다.⁵³⁾

조선에서 이러한 권리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이 여러 도시에 설치한 조계지로부터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진 사법적인 특권들에서, 특히 양국민이 모두 관련된 재판에서 출신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7월부터 일본 당국은 일본의 사법권이 조선의 사법권을 대체하는 여러 조치들을 발표하였는

인들에게 행운이었던 것처럼 중국(원문 그대로) 사람들에게 행운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집트에게 잘 기능했던 것이 조선에도 이식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 51) 베를린회의(1878) 이후 영국은 사이프러스를 얻었으며 프랑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인정했다. 그리고 나서 프랑스는 튀니지에 많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닌 이탈리아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또 쥘 페리(Jules Ferry)는 국경분쟁을 빌미 삼아 파병을 결정했다. 바르도(Bardo)조약(1881)은 프랑스 변리공사에게 외교와 군대를 이관했으며, 군대가 어떤 반란에 진압한 뒤에 공식적으로 보호령을 설치하는 라 마르사(La Marsa)조약(1882)을 맺었다. 한동안의 군정 시기 이후에는 민정으로 되돌아갈 것이었다. 그때에 튀니지는 주목할 만한 경제발전의 시기를 경험할 것이었다.
- 52) 마다가스카르의 점령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프랑스 변리공사 설치를 규정한 최초의 조약(1885) 이후에 저항이 일어났지만 10년 후에는 원정대 파병이 이루어지고 이 원정대 사령관이 여왕 라볼라나 3세(Ravalana III)에게 보호령 조약에 서명하게끔 했다(1895. 10. 1). 1896년 8월 6일, 프랑스 의회는 합병법에 투표했다. 마다가스카르는 이렇게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다. 마다가스카르 섬에 머무르는 동안(1896~1905), 갈리에니(Gallieni) 장군은 여왕을 추방하였고(1897. 2. 27), 정력적인 평정작업을 이끌었다.
- 53) 프랑스 영사는 통감부 구성원들 사이에는 강력한 합병주의 흐름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튀니지와 마다가스카르에서의 우리의 성과와 관련해서 일본인들의 찬사를 받는 우리의 관리체제를 선호하는 강력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마다가스카르는 보호령을 식민지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특히나 그들의 흥미를 끈다. 이 방식은 당시의 시각에서 더 타당하든 왜냐하면 더 신속하기 때문이다. 그 방식은 과거를 백지상태로 만들고 당연하게도 치외법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이끌 것이다.” Cf. *ibid.*, fol. 114 à 117 (23 novembre 1909).

데, 이로 인해 영사 사법권의 폐지와 관련해서 여러 외국 열강들과 협상이 열릴 것이었다.⁵⁴⁾ 1909년 10월 20일 파리 주재 일본 대사관은 조선에서의 사법제도 재편이 1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프랑스 외무부에 사전 각서를 보냈는데, 새로운 편제가 조선과 조약을 맺은 열강들의 사법적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을 것임을 프랑스에 분명히 밝히고 있다.⁵⁵⁾ 이 문제에 관해서 외무부 장관인 스테판 피송(Stephen Pichon)도 서울 주재 프랑스 영사에게 서신을 보냈는데,⁵⁶⁾ 편지에서 드러나듯이 그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기를 피하고 있다. 이러한 답신 부재로 인해, 일본 대사관 관리가 외무부 장관이 사전 각서를 잘 받았는지를 문의하기 위해 방문하게 된다. 이러한 행보는 우리는 쓸데없다고 판단하는 수신 확인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⁵⁷⁾

이러한 개혁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공포되었을 때, 사람들은 한 가지 조항은 조선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에서 일본법 규정들이 민사적으로 적용되도록 정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조항은 조선법이 조선인과 외국인이 모두 결부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음을 암시적으로 규

54) 1909년 7월 12일에 서명되었고 일주일 후에 기밀로 파리에 보내진 비망록 속에서 이러한 조치들의 원문을 찾을 수 있다. 영어로 된 원문은 *ibid.*, fol. 76, fol. 117, 그리고 불어판은 fol. 78을 참조하라. 조선의 사법 및 교정·행정을 향상시킬 목적을 지닌 이 글은 조선에 있는 외국 열강의 신민과 시민뿐만 아니라 조선 신민의 인신과 재산의 보호를 보장해야 했다. 또한 조선의 금융 기반을 공고히 해야 했다. 영사관 책임자인 파이야르(Pailliard)는 조선에서 정의는 불충분한 상태이며 낡아빠진 사법제도 적용은 임의적인 결정에 큰 여지를 주었다고 판단했다. Cf. *ibid.*, fol. 95~96 (8 octobre 1909).

55) Cf. *ibid.*, fol. 100. 여러 외국의 염려를 차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열강들이 앞으로 시행될 개혁에서 훌륭한 사법 행정의 모든 기본적인 보장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굳게 믿는다.”

56) “나는 이 통보문이 영사 사법권에 한정해서 선협적으로 프랑스의 이해관계에 해를 끼칠 성격을 지닌 것은 없어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렇지만 그것을 확대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선의 보호령 행정에 참견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일본 대사관에 그것을 수취했는지 알려줄 의무는 없다.” Cf. *ibid.*, fol. 102 (22 octobre 1909).

57) Cf. *ibid.*, fol. 136 (14 décembre 1909).

정한 1886년 6월 4일의 조불조약 3조 8항과 배치되었다. 따라서 규정의 의미와 조약 당사자 양쪽 모두의 사전 합의 없이 수정된 조약의 의미 사이에 실제로 대립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피송은 1909년 11월 28일에 그 조항의 규정들이 위에서 인용한 사전 각서로 보장받은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지만 이러한 사법적 문제가 프랑스인들에게는 특히 이론적 이해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내놓은 공식적인 보장책에 만족한다고 쓰고 있다.⁵⁸⁾

다음으로는 1910년 봄 병합이 이루어지고 일본과 조선의 행정기구가 거의 하나로 합쳐질 것이라는 수많은 소문이 떠돌고 난 이후, 전쟁장관인 테라우치 마사타케(Terauchi Masatake)가 통감으로 임명된 이후를 살펴볼 차례이다. 이는 1910년 5월의 일이지만, 그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경찰 비상조치들을 내린 다음 7월 말에야 도착할 것이었다. 그의 도착은 반일감정을 지닌 활동을 재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었다.⁵⁹⁾ 조선과의 조약을 체결했던 열강들에게 이 사건을 예고하려는 일본 정부의 바람,⁶⁰⁾ 조선과 포르모스, 사할린에 전념하기에

58) “……조선에서 사법 문제는 우리에게 거의 이론적인 이해관계만을 지닐 뿐이기에, 내 생각에는 이 점에 관해서 일본 정부와 논전을 벌이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나는 문제의 사전 각서 안에 담겨 있는 공식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보장책에 만족하기를 바라며 당신은 그저 혹시나 조약으로 우리에게 인정되어진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는지를 주시하기 바랍니다. 더구나 내외국인이 모두 관련된 재판의 경우에 대해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한 후에는, 적용가능한 일본법은 적어도 舊조선의 법만큼의 보장을 제공할 것처럼 보인다. 당신이 1886년 6월 4일 조약의 3조 8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항의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단지 이 법의 적용이 당신이 보기에 우리 국민에게 부당하도록 이끌어질 성격인 경우일 것이다. 끝으로 일본 정부가 쉽사리 이러한 비판에서 벗어날 수단을 찾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선은 프랑스와의 조약에서 자신의 법을 결코 개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이론적으로 어떤 것도(일본은 그럴 수밖에 없다) 조선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거나, 모든 일본 법률이 지방적 용도에 따라 필요한 형태로 그것을 비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Cf. *ibid.*, fol. 119~120 (28 novembre 1909).

59) Cf. *ibid.*, fol. 182 (23 juillet 1910).

60) 코무라(Komura) 백작은 도쿄 주재 프랑스 대사를 방문하여, 신임 통감은 합병을 쉽게 하기 위해 준비된 새로운 조치들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이러한 개혁의 도입도 지금부터 제국 정부가 조만간 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급진적인 조치’는 아니라는 점을 기밀로 밝힐 것이었다. 이제 ‘혼합’의 단계에 다

앞서 조선을 식민지의 반열로 떨어뜨린 식민부서(척식국)의 신설과 같이 6월에 취해진 조치들은 그리 놀라움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다. 7월 5일, 프랑스 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합병을 완성하는 데에 영사 사법권 문제와 조선과 외국 열강들 사이에 체결된 여러 조약들 말고는, 이씨 왕실과 주권이 맞게 될 똑같은 운명만이 남아 있었을 뿐이다.”⁶¹⁾

8월 23일, 서울 주재 프랑스 영사는 전보로 그 전날 밤 어떤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황제가 퇴위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돈다고 알렸다.⁶²⁾ 하루 전인 8월 22일에는 파리 주재 일본 대리대사가 본국 정부로부터 일본과 조선 사이에 합병조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 통보받았음을 알리는 비망록을 프랑스 외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⁶³⁾ 8월 29일까지 기밀로 남겨두어야 했던 이 소식을 알리면서, 대리대사인 쿠리노(Kurino) 남작은 “외국에 대한 조계권은 사법제도와 관련된 사안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조약문은 일본이 추구하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선언문이 (원래 선언되어야 했을 날인 8월 29일 이후에) 덧붙여져서 전달되었다.⁶⁴⁾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취한 데

다른 것이다. Cf. *ibid.*, fol. 168~169 (17 juin 1910).

61) Cf. *ibid.*, fol. 176. 외무부 문서고(*ibid.*, fol. 175)에는 6월 25일 자의 Hamburgischer Correspondant의 발췌문이 보관되어 있다. 이 문서는 런던에서 온 소식에 따르면, 다가올 7월 15일에 합병이 있을 것임을 알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합병이라는 해결책은 여론에서 전혀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62) Cf. *ibid.*, fol. 187.

63) M. A. E., nouvelle série, *Corée, politique intérieure V, Affaires intérieures après l'annexion du Japon, 24 août-décembre 1911*, fol. 5 (22 août 1910).

64) 이 선언문은, “조선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의 번영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외국인 거주민들의 안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4년에 걸친 헛된 노력을 끝내며 이 조약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 선언문은 또한 외국과 관련된 몇 가지 규정을 확정했다. “① 외국 열강이 이제까지 조선과 맺은 조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일본과의 현존하는 조약은 실현가능한 한 조선에도 적용될 것이다. 조선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한 일본에서와 동일한 권리와 면책권을 누릴 것이며 법적으로 획득한 그들의 권리는 그들이 어떤 경우에도 일본의 사법권 안에 예속된다면, 보호될 것이다. 일본제국 정부는 합병조약이 발효되는 때에 여전히 조선의 외국영사법정에 현재 계류된 사안에 관해서는, 그 사법당국은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전술한 법정일 것이라는 점은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른 규칙들은 외국인들이 조선으로부터의 수입과 수출

에 만족해했으며 그것에 딸린 선언문에 반대하지 않았다.⁶⁵⁾

조선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그리 크지 않았던 프랑스가 다른 나라에서 자신이 사용했던 체계를 감안할 때, 공식적인 항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었다. 조선의 합병은 일본이 청에 승리를 거둔 이후 1895년부터 가속화된 과정의 논리적 귀결일 뿐이었다.⁶⁶⁾ 서울 주재 영사는 현지 사정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상품에 대한 세금들, 노동자의 부두에서 파업·태업과 관련이 있다. 조약문에 관해서는 Cf. *ibid.*, fol. 6 à 8, 제국정부의 선언문은 9 à 11을 참고하라. 제국 정부는 1905년 조약 이후 이룩한 성과를 환기시키는 칙서(1910. 8. 29)를 출간했는데, 조선의 정부 체제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전의 개혁들은 쓸모가 없었고 “의심과 회의의 기운이 반도 곳곳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제도는 조선인들의 복리에 도움을 될 것이며 동양의 지속적인 평화에 새로운 보장책이 될 것이다. Cf. *ibid.*, fol. 12~13.

65) Cf. M. A. E., nouvelle série, *Corée, politique étrangère IV, Dossier général: étrangers en Corée, 1905~1916*, fol. 136. 일본 대사관에 보낸 구두 각서에는 간단히 일본과 조선 사이에 체결된 조약(1910. 8. 30)을 공포되기에 앞서 통보해 준 데에 대한 감사가 표현되어 있다.

66) 대사인 제라르가 외무부 장관에서 보낸 편지에서 그는 프랑스가 받아들일게 될 상황을 잘 요약해 놓았다. 조약을 분석한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테라우치(Terautsi) 장군이 몇 달에 걸쳐 준비하고 완성한 최종본은 일본이 전설의 시기에 만들었던 소원과 꿈을 기원하고 실현시킨 것이다. 중국이 마찬가지로 탐내고 오랫동안 신하로 취급해 왔던 조용한 아침의 이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꿈이 그것이며 게다가 이 나라의 조숙한 문명은 일본에게는 르네상스의 이탈리아 문명이 이전에는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에 했던 역할과 마찬가지로의 역할을 해 왔었다. 최종본, ‘합병의 최종 문서’가 조약의 형태를 띠다면, 이는 아무래도 내 러시아인 동료가 설명하듯이, 포츠머스조약의 의정서와 조서에서 조선의 독립과 주권에 관한 어떠한 수정도 조선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직접적인 합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순간에 지금 채택된 형식을 선택하게끔 만든 것은 이러한 고려점 때문이었다. ……합병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예견되었고 회자되어 왔었는데, 일본의 여론과 언론에서는 일본의 오랜 갈망의 바람직하고 자연스러운 귀결이자 1894~1895년과 1904~1905년의 전쟁이 두 개의 주요한 에피소드였던 드라마의 대단원으로서 받아들였다. 외국 정부와 서양의 여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제야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 미국에서건 혹은 다른 곳에서건 몇몇 언론의 평가가 어떠했을지라도, 한 제국이자 하나의 나라(그 기원과 전통은 오랜 것인데)의 운명이 불려일으킬 약간의 동정심도 있었지만, 이 운명은 1904~1905년의 사건들 이후로는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졌다. 아마도 중국에서 감흥이 가장 깊었을 것인데, 이는 한편으로는 중국과 조선 사이에 그토록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관계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수세기 동안의 경쟁관계를 치친 후에 자신

일시적으로 흥분한 한때를 지나고 나서는 조용히 합병을 받아들였다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거의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는 뚜렷한 좌절감을 느껴져 지적했는데, 새로운 상황이 실제로는 보호령 설치 이후 사람들에게 주어진 생활에는 거의 변화를 가져다주지 않았다고 보았다.⁶⁷⁾

프랑스는 조선에 거점을 마련했던 다른 나라들의 반응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미합중국은 그 사건에서 “한탄할 만한, 하지만 치유책이 없는 부족함”을 확인했다.⁶⁸⁾ 러시아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⁶⁹⁾ 영국은 정

의 오랜 봉신국이 된 나라가 일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상황에 대한 추억 때문일 것이다. 일본의 합병으로, 정부 정책은 갈수록 코무라 백작이 자신의 여러 주목할 만한 언급들 중 하나에서 예견하고 규정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대륙 정책’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일본이 섬과 식민 열강이었다면, 그로부터 일본은 이제 대륙 열강, 더 정확히는 지난 15년간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충돌의 무대였던 동아시아 대륙에서 열강이 되었다. 이 점에서 1910년 8월 22일이라는 날짜는 그 지대하고도 장기적인 영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을 날인하고 축성하였다.” Cf. M. A. E., nouvelle série, *Corée, politique intérieure V*, (op. cit.), fol. 16 à 20 (17 aout 1910).

67) 외국인들은 10년간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데 그리고 다소간의 의문은 있지만 자유롭게 종교행위를 하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사법제도에 관해서는 “……비록 일본의 사법권이 외국인들에게 아주 제한적인 믿음만을 주기는 했지만, 치외법권의 폐지는 그것을 병합의 불가피한 결과로 여긴 외국인들 사이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여졌다. 사법체계의 현행 편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법정을 구성하고 있는 판사들이 공정성에 대해서 진지한 보장책을 제시한다면 법정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는 일본인과 유럽인 간의 소송에서 유럽인이 자신들의 제소가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승소했던 예들은 매우 드물다.” Cf. *ibid.*, fol. 27 à 29 (17 aout 1910). 게다가 그 다음 날 영사 파야르(Paillard)는 전보를 한 통 보냈는데, 거기에는 그는 일본 사법 및 교정 업무의 불충분한 조직을 환기시키면서 프랑스 국민들의 이해가 걸려 있는 소유권 행사에 대한 지침을 요구했다. Cf. *ibid.*, fol. 35.

68) Cf. *Corée, politique étrangère, IV*, fol. 124~125 (26 aout 1910). 당시에 미합중국 주재 대리대사였던 르페브르-퐁탈리스(Lefèvre-Pontalis)가 쓰기를, “갈수록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일본의 정책에 미국 정부는 적대적이며, 그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조합해 가는 것은 미국과는 절대적으로 반대된다. 이번에도 연방정부는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강조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좋은 말로 일본을 회유하는 데에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연방정부는 일본을 다루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한데 일본은 자신의 손아귀에 떨어진 모든 것을 서둘러서 이루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1910. 9. 1), 그는 또 연방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거스를 수 있

치적 관점에서는 반대하지 않았으며 상업적인 관점에서는 완전히 만족했다.⁷⁰⁾ 오로지 청만이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으며 일본이 대륙의 강자가 되는 것을 지켜보고 원통해 하였다.⁷¹⁾

도쿄 주재 프랑스 대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외무부 장관은 프랑스로서는 프랑스가 마다가스카르의 예에서 보여 주었던 관행에 반해서 나서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그 관행이란 영국이 이전에는 기피했다가 이후에 받아들인 관행이었다. 자신이 영국과 미합중국의 반응을 더욱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해도, 프랑스의 행동노선이 일본에 국제질서의 어떤 어려움도 제기하지 않는 것이며, 자신이 일본인들에게 더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도, 그것이 공격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영국 정부와 맺고 있는 정치적 동맹관계 때문에, 일본 정부가 영국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에 내놓아야 할 설명과 보장책을 받아들이는데 만족할 것이다. 하지만 천황 정부는 일본에서조차도 경제 분야에서 자유주의가 그리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스스로 보여 주고 있다. 일본이 조선에서 추진하려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가 묵인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일정 정도는 앞으로 열릴(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프랑스와 일본 간의 통상교섭 와중에 유용하게 쓰이고 갖추어 두어야 할 교환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내가 기본적으로 큰 중요성을

는 모든 종류의 비난을 조심스럽게 피해갈 것이라고 썼다. 그는 언론에 모든 논쟁을 삼가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f. *ibid.*, fol. 143.

69) “두 나라 사이에 최근에 열렸던 협의(1907년 7월 30일의 러일회담을 대체한 1910년 7월 4일 회담을 이른다)로 조선의 합병문제가 사전에 예견된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연락을 받았음을 확인했다.” 생 페테르부르크 주재 프랑스 대리대사가 파리에 보낸 전보문. Cf. *ibid.*, fol. 127 (27 aout 1910).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포츠머스 조약 이후, 특히 1907년 7월 이후로 훨씬 더 개선되었다. 1908년 5월 29일 자 편지에서 제라르는 피송 장관에게 두 정부와 두 국가 사이의 관계가 꾸준히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썼다. *Documents diplomatiques français*, 1908, pp. 642~643에 실린 1908년 5월 29일 자 편지.

70) Cf. *ibid.*, fol. 155 à 157 (8 septembre 1910).

71) Cf. *ibid.*, fol. 130 (29 aout 1910). 중국은 “시모노세키조약의 1조가 합병으로 가는 첫걸음일 뿐이었음”을 인정했다. Cf. *ibid.*, fol. 129.

부여하지 않았던 정보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국의 이해관계에 맞는 상황과 같은 것인지를 일본 대사관에 물어 보았다.”⁷²⁾ 조선은 조약 협상을 위한 교환조건이 될 것임이 분명했다.⁷³⁾

프랑스 정부가 일본 대사관에 보낸 1910년 9월 8일 자 각서에는 프랑스는 조선의 병합이라는 원칙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다. 그렇지만 프랑스는 예를 들어 조선에서의 여행의 자유, 프랑스인들에게 부여된 광산 조계의 미래, 향후의 사법제도 재편 혹은 향후에 대해 프랑스에 약속한 처우와 같은 몇 가지 점들을 분명히 해 주기를 바랐다.⁷⁴⁾ 일본 정부는 신속히 프랑스의 요구에 응답했으며 프랑스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바라던 모든 진정책을 내놓았다.⁷⁵⁾

일본을 배려하려는 이러한 생각은 어찌 보면 대한인국민회(Korea National Association)가 1910년 8월 24일에 제시했던 호소에 프랑스 정부가 왜 반응하지 않았는지도 설명해 준다.⁷⁶⁾ 며칠 전(8월 4일)에, 이 단체의 조선민족위원회는 이미 한 통의 편지를 작성했다.⁷⁷⁾ 같은 단체가 작성한 마지막 항의 편지는 끝내 아무런 성공도 거두지 못했다.⁷⁸⁾ 외교문서들을 검토해 본 결과, 프랑스는

72) Cf. *ibid.*, fol. 163 164 (13 septembre 1910).

73) 프랑스와 일본 사이의 통상관계를 위한 잠정적인 타협점을 찾으려는 합의(파리, 1911. 8. 19)를 이르는데, 이는 프랑스와 일본 사이의 통상관계를 위한 잠정적인 타협점을 찾으려는 1911년 8월 19일의 합의를 연장하는 합의(파리, 1911. 12. 19)가 뒤따랐다.

74) Cf. *ibid.*, fol. 158~159.

75) Cf. *ibid.*, fol. 208 à 214. 11월 29일에 작성된 이 장문의 각서에서, 일본 정부는 모든 문제에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프랑스의 입장을 경청할 것이고 일본은 어떤 영역에서건 프랑스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76) Cf. *Corée, politique intérieure IV*, (op. cit.), fol. 189(영문판)~190(불어판). 호놀룰루에서 보낸 1910년 8월 27일 자 전보이다.

77) Cf. *ibid.*, fol. 191 à 194. 이 편지에는 윤(P. K. Yoon), 황(S. Y. Whang), 데이비드 리(David Lee), 조궁군(Joe Kung-kun)과 최(J.D. Choy)가 서명하였다.

78) 누인식(Luinsik)이 서명한 이 편지의 원문은 M. A. E., nouvelle série, *Corée, Affaires intérieures après l'annexion du Japon*, 24 août 1910~décembre 1911,

조선에 대한 분명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프랑스가 이후에 전개될 논의에서 조선에게 도움이 되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논의를 사전에 조직하거나 한일병합에 장애물을 놓기에는 조선에 너무 관심이 없었다.⁷⁹⁾

IV. 맺음말

이 글을 몇 쪽 읽고 나면, 한국 사람들은 프랑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에는 미묘한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당시의 맥락 속에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20세기 초를 통틀어서 동아시아와 더 정확히는 동북아시아를 다루는 언론과 출판물들 중 조선에 대해서 감정이입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이 나라를 긍정적인 모습으로 소개하는 것은 거의 없는 반면에, 같은 시기에 그리고 같은 작품 내에서도 일본은 예찬의 대상이었고 조선에서의 그들의 행보는 정당화되었다.⁸⁰⁾

빅토르 베라르(Victor Bérard)의 책, 『아시아 반란』⁸¹⁾이란 책을 인용할 수 있다. 「일본의 팽창」이라고 제목이 붙은 장에서(268~348쪽), 그는 일본인들

fol. 49~51, 타자로 작성한 편지로 보존상태가 나쁘다.

79) 살타렐(Saltarel)이라는 한 프랑스인이 조선에서 광산 조계권을 획득하였다. 외무부 장관은 살타렐이 일련의 일본의 소송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도록 총독부에 그를 추천해 줄 것을 일본 대사에게 요구했다. Cf. M. A. E., (Nantes), Tokyo, série A, carton 38, dossier Asie, n° 59, 외무부 장관 장 크뤼피(Jean Cruppi)가 도쿄 주재 대리대사인 클로세(Clausse)에게 보낸 편지.

80)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이 자신의 주목할 만한 조선 관련 참고문헌집(4권, 파리, 1894~1901)에 쓴 서문은 불행히도 대외비로만 보급되었다. 이 서문은 극동 문명에서 조선이 차지하는 위치를 알고자 했다.

81) Librairie Armand Colin, Paris, 1904, p. 425, 빅토르 베라르(Victor Bérard, 1864~1931)는 그리스 연구자이자 외교정책 전문가였다.

이 그들의 새로운 식민지인 홋카이도 섬과 포르모스 섬의 기후를 잘 견디지 못하는 반면, 조선에서 “일본인은 자신의 천성에 맞는 곳에 있는 듯했다”(284쪽)고 기술하고 있다. 뒤이어,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의 과잉인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는 일본의 농장이 될 것이며 그 주민들을 먹여 살릴 조선 땅을 개척하기에 일본인 농민-채소 재배농들이 좋은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덧붙였다(287쪽). 조선 민족⁸²⁾은 존재하지 않으며 왕은 일본식 생활에 불가피한 개혁들을 착수하기를 거부했다(293쪽). 일본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삶은 완전히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⁸³⁾ 일본인들은 스스로를 근대화하려고 애를 썼으며, 그들은 ‘조선이 안고 있는 무질서로 녹초가 되어 버렸는데’ (341쪽), 경제적으로 조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들이 조선의 운명을 자신들의 손에 쥐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일본인들은 문명화되고 유럽화되었으며, 그들에게는 비싼 값을 치르면서 투자를 시작할 힘이 있었다.

또 다른 예로, 알렉상드르 알로(Alexandre Halot)는 자신의 『과거 연구, 오늘날의 환경』⁸⁴⁾이라는 책에서 “……조선은 자신의 정말로 진지한 자질이라고고는 아무것도 없이, 중국 문명의 모든 단점을 과장되게 적용해 온 불행한 지방”(46쪽)이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일본인들은 “……스스로를 보존할 목적으로 유럽의 물질적 진보를 수용하였으며, 따라서 스스로를 조선인들을 자

82) “……조선 민족의 문제일 수는 없을 것이다. 전통적인 관습을 받들면서 꿈꾸듯 멍한 채 있고, 양반들 멋대로 거꾸로 선택되고,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사냥 혹은 관리들에 반대해서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하는, 조선 민족은 별 의미가 없다.” “조선은 언제나 착취당하고, 바싹 머리 깎인, 절대적 주인인 왕에게 굶아 먹히는 봉건적인 무리에 불과하다. ……”(p. 292).

83) “……조선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업과 금광, 철도, 부두, 저수지, 어업과 임업의 착취, 인삼과 쌀, 피혁 혹은 석유의 독점 등이 일본 법제하에서 외국에 모든 종류의 보장을 제공하고 있던 말인가! 유럽인들과 일본인들 사이에서 수천 개의 이익 협회가 생겨났으며 유럽인들은 자본을 제공하고 일본인들은 지식과 지도층과 노동력 그리고 힘을 제공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일본인들은 큰 대가를 치르면서 군대와 함대, 정복과 압제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준비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구들은 비싸다. 그들이 이용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단 말인가.”(p. 340).

84) Librairie Falk Fils, Bruxelles, 1905, p. 213 +지도. 알로는 일본제국 영사였다.

신들과 같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조선인들을 조선인으로 남도록 하기 위한, 타고난 조선인들의 교사로 생각했다”(88쪽)는 것이다. 일본은 식량 문제 때문에 쌀을 수입할 필요가 있었고 조선에서 이를 사들이고자 했다. 그런데 한심한 정부와 탐관오리가 미곡 교역을 방해하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바람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163~164쪽). 모든 진보에 반대하는 조선의 이러한 저항에 대해서, 일본이 반도에 보호체제를 세우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186쪽). “…… 이 모든 일(조선과 극동에서의 일본의 활동) 속에는 모든 자유민의 정당한 바람을 결집한 모든 것이 들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186쪽). 알렉상드르 알로의 추론을 쫓다 보면, 조선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조선이 자신 스스로를 지배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조선이 이 지역 평화에 반하여 빠져들게 했던 위협들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에 보호체제를 강요하는 것은 당연하며, 같은 논리를 쫓아가면, 일본의 보호령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조선의 잘못된 의지를 감안할 때, 조선이 일본의 한 지방이 되는 것은 당연했다.

몇 년 뒤 레오 비랭(Léo Byram)은 『조그만 왜국이 거대해질 것이다』⁸⁵⁾라는 책에서 조선 여행에 관한 자신의 인상을 기록하였다. 부산에 도착한⁸⁶⁾ 그는 상황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⁸⁷⁾ 그는 일본인들이 강하다는 점을, 그들이 서구 국가들을 압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그런데 “왜 그들은 서구 국가들처럼 식민지나 흑인 노예가 없는 것일까?”라고 하며 덧붙이기를 “흑인 노예! 피부는 약간만 그을린 정도긴 하지만 넉넉한 흰 옷을 걸치고 고고한 걸음걸이를 걷는 그리고 어떻게 해도 가문의 대단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상한 모자를 쓴 이 순박한 조선인들, 그들이 내게 준 영향은 놀라운 것이다”⁸⁸⁾(39쪽)라

85) Berger-Levrault et Cie, Paris-Nancy, 1908, p. 398 +지도.

86) 「부산에서 서울까지」라고 제목이 붙은 2장이 재미있을 것이다, pp. 29~65.

87) 그는 “일본 정부와 그 외교관들이 전 세계에서 보호령이라는 모호한 이름하에 감추어 버린 조선 강탈과 종속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ibid.*, p. 38).

88) 가문으로 번역한 ‘*héraldique*’라는 형용사는 아마도 오식인 듯하다. 엄숙한 내지 장중한이라는 의미의 ‘*hiératique*’라는 형용사가 더 적절해 보인다.

고 서술했다. 레오 비랭은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의 무자비함을 잘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모든 일이 진정한 호감의 대상이었던 조선인들에 적대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151쪽). 그는 조선인들이 노력하는 것에 거부감을 지니고 있는 데에 충격을 받았으며, 그들을 열심히 지켜보다 보니 자신이 “그들의 치유 불가능한 노곤함”(155쪽)의 희생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 일본인들은 살아 있는 것과 동의어였다.⁸⁹⁾ 저자가 이야기의 도입부에서는 조선에 대해서 특별히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책에 나타난 조선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라는 점은 잘 알 수 있다.

일본은 그들 나름대로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⁹⁰⁾ 비록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들 혹은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의혹을 찾아낼 수 있기는 하지만,⁹¹⁾ 이 글에서 일본은 서구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⁹²⁾

89) “나는 마침내 모든 일본인들에게 반란의 격렬한 폭풍이라는 이러한 죽음 같은 상황을 떨어 없애버린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그들의 모든 잘못, 모든 나쁜 짓은 그들이 가져온 이 놀랄 만한 현재-생동감-앞에서 사라졌고 잊혀졌다. 그들 덕분에 그리고 오로지 그들로 인해서 이 죽은 지방은 다시 태어날 것이다.” (*ibid.*, pp. 156~157).

90) 자신이 1909년 3월 10일에 개최한 한 회의(‘일본의 정치와 열망’)에서 도쿄대학교 법학부의 교수를 역임한 바 있던 미셸 르봉(Michel Revo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일본은 1894년에 쓸데없이 정복을 추진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을 뿐더러 일본이 청을 공격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자신과 함께 조선과 더불어 러시아의 위협에서 청을 구하기 위해서였을 뿐이었다. 일본은 전쟁을 뛰어넘어서 사전에 극동 전 지역의 평화를 예감했던 것이다.” Cf. *Les questions actuelles de la politique étrangère en Asie*, Félix Alcan, Paris, 1910, p. 264 + 지도, p. 169.

91)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총독이 식민부 장관에서 보낸 편지(1909. 1. 19)를 보라. 거기서 그는 “이미 1907년에 알려진 정치적 위협이 일본의 선전이 성공을 거둔 이후로 우리의 영토 내에서 증가하였다.” 몇 달 후(1904. 4. 29), 그는 또 다음과 같이 썼다. “.....천황 정부가 우리에게 보여 주었던 우호적인 조치들에 관해서 제라르가 내놓았던 매우 호의적인 평가에 우리도 동조해야만 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에서만 아니라 이 아시아인들이 자신의 영향력과 원칙을 전파하려고 하는 지역들에서 우리에게 적대적인 음험한 증오의 기류가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Cf. 이 두 편지는 M. A. E., (Nantes), Tokyo, série A, carton 39, n° 125 et n° 651.

92) “일본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야망을 두고 일본을 격렬하게 비판하기보다는 혹

이 당시에 사람들은 또한 국제교역이 국민들의 풍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수적이며, 문명으로 다가서는 것을 한층 용이하게 한다고 생각했다. 식민지를 소유하는 것은 전혀 비난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 “식민화는 산업정책의 당연한 귀결이다(쥘 페리).” 식민화가 근대성으로 진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도 일본이 유럽 열강과 미합중국의 예를 따라 식민지를 소유하고 자신의 구미에 맞게 그것을 운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였다. 프랑스에서는 19세기의 마지막 몇십 년간 식민지를 가지려는 일본인들의 바람을 알고 있었다. 일본이 서구 문명에 동화되고 있었기에 일본이 서구의 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열강들 사이의 이러한 암묵적인 동의 속에서, 국제질서는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되었으며, 몽환상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주 묘사되어지던 조선인들은 프랑스 정부에게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되었다. 프랑스 정부도 무반응으로 일관함으로써 조선에 살면서 이 나라에 믿음을 가졌던 얼마 안 되는 프랑스 민간인들이 어떤 종류의 지원 활동이 되었든 펼치는 것을 가로막았다. 사람들은 이 당시에 거대 열강들 사이의 세계 분점을 목격하였던 것이다. 사람들은 여러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기는 했지만 그 주민들에게는 별로 흥미가 없었다.

우리가 위에서 보았듯이, 을사보호조약 때부터 이미 프랑스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는 어떤 식으로든 프랑스가 이후에 한일합방에 관해서 일본의 결정에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 행동의 서막이었다. 조선인들이 프랑스로부터 미약하나마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1919년에 가서의 일이다.⁹³⁾

※ 번역: 이경일(서울대학교)

은 2000년의 일본 문화에 대한 무지함에 놀라면서 최근의 일본의 발전에 감탄하기 보다는, 그냥 일본을 이해하려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모방하려고 애쓰자. 서양은 일본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서양은 일본으로부터 커다란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Cf. *ibid.*, p. 182.

93) Cf. Li Jin-Mieung, 2007, “La France et les mouvements d’indépendance du Gouvernement provisoire de Corée”, 『한국사론』 45, pp. 299~344.

참고문헌

〈사료〉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archives diplomatiques françaises, *Correspondance politique, Corée*, Vol. 1, 1888, fol. 4 à 8.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archives diplomatiques françaises, nouvelle série, *Corée, politique intérieure II, Affaires intérieures sous le protectorat japonais, 1905-1906*, fol. 22~24, 43, 38~40, 51, 52, 80, 92~95, 132, 138, 176~179, 194~197, 226~227, 243~244, 258~259.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archives diplomatiques françaises, nouvelle série, *Corée, Politique intérieure III, Affaires intérieures sous le protectorat japonais, 1907-1908*, fol. 12~13, 15A~15B, 18~28, 29~31, 32~33, 41, 46, 47, 54~55, 76, 77~78, 90, 91~92, 99~101, 108~109, 135, 142~143.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archives diplomatiques françaises, nouvelle série, *Corée, Politique intérieure IV, Affaires intérieures sous le protectorat japonais, janvier 1909-24 août 1910*, fol. 10~11, 16~17, 46~54, 76, 77, 78, 95~96, 102, 114~117, 119~120, 136, 152, 168~169, 175, 176, 182, 187, 189~190, 191~194.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archives diplomatiques françaises, nouvelle série, *Corée, Politique intérieure V, Affaires intérieures après l'annexion du Japon, 24 août 1910-décembre 1911*, fol. 5, 6~8, 9~11, 12~13, 16~20, 27~29, 35, 49~51.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archives diplomatiques françaises, nouvelle série, *Corée, politique étrangère, Dossier général: étrangers en Corée IV, 1905-1916*, fol. 92~93, 124~125, 127, 129, 130, 143, 155~157, 158~159, 163~164, 208~214, 249.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archives diplomatiques françaises, nouvelle série, *Corée, Politique étrangère, Relations entre la France et la Corée II, 1903-1916*, fol. 93 et 94~95, 96~97, 175.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archives diplomatiques françaises, nouvelle série, *Corée, Questions dynastiques et cour, 1897-1917*, fol. 143~144,

150~151, 157, 164.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archives diplomatiques françaises, nouvelle série, *Japon, Prise en charge par la France des intérêts russes en Japon et en Corée, 1904-1905*, fol. 94, 95.

〈단행본〉

Alexandre Halot, 1905, *Etudes d'hiers Evénements d'aujourd'hui*, Librairie Falk Fils, Bruxelles.

Charles-Robert Ageron, 1978, *France coloniale ou parti colonial?*, PUF, Paris.

Georges Ducros, 1904, *Pauvre et douce Corée*, H. Champion, Paris.

Jean de Nettencourt-Vaubecourt, 1905, *En zigzag de Singapour à Moscou*, Plon-Nourrit et Cie, Paris.

Léo Byram, 1908, *Petit Jap deviendra grand*, Berger-Levrault et Cie, Paris-Nancy.

Marc Ferro, 1994, *Histoire des colonisations*, Seuil, Paris.

Michel Revon, 1910, *Les questions actuelles de la politique étrangère en Asie*, Félix Alcan, Paris.

Pierre Leroy-Beaulieu, 1900, *La rénovation de l'Asie, Sibérie-Chine-Japon*, Librairie Armand Colin, Paris.

Victor Bérard, 1904, *La révolte de l'Asie*, Librairie Armand Colin, Paris.

〈논문〉

Claire Thran Thi Lien, 2009, "Religions et pouvoir colonial dans les pays de l'Indochine," Dominique Borne and Benoit Falaize, eds., *Religions et colonisation Afrique-Asie-Océanie-Amériques(XVIIe-XXe siècles)*, Les éditions de l'Atelier, Paris.

Gérald Arboit, 2009, "Renseignements et diplomatie au XIXe siècle: aux origines du rapprochement franco-russe en 1877," *Revue d'histoire diplomatique*.

Jean-Claude Allain, 2005, "L'affirmation internationale à l'épreuve des crises," Jean-Claude Allain, Françoise Autrand, Lucien Bély et al., *Histoire de la diplomatie française*, Perrin, Paris.

Li Jin-Mieung, 2007, “La France et les mouvements d’indépendance du Gouvernement provisoire de Corée,” 『한국사론』 45.

Marc Orange, 2006, “Collin de Plancy et les conseillers français,” *Souvenirs de Séoul*/서울의 추억, Paris/Séoul.



[ABSTRACT]

Attitude of France toward the Annexion
of Korea by Japan in 1910

Marc Orange

The reading of the French national archives related to Korea shows that between the signing of the French–Korean treaty of 1886 and the Japanese annexation of 1910, France has never played an important role in Korean affairs.

There are some reasons for this disinterest of French government in the Korea. At first, most of occidental writings in this period often gave a negative image of this country. According to them, Korea was not suitable for being independent and needed to strongly be opened to the civilization. On the contrary, French public opinion admired the progress accomplished by Japan on her territory and praised for the work that she was doing in Korea. The excess of the Japanese was only considered as errors of course or of little account in comparison of the civilizer's mission. Not having much economic interest in Korea, furthermore, France was not in good position for criticizing the Japanese methods, considering the similar methods which France had employed in her colonial countries.

So, France did not protest against the Japan's protectorate of 1905 and in 1910 against the Japan's annexation and its colonial methods. The French government constantly acted as simple observer on the scene of geopolitics of the Far Est, concentrated on the interest,

especially juridical, of the French people. This tacit approval was considered as a bargaining power to discuss the coming revision of a commercial treaty with Japan. Moreover, Japanese politics was considered as a factor of peace in the Far East and of commercial development.

keywords

French national archives, Japan's protectorate of 1905, Mission of Civilizer, French Passivity, Japan's annexation, Colonial methods, Tacit approval

특집 2

한일강제병합 100년 II
- 강제병합 관련 조약의 재검토



한국 강제병합 과정에 대한 재조명*

- 한일구조약의 불법·무효성에 관한 법학적 연구 -

토즈카 에쓰로오 | 국제인권법 정책연구소 사무국장

I. 머리말: 이 글의 과제에 대하여

1_ 1905년 ‘한국보호조약(?)’에 관한 필자의 연구이력

필자는 『류우코쿠법학』에 게재한 논문¹⁾에서 1905년의 ‘한국보호조약(?)’이 설령 형태상으로는 체결된 듯이 보일지라도, 이는 일본군과 이토오 히로부미가 한국 측의 각료 개인을 협박하여 체결의 형태를 갖춘 것일 뿐, 追完도 인정되지 않는 절대적으로 무효인 조약이고,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논한 바 있다.

※ 투고일: 2010년 7월 9일, 심사일: 2010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27일.

* 이 글의 외국 인명, 지명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에 따르지 않고 감수자의 의견에 따라 표기하였다.

1) 戸塚悦朗, 2006, 「統監府設置100年と乙巳保護條約の不法性: 1963年國連國際法委員會報告書をめぐって」, 『龍穀法學』 Vol. 39, No. 1, 15~42쪽. <http://ci.nii.ac.jp/naid/110006607790/> (2010년 6월 24일 열람).

이러한 법이론적인 입장은, 유엔국제법위원회(ILC)의 1963년 총회에 제출된 보고서²⁾를 ‘발견’하고 이를 원용하여 1993년 이후부터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며, 원래 필자의 독자적인 학설은 아니다. 1905년 당시의 관습국제법에 따르면, 국가의 대표자 개인을 협박하여 조약 체결의 형태를 갖춘다고 할지라도, 그 조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인 조약이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어, 특히 이태진 서울대학교 교수에 의해 조약 원본 등을 참조로 한 상세한 연구³⁾가 축적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2010년 현시점에서는 ‘날조설’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주요 논점은 아래와 같다.

2. 연구과제

우선 조약, 특히 독립주권국가의 외교권을 빼앗는 국가의 존립에 관한 중요한 조약을 그 나라의 외부대신의 서명만으로 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며, 한국보호조약의 경우에는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서명·비준이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이를 ‘批准必要說’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2) UN Document: A/CN.4/163,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covering the work of its Fifteenth Session”, 6 May–12 July 1963,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Eighteenth Session, Supplement No.9 (A/5509), Extract from the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3, vol. II, p. 139. 1963년 11월 18일, 유엔총회는 결의1902(XVIII)를 채택하여, 이 1963년 국제법위원회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에 유의하였고, 특히 조약법 기초에 관한 업무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UN Doc. 1902(XVIII), RESOLUTION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DURING ITS EIGHTEEN SESSION, 1258th plenary meeting, 18 November 1963.

3) ① 李泰鎮 著, 鳥海豊 譯, 2006, 『東大生に語った韓國史: 韓國植民地支配の合法性を問う』, 明石書店. 특히 159~219쪽을 참조, ② 笹川紀勝·李泰鎮 編著, 2008, 『國際共同研究韓國併合と現代-歴史と國際法からの再檢討』, 明石書店, ③ 영어로는 Yi, Taijin, 2007, *The Dynamics of Confucianism and Modernization in Korean History*, Cornell University.

그러나 일본 측은, 대한제국 황제의 동의에 기초한 비준 없이도 국가가 외교권을 이양하고 독립을 상실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국제법상 가능하다고 하여, ‘비준불요설’을 주장해 왔다.⁴⁾ 뒤집어 말하면, 일본의 외무대신이 외교권 이양에 관한 문서에 서명하기만 한다면, 패전 전의 대일본제국헌법하에서는 천황의 승인에 기초한 비준 없이도, 그리고 현행 헌법하에서라면 국회의 승인에 기초한 비준 없이도 일본의 외교권이 상실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과연 이것이 국제법상 상식적인 해석일까.

1969년 5월 23일에 채택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일본에 대해서는 1981년 8월 1일에 효력 발생)의 제2조⁵⁾에는 조약이란 무엇인지 정의되어 있다. 협약의 내용은 그때까지의 관습국제법을 정리한 것이다. 이 협약의 제2조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종전의 국제관습법에 의한 조약체결의 조건으로서는, 원

4) 일본 정부·외무성도, 뒤에서 서술할 운노 후쿠쥬[海野福壽] 교수의 저술(구조약에 관한 ‘비준불요설’)도, 그리고 일본의 매스컴에 의한 보도도 모두 기존의 구조약 ‘합법론’을 증폭시켜 풀뿌리 시민차원에서 잘못된 역사인식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최근의 사례로는 NHK TV의 아래의 보도프로그램이 1905년 조약(?)의 ‘합법론’을 대표하는 일본 학자로 운노 후쿠쥬 교수의 인터뷰를 방영했다. 「NHKスペシャル 日本と朝鮮半島第1回韓國併合への道-伊藤博文とアン・ジュンゲン」, 방송: 2010년 4월 18일(일) 오후 9시~10시 13분, 재방송: 같은 해 4월 20일(화) 오전 0시 15분~1시 28분, NHK는 1905년 ‘한국보호조약(?)’의 효력에 관한 논쟁을 보도하면서, 과거 17년간의 연구성과를 모두 무시한 채 이 프로그램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자세로는, 프로그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문제를 뛰어넘어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5) 제2조 용어

1. 이 조약의 적용상

(a) ‘조약’이란 국가 간에 문서 형식으로 체결되어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단일 문서에 의한 것인지 관련된 두 개 이상의 문서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며, 명칭 여하 또한 불문한다)를 말한다.

(b)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이란 각각의 명칭으로 불리는 국제적인 행위를 말하며, 조약의 구속력에 관한 국가의 동의는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 국제적으로 확정된다.

(c) ‘전권위임장’은 국가의 권한을 가진 당국이 발급한 문서로서, 조약문의 협상, 채택 혹은 확정을 위해 조약에 구속되는 것에 대한 국가의 동의를 표명하기 위해 또는 조약에 관한 그 외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를 대표하는 한 명 또는 두 명 이상의 인물을 지명하는 것을 말한다. (……)

칙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① 국가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국제적인 합의여야 한다. ②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등, 국제적인 조약에 구속되는 데 대한 국가의 동의행위에 의해 국제적으로 확정적인 것이 된다. ③ ‘전권위임장’은 조약문의 협상, 채택 혹은 확정을 위해, 조약에 구속되는 것에 대한 국가의 동의를 표명하기 위해 또는 조약에 관한 그 외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를 대표하는 한 명 또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을 지명하여 제시된다.

하지만 ‘비준불요설’을 대표하는 운노 후쿠쥬[海野福壽]⁶⁾는, 일본 외무성의 실무를 근거로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2종 형식의 국가 간 협정도 가능하다”면서, 1905년 ‘한국보호조약(?)’은 이 경우에 해당하여 고종 황제의 비준 없이도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운노 교수는, 일본국이 조약을 체결할 당시 의거해야 했던 국내법인 외무성 실무처리기준(일본의 국내법 차원의 문제)만을 근거로 하여, 일본 정부·외무성이 자유롭게 국제약속의 형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본 정부의 의향에 따라 조약의 효력이 정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것이 국제법의 해석학 방법론으로서 적절한 것일까. 조약의 체결절차는 일본 국내의 헌법 이하의 국내법 절차뿐 아니라, 상대국인 한국의 헌법제도의 제약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국제조약의 체결절차에 있어서는 체약국 쌍방은 모두 국제적인 법규범인 관습국제법에 의한 제약(국제법 차원의 문제)을 받는 것이다. 조약의 효력을 좌우

6) 海野福壽, 1995, 「I. 研究の現状と問題點」, 海野福壽 編, 『日韓協約と韓國併合—朝鮮植民地支配の合法性を問う』, 明石書店, 13~17쪽 참조. 운노 교수는 일본 정부(외무성) 측의 입장만을 근거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준불요설’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外務省條約局, 1936, 『各國ニ於ケル條約及國際約束締結ノ手續ニ關スル制度』(위의 책, 18쪽 注 5)를 들며, “비준의 필요 여부 및 절차는 각국의 정제, 제도, 국내법에 따라 다양하나, 우리나라(일본)에서는 비준의 형식에 의해 체결하는 조약 외에, 천황의 재가로 체결하는 국제약속과 재가를 받지 않고 정부 또는 관제관청이 독자적으로 체결하는 국제약속이 있으며, 아래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운노 교수는 “後進의 연구에 맡기고자 한다”면서도, “한국·북한의 역사학자 등이 주장하는, 전권위임장 및 비준서의 결여를 법적 결함으로 보는 무효론에 대해서는,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2종 형식의 국가 간 협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찬성하기 어렵다”며 ‘비준불요설’을 주장하고 있다.

하는 비준의 필요여부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습국제법을 무시하고, 일본국(국내법 차원)의 국내적인 사정만으로 정해지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국제조약의 효력문제는 일본국 및 한국의 국내법 문제가 아니라 양국을 포함하는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국제법 차원의 문제이다. 국제법 차원에서 국제조약의 효력문제를 연구할 때는, 일본 외무성 내부의 실무처리 관행만을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먼저 국제법 차원에 관한 국제법 해석학의 연구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윤노 교수는 1905년의 ‘한국보호조약(?)’의 효력을 논할 때, 특히 비준의 필요 여부라는 문제에 관해서, 관습국제법(국제법 차원의 법규범)에 대한 검토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일본의 국내법 차원에서 볼 때는 조약의 체결 절차가 ‘합법’이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조약이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조약(?)의 체결 절차는, 한국의 국내법 차원에서는 어떠한 국내적 절차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비합법’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이유로 국제법 차원에서 이 조약(?)이 ‘무효’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국제법의 차원에서 이 조약(?)이 국제법상 유효였는지 아니면 무효였는지, 그 효력을 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노 교수의 ‘비준불요설’로 상징되는, 일본 외무성의 사정(국내법 차원)만을 근거로 한 법적 주장은, 대일본제국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일본국 중심으로 개조된 국제법 질서인 ‘대동아공영권’ 안에서 주장된 것이라면 사실상 통용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대동아공영권’ 등 식민지 지배에 관한 반성과 사죄를 하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대일본제국 중심적 국제법 질서를 근거로 하는 사상이 근저에 있었기 때문에, 1905년 ‘보호조약(?)’ 및 1910년 ‘병합조약(?)’에 대해 ‘부당하지만 합법’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일지도 모르겠다. 구조약의 효력문제는 역사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점에 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처럼의 반성과 사죄를 피해자 측에서는 ‘불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 해석문제를 앞으로 극복해 가야 할 것이다.

윤노 교수는 이 조약(?)을 ‘제2차 일한협약’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은 문서 正文에는 ‘조약’이라고도 ‘협약’이라고도 적혀 있지 않다. 이 점 하나만 보더

라도 조약문으로서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인 문서 원안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의 연구자들은 이태진 교수의 연구 등을 기초로 하여 황제의 비준이 없었던 조약은 ‘날조’(위조)된 것이라고 ‘비준필요설’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국제법을 가르친 고 백충현 교수는, 1905년의 ‘한국보호조약’ 및 1910년의 ‘한국병합조약’을 포함해 “일본이……한국의 주권을 단계적으로 강탈한 5개 조약”에 관해, “이들 모든 조약의 내용은 국가의 주권 제한에 직접 관련된 사안”이므로, “당연히 조약체결을 위한 위임장 및 비준절차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했다”고 하면서, ‘비준필요설’⁷⁾을 주장하여 일본 측과 대립하였다.

백 교수의 학설은 국제법학의 표준적인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일본 측은 이를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까? 그렇게만 된다면 양국의 대립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명하기에는, 첫째, 당시의 세계의 국제법 해석 실행에 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다. 필자는 1907년 헤이그밀사사건 당시의 네덜란드 정부의 해석 실행에 관해 연구하여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 둘째로 당시의 국제법 해석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관한 1905년 당시의 국제법 해석학에 대한 문헌연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관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첫 번째 문제의 해명과 함께, 한일 구조조약 문제를 둘러싼 견해의 대립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상이 이번 연구의 과제이다.

7) 白忠鉉, 2008, 「日本の韓國併合に對する國際法的考察」, 笹川紀勝・李泰鎮 編著, 『國際共同研究韓國併合と現代-歴史と國際法からの再檢討』, 明石書店, 389쪽.

II. 본론: 연구성과⁸⁾에 관한 보고⁹⁾

1_ 당시의 국제법 해석 실행의 사례

1) 문제의 소재

1905년 당시의 국제법에 관한 문헌적 연구를 통해, ‘비준필요설’이 일본에서나 국제사회에서나 1905년 당시의 통설이었다는 점,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점이 밝혀졌다.

유럽 등 국제법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1905년 당시 조약체결에 관한 국제법 해석의 실행이라는 면에서도 ‘비준필요설’이 채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이 점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충분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당시 유럽 국가들의 외무당국도 실무상 이러한 국제법 해석을 하고 있었다는 실행사례를 보여 주는 하나의 증거를 발견·확인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2) 1907년 제2차 헤이그평화회의 당시의 국제법 해석의 실행사례

1907년 제2차 헤이그평화회의는 당시로서는 가장 큰 다국 간 국제회의였으며,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파견한 헤이그 ‘밀사’사건으로도 유명하다. 대한제국의

8) 이 글은 2010년 2월 28일에 동북아역사재단에 제출한 연구보고서(The research project on Reexamining the Process of Japan's Annexation of Korea)를 가필·수정한 것이다.

9) 이 논문의 상당 부분은 필자가 류우코쿠대학 법과대학원을 퇴직(2010. 3)하면서 류우코쿠법학에 게재한 논문 원고, 戸塚悦朗, 2010, 「最終講義に代えて-「韓國併合」100年の原點を振り返る-1905年「韓國保護條約」は捏造だったのか, 『龍穀法學』 42권 3호(퇴직기념호, 311~336쪽)에 의거하고 있지만, 추가조사 정보를 가필하였기 때문에, 이 논문의 내용이 보다 충실하다.

대표로 헤이그에 모습을 드러낸 3명의 ‘밀사’를 정식 한국대표로서 참가하게 할 것인지 여부가 제2차 헤이그평화회의 개최시에 큰 문제가 되었다. 개최자인 네덜란드의 정부수석대표(전 외무대신)인 드 보포(W. H. De Beaufort)는 이 평화회의에서 부의장이라는 요직을 맡고 있었다. 대한제국의 정부사절 3명은 1907년 7월 3일 드 보포 부의장을 방문하여 이 회의에 대한제국 정부대표로 참가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평화회의 개최지 국가로서 부의장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외무성의 판단은 대한제국 정부대표의 취급에 관해서도 주최자 측 판단의 요체였고, 실질적으로 최종판단에 가까운 것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3명의 사절은 이와는 별도로 네덜란드 외무성에 7월 1일자로 서면을 제출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외무성의 렌도르프(Jhr. Mr. J.C.E.C. Rendorp)가 대한제국 정부대표 이준 등 3명의 사절이 묵고 있는 호텔¹⁰⁾을 방문하여 사정을 청취했다. 렌도르프의 보고 메모(1907. 7. 4)(사진 1)에 따르면, 3명의 사절은 “이른바 ‘1905년 10월 17일자 조약’은 이토오[伊藤] 공작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국새를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조약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황제로부터 정식 위임장을 받은 3명의 한국대표는 이 조약에 구속되지 않아 일본의 동의 없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므로, 시급히 외무대신과 만나고자 한다고 요청했다.

렌도르프는 1907년 7월 4일자로 이러한 상황을 메모¹¹⁾로 정리해서, 반 하드리안 외무대신(Jhr. Mr. D.A.W. Tets van Goudriaan, Minister of Foreign Affairs)에게 제출했다.

이 메모를 참고로 해서, 반 하드리안 외무대신은 메모 뒷면에 자신의 판단

10) 지금은 이준기념관(Yi Jun Peace Museum)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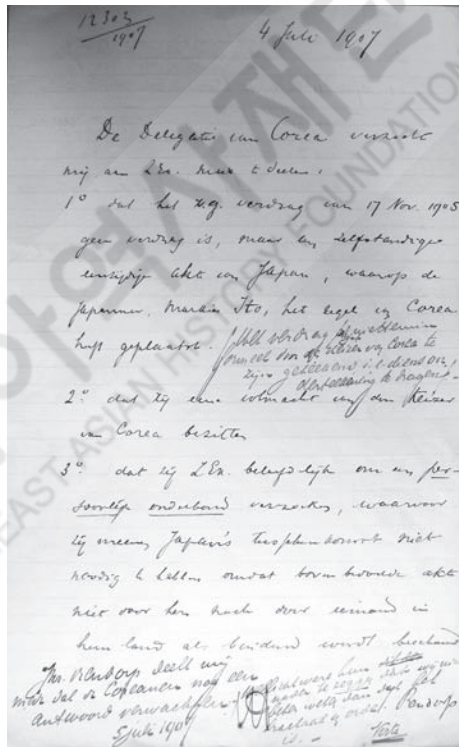
11) 이 메모의 복사본으로 보이는 문서가 종전에 입수한 헤이그 소재 이준기념관(Yi Jun Peace Museum)이 발행한 책자(*The Independence Movement of Korea in The Hague, 1907, 2007*, 7, 13, p. 25) 속에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그 문서가 진정 원본의 복사본인지, 원본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현재도 실재하는지에 관해서는 팸플릿에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 점들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 팸플릿을 확실한 증거로 삼기에 불안감이 남았다. 그래서 헤이그에 건너가 문서 원본의 존재를 찾아볼 필요가 있었다.

을 적어 놓았다. 그 내용은, 1905년 조약이 가져온 현 상황은 기정사실이며, 일본 정부의 중개 없이는 네덜란드 외무대신이 사절과 면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밀사의 제2차 헤이그평화회의 참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3) 증거의 검토

3명의 사절과의 회견 상황을 보고한 메모의 원본¹²⁾은 헤이그 소재 네덜란드 정부공문서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2009년 8월 20일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원본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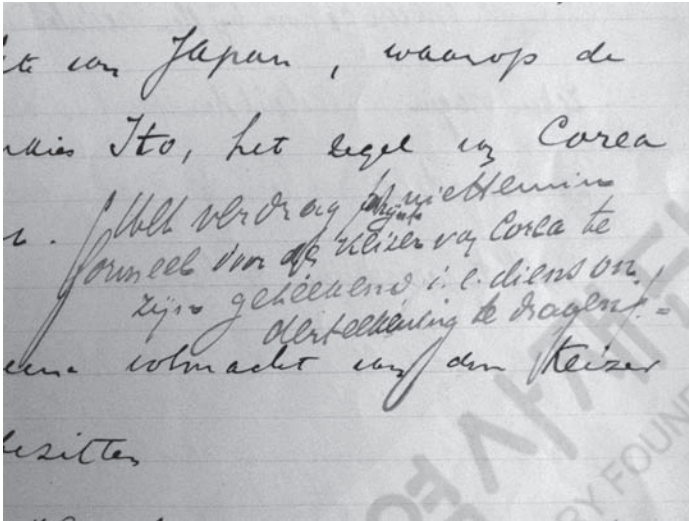
위에서 적은 “이른바 ‘1905년 10월 17일 자 조약’은 이토 오[伊藤] 공작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국새를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조약이 아니다”라는 부분의 아래쪽 공백 우측에 보면 추가로 써넣은 메모가 있는데, 그 부분도 확인할 수 있



〈사진 1〉

12) 문서번호 12303/1907 4 July 1907. In: Source: Ministerie van Buitenlandse Zaken, A-dossiers 1871-1918, searchlist 2. 05, 03, inventory number 535. 이 문서는 네덜란드어로 손으로 적은 것인데, 그 내용 및 메모의 작성자를 밝혀내는데 동 공문서관 기록보관담당자인 하이데브링크(Iris Heidebrink) 씨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영문 번역을 제공받았다. 그의 도움에 감사한다.

13) 원본 사진촬영을 허가해 준 위의 공문서관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사진 2〉

었다.

추가메모는 렌도르프¹⁴⁾가 기입한 것이다. 거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약은 한국 황제에 의해 공식적으로 서명된 것으로 생각된다.¹⁵⁾

고 적혀 있다. 이 추가메모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네덜란드 정부의 외무성 고관은, 조약이 한국 황제에 의해 공식적으로 서명(승인, 즉 비준)되었다고 판단했음이 분명하다.

14) 이준기념관이 발행한 책자에는 “(아마도) 한네마 사무차관(Mr. E. Hannema, Secretary-General)이 쓴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록보관담당자인 하이데브링크를 다시 만나 확인한 결과, 그는 확신을 가지고 “렌도르프가 기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판단에 따랐다. 또한 맨 아래 우측에 기입된 메모의 말미에 ‘Rendorp’라는 서명이 있다.

15) 기록보관담당자인 하이데브링크의 영문 번역에는 “The treaty appears nevertheless to be formally signed by the Korean Emperor”라고 되어 있다.

또한 맨 아래 우측에는 렌도르프의 추가 메모가 있고, 거기에서는

아마도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한, 조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들에게 설
명해야 할 것이다¹⁶⁾

라고 진언하고 있다.

4) 증거에 대한 평가

이 국제법의 해석 실행을 보면, 당시 네덜란드 정부의 외무성 고관은, ① 1905년 ‘한국보호조약(?)’의 유효한 체결을 위해서는 대한제국 황제에 의한 서명(비준)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비준필요설’의 입장), ② 게다가 황제의 서명(비준)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것, ③ 결국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대일본제국에 이양되었다고 판단했다는 것, 그러한 판단과정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만약 네덜란드 정부가 ‘비준불요설’의 입장이었다면, 황제의 서명(승인 내지 비준) 유무를 검토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며, 굳이 이러한 판단을 덧붙여 메모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검토해 보면, 국왕의 서명(비준)이 없으면 ‘한국보호조약’의 체결은 완성되지 않는다고 하는 해석 실행이 네덜란드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준필요설’의 입장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당시 헤이그평화회의의 주최지 국가가 될 정도로 당시 국제법의 활용 면에서는 유럽에서도 두드러진 존재였다는 사실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준의 필요성에 관한 당시 세계의 국제법 해석 실행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1907년 당시 네덜란드 외무성의 고관이 ‘비준필요설’을 전제

16) 기록보관담당자인 하이데브링크의 영문 번역에는 “Maybe we should explain to them that to our knowledge the treaty is in order”라고 되어 있다.

로 한 판단(오해였지만)을 추가한 메모 원본을 확인하고, 당시 외교실무의 실행이 드러나 있는 하나의 증거로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으로 당시 네덜란드 외무성의 견해를 증명할 수 있는 확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도 없다. 다만 당시의 법해석이 이 실행에서 드러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1905년 ‘한국보호조약(?)’에 관한 당시 외교실무의 실행을 파악하는 것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발견한 하나의 귀중한 증거인 만큼 이를 무시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네덜란드 정부 외무성의 해석 실행에 비추어 보면, ‘비준불요설’의 근거는 흔들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비준필요설’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증거 원본의 존재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의 의의는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5) 네덜란드의 해석 실행이 시사하는 점에 관한 고찰

왜 네덜란드 정부 외교관이 그러한 오해를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점에 관해서 네덜란드 정부 공문서관의 사료를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당시 네덜란드에서 ‘비준필요설’이 통설이었는지 여부에 관한 문헌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관해 필자는 네덜란드 주재 연구자¹⁷⁾의 협력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① 1907년 헤이그밀사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였지만, 당시 일본 정부가 어떻게 구미열강 정부로 하여금 ‘조약이 국왕에 의해 비준되었다’고 오인하

17) Emma Moore Research for Professor Etsuro Totsuka, February 2010. THE 1907 HAGUE PEACE CONFERENCE, Evidence of the Dutch Government's Judgment of the Protectorate Treaty and their subsequent treatment of the Korea Envoys and the participation of Korea in the Second Hague Peace Conference 1907.

Ms. Emma Moore, Jozef Israelslaan 35, 2596 AN The Hague, The Netherlands(E-mail: emma.moore@freeler.nl).

게 만들었는지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② 한국 황제가 파견한 헤이그 밀사가 제2차 헤이그평화회의에 참가할 수 없었던 이유에 관해 네덜란드 연구자의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들고 있다.

③ 한국 황제에게는 친구가 없었다.(뉴욕 타임스 보도)

④ 일본은 미국, 영국, 러시아와 각각 양국 간 관계를 쌓아 외교적으로 한국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했고 또한 국제정치상 압도적으로 한국을 능가하고 있었다.

⑤ 네덜란드 정부는 현재의 상태(status quo)를 바꾸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외무대신이 면담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조약에는 한국 황제의 서명이 있으므로 적법했다고 판단하였다. 팩스도 복사본도 없어서 원본을 검토할 수도 없다는 제약도 있었다.

⑥ 대한제국이 1904년 이후 헤이그평화회의라는 다국 간 국제관계의 틀 안에서 외교상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었다. 대한제국에 제2차 헤이그평화회의의 초대장이 보내졌지만 서울로부터의 답신은 없었다. 이 때문에 그 리고 일본 정부와의 협의 결과 제2차 평화회의 명부에서 제외된 것이다. 평화적 처리조약에 가맹(adhesion)하도록 개별적으로 요청받았지만, 대한제국 측은 대응을 하지 않았다. 과테말라는 행동에 나서 회의에 참가할 수 있었다. 이 점은 향후의 검토과제이다.

⑦ 조약의 체결을 위해 비준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1905년 당시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네덜란드 연구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뒤에서 기술하는 것처럼 ‘비준필요설’을 취하는 『홀씨 국제공법(ホール氏國際公法)』 원서가 평화궁전(Peace Palace)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었다는 점,¹⁸⁾ 네덜란드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905년 당시의 국제공법에 관한 적어도 4권의 서적¹⁹⁾에 ‘비준필요설’을 지지하는 기술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18) Emma Moore's E-mail(2010. 4. 2).

19) Emma Moore's E-mail(2010. 4. 1). ① George Grafton Wilson, 1927,

2_ 1905년 당시의 국제법 해석학에 대한 문헌연구

일본에 의한 대한제국 대표자 개인에 대한 1905년의 ‘한국보호조약(?)’의 강제와 조약의 효력문제는 아래와 같이 많은 법률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논점이다.

1910년의 ‘한국병합조약’은 그때까지 일본이 대한제국 정부 대표에게 서명을 강제한 여러 조약들, 특히 1905년의 ‘한국보호조약(?)’에 근거하고 있다.²⁰⁾ 1905년 조약(?)이 무효라면, 1910년 조약은 사상누각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1905년 ‘한국보호조약(?)’의 효력문제는 1910년 ‘한국병합조약’의 효력문제를 검토하는 데 있어 극히 중요한 기초가 된다.

또한 1905년 ‘한국보호조약(?)’은 안중근 대한의군 참모중장이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 공작을 사살한 이유인 15가지 죄상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게다가 1905년 ‘한국보호조약(?)’의 효력의 유무는, 아래와 같이 1910년의 안중근 대한의군 참모중장에 대한 재판의 불법성까지도 좌우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1) 안중근 재판에 관한 법원의 판단 내용

1910년 2월 14일 류순[旅順] 관동도독부 지방법원 마나베[眞鍋] 판관은, 검찰관의 주장을 채택하여, 1905년 ‘한국보호조약?’(법원은 이를 ‘일한협약’이라고 부르고 있다)’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재판관할권을 긍정하는 판결을 언

Handbook of International Law, St Paul, Minnosota: West Publishing Company, Second Edition, p. 191, ② Hannis Taylor, 1901, *International Public Law*, Chicago: Challaghan & Co., p. 386, ③ George Davis, 1901,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New York and London: Harper & Brothers Publishers, p. 235, ④ George Grafton Wilson and George Fox Tucker, 1905, *International Law*, New York: Silver, Burdett and Company, pp. 206~207.

20) 戸塚悦朗, 2006, 앞의 글, 15~42쪽. <http://ci.nii.ac.jp/naid/110006607790/> (2009년 3월 10일 열람). 이 논문은 본문의 ‘날조설’ 지지를 전제로 하였으며, “설령 형식적으로는 조약이 체결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1963년 ILC가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절대적 무효로 되어 있다”라고 읽어야 할 것이다.

도하였다.²¹⁾

……일한협약 제1조의 취지는 일본 정부가 그 신민에 대해 가지는 공권 작용 아래 한국신민도 평등하게 보호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므로, 공권작용의 일부에 속하는 형사법의 적용에 있어서, 한국신민을 제국신민과 동등한 지위에 두고, 그 범죄에 대해 제국형법을 적용·처단하는 것은 조약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원은 본 건 범죄에는 제국형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한국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정한다.

2) 당시의 국제법

(1) 대표 개인에 대한 강제 문제

『류우코쿠법학』에 공표한 논문²²⁾에서, 필자는 1905년 ‘한국보호조약(?)’은 비록 형태상으로는 체결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일본군과 이토오 히로부미가 한국 측의 각료 개인을 협박하여 체결의 형태를 갖춘 것이며, 추완도 인정되지 않는 절대적으로 무효인 조약이어서,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논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존재하므로 여기에서는 상술하지 않겠다.

(2) 전권위임장 문제

한국 측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외무대신은 조약문을 작성·서명할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전권위임장)을 고종 황제로부터 부여받지 않았으므로, 조약 작성·서명의 권한이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에서는 상술하지 않겠다.

21) 법원의 심의기록은 滿洲日日新聞社, 1910, 『安重根事件公判速記録』, 滿洲日日新聞社(天津市), 1910년 3월 28일 발행, 1~185쪽에 있다. 판결의 해당부분은 위의 책, 186~188쪽.

22) 戸塚悦朗, 2006, 앞의 글.

(3) 1905년 ‘한국보호조약(?)’은 날조된 것인가

조약문의 원본에는 타이틀조차 없으며, 조약문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다.²³⁾

이태진 교수의 저서²⁴⁾에 게재되어 있는 1905년 ‘한국보호조약(?)’의 영문 번역본에는 “CONVENTION”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다. 이 영문 번역은 일본 정부가 작성하여 널리 공표한 것이다.²⁵⁾ “CONVENTION”이라는 영어 용어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²⁶⁾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문 용어와 같다. 일본 정부는 후자(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CONVENTION”에 대한 일본어 번역으로 ‘조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보호조약(?)’의 경우에는 ‘협약’이라는 일본어를 타이틀에 붙여서 유포하였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한국어판 원본에는 실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꾸민 타이틀을 임의로 붙여 영문 번역문을 작성하여 국제적으로 유포한 것이다. 이것은 이 문서가 적법하게 성립된 듯한 외관을 꾸밈으로써 문서에 외형적 신용성을 부여하여 구미열강을 속이기 위한 조작이었다고 비판받아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적어도 그러한 의혹을 낳고 있다. 이것을 오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어판 원본²⁷⁾에 타이틀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이태진 교수에 의해 확인되었다. 필자는 이태진 교수의 저서에 게재된 한국어판 원본 사진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직접 자신의 눈으로 그 원본을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2010년 2월 9일에 필자는, 비록 한국에 보존되어 있는 한국어판 원본은 아니지만, 일본 토오쿄오[東京]의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보관되어 있는 한국어판 원본을 열람할 기회를 얻어 직접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이태진 교수의 저서에 실린 사진과 마찬가지로 한국어판 원본에는 타이틀이 없었

23) 李泰鎮 著, 鳥海豊 譯, 2006, 앞의 책 참조.

24) Yi, Taijin, 2007, p. 200.

25) According to the footnote of *supra* Yi, Taijin, 2007, p. 200 to Figure 3b, the translation in English is compiled in the *Kankoku choyaku ruisan* (1908).

26)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Vienna, 1969, 5, 23.

27) Yi, Taijin, 2007, p. 199.

다. 원본은 한국어판이 일본어판보다 크기가 컸다.

또한 일본 정부 외무성조약국이 만든 영어판이 있는데, 이태진 교수가 각 주에서 기재하고 있는 문헌은 위의 주에서 기재한 것처럼 1908년에 출판된 것이다.

필자가 이태진 교수의 ‘날조(위조)’설을 지지하기에 이른 것은 그의 저서에 게재된 한국어판 원본 사진과 영문 번역 사진을 비교한 결과이다. 필자의 지지는, 이태진 교수가 지적한 “CONVENTION”이라는 영문 타이틀을 1934년 대 일본제국 외무성이 출판한 일본 소재 문헌²⁸⁾에서 직접 확인한 후, 더욱 강해져 확신이 되었다. 이 『구조약휘찬(舊條約彙纂) 제3권(조선·류우큐우[琉球])』은 2009년 11월 15일 교토평[京都]대학 부속도서관에서 직접 열람하고 사진으로 촬영한 것이다. 아래에 사진(사진 3)을 게재하여 독자들이 참고하게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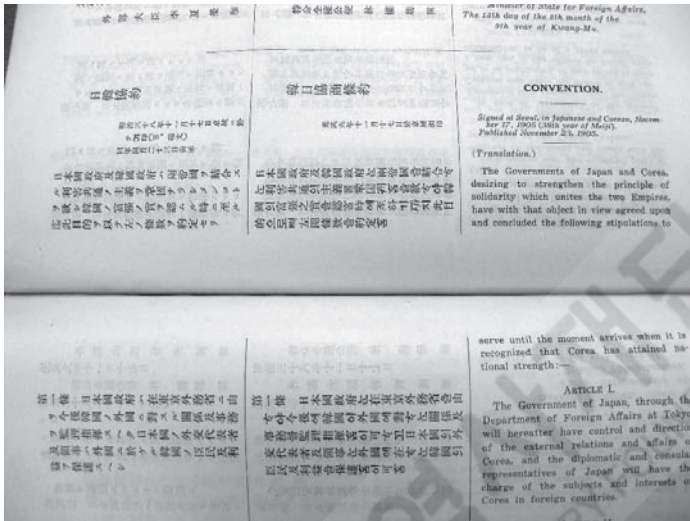
이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을 열거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1934년의 단계에서, 대일본제국 외무성 출판물은 1905년 ‘한국보호조약(?)’의 영문 번역문 타이틀로 “CONVENTION”을 붙였다. 이 사실은 이태진 교수의 저서에 게재된 사진의 출판물보다 26년 후에 나온 외무성 출판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이태진 교수 저서의 한국어판 원본사진에는 타이틀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일본제국 외무성은 이 출판물의 한국어판(1934년 출판)에서 ‘한일협상조약’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이것은 필자에게는 새로운 발견이다.

셋째, 필자는 일본어판 원본을 확인하지 못했었다. ‘거기에는 타이틀이 있을까.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여, 앞서 기술하였듯이 2010년 2월 9일에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서 일본어판 원본을 필자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다. 놀랍게도 일본어판 문서 원본의 첫 번째 줄은 공백이었으며 타이

28) 外務省條約局, 1934, 『舊條約彙纂第3卷(朝鮮·琉球)』, 外務省條約局, 204쪽(외무성이 교토평제국대학에 기증한 것으로, 2009년 11월 14일 교토평대학 부속도서관에서 열람하고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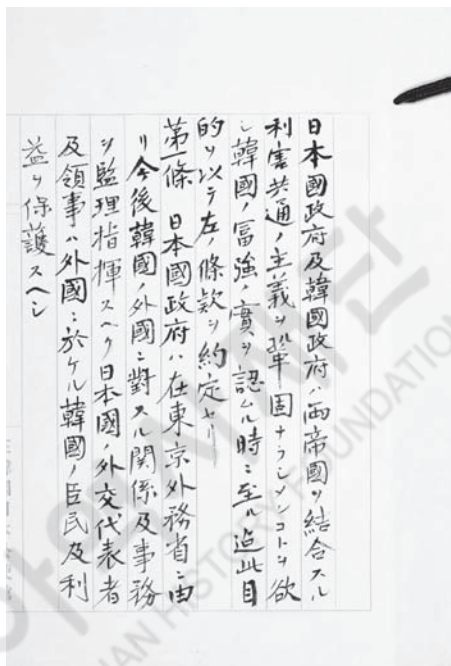
〈사진 3〉

틀이 없었다. 원본은 외무성 직원이 흰색 장갑을 끼고 가져와 보여주었는데, 필자는 원본을 만질 수 없었고 사진 촬영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외교사료관이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고 있는 마이크로필름판 복사본과 원본을 그 자리에서 직접 한 자 한 자 비교대조한 후 원본과 복사본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인터넷에도 사진(사진 4)²⁹⁾이 공개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마이크로필름 사진과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래에 게재한다.

대일본제국 외무성은 1934년의 출판물인 일본어판(사진 3)에서는 ‘일한협약’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그런데 일본 외무성이 보존하고 있는 일본어판 원본 문서(사진 4의 원본 사진에는 타이틀·명칭이 없다는 점에 주의)의 맨 앞부분에서는 ‘일한협약’이라는 글자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첫째 줄의 공백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9) 외무성외교사료관 소장 자료. <http://www.jacar.go.jp/goshomei/index.html> (2010년 6월 25일 열람).

즉 대일본제국 외무성이 펴낸 출판물에는 일본어판(필자가 2010년 2월 9일 원본을 직접 보고 확인했다)과 한국어판(일본 외무성이 보관하고 있는 원본을 같은 날 필자가 직접 보고 확인했다. 한국에 보존되어 있는 한국어판 원본에 타이틀이 없다는 사실은 이태진 교수의 저서의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에 모두 타이틀이 있다. 필자가 확인한 1934년의 대일본제국 외무성 출판물에 게재되어 있는 영문 번역은 일본어판 조약(?)문 및 한국어판 조약(?)문과 함께 나란히 게재되어 있는데, 그 모두에 타이틀이 붙어 있다.



〈사진 4〉

이것은 필자에게는 새로운 발견이었다. 영어판은 이태진 교수의 저서에 사진이 게재되어 있지만, 1908년 출판된 조약집과 동일한 영문 타이틀 “CONVENTION”이 1934년 출판물에서도 붙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어판 원본에는, 이태진 교수의 저서에 게재된 사진에서 보는 한, 타이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34년 대일본제국 외무성이 출판한 조약집에는 ‘한일협상조약’이라는 타이틀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1905년 ‘한국보호조약(?)’은 대일본제국 정부가 한국어판도, 일본어판도 그리고 영문번역판까지도 모두 ‘날조’하여 공표했다고 평가를 내려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한국어판 원본(이태진 교수의 저서에 게재된 사진)에도 일본어판 원본(위의 사진 4)에도 타이틀이 없는 것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주요국에 배포되었을 영문 번역도 날조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05년 ‘한국보호조약(?)’ 원본에는 본래 타이틀도 없었기에 그것은 미완성의 문서에 지나지 않았다. 즉 조약문 기초 단계의 원안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일본제국 정부는 미완성의 조약문 원안에 임의로 타이틀을 붙여 조약을 날조하고 그것을 국내외에 일방적으로 공표하였다고 판단된다.

(4) 고종 황제의 비준이 필요했을까

한국에서는 서명된 조약은,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고종 황제가 조약비준서에 서명하고 옥새를 날인하고 승인하여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여겨져 왔다. 그런데 황제는 마지막까지 서명도 옥새 날인도 하지 않았다.³⁰⁾ 아래의 문헌연구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주권국가가 외국에 외교권을 빼앗기고 독립을 상실할 정도의 중요한 조약이 황제의 동의 없이 체결된다는 것은 당시의 국제법상으로도 상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① 『ホール氏國際公法』(1899)

영국의 국제법 권위자인 윌리엄 에드워드 홀은 1899년 일본어로 출판된 『홀씨 국제공법』에서 조약 체결과 관련한 비준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약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의 최고 조약체결권한을 가지는 기관에 의해 …… 비준되는 것을 요한다”라고 비준필요설을 주장했다.³¹⁾ 또한, 1905년의 ‘한국보호조약(?)’의 문면에는 비준의 필요성에 대하여 명시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홀은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적인 비준’이 필요하다고 명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즉, 홀은 “전권대표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30) 李泰鎮 著, 鳥海豊 譯, 2006, 앞의 책 참조.

31) ウィリアム・ホール 著, 立作太郎 譯, 1899, 『ホール氏國際公法』, 東京法學院・有斐閣書房, 433쪽. 또한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예외로는 “군주 또는” 기타 “조약 체결의 권한”을 가지는 “기관에 의해 스스로 체결된 경우” 등이 열거되어 있다. 1905년 ‘한국보호조약(?)’은 고종 황제가 체결한 것이 아니다. 그 밖에 고종 황제와 동등한 조약체결권한을 가진 기관은 없었으므로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 명시적인 기준을 필요로 한다”³²⁾고 적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권위 있는 연구서의 번역으로 당시의 관습국제법 해석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통설이었다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참고로 이 책의 원서³³⁾는 1895년 영국에서 출판되었는데, 일본어판 출판(1899)에 앞서 일찌감치 원서가 출판된 이듬해인 1896년에 영어판 복사본이 일본에서도 출판되었다.³⁴⁾ 이것은 이 책이 당시 일본에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해도 좋다.

② 高橋作衛, 『平時國際法論』(1903)

당시의 대표적인 일본인 국제법학자도 비준필요설을 주창하고 있었다. 타카하시 사쿠에이는 토오쿄오제국대학에서 국제법을 강의했는데, 1903년(메이지 36) 그 토오쿄오제대에서의 강의를 정리하여 『평시국제법론』으로 출판하였다(같은 책 「序」 참조). 그는 1905년(메이지 38) 1월 이 책의 「증보 제6판 서」에서 존 웨스트레이크(John Westlake)를 스승으로 삼고 있다고 적고, 아래와 같이 홀과 마찬가지로 비준필요설을 취하고 있다. 타카하시 사쿠에이는 1903년 판 저서에서 “유효하게 조인된 조약은 다시 비준될 필요가 있다. 조약의 비준은 법률의 재가와 비슷한 점이 있다. 조약은 조인에 의해 제정되며 비준에 의해 비로소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다”³⁵⁾라고 적었다.

만약을 위해 부언하자면, 타카하시 사쿠에이는 “조약의 비준은 대체로 이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명시적인 비준”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나 예외

32) ウィリアム・ホール 著, 立作太郎 譯, 1899, 앞의 책, 433쪽.

33) William Edward Hall, 1895, *A treatise on international law*, Oxford: Clarendon Press. 문제의 해당부분은 345쪽. “Except …… ratification by the supreme treaty-making power of the state is necessary to its validity.”

34) William Edward Hall, 1896, *A treatise on international law*, 東京: 三省堂 (1906년 5월 10일 발행).

35) 高橋作衛, 1903, 『平時國際公法』, 日本法律學校, 初版, 561쪽; 高橋作衛, 1910, 『平時國際法論』, 日本大學校・清水書店, 4訂増補9版, 651쪽.

로서 “그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 굳이 이익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인 비준이 있었던 것”이라고 하여 ‘묵시적인 비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었다.³⁶⁾ 고종 황제는 1907년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하는 등 국제적으로 수차례 1905년 ‘한국보호조약(?)’이 일본의 일방적인 행위이며 자신은 승인하지 않는다고 이익을 계속해서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이 건에 관해서는 묵시적인 비준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책은 1903년(메이지 36) 7월 초판이 출판된 이래 1910년(메이지 43) 4정 증보 9판이 출판될 때까지 7년간 아홉 번이나 판을 거듭할 정도로 널리 읽힌 책으로, 당시의 표준적인 국제법 교과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카하시 사쿠에이는 제2차 오쿠마[大隈] 내각에서 1914년 4월 25일부터 1916년 10월 9일까지 법제국장관을 지낸 귀족원 의원이기도 했다. 법학자로서 당대 권위자 중 한 명이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³⁷⁾

③ 立作太郎, 『平時國際法完 大正14年東大講義』

타찌 사쿠타로는 타카하시 사쿠에이보다 뒤에 토오쿄오제국대학에서 국제법을 강의하였으며, 그 이전인 1899년에 앞서 언급한 『홀씨 국제공법』을 번역 출판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홀의 학설을 계승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토오쿄오제국대학의 국제법 강의에서 비준필요성을 주장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타찌 사쿠타로의 토오쿄오제국대학 강의록이 등사본으로 남아 있는데, 그 강의록에서는 “..... 비준을 요하는 일반 조약에서는”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조인은 비준을 조건으로 하며 조건부로 조약을 성립시키는 것으로 조약의 구속력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비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³⁸⁾

36) 高橋作衛, 1903, 앞의 책, 653쪽.

37) <http://ja.wikipedia.org/wiki/%E5%86%85%E9%96%A3%E6%B3%95%E5%88%B6%E5%B1%80%E9%95%B7%E5%AE%98>(일본 위키피디아, 2009년 11월 7일 열람).

38) 立博士述, 1925, 『平時國際法完 大正14年東大講義』(비매품), 373쪽.

타찌 사쿠타로오는 훗날의 저서에서 소수설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타찌 자신이 1942년(쇼오와 17)의 시점에 “다수설은 전권위원이 서명 조인한 것도(적어도 비준을 요하는 조약에서는) 비준 이전에는 조약안에 지나지 않으며 아직 조약으로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비준필요설’이 다수설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³⁹⁾

따라서 패전 전의 일본 국제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비준필요설’이 다수설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다.

④ 당시의 기타 문헌에 관한 조사

위에서 기술한 1905년 당시의 고서에 속하는 국제법 문헌은 교토대학(패전 전의 교토제국대학) 및 오오사카[大阪]대학(패전 전의 오오사카제국대학)의 도서관에 소장되고 있었던 덕분에 비교적 용이하게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의 존재는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었다. 직접 이들 대학을 찾아가 서고에서 조사해야 하는 수고는 필요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연구이다.

그런데 1905년 당시 국제법에 관한 기타 문헌은 얼마나 존재한 것일까. 만약을 위해 국회도서관에서 조사해 보았다.

국회도서관의 문헌검색에서 ‘국제공법’을 키워드⁴⁰⁾로 입력하여 1905년 이

39) 타찌 사쿠타로오는 훗날의 저서 『平時國際法論』(日本評論社版)을 출판하게 되자 입장을 바꾸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례를 고려할 때는, 전권위원의 서명 조인에 의해 조약이 조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하여 ‘비준불요설’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立作太郎, 1932, 『平時國際法論』, 日本評論社, 1932년 초판, 1942년 9월 10일 11쇄 발행, 559~560쪽). 왜 타찌 박사는 통설인 ‘비준필요설’을 버리고 비준을 경시하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일까? 이 변절에 이른 진의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이 소수설은 1905년 ‘한국보호조약(?)’이 ‘고종 황제의 비준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라는 일본 외무성의 입장에 유리한 학설임에 틀림이 없다.

40) 검색 범위를 확장하여 1905년까지 ‘국제법’을 키워드로 입력하면 56건의 문헌이 검색된다. 이 검색에 따르면, 당시에는 위의 윌리엄 에드워드 홀 이외에 테오도르 올시, 프리드리히 폰 마르텐스의 국제법 저작을 번역한 책이 기본적인 전문서로 출판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http://unicanet.ndl.go.jp/psrch/Next.do?P=1&id=1267923516317410BAEF12FA69F37112D9FD9A582878B>(2010년 3월 7일

전의 저작을 검색한 결과 79건에 달하는 저작의 제목을 발견하였다.⁴¹⁾

이들 고서 모두를 국회도서관에서 열람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지만,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단기간에 조사할 수 있다. 필자가 ILC의 1963년 총회 보고서를 발견했을 당시의 일인데, 1993년에 당시 효오고[兵庫]현에서 선출된 참의원 의원이었던 모토오카 쇼오지[本岡昭次] 전 의원이 조약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질문을 한 일이 있다. 그런 인연도 있어서, 같은 효오고현에서 선출된 현직 의원인 미즈오카 슌이찌[水岡俊一] 참의원 의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79건 중 타이틀이 ‘국제공법’이며 발행연도가 명확한 책 중에서 참조할 만하다고 생각된 것을 임의로 선정해 보았다. 남은 문헌만 헤아려도 이 글 말미의 별표⁴²⁾와 같이 40건에 달했다.

국회도서관에 문의하여 조사한 결과 이들 중 다섯 점(13, 19, 23, 35, 38)은 도서관에서 원본(마이크로피시로 된 것도 있다)⁴³⁾을 열람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 다섯 점을 제외한 35건은 인터넷상에도 공개되어 있었다. 어리석게도 필자는 이 점을 몰랐지만, 국립국회도서관은 저작권상의 문제가 없는 오래된 문헌부터 순차적으로 전자도서관 근대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었다. 외국에서도 접속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기술과 공공서비스의 빠른 진보에 놀랄 따름이다.

일본에서 1905년(메이지 38) 당시에 이미 이렇게나 많은 국제공법에 관한 전문서가 일본어로 출판되었다는 사실은 실로 놀랍다. 당시의 일본에 법학을 가르치는 다수의 고등교육시설이 존재했다는 사실, 일본어로 국제공법을 가르칠 인재가 다수 육성되어 있었다는 사실, 국제공법에 관한 지식이 일본어로 상당히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열람).

41) 국회도서관 「서지일람표시」 검색. <http://opac.ndl.go.jp/Process>(검색 키워드 ‘국제공법’, 검색일은 2010년 1월 8일).

42) 문헌검색 및 선정은 필자가 했으나, 별표는 미즈오카 슌이찌 참의원의원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다. 위 사무소의 협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43) 국회국립도서관 전자도서관 근대디지털라이브러리. <http://kindai.ndl.go.jp/index.html>.

또한 ‘국제법’을 검색어로 입력하여 국회도서관의 근대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소장 중인 1905년 이전의 저작을 검색한 결과 26건의 타이틀을 확보하였다. 이들 중 전식국제법에 관한 저작, 특정 분야에 관한 저작, 이미 ‘국제공법’으로 검색한 저작을 제외하고, 8건의 저작⁴⁴⁾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확보한 저작을 빠짐없이 조사하였다. 동일 저작의 저작이 복수인 경우에는 최신의 저작을 선택하였다. 당시의 유력 법률학교가 교과서로 사용하고 가르칠 정도의 권위 있는 국제공법 및 국제법 교과서(통설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를 조사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작에 따라 상세하거나 조잡한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술이 미흡한 저작도 발견되지만, 대부분의 저작에서 ‘비준필요설’을 지지하는 기술을 발견할 수 있었다(첨부자료 참고). 놀랍게도 이들 1905년 당시의 저작 중에서 ‘비준불요설’을 주장한 저작은 한 건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들 저작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학설은 ‘비준필요설’로 일치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통설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비준불요설’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1905년 당시 일본의 연구수준은 상당히 높았으며, 구미 여러 나라의 국제공법·국제법에 관한 연구성과를 거의 완벽하게 도입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생각한다면, 세계적으로도 ‘비준불요설’은 일본 정부 외무성을 제외하고는 ‘전무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100년이나 지난 지금도 일본 측 학자, NHK 등의 언론, 그 그늘에 숨어 있는 일본 정부·외무성 당국자들은, 변함없이 ‘비준불요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은 도대체 어떤 학문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일까.

44) ① 프리드리히·フォン·マルテンス 著, 中村進午 譯, 1900, 『國際法』(早稻田叢書), 東京專門學校出版部, ② ウールシー 著, 箕作麟祥 譯, 1875, 『國際法 上篇』, 弘文堂, ③ 今西恒太郎, 1899, 『國際法學』, 丸善, ④ 豊島鐵太郎 編, 1891, 『國際法講義錄』, 豊島鐵太郎 刊, ⑤ 大野若三郎 編, 中村進午 閱, 1903, 『國際法新論』, 有斐閣, ⑥ レオン・レヴキ 著, 前田盛江・山中淳貫 譯, 1894, 『國際法提要』, 東京專門學校(東京專門學校 政治科 第5回 3年級 講義錄), ⑦ ジョン・ウエストレーキ 著, 深井英五郎補 譯, 1901, 『國際法要論』, 民友社, ⑧ 루이·르 노ール 著, 蜷川新 譯, 1900, 『國際法論』, 東京專門學校出版部.

이 조사를 완료하면서 필자는 일본에서는 학문과 실무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던 탓에, 외교실무도 정치도 모두 학문연구의 성과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감하였다. 게다가 이것은 학문연구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일본에도 존재했던 학문연구 성과를 완전히 무시해 온 외교실무에 대해 한마디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실로 놀랄 만한 사례이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향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모든 저작을 상술하는 번잡함은 피하고, 이들 중 역사적으로 특히 거론할 의미가 있는 흥미로운 저자의 저작인 쿠라찌 테쓰키찌[倉知鐵吉]의 『국제공법』⁴⁵⁾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쿠라찌 테쓰키찌는 1910년 당시 일본 외무성의 정무국장이라는 최고 엘리트 관료의 자리에 있었다. 게다가 안중근 대한의군 참모총장의 재판 때 안중근을 ‘극형’에 처하기 위해 뒤순에서 획책했다는 점에서도 역사상 중요한 인물이다. 필자는 안중근 대한의군 참모총장 재판의 불법성에 관한 논문⁴⁶⁾에서 아래와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카노[狩野]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⁴⁷⁾ 안중근 재판의 경우 일본 행정부가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농후하다. 카노 변호사는 “본 사건 발생 후 일본의 외무대신 코무라 주타로오[小村壽太郎]는 즉시 외무성 정무국장 쿠라찌 테쓰키찌를 만주에 파견하여 이 재판에 관해 여러 가지로 획책하게 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⁴⁸⁾도 확인할 수 있었다. 카노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재판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을 떠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5) 倉知鐵吉, 1899, 『國際公法』, 東京: 日本法律學校(日本法律學校 第四期 講義錄), <http://kindai.ndl.go.jp/BIBibDetail.php>(2010년 1월 8일 열람).

46) 戸塚悦朗, 2009, 「安重根裁判の不法性と東洋平和」, 『龍穀法學』 42권 2호, 1~27쪽.

47) 狩野琢見, 1991, 「安重根無罪論」, 『安義士の生涯と思想—殉國第81周忌紀念國際學術シンポジウム報告集』, 安重根義士紀念館, 106~108쪽.

48) 안중근기념관, 2001, 『대한국인 안중근』, 안중근기념관 발행, 132쪽.

그런데 쿠라씨의 『국제공법』은 1899년 일본법률학교가 출판한 교과서이다. 일본법률학교는 현재의 일본대학⁴⁹⁾의 전신으로 당시 5대 법률학교 중 하나로 꼽히는 명문학교였고 일본 정부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쿠라씨 테쓰키씨는 그 시대에 국제공법을 가르친 권위 있는 학자 중 한 사람이기도 했다. 이 책은 1905년의 ‘한국보호조약(?)’ 강제사건 이전에 출판되었다. 쿠라씨는 1910년 ‘한국병합’ 때 외무성 정무국장으로 종래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던 ‘병합’이라는 법률용어를 고안한 인물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⁵⁰⁾ 이 책은 안중근 대한의군 참모총장 재판(1910) 이전인 1899년에 출판된 것이며, 쿠라씨는 이 책에서 국제법 해석학을 솔직하게 피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쿠라씨가 출판 이후에 발생한 이들 사건을 감안하여 이 책의 법해석에 관한 기술에 작위적으로 수정을 가할 수는 없었을 터이다.

이러한 시기에 저술되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쿠라씨의 『국제공법』을 참조해 보도록 하자. 흥미로운 것은 쿠라씨의 저서는 위에서 서술한 통설과 마찬가지로 ‘비준필요설’을 채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쿠라씨는 “유효하게 체결된 조약은 나아가 비준될 필요가 있다. 조약의 비준은 법률의 재가와 유사한 면이 있다. 조약은 체결에 의해 제작되며 비준으로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다”⁵¹⁾라고 적고, 나아가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군주,

49) 일본법률학교는 1889년에 설립되었다. 일본대학 법학부의 홈페이지 <http://www.law.nihon-u.ac.jp/applicant/gakubu/history.html>를 보면, “일본대학의 창립자, 야마다 아키요시[山田顯義]. 메이지유신의 중심인물 중 한 사람으로 소년기에 요시다 쇼오인[吉田松陰]의 쇼오카손츠크[松下村塾]에서 배우고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 등과 함께 구미 각국을 시찰한 그가 확신한 것은 ‘법률은 軍事에 우선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초대 내각을 비롯해 각 내각에서 사법대신을 역임, 헌법, 민법, 상법 등의 편찬에 참여하며 근대적 법치국가의 기초를 확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야마다 아키요시가 일본의 독자적인 법전연구와 교육을 위한 법률학교로 설립한 것이 바로 일본대학의 전신인 ‘일본법률학교’입니다. 일본대학 법학부에는 지금도 국법 정비에 생애를 바친 야마다 아키요시의 법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50) 外務大臣官房文書課, 2000, 「倉知鐵吉氏述韓國併合の経緯」, 外務省, 『近代外交回顧録4』, ゆまに書房, 163~182쪽.

51) 倉知鐵吉, 1899, 앞의 책, 198~199쪽.

기타 조약 체결의 대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직접 조약을 체결하는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약은 모두 비준에 의해 비로소 효력이 생기므로, 아직 비준되지 않은 조약은 여전히 조약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⁵²⁾라고 명확하게 비준필요설을 역설하고 있다.

쿠라찌 외무성 정무국장은 뤼순에 파견되어 안중근 대한의군 참모총장을 극형에 처하라는 코무라 주타로오 외무상의 지시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였다. 쿠라찌는 1905년의 ‘한국보호조약(?)’은 비준이 필요함에도 비준이 없었다는 사실, 따라서 그것은 “아직 비준되지 않은 조약”으로서 “여전히 조약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해야 했다는 사실도 숙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라찌는 재판소가 재판관할권의 근거로 1905년의 조약을 유효한 조약으로 보고 판결의 기반으로 삼아 판결을 언도하는 것을 묵과하였던 것이다.

위의 문헌은 1905년의 ‘한국보호조약(?)’이 한국 고종 황제의 비준이 빠진 탓에 당초부터 체결되지 않은 무효인 문서라는 점, 그리고 그런 연유로 안중근 재판에는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하는 중대한 불법이 존재했다는 점을, 대일본 제국 정부는 그 당시부터 숙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매우 의미 있는 문헌이다.

참고로 운노 교수는 앞서 언급한 책⁵³⁾에서 쿠라찌의 『국제공법』을 인용하고 있지만, 웬지 비준필요설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언하고자 한다.

52) 倉知鐵吉, 1899, 앞의 책, 201~202쪽.

53) 海野福壽 編, 1995, 앞의 책, 10쪽의 주(2)에서는, 이 책을 “倉地鐵吉, 『國際公法』 (1899)”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 책의 저자는 倉知鐵吉이다. 그리고 운노 교수가 인용한 부분은 조약 서명의 강제 문제에 관한 197쪽으로 필자가 ‘비준필요설’의 증거로 인용한 부분(198~199쪽 및 201~202쪽)의 직전 부분에 해당한다. 운노 교수는 필자가 ‘비준필요설’로서 인용한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운노 교수는 ‘비준필요설’을 뒷받침하는 쿠라찌의 저술 부분을 인용하지 않았을까? ‘수수끼끼’이다.

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해석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1905년 당시 국제관습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학설은 ‘비준필요설’로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었다. 게다가 ‘비준불요설’을 뒷받침하는 학설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현재는 이러한 경향이 반복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4조 1항⁵⁴⁾은 “조약에 구속되는 데 관한 국가의 동의는 아래의 경우에는 비준에 의해 표명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비준이 필요한 “아래의 경우”로서 네 가지 항목을 들고 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당사자 간에 비준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비준이 필요하지만, 비준이 필요없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된다. 그러면 비준 필요 여부에 대하여 문서의 조항에 명확한 문구가 없는 1905년의 ‘한국보호조약(?)’의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와 같이 비준 필요성에 관해 조약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준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합의도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합의가 존재했다고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비준 필요성에 관해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일본 정부 측조차도 당초에는 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그러나 고종 황제가 목숨을 걸고 비준을 거부했던 까닭에, 비준이 불필요한 조약이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대한제국의 법제도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비준이 필요하다고 규정

54) 제14조 1항 “조약에 구속되는 데 관한 국가의 동의는 아래의 경우에는 비준에 의해 표명된다. ㉔ 동이가 비준에 의해 표명된다는 것을 조약이 정하고 있는 경우, ㉕ 비준을 요한다는 점을 교섭국이 합의하였다는 것이 다른 방법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㉖ 국가의 대표자가 비준을 조건으로 조약에 서명한 경우, ㉗ 비준을 조건으로 조약에 서명한다는 사실을 국가가 의도하고 있다는 점이 해당국의 대표자가 소지 중인 전권위임장에서 명백하거나 또는 교섭의 과정에서 표명된 경우.”

하고 있었다.⁵⁵⁾ 일본 정부 측이 한국의 법제도를 모르고 있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고종 황제는 이토오 히로부미의 강경한 담판에도 불구하고, 사전에도 사후에도 이 조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었다. 황제는 조약의 서명일로 예정되어 있던 1905년 11월 17일에도 체결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토오 히로부미가 같은 날 일본군을 동원하여 황궁을 포위하고 국가의 대표자 개인에게 강압적으로 조약의 체결을 강요할 필요는 없었다. 또 그 후에 일어난 1907년의 헤이그밀사사건은, 고종 황제가 그 조약을 계속해서 부정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명한 증거 중 하나이다. 고종황제의 이와 같은 일관된 자세에 비추어 볼 때, 그 조약과 관련하여 대한제국 측이 외부대신의 서명만으로, 황제의 비준 없이 조약을 성립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당초부터 그 조약과 관련하여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조약에 관한 국제관습법의 원칙에 따라 비준이 필요했다고 해야 한다.

⑥ 『오ppen하이ム(오펜하임)』(第9版)

*Oppenheim's International Law*는 패전 전후에 걸쳐 일본의 제국대학에서도 널리 읽혀진 권위 있는 국제법학 기본서였는데, 이 글에서는 제9판⁵⁶⁾을 참조하고자 한다. 이 책은 과거 3세기 동안 비준제도의 기능이 현저하게 변모되었다고 하고 있지만, 그 요지는 아래와 같이 ‘비준필요설’을 채용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비준의 기능은 조약에 의해 구속되기 위한 동의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비준이 필요한 조약은 비준 없이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55) 李泰鎮, 2008, 「1904~1910年, 韓國國權侵奪條約の手續き上の不法性」, 笹川紀勝・李泰鎮 編著, 『國際共同研究韓國併合と現代-歴史と國際法からの再檢討』, 明石書店, 109쪽. 당시 조약체결에 관한 대한제국의 국내절차가 정해져 있었으며, 조약문의 서명 후, 정부의 여러 기관의 심의를 거쳐, 황제의 재가 및 날인(수결인), 옥새의 날인에 의한 비준에 이르는 국내법상 절차가 필요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그중 어떤 단계의 심의도 하지 않았다.

56) Robert Jennings and Watts Arthur eds., 1996,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Ninth Edition Vol. 1 Peace Parts 2 to 4*, Longman, pp. 1226~1230.

때문에, 비준이야말로 조약 체결의 요체이다. 비준이 있기 전에는 단지 조약 제안에 대해 서로 합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위에서 서술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4조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비준이 필요한 조약”에 관해 상술하고 있다. 조약에 비준의 필요성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문제인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비준불요설’을 취하는 입장과 원칙적으로 ‘비준필요설’(“조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조약은 원칙적으로 비준을 필요로 한다”라는 설)을 취하는 입장 사이에 학설 간의 논쟁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였다.

이렇게 논한 후 『오펜하임』은 후자를 “보다 좋은 설”로서 채용하였다.⁵⁷⁾

『오펜하임』은 원칙에 대한 다수의 예외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treaty(조약)” 또는 “convention(협약)”이라고 불리는 조약이 아닌 경우에는, 특히 비준의 필요성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만 비준이 필요하다고 하여, 문서의 명칭을 중시하는 주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⁵⁸⁾

『오펜하임』은 명칭에 상관없이, 문서의 내용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여타 조약의 조항의 해석에 관한 합의와 같은 사소한 문제에 관한 문서는, 비준이 필요하지 않은 예외라고 하였다.⁵⁹⁾

『오펜하임』의 이러한 기술을 참고하면, 비준의 필요 여부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 1905년의 ‘한국보호조약(?)’의 경우, 아래의 세 논점과 관련해서도 ‘비준필요설’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일반 원칙의 면에서 볼 때, ‘비준필요설’이 보다 좋은 설이다.

둘째, 문서 명칭의 면에서 볼 때, 대일본제국 외무성은 영문에서는 “CONVENTION”이라고 선전했고, 일본어판에는 ‘협약’, 한국어판에는 ‘조약’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문서이기 때문에, 비준이 필요했다.

셋째, 문서 내용의 면에서 볼 때, 외교권 박탈과 같이 국가주권의 상실과

57) Robert Jennings and Watts Arthur eds., 1996, p. 1229.

58) Robert Jennings and Watts Arthur eds., 1996, p. 1230.

59) Robert Jennings and Watts Arthur eds., 1996, p. 1230.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준이 필요했다.

따라서 역사연구를 통해 고종 황제의 서명도 비준도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1905년의 ‘한국보호조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앞서 서술한 것처럼, 이 조약(?)은 조약문으로서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조약이었던 만큼, 일본 정부가 작성하여 일본 국내외에 반포한 1905년의 ‘한국보호조약(?)’은 날조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날조한 영문 조약문(타이틀이 있다)⁶⁰⁾을 세계 각국에 제시하여 한국 황제가 정식으로 비준하고 적법하게 체결한 조약이라고 세계 각국의 외교담당자가 오인하도록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⁶¹⁾ 1905년의 ‘한국보호조약(?)’ 강제 사건은 실제로는 무력을 이용한 침략행위에 의한 강제적인 점령⁶²⁾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고 세계 각국의 비판을 초래하지 않는 외형을 갖추기 위해 날조(위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한국 황제가 보호국화를 희망한 ‘합법적’인 조약 체결이었다고 구미열강 정부의 외교담당자가 오인하도록 만들기 위한 모략이었다고 평가하는 편이 합리적이지 아닐까. 이들 모든 과정을 총지휘한 인물이 바로 이토오 히로부미 공작이었다.

60) 李泰鎮, 2008, 앞의 글 참조.

61) 실제로는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서명도 비준도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원본은 서울과 토오쿄오에 있었다. 팩시밀리도 복사기도 없었던 시대에 어떻게 이것을 확인했는지 흥미롭다. 일본 정부가 ‘날조’한 영어번역문(조약정문이 아니다)을 각국 정부에 배포하여 고종 황제의 서명·비준이 있었던 것처럼 꾸미는 연동을 되풀이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그러나 이것은 역사연구자의 흥미이며, 그 점에 관한 증명이 없더라도 ‘비준필요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원본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의 의의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62) 이러한 상태를 가령 ‘정복’이었다고 고쳐 주장한다면, 별도로 그 요건이 성립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일본제국 정부가 무력에 의해 한반도의 실효적 지배를 확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대한제국을 ‘정복’했다는 취지의 선언을 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그 전제로서, 합법적인 보호국화 및 병합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효였음을 인정한 후에, 법해석을 변경한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선언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이들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앞으로 그런 선언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사인식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Ⅲ. 맺음말: 정리

1_ 요약

1905년의 ‘한국보호조약(?)’은 체결되지 않았던 (설령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무효였던) 것이었다.

1) 1910년 ‘한국병합조약’과의 관계

따라서 1905년 ‘한국보호조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1910년의 병합조약 유효론은 사상누각이며 붕괴되지 않을 수 없다. 1910년의 ‘한국병합조약(?)’ 또한 대한제국 황제의 서명이 들어간 비준이 없었던 점⁶³⁾에서도, ‘병합조약(?)’도 무효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안중근 대한의군 참모중장 재판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안중근 대한의군 참모중장 재판에 관해서도, 법원은 관할권을 확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3) 북유럽의 연구상황

또한 유럽 국가 중에서도 네덜란드에서는 본문에서 서술한 것처럼 역사연구가 일정 정도 진척되어 있으나, 북유럽의 핀란드⁶⁴⁾에서는 필자가 1개월 동안 현지

63) 李泰鎮, 2010, 「韓國併合條約の實相」, 韓國併合市民ネットワーク 編, 『今, 「韓國併合」を問うー強制と暴力・植民地支配の原點』, アジェンダ・プロジェクト, 4~18쪽.

64) 투르쿠(Turku)대학(동아시아연구센터)에 2009년 8월부터 약 1개월 동안 객원연구

조사를 실시했지만 한일관계를 연구하는 연구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국제사회에 친구가 없었다는 사실이 대한제국의 소멸 원인 중 하나였음을 떠올린다면, 동아시아 각국은 적극적으로 전 세계적인 규모로 동아시아에 관한 역사연구의 거점 창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대규모의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적 없는 북유럽의 핀란드는 중점지역으로 적합하다.

4) 일본의 정권교체와의 관계

일본에서는 2009년 8월에 치러진 총선거 결과 정권교체가 실현되어 같은 해 9월 16일에 하토야마[鳩山] 정권이 출범하였고, 그 후 일본 정계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 걸음 전진한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아직 덮어놓고 환영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첫째, 일본에서는 구조약문제에 관한 연구가 극히 불충분하며, 여전히 한국의 이태진 교수, 고 백충현 교수 등이 쌓은 중요한 연구를 충분히 이해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정도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고대 이래의 동아시아 교류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조선사 연구는 현저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⁶⁵⁾

그러나 조선의 식민지 지배에 관해서는, 특히 국제법 분야에서는 전문가의 연구가 진전되고 있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식민지 지배에 관한 일본 사회의

원으로 체재하면서, 2009년 9월 4일에 개최된 ‘일본사회와 인권’에 관한 세미나에서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강연하였다. 그동안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고 조사한 범위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핀란드에서 한일관계에 관한 충실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았다.

65) 駐日本國大韓民國大使權哲賢氏公開講演會, 「歴史からみた韓日交流の展開と今後の課題」, 2009년 6월 16일(화). <http://www.nikkan100.net/koryu.html> (2010년 5월 4일 열람), 「文化理解」 참조. 필자의 수업의 일환으로 한국 대사를 초청하여 류우코쿠대학에서 강연회를 열었다. 권철현 대사는 1500년간의 한일 역사를 알기 쉽게 개관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사이트 게재를 흔쾌히 수락해 주신 대사께 감사드린다. 많은 역사학자의 연구성과도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역사인식은, 최근까지도 ‘눈을 감고 입을 닫고 귀를 닫은’ 상태로, 100년간 이어져 온 것이다.

1945년 9월 2일의 항복문서 조인에 이르는 경위를 조사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제안⁶⁶⁾되었지만, 그 사정범위는 15년 전쟁의 진상규명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 입법도 실현되지 않고 있으니 패전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에 관한 공적이면서 법에 근거한 진상규명은 진전이 없는 셈이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관련한 역사적 연구, 특히 조약문제의 법적 분석 등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는, 연구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 들어 문화면에서 중요한 사회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서 보급되면서 풀뿌리 차원에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시민 차원의 역사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는 공공방송인 NHK가 식민지 지배의 반성과는 거리가 먼 시바 료오타로오[司馬遼太郎]의 저작 『언덕 위의 구름(阪の上の雲)』을 드라마화하여 전국에 방영하고 있다.⁶⁷⁾ 안중근과 1905년의 ‘한국보호조약(?)’에 관한 NHK 특집방송이 최근의 법적 연구의 성과를 담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앞서 서술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이 상징하듯이 일본에는 식민지 지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커다란 흐름이 잔존하고 있다.

그러한 흐름의 근저에는 역사적 진실을 스스로 의식화하지 못하는 일본인의 정신구조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그것이 일본의 학문, 사상, 문화,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밑바닥에는 과거 100년의 한일 관계를 일방적으로 정당화하고 싶어 하는 정서와 패전 전부터 이어져 온 강고한 내셔널리즘의 지배를 받은 집단인식이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바로 그 흐름이 전문분야의 연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교육제도도 법적으로 ‘일본인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

66) 「國立國會圖書館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http://www.shugiin.go.jp/itdb_gian.nsf/html/gian/honbun/houan/g16401027.htm(2010년 5월 4일 열람).

67) 中塚明・安川壽之輔・醍醐聰, 2010, 『NHKドラマ「阪の上の雲」の歴史認識を問う』, 高文研(6月), 1~183쪽.

적으로 일본인으로서의 ‘애국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에는 일상적으로 외국국적을 가진 다수의 아이들이 일본의 공적 학교제도 안에서 (손님의 자격으로서이기는 하지만) 교육을 받고 있다. 따라서 북한·한국 국적의 아이들에게도 일본에 대한 ‘애국심’을 고양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일본의 교육제도가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인류’의 구성원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일본인’을 육성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100년 후를 목표로 오로지 일본만을 사랑하도록 요구하는 ‘애국심’ 교육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대응을 잘못하면, 100년 후까지도 문제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일본의 정치는 이러한 일본의 큰 흐름 속에 존재한다. 그래서 당연한 일이지만, 일본 정부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일상적인 일이 되어 버린 일본 정치가의 ‘망언’만을 문제시해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일본 내셔널리즘의 확대재생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진지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EU의 기반에는 나치 독일의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깊은 반성과 명확한 사죄가 있다는 점과 대비해 본다면, 여전히 ‘동아시아 공동체’의 전제조건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병합’ 100년에 즈음하여 구조약문제에 관한 연구는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일본에 전환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둘째, 구조약의 불법성에 관한 일본에서의 연구가 전혀 진전이 없는 이유는, 그것이 금기시되어 왔기 때문이 아닐까. 1905년의 ‘한국보호조약(?)’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 안중근 대한의군 참모총장 재판에 관한 연구도 불충분하다. 금기는 정치, 사회, 학문 등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있다. 일본의 지식인들이 구독하는 잡지 『세계』는 안중근 대한의군 참모총장이 처형 직전에 집필한 미완의 『동양평화론』의 번역을 2009년 9월이 되어서야 게재하였다. 앞으로 일본, 한국 및 중국인들이 이것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 『동양평화론』은 오늘날의 EU와도 일맥상통하는 높은 수준을 가진 것이며, 일본의 동아시아 지배를 정당

화하려 했던 ‘대동아공영권’ 구상과는 전혀 다르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현재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안중근 대한의군 참모총장의 『동양평화론』에 충분히 입각한 제안일까.

일본의 연구자, 시민, 언론 그리고 정부는 한일 간에 체결된 과거의 조약에 관한 역사연구의 성과를 용감하고 솔직하게 수용하여 자신의 역사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⁶⁸⁾ 그러한 대전환이야말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이다. 이것 없이는 어떤 공동체 구상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0년 8월은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결절점이었던 만큼, 일본 정부에게는 1905년 ‘한국보호조약(?)’ 및 1910년 ‘한국병합조약(?)’ 등 한일구조약이 당초부터 무효였다고 승인함으로써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하토야마 정권을 계승한 칸 나오토[菅直人] 수상의 담화(8월 10일)는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했다.⁶⁹⁾

앞으로 더 진전된 역사적 연구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없었던 역사법학적인 연구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68) 2010년을 목표로 일본 측에 역사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다수의 시민선언이 한일 양측의 지식인·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공표되고 있다. 필자가 참가한 것만으로도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① ‘한국병합’을 앞두고 일본 시민사회가 발신하는 ‘실패와 희망의 메시지’, ‘반성과 화해를 위한 시민선언’ (2008년 10월 25일 채택), 韓國併合市民ネットワーク 編, 『今, 「韓國併合」を問う-強制と暴力・植民地支配の原点』, アジェンダ・プロジェクト, 3쪽. <http://www.nikkan100.net/sengen.html>, ② 「韓國併合の過程は不義不當であり, 併合條約も不義不當である-日韓知識人共同聲明」(2010. 7. 31), 『世界』 2010년 10월호. <http://www.iwanami.co.jp/sekai/2010/07/105.html>, ③ 「今こそ日本軍「慰安婦」問題の眞の解決を求める韓國強制併合100年市民宣言」(2010. 8. 29). <http://www.jca.apc.org/ianfuketsugi/> (2010년 8월 30일 열람).

69) 2010년 8월 10일 각 신문(석간), 『주간법률신문』(2010. 8. 20) 칸 수상 담화 특집호.

2_ 향후의 연구방향에 관한 제안

1) 향후의 연구방향

(1) 일본에서의 문헌연구

당시의 국제법 해석이 어떠했는지에 관한 당시의 문헌을 연구하였다. 일본에서 1905년 당시 입수할 수 있었던 권위 있는 기본적인 대내외 학설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비준필요설’은 1905년 당시의 통설이고 일치된 학설이며, ‘비준불요설’을 지지하는 학설은 전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05년 이후의 학설의 변천 및 현재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설에 관한 문헌연구에 따르면, 지금도 통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비준불요설’이 정당하다고 하는 경향은 바뀌지 않고 있다. 향후 왜 일본의 외교실무와 학문연구가 과거 100년간 일관하여 세계의 일치된 학설을 무시한 채로 지속되어 왔는지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검토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가 보관 중인 1905년의 ‘한국보호조약(?)’ 원본을 확인하여 타이틀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한국어판 원본에 관한 이태진 교수의 연구결과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이로써 ‘날조설’은 더욱 확정적인 것이 되었다.

(2) 네덜란드에서의 당시의 역사자료 연구

네덜란드의 연구자에게 의뢰한 연구에 의해 밝혀진 결과의 요지는,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은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비준필요설’에 관해 앞으로도 여러 외국에서의 실행 사례에 관한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중기적(5년 정도) 역사법률학 연구의 제안

한일조약의 효력문제에 관해,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침묵이 지배했으며 학문적인 논의가 불가능했다. 구조약의 불법성·무효성에 관한 연구는 일본의 법률가, 특히 국제법학자 및 실무법률가 사이에서도 100년간 존재하지 않았다. 불

법론·무효론을 정면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되기까지 무려 100년이 걸린 셈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2010년 현재 역사학자를 중심으로 한 구조약의 불법성·무효성에 관한 연구성과는 한일 양국의 법률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참가하여 연구를 개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은 한일 양국의 법률실무가에게도 참가를 촉구하여 연구와 논의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 5년 정도 연구를 거듭한다면 한일 양국의 법률전문가 사이에서 공통이해를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실현된다면 2020년 무렵까지는 정치적으로도 한일 양국의 현안에 큰 전진을 이끌어낼 전제조건이 마련될 것이다.

2) 장기적 연구의 제안

(1) 자유로운 역사연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그렇다고는 해도 이 문제에 관해 일본의 학회, 여론, 시민사회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기까지는 앞으로 100년은 걸릴 것이다.

왜일까?

패전 후의 일본국헌법 아래에서도 일본 내셔널리즘에 의한 폭력적인(분위기에 의한) 언론지배가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셔널리즘을 기반으로 한 뿌리 깊은 순응(conformity)이 자유롭고도 창조적인 학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억제해 온 탓에, 적어도 일본국가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관해서는 아직도 자유로운 연구·교육의 분위기와 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바깥에는 자유로운 연구가 가능한 곳이 있을까? 일본의 연구자들 중에는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에 대한 열강들의 승인을 정당화 근거로 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확실히 ‘약육강식’의 국제정치의 역사와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열강의 행동이 일정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1905년의 ‘한국보호조약(?)’을 유효하게 만들까? 만약 국제정치의 현실이 조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국제법적 정당화 사유가 된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국제법은 법임을 포기해야 한다. 국제법학은 독자적인 학문분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국제정

치학의 일부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과연 학문적인 태도일까?

이들 구미열강들은 스스로 약소국을 식민지 지배한 경험을 가지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관한 법적인 판단을 내릴 때도, 아직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까? 일본뿐만 아니라 이들 구미열강들에 속한 사람들의 역사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다.

식민지 지배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의 연구기관(예를 들어 북유럽의 핀란드)에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면 열강의 학자, 정부, 시민의 역사관을 적어도 중립화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이바지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만약 연구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러한 장에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2) 내셔널리즘을 뛰어넘은 국제교육에 관한 연구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은 곤란하다. 일본에서 재일조선인·한국인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가? 요즘도 보수적인 일본인에 의한 박해는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에는 사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관계자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피해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민운동을 힘을 통해 저지하려는 인종차별적인 움직임이 존재한다. 이것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해 온 일본의 국수주의적 내셔널리즘이 풀뿌리 차원에서 지금도 뿌리 깊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다음의 동영상에 나오는 정경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다. <http://corea-k.net/date/000.wmv>

2010년 정기국회에 고등학교 무상화를 위한 법안이 상정되어 같은 해 3월 31일에 법률로 성립되었다는 사실은 평가할 만하다.⁷⁰⁾ 그러나 이 법안심의의

70) 「公立高等學校に係る授業料の不徴収及び高等學校等就學支援金の支給に關する法律」(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8호). http://www.mext.go.jp/a_menu/shotou/mushouka/1292454.htm(2010년 5월 4일 열람).

과정에서 그것을 제일 조선학교에 적용할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격렬하게 오갔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부 각료가 납치문제를 구실로 조선 학교에 대한 적용 제의를 요구한 것을 발단으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신정권도 동요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원고의 수정집필 시점인 같은 해 5월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 사이에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라고 한다. 지사와 같은 공적인 지위에 있는 일부 공무원이 인종차별적인 주장을 공공연히 내뱉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민족과 국적이 다르다 할지라도, 즉 일본 국적이든 외국 국적이든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들에게는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조선학교도 일본법의 지배를 받는 학교(各種學校)이다.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북한 국적, 한국 국적, 일본 국적 등 다양하다. 국교가 없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그 학교를 차별하는 것은, 아이들의 국적을 이유로 하는 학교차별로서 국제인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을 창조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적어도 이 세 나라의 아이들이 여러 나라의 아이들과 함께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미래를 이상으로 삼아 교육실천을 축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한 교육실천 속에서 역사교육은 국경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용이하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내셔널리즘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을 창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러한 미래형 교육이 실제로 존재한다. 1919년의 국제연맹 창설을 계기로 제네바에서 창설된 국제교육은 점차 발전하여 IBD(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자격)를 취득할 수 있는 IBO(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기구) 인가의 IS(인터내셔널 스쿨)가 전 세계적으로 다수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IBDIS는 극히 적은 수(15개교)에 머물러 있다. 2개교의 예외를 제외하고 IBDIS(13개교)는 학교교육법 제1조의 정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국적의 아이들은 원칙적으로 통학이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IBDIS(非 '1條校')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⁷¹⁾ 학비가 매우 비싸다.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공립학교는 전무하여 빈곤가정의 아이들은 통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문제

를 두고 한국에서는 정부 차원의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듯하나⁷²⁾ 일본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핀란드의 인구는 약 500만 명으로 일본(인구 약 1억 2,000만 명)의 24분의 1에 지나지 않으며 영어권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5개교의 IBD인가 IS 창설에 성공하였다. 게다가 이 중 13개교는 지자체가 설립한 공립학교로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영어 학력시험을 치러야 하기는 하지만, 핀란드 국적의 아이들도 통학이 허용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수요가 있으면 필요한 만큼 IS를 증설하겠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어떤 경위로, 그리고 왜 이러한 IS 교육 법제가 실현되었는지, IS의 역사교육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IS 교원의 양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장기간에 걸친 현지비교연구는 동아시아의 미래를 열어 주지 않을까? 실험적으로 동아시아의 학생들을 수용하는 IS교육을 위한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는 위의 ‘이니셔티브’의 중요한 일환이 될 것이다.

71)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대상 밖이다. 그러나 2010년 4월부터 위의 고교무상화 법률에 의해 IS에 통학하는 외국 국적의 아이들도 연간 12만 엔(빈곤가정인 경우 가산된다)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다는 것은 한 걸음 진전된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외국 국적 아이들의 의무교육에 대한 권리의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72) Kang Shin-who(2010, 8, 28~29), “Ministry seeks to introduc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The Korean Times*.

【별표】

	서적명	저자	출판사	출판일
1	國際公法 第1卷	山田示九	波若活版所	1903
2	國際公法 上卷	福守恒三郎	東京修士館	1901. 6
3	國際公法 下卷	福守恒三郎	下山千丈	1901. 9
4	國際公法 平時	山口弘一	和弗法律學校	1900
5	國際公法	秋山雅之助	和弗法律學校	1902, 1903
6	國際公法	石川錦一郎	博文館	1890. 4
7	國際公法	平岡定太郎	政法會	1898. 7
8	國際公法	ウィリアム・エドワード・ホール 他	博文館	1899. 1
9	國際公法	三崎亀之助	英吉利法學校	1888
10	國際公法	三崎亀之助	東京法學院	1892
11	國際公法	山田喜之助	東京法學院	1889
12	國際公法	フランツ・フォン・リスト 他	東京專門學校出版部	1902. 4
13	國際公法	ウィリアム・エドワード・ホール 他	東京法學院	1899. 7
14	國際公法	秋山雅之助, 高橋作衛	和弗法律學校	1903
15	國際公法	有賀長雄	東京專門學校出版部	1901
16	國際公法	倉知鐵吉	日本法律學校	1899
17	國際公法	千賀鶴太郎	京都法政大學	1903
18	國際公法	松原一雄	法政大學	1905
19	國際公法	石川錦一郎	博文館	1894. 6
20	國際公法講義	パテルノストロー 他	明治法律學校講法會	1897. 7
21	國際公法講義	神藤才一	明治法律學校	1898
22	國際公法講義	パテルノストロー 他	和弗法律學校	1894
23	國際公法總綱	王鴻年	王鴻年	1902. 12
24	國際公法總論	三崎亀之助	東京法學院	1897

	서적명	저자	출판사	출판일
25	國際公法大意	チー・ゼー・ロウレン ス 他	窪田熊藏	1897. 9
26	國際公法提要	辻治太郎	陸軍大學校	1900. 5
27	國際公法摘要	チー・ゼエー・ローレ ンス 他	丸善	1895. 11
28	國際公法論	ローレンス 他	水交社	1893
29	國際公法論	中村進午	東華堂	1897. 3
30	國際公法論綱	玉置嘉門 他	清水書店	1901. 9
31	最近國際公法 原論	松原一雄	東京法學院大學	1904. 5
32	平時國際公法 平時之部	中村進午	早稻田大學出版部	1903
33	平時國際公法	高橋作衛	日本法律學校	1903. 7
34	平時國際公法	中村進午	東京專門學校出版部	1902. 2
35	平時國際公法	立作太郎	中央大學	大正 年間
36	平時國際公法	三崎龜之助	東京法學院	1899
37	平時國際公法	中村進午	早稻田大學出版部	
38	平時國際公法	中村進午	日本大學	
39	平時國際公法	中村進午	早稻田大學出版部	
40	リスト氏 國際公法	中村進午	東京專門學校出版部	1900

【자료】

1905년 당시 국제법에 관한 일본어 문헌은 얼마나 존재했을까? 국회도서관에서 평시국제공법·국제법에 관한 문헌 중 조약의 효력과 비준에 관하여 검토할 가치가 있는 전문서적을 조사해 보았다. 동일 저자인 경우 보다 상세한 (또는 최신의) 저술을 선택하였고, 당시 유력 법률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었던

국제공법 및 국제법 교과서를 망라하였다. 저작에 따라 상세하거나 조잡한 정도의 차이가 있고, 기술이 충분하지 않은 저작도 다수 발견되었지만, 대부분의 저작에서 ‘비준필요설’을 지지하는 기술(아래의 21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 ‘비준불요설’을 주장하는 저작은 단 한 점도 없었다. (필자: 토쓰까 에쓰로오)

1. 石川錦一郎, 1890, 『國際公法』, 博文館.

비준이란 한 나라의 주권자 혹은 國憲에 의해 이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조약체결을 위해 임명한 전권위원이 체결한 조약안을 시인하는 것을 말한다. ……전권위원의 조약안도 주권자의 비준을 거치지 않는 동안은 아직 양국 간에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통칙으로 한다.⁷³⁾

2. 豊島鐵太郎, 1891, 『國際法講義錄』, 豊島鐵太郎 刊.

위에서 언급한 ‘카르텔’을 제외하고, 무릇 조약은 군주의 비준을 요하는 것으로 한다. 어떤 경우에는 조약 문면상에 군주의 비준을 요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지만, 설명 그러한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비준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제법의 원칙이다.⁷⁴⁾

3. 三崎龜之助 述, 美和金次郎 編, 1892, 『國際公法』, 東京法學院.

국법에 따라 조약 체결의 권한을 가지는 자가 친히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약은 반드시 본국의 비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조약 체결의 위임을 받은 자가 체결한 조약은 반드시 공연하게 비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옛 학자의 학설에 따르면, 상당한 권력을 가지는 자가 그 권한 내에서 체결한 조약은 국가가 반드시 이를 遵行하지 않으면 안 되며, 다시 그에 대한 비준을 받을 필

73) 石川錦一郎, 1890, 『國際公法』 博文館 (政治學經濟學法律學講習全書), 1~392쪽, 202~204項.

74) 豊島鐵太郎, 1891, 앞의 책, 1~428쪽, 172項.

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설에 따르면……전권위원이 체결한 조약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국의 비준을 요한다는 것은 현재 국제법이 확인하는 것이다.⁷⁵⁾

4. レオン・レヴキ 著, 前田盛江・山中淳貴 譯, 1894, 『國際法提要』, 東京專門學校.

제155 전권 공사가 체결한 조약은 그 본국의 군주 혹은 국가의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비준되지 않는 동안은 그 조약은 아직 유효한 것이 아니다.⁷⁶⁾

5. チー・ゼー・ローレン스 著, 陸奥廣吉 譯, 1895, 『國際公法摘要』, 丸善.

비준이란 체결국이 대표권을 가지는 자 쌍방이 조인한 조약을 교환하기 전에 국가주권의 힘에 의해 승인하는 방식을 말한다. 무릇 조약은 반대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준을 거치지 않는 동안은 어떤 효력도 가지지 않는다.⁷⁷⁾

6. パレルノストロー 述, 足立峰一郎 譯, 中村藤之 進記, 1897, 『國際公法講義』, 明治法律學校講法會.

비준은 조약에 효력을 부여하고 집행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또한 비준이 없을 때는 이들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첫째, 비준을 유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습관이라는 것……셋째, ……그러므로 만약 특약으로 반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으면 비준은 반드시 유보된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⁷⁸⁾

75) 三崎龜之助 述・美和金次郎 編, 1892, 『國際公法』東京法學院, 1~509쪽, 302~303項.

76) 레オン・레ヴ키 著, 前田盛江・山中淳貴 譯, 1894, 앞의 책, 1~296쪽, 119項.

77) 치어・제어・로렌스 著, 陸奥廣吉 譯, 1895, 『國際公法摘要』, 丸善, 1~220쪽, 97~98項.

78) 파렐노스트로 述, 足立峰一郎 譯, 中村藤之 進記, 1897, 『國際公法講義』, 明治法律學校講法會, 1~659쪽, 520~521項.

7. 平岡定太郎, 1898, 『國際公法』, 攻法會.

비준이란 관계국 대표자 쌍방이 합의에 의해 정한 조약을 관계국의 주권의 힘으로 승낙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것을 대표자의 뜻에 맡길 수 없다. ……국가주권의 힘에 의해 精査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준은 중요한 것이지만 반드시 항상 비준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즉 체결 대표자로 하여금 휴대하게 하는 전권위임장에 비준을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혹은 국법에 따라 조약 체결의 대권을 가지는 자가 스스로 조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굳이 비준을 요하지 않는다.⁷⁹⁾

8. ウィリアム・ホール 著, 立作太郎 譯, 1899, 『ホール氏國際公法』, 東京法學院.

국제 조약은, 군주 또는 기타 조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의해 직접 체결된 경우 혹은 어떤 관직에 수반되는 위임 권한의 범위 안에서 체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결된 조약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의 최고 조약 체결 권한을 가지는 기관에 의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비준되는 것이 필요하다. ……전권위원회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반대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 명시적인 비준을 필요로 한다.⁸⁰⁾

9. 倉知鐵吉, 1899, 『國際公法』, 日本法律學校.

유효하게 체결된 조약은 다시 비준되는 것이 필요하다. 조약의 비준은 법률의 재가와 유사한 점이 있다. 조약은 체결에 의해 제작되며 비준으로 유효하게 성립된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군주, 기타 조약 체결의 대권을 가지는 자가 직접 조약을 체결하는 근소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약은 모두 비준에 의해 비로소 효력이 생기게 되므로, 아직 비준되지 않은 조약은 여전히 조약의 효력

79) 平岡定太郎, 1898, 『國際公法』, 公法會, 1~207쪽, 88~89項.

80) ウィリアム・ホール 著, 立作太郎 譯, 1899. 앞의 책, 1~955쪽, 432~433項.

을 가지지 않는다.⁸¹⁾

10. 今西恒太朗, 1899, 『國際法學』, 丸善.

……이미 합의가 있고 대표자가 조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일국의 주권자의 비준이 없으면 역시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⁸²⁾

11. 中村進午, 1900, 『リスト氏國際公法』, 東京專門學校出版部.

전권대신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元首의 비준을 거쳐 비로소 국제법상의 구속력이 생긴다. ……조약 체결은 비준의 교환에 의해 완전히 성립된다. ……조약은 비준에 의해 국제법상의 효력이 생기며, 일국의 헌법상 입법元素의 필요한 동의를 얻었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⁸³⁾

12. 山口弘一 述, 1900, 『國際公法 平時』, 和佛法律學校.

조약 성립의 시기에 관해 오늘날의 실재를 보면, 조약은 조약의 체결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반드시 제2의 절차인 비준을 필요로 한다. ……서면 조약에서는 이 절차를 결여하는 경우가 없다. 다만 위임장에 비준을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경우 혹은 전시에 근소한 예외를 볼 수 있다.

그로티우스(Grotius) 이래 옛 학자들 중에는 비준이 조약 성립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자가 많다. ……하지만 빈케르스호크(Bynkershoek) 이래 이 설은 일변하여 오늘날의 학자는 대부분 비준을 조약 성립의 요건이라고 한다. ……내가 이것을 살펴보니, 조약은 비준 교환을 했을 때 비로소 성립되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⁸⁴⁾

81) 倉知鐵吉, 1899, 앞의 책, 1~313쪽, 198~202項.

82) 今西恒太朗, 1899, 앞의 책, 1~346쪽, 40項.

83) 中村進午, 1900, 『リスト氏國際公法』, 東京專門學校出版(名著綱要政法理財科), 1~172쪽, 83~84項.

84) 山口弘一 述, 1900, 『國際公法 平時』, 和佛法律學校(和佛法律學校 33年度 第3部 講義錄), 1~204쪽, 178~179項.

13. 有賀長雄 述, 1901, 『國際公法』, 東京專門學校出版部.

도대체 조약은 전권위원이 조인을 마친 때에 성립되는가 아니면 비준을 교환하는 때에 이르러 비로소 성립되는 것인가?

과거의 학자 중 그로티우스와 푸펜도르프는 당시 로마법의 정신으로 이를 추론하여 조약은 전권위원의 조인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 크레티앙 본피스를 비롯한 많은 학자는 반대 견해를 취해, 조약은 원수의 비준에 이르러 비로소 효력이 확정된다는 것이 前世紀 초부터 정해진 관례이며, 전권위원은 단지 일반적으로 답판을 수행하는 것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사실상 조약의 공포·집행은 비준 교환 후에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이때가 그 효력이 확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세이다. ……

대부분의 조약에는 비준 조항을 둔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두지 않는 경우에도, 비준을 유보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것은 국제법상에 이론이 없는 것이다 (리비에르 하권 72쪽). 만일 비준을 완전히 생략할 뜻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이를 생략한다는 명문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⁸⁵⁾

14. 玉置嘉門 編, 中村進午 閱, 1901, 『國際公法論綱學說對照』, 清水書店.

조약은 비준이 없으면 아직 확정적인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비준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인가 아니면 의무인가? 비준은 권리이다.⁸⁶⁾

15. フリードリヒ・フォン・マルテンス 著, 中村進午 譯, 1901, 『國際法 第1冊 上』, 東京專門學校出版部.

비준이 조약의 유효 및 구속력을 발생하게 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국제법자들이 일치하는 바이다. 조약 체결의 위임을 받은 자는 먼저 그 전권을 교

85) 有賀長雄 述, 1901, 『國際公法』, 東京專門學校出版部(東京專門學校 法律科 第13回 第2部 講義錄), 1~587쪽, 444~445, 453項.

86) 玉置嘉門 編, 中村進午 閱, 1901, 『國際公法論綱學說對照』, 清水書店, 1~366쪽, 140~141項.

환하고, 담판을 마친 후 훈령에 따라 조약서에 기명한다. 하지만 아직 원수의 비준이 없는 동안은, 그 조약은 체결국을 구속하지 않는다. 비준의 권리를 가지는 자는 체결국의 주권을 가지는 자에 한한다.⁸⁷⁾

16. フランツ・フォン・リスト 著, 中村進午 編, 1902, 『國際公法』, 東京專門學校出版部.

전권대신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원수의 비준을 거쳤을 때 비로소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가진다.⁸⁸⁾

17. 大野若三郎 編, 中村進午 閱, 1903, 『國際法新論』, 有斐閣.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의결된 조약안은 각 당사자의 최고 기관에 의해 비준된다. 비준이란 곧 그 조약안을 승인하는 국가의 결정을 말한다. 본디 조약의 체결이 이 두 번째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의결사항이 중대하고 항구적인 것이어서 특히 엄중한 심리에 의해 유감이 없도록 하기 위함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비준권은 그 성질상 절대적인 권리이다.⁸⁹⁾

18. 秋山雅之介, 1903, 『國際公法 第1冊』, 和佛法律學校.

전시 중의 陣中規約은 이를 체결하는 육해군 장수가 그 전권을 가지며, 또 그 사항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에 한하고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규정은 비준 없이도 양국을 구속한다. 또 조약을 주권자 스스로 체결하여 그 조약서에 기명 조인하는 때는 비준을 요하지 않는다. ……전권위원이 체결하여 서명 조인한 조약이 국가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시 주권자의 비준을 필요로 한다. ……가령 조약의 명문에 비준을 해야 한다고 규

87) フリードリヒ・フォン・マルテンス 著, 中村進午 譯, 1901, 『國際法 第一冊上』, 東京專門學校出版部, 1~670쪽, 623項.

88) フランツ・フォン・リスト 著, 中村進午 編, 1902, 『國際公法』, 東京專門學校出版部, 1~172쪽, 83項.

89) 大野若三郎 編, 中村進午 閱, 1903, 앞의 책, 1~528쪽, 332~335項.

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릇 조약은 본국 정부의 최후 판단 즉 비준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⁹⁰⁾

19. 高橋作衛, 1903, 『平時國際公法』, 日本法律學校.

유효하게 조인된 조약은 다시 비준되는 것이 필요하다. 조약의 비준은 법률의 재가와 유사한 점이 있다. 조약은 조인에 의해 제정되고 비준으로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다. ……비준에는 명시적인 것과 묵시적인 것이 있다. 명시적인 비준이란 문자 그대로 비준하는 자가 직접 비준의 의사를 발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약의 비준은 ……그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 굳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인 비준이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⁹¹⁾

20. 千賀鶴太朗, 1903, 『國際公法』, 京都法政大學.

……비준서 교환에 의해 조약은 비로소 성립되며 양국 간에 구속력이 발생한다. 만약 비준서를 작성하더라도 아직 이를 교환하지 않는 동안은 조약은 여전히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약 체결은 결코 전권위원의 서명 날인으로 완료되지 않는다. 비준서 교환에 의해 완료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⁹²⁾

21. 松原一雄, 1904, 『最近國際公法言論』, 東京法學院大學.

비준도 조약 성립의 한 요건이다. 군주 기타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의 비준이 없으면 조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 제국헌법에 의하면 천황은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생각하건대 천황은 담판위원이 조인한 조약을 비준하는 것이다. 조약의 비준이 곧 헌법상 이른바 조약의 체결이다. 비준이 조약 성립에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분명하다. 다만 예외가 있다. ① 군주가

90) 秋山雅之介, 1903, 『國際公法 第一冊』 和佛法律學校, 1~659쪽, 537~539, 545項.

91) 高橋作衛, 1903, 앞의 책, 1~1007쪽, 651, 653項.

92) 千賀鶴太朗, 1903, 『國際公法』, 京都法政大學(京都法政大學 第1期 2學年 講義錄), 1~755쪽, 343~344項.

스스로 조약에 관해 답판하여 조인하는 경우, ② 비준 없이 유효하게 된다는 것을 답판위원의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제시한 때 ……통속적으로 조약의 체결이라고 일컫는 것은 실은 단지 조약의 조인에 지나지 않는다. 무릇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조약은 비준에 의해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기에 이른다는 것은 오늘날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1. 舊說에 따르면, 즉 그로티우스, 푸펜도르프, 바텔 등은 위임에 관한 로마법의 원칙에 따라 연역하여 답판위원이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은 그 조인한 조약은 체결 당사자를 구속한다고 하며(Vattel……), 근세의 학자도 이에 찬동하는 자가 없지 않다(예를 들어 클루버, 필리모어 등). 하지만 국제조약과 사법상의 계약을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며, 양자는 그 성질이 크게 다르고, 또 국가의 중대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답판원의 결정에 위임하여 비준 없이 당연히 그 효력을 발생시켜 국가를 구속하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까닭으로

2.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이것은 빈케르스호크가 명료하게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 대의는 ‘군주의 비준은 조약에 효력을 부여하는 데 필요하다. 단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서 비준 없이 조약의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취지의 훈령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근세의 일반적인 관례가 되어, 반대의 훈령이 없는 한 답판위원의 권한이 아무리 막대하더라도 조약에는 명시적인 비준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이르렀다(마르텐스, 홀, 슈말츠, 오르토랑, 칼보 등).⁹³⁾

※ 감수: 김창록(경북대학교)

93) 松原一雄, 1904, 『最近國際公法言論』, 東京法學院大學, 1~114쪽, 204~297項.

참고문헌

〈단행본〉

- 高橋作衛, 1903, 『平時國際公法』, 日本法律學校.
- 高橋作衛, 1910, 『平時國際法論』, 日本大學校・清水書店.
- 今西恒太郎, 1899, 『國際法學』, 丸善.
- 大野若三郎, 1903, 『國際法新論』, 有斐閣.
- レオン・レヴサ 著, 1894, 『國際法提要』, 東京專門學校.
- 山口弘一 述, 1900, 『國際公法 平時』, 和佛法律學校.
- 三崎亀之助 述・美和金次郎 編, 1892, 『國際公法』, 東京法學院.
- 笹川紀勝・李泰鎮 編著, 2008, 『國際共同研究韓國併合と現代-歴史と國際法からの再檢討』, 明石書店[영문판-Yi, Taijin, 2007, *The Dynamics of Confucianism and Modernization in Korean History*, Cornell University].
- 松原一雄, 1904, 『最近國際公法言論』, 東京法學院.
- 野若三郎 編, 1903, 『國際法新論』, 有斐閣.
- 玉置嘉門 編, 1901, 『國際公法論綱學說對照』, 清水書店.
- 外務省條約局, 1934, 『舊條約彙纂 第3卷(朝鮮・琉球)』, 外務省條約局.
- ウィリアム・ホール 著, 立作太郎 譯, 1899, 『ホール氏國際公法』, 東京法學院.
- 有賀長雄 述, 1901, 『國際公法』, 東京專門學校出版部.
- 李泰鎮 著・鳥海豊 譯, 2006, 『東大生に語った韓國史: 韓國植民地支配の合法性を問う』, 明石書店.
- 立博士 述, 1925, 『平時國際法完 大正14年東大講義』.
- 立作太郎, 1932, 『平時國際法論』, 日本評論社.
- 中村進午, 1900, 『リスト氏國際公法』, 東京專門學校出版.
- 中塚明・安川壽之輔・醍醐聰, 2010, 『NHKドラマ「阪の上の雲」の歴史認識を問う』, 高文研(6月).
- 倉知鐵吉, 1899, 『國際公法』, 日本法律學校出版.
- チー・ゼー・ローレンス 著, 陸奥廣吉 譯, 1895, 『國際公法摘要』, 丸善.
- 秋山雅之介, 1903, 『國際公法 第一冊』, 和佛法律學校.
- パレルノストロー 述, 足立峰一郎 譯, 中村藤之 進記, 1897, 『國際公法講義』, 明治法律學校講法會.

平岡定太郎, 1898, 『國際公法』, 公法會.

豊島鐵太郎, 1891, 『國際公法』, 博文館.

豊島鐵太郎 編, 1891, 『國際法講義錄』, 有斐閣.

海野福壽, 1995, 『日韓協約と韓國併合—朝鮮植民地支配の合法性を問う』, 明石書店.

フリードリヒ・フォン・マルテンス著, 中村進午 譯, 1901, 『國際法 第一冊上』, 東京
專門學校出版部.

Davis, George, 1901,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New York and London:
Harper & Brothers Publishers.

Hall, William Edward, 1895, *A treatise on international law*, Oxford: Clarendon
Press[일본어판-Hall, William Edward, 1896, *A treatise on international law*,
東京: 三省堂].

Jennings, Robert and Watts Arthur ed., 1996,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Ninth Edition, Vol. 1, Longman.

Taylor, Hannis, 1901, *International Public Law*, Chicago: Challaghan & Co.

Wilson, George Grafton, and Tucker, George Fox, 1905, *International Law*, New
York: Silver, Burdett and Company.

Wilson, George Grafton, 1927, *Handbook of International Law*, St. Paul,
Minnesota: West Publishing Company Second Edition.

Yi Jun Peace Museum, 2007,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Korea in the*
Hague, 1907, Yi Jun Peace Museum.

안중근기념관, 2001, 『대한국인 안중근』, 안중근기념관.

〈논문〉

狩野琢見, 1991, 「安重根無罪論」, 『安義士の生涯と思想—殉國第81周忌對念國際學
術シンポジウム報告集』, 安重根義士紀念館.

外務大臣官房文書課, 2000, 「倉知鐵吉氏述韓國併合の経緯」, 『近代外交回顧録4』,
ゆまに書房.

李泰鎮, 2010, 「韓國併合條約の實相」, 韓國併合市民ネットワーク 編, 『今, 「韓國併
合」を問う—強制と暴力・植民地支配の原點—』, アジェンダ・プロジェクト.

倉知鐵吉 著, 1899, 『國際公法』, 日本法律學校出版.

戸塚悦朗, 2006, 「統監府設置100年と乙巳保護條約の不法性: 1963年國連國際法委員會報告書をめぐって」, 『龍穀法學』 39-1.

戸塚悦朗, 2009, 「安重根裁判の不法性と東洋平和」, 『龍穀法學』 42-2.

戸塚悦朗, 2010, 「最終講義に代えて-「韓國併合」100年の原點を振り返る-1905年「韓國保護條約」は捏造だったのか」, 『龍穀法學』 42-3.

〈신문〉

“安重根事件公判速記録”, 『滿洲日日新聞』(1910. 3. 28).

『週間法律新聞』 칸 수상 담화 특집호(2010. 8. 20).

Kang Shin-who, “Ministry seeks to introduc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The Korean Times*(2010. 8. 28~29).

〈자료〉

UN Document:A/CN.4/163,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covering the work of its Fifteenth Session”, 6 May – 12 July 1963,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Eighteenth Session, Supplement No.9 (A/5509), Extract from the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3, vol. II.

UN Doc. 1902(XVIII), RESOLUTION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DURING ITS EIGHTEEN SESSION, 1258th plenary meeting, 18 November 1963.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Vienna, 1969. 5, 23.

네덜란드 정부공문서관 보관자료-문서번호 12303/1907 4 July 1907. In: Source: Ministerie van Buitenlandse Zaken, A-dossiers 1871-1918, searchlist 2,05,03, inventorynumber 535.

〈홈페이지〉

「公立高等學校に係る授業料の不徴収及び高等學校等就學支援金の支給に關する法律」(http://www.mext.go.jp/a_menu/shotou/mushouka/1292454.htm).

「國立國會圖書館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http://www.shugiin.go.jp/itdb_

gian.nsf/html/gian/honbun/houan/gl6401027.htm).

「今こそ日本軍「慰安婦」問題の眞の解決を求める韓國強制併合100年市民宣言」

(http://www.jca.apc.org/ianfu_ketsugi/).

일본외무성외교사료관(<http://www.jacar.go.jp/goshomei/index.html>).

일본국회도서관「서지일람표시」(<http://opac.ndl.go.jp/Process>).

일본국회국립도서관 전자도서관 근대디지털라이브러리(<http://kindai.ndl.go.jp/index.html>).

일본대학 법학부 홈페이지(<http://www.law.nihon-u.ac.jp/applicant/gakubu/history.html>).

「韓國併合の過程は不義不當であり，併合條約も不義不當である—日韓知識人共同聲明」(2010년 7월 31일), 『世界』 2010년 10월호(<http://www.iwanami.co.jp/sekai/2010/07/105.html>).

「한국병합」100년시민네트워크(<http://www.nikkan100.net/>).

[ABSTRACT]

Reexamining the Process of Japan's Annexation of Korea
Focusing on Illegality of the Prewar Treaties
Forced on Korea by Japan

Totsuka, Etsuro

This article reexamines the process of Japan's Annexation of Korea focusing on illegality of the prewar treaties forced on Korea by Japan, in particular the 1905 and 1910 treaties. This author raises three points in arguing the illegality of the process of Japan's attempt to have colonized Korea.

Korea was a sovereign Empire in 1905, when Japan demanded that Korea should accept the Japanese proposal of a protectorate treaty. The Korean Empire, however, resisted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s demand. The treaty was signed by then Korean Foreign Minister, who was forced to do so by Ito, Hirobumi accompanied by the Japanese military forces. It was, however, not ratified by Emperor Kojong, who had the sovereign power to conclude treaties.

First, this author found th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3, Part II, p. 197), which raised the case of the 1905 Protectorate Treaty of Korea by Japan as one of the four major examples of this kind in history where treaties did not take any effect because of coercion of representatives. His report on this was submitted as a written NGO statement by IFOR to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1993 (E/CN.4/1993/NGO/36).

Second, as this was not enough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change its position that they considered the treaty had legal effect with no illegality, the author, by researching into the original treaty documents in Japan, tries to confirm the findings made by Prof. Yi, Taijin, who, on the basis of his researches on the original treaty documents in Korea and insisted that the 1905 treaty was forg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hird,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insisting that the 1905 treaty did not require any ratification by Emperor Kojong. There were no substantial researches on this issue by the international law experts except for some scholars in history or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in Japan. Prof. Paik, Choong Hyun, who taught international law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riticized the Japanese government's position and wrote that ratification was necessary for the prewar five treaties forced on Korea by Japan including the 1905 and 1910 treaties that eroded the sovereignty of Korea. The author, responding to the researches made by late Prof. Paik, looks into practices in Holland and the international law textbooks published before 1905 in Japan to find then standard views on need for ratification of treaties.

Lastly, the author explores the reasons why the Japanese experts have kept silence for 100 years on these issues. He proposes two major tasks, which could make difference for peace and prosperity in the Northeast Asian Area in the next 100 years.

keywords

Process of colonization, peace in the Northeast Asia, Japan's annexation of Korea, Korea Japan prewar treaties, Ito Hirobumi, Protectorate

Treaty,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need for ratification, coercion of representatives, illegality of treaty



1910년 한일조약에 대한 법사학적 재검토***

김창록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머리말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관보 호외』에 “韓國皇帝陛下는韓國全部에關한一切統治權을完全且永久히日本國皇帝陛下에게讓與함”이라는 조문으로 시작되는 ‘병합조약’이 게재·공포되었다.¹⁾ 그리고 대한제국의 황제와 대일본제

※ 투고일: 2010년 6월 10일, 심사일: 2010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27일.

* 이 글의 외국 인명, 지명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에 따르지 않고 필자의 의견에 따라 표기하였다.

** 필자는 1910년 한일조약을 포함한 1900년대 초 한일 간 조약들의 ‘불법성’에 관해 2001년에 논문(「1900년대 초 한일간 조약들의 ‘불법성」, 『법과사회』 20)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후에도 한일 양국 학자들에 의해 위 주제에 관한 논란은 계속 이어졌고, 새로운 자료들도 발굴되었다. 게다가 1910년 조약 체결로부터 100년이 되는 올해 들어, 위 주제는 새롭게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필자는 위 주제를 ‘재검토’했으며, 그 성과의 일부를 일본어 논문(金昌祿, 2010, 「一九一〇年韓日條約に關する法史學的再檢討」, 『季刊 戰爭責任研究』 2010年春季號)으로 발표했다. 이 논문은 그것을 수정·보완하여 완성한 성과물이다. 이 논문을 공간하는 것을 계기로, 이것을 이 주제에 관한 필자의 최종 논문으로 삼고자 한다.

1) 內閣法制局官報課, 『官報 號外』, 1910. 8. 29, 1쪽 (<http://kyujanggak.snu.ac>).

국(이하 ‘일제’)의 황제 사이에 체결된 이 조약을 법적 근거로 삼아 일제의 35년간에 걸친 한반도 지배가 시작되었다. 2010년은 이 1910년 한일조약이 공포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데 공포 후 100년이 지난 지금도 1910년 조약의 자리매김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1910년 조약의 효력이다. 그리고 그 문제는 다시 두 개의 세부적인 문제를 포함한다. 하나는 1910년 조약의 효력 자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효력과 관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합의에 관한 것이다. 전자는 ‘1910년 조약이 역사적 사실과 법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유효인가 아니면 무효인가’라는 문제이며, 후자는 ‘1910년 조약의 효력에 관해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어떤 합의를 하였는가’라는 문제이다.

1990년대 이래 한일 양국의 역사학자와 법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전자의 문제에 관한 논의는 현저하게 진전되었다. 그리고 후자의 문제에 관해서도 일정한 변화가 생겼다. 2010년은 이러한 진전된 논의와 변화를 더욱 발전시켜 1910년 조약을 보다 명확하게 자리매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의 매듭이 되어야 할 터이다.

이 글에서는, 1910년 조약의 보다 명확한 자리매김을 위해, 법사학을 전공하면서 한일 간 과거청산 문제에 관여해 온 입장에서, 그간의 진전과 변화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현재의 단계에서의 과제와 전망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II. 1910년 조약의 효력의 문제

1. 역사적 사실

1910년 조약의 체결과정에 관해서는, 1904년 한일의정서, 1905년 을사조약(제2차 일한협약), 1907년 정미조약(제3차 일한협약)의 체결과정을 포함한 1900년대 초의 한일 간 조약들에 관해 1990년대 이래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한일 양국 학자들의 논의의 과정에서,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밝혀졌다.

논의의 첫 단계에서는 주로 1905년 조약이 주목되어, ① 1905년 11월 15일 특파대신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가 광무제를 알현한 자리에서 일본 측의 조약 초안을 내보이며, “(이 안은) 결코 움직일 수 없는 제국 정부의 확정된 방침이므로 금일 중요한 것은 단지 폐하의 결심 여하이다. 이것을 승낙하든지 혹은 거부하든지 마음대로지만, 만약 거부한다면 제국 정부는 이미 결심한 바 있다.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컨대 귀국의 지위는 이 조약을 체결하는 것 이상으로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이며, 한층 불이익한 결과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²⁾라고 협박했다는 사실, ② 다음 날인 11월 16일에는 이토오가 대한제국의 대신들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제국정부가 스스로 결정한 바가 있어서 굳이 이 제안을 하는 이상, 귀국 정부가 이를 승낙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라”³⁾라고 협박했다는 사실, ③ 광무제가 조약이 조인된 직후인 11월 26일에, 미국에 있던 헐버트(Hulbert)에게 “짐은, 최근 총검의 위하와 강요 아래 한일 간에 체결된, 소위 보호조약이 무효라고 선언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전보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이후 1907년의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할 때까지, 최소한 6회 이상 1905년 조약이 무효임을 승인

2) 『日本外交文書』 38-1, 502쪽.

3) 『日本外交文書』 38-1, 489쪽.

해 주도록 미국 등 열강에게 호소했다는 사실⁴⁾ 등이 밝혀졌다.

이어서 1910년 조약과 관련해서도, ① 1910년 조약 체결 당시 한국통감으로서 조약문에 서명한 테라우찌 마사타케[寺內正毅]가, 조선총독의 자격으로 조약 체결에 관해 작성한 보고문인 『조선총독 보고 한국병합 시말』의 부록 「한국병합과 군사상의 관계」에서, “군대, 경찰의 위력과 끊임없는 경비가 간접적으로 다대한 효력을 나타냈다는 것 역시 다룰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⁵⁾라고 밝히고, ② 또 조약 체결 당시 용산에 주둔했던 기병연대의 대위 요시다 겐지로오[吉田源治郎]가 『일한병합 시말』이라는 책에서 “원래 기병연대를 용산에 초치한 이유는 병합을 위해 위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예기한 때문인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기병은 실로 적당한 兵種이었다. 왜냐하면 미개한 인민을 鎮撫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가지는 보병보다도 오히려 외관상 위엄을 갖춘 기병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⁶⁾라고 밝혀, 일본 측이 스스로 군사력을 동원한 위하를 가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③ 또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융희제가 1926년 4월 26일 숨지기 직전에,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던 궁내대신 조정구에게 구술하여, 강박을 당했음을 밝힌 遺詔를 남겼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 유조에서 융희제는, “一命을 겨우 보존한 짐은 / 병합 인준의 사건을 파기하기 위하여 조칙하노니 / 지난 날의 병합 인준은 強隣이 / 역신의 무리와 더불어 /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 것이요 다 나의 한 바가 아니라. / 오직 나를 유폐하고 나를 脅制하여 / 나로 하여금 명백히 말을 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니 / 고금에 어찌 이런 도리가 있으리요. / ……내가 最愛最敬하는 백성으로 하여금 병합이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을 / 曉然히 알게 하면 이전의 소위 병합 인준과 讓國의 조칙은 / 스스로 파기

4) 김기석, 2001, 「光武帝의 주권수호 외교, 1905~1907: 乙巳勒約 무효 선언을 중심으로」, 이태진 편저, 『한국병합, 성립하지 않았다』, 태학사 참조.

5) 寺內正毅, 1910. 11. 7, 「韓國併合ト軍事上ノ關係」, 『朝鮮總督報告韓國併合始末』 14쪽.

6) 吉田源治郎, 1911, 『日韓併合始末』, 1쪽.

에 돌아가고 말 것이리라”⁷⁾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조약 체결 과정에서의 형식 및 절차상의 문제점, 대한제국 寶印의 탈취와 황제 서명의 위조, 공포 칙유의 날조 등의 사실도 제시되었다.⁸⁾

2_ 법적 기준

다음으로 그간의 논의를 통해 조약들의 효력에 관련된 법에 관한 지식도 풍부해졌다. 논의는, 어떤 국제법적 문제에 적용할 법은 그 문제가 발생한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국제법이어야 한다고 하는 ‘時際法의 원칙’을 전제로, 주로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의 효력에 관한 당시의 국제법을 확인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⁹⁾ 그리고 그 작업은, 1900년대 초의 국제사회에는 그 문제에 관한 성문의 국제법이 없었다는 사정 때문에, 당시의 서양 국제법학자들의 저작에서 관습국제법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 결과 우선 당시의 국제법학자들 다수가 ‘국가의 대표자에 대한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지만, 국가에 대한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유효하다’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주장은, 조약이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여야 한다는 원칙은 고수하면서도, 전쟁이 불법이 아니었던 당시에, 전쟁을 보다 ‘인도적’으로 종결짓기 위해, 국가에 대한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강화조약의 효력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7) 『新韓民報』, 1926. 7. 8; 이태진, 1999, 「약식조약으로 어떻게 국권을 이양하는가?」, 『전통과 현대』 10호, 298~299에서 재인용.

8) 이태진 편저, 1995,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까치의 제1부의 논문들; 이태진, 2001, 앞의 책; 이태진 외, 2003,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의 이태진의 논문들 참조. 또한 海野福壽, 2000, 『韓國併合史の研究』, 岩波書店 및 康成銀, 2005, 『1905年韓國保護條約と植民地支配責任』, 創史社도 참조.

9) 형식 및 절차상의 문제점이 1910년 조약의 효력에 미치는 효력에 관해서는 박배근, 2009, 「시제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병합관련 ‘조약’의 효력: 조약 체결의 형식과 절차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54-2 참조.

현실적인 필요성이 반영된 것이었다.¹⁰⁾

하지만 1910년 한일조약 등의 효력에 관련된 당시의 국제법학자들의 주장에 관해서는 분석이 같았다. 한편에서는, 조약을 무효로 만드는 국가의 대표자에 대한 강박은 사실상 “국가대표자에 대해 과거의 비리를 폭로하겠단가, 문자 그대로 권총을 들이대고 협박하여 조약의 체결을 다그치는” “극적인 사태”에 국한되며, 그 결과 사실상 그 이외의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모두 유효하다는 것이 당시의 국제법이었다고 하는 이해¹¹⁾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그러한 ‘극적인 사태’가 입증되지 않는 한 한일 간 조약들은 유효한 것이 된다.¹²⁾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에 대한 강제와 국가의 대표자에 대한 강제는 각각 “정당화 이유”가 다르고, “국가 대표자에 대한 강제는 개별적인 폭력이나 강박(협박)의 존재의 증명이 중요하며, 국가에 대한 강제는 무력과 협박을 행사한 당사국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 혹은 ‘권리보장’의 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당시의 국제법이었다고 하는 이해¹³⁾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일제가 대한제국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 혹은 ‘권리보장’을 주장할 여지가 없었던 데 대해, 대한제국의 대표자에 대한 폭력이나 강박은 있었기 때문

10) 백충현, 1996, 「國際法으로 본 1900년대 韓日條約들의 문제점」, 『한국사 시민강좌』 19, 일조각, 76~77쪽; 阪元茂樹, 2004, 『條約法の理論と實際』, 東信堂, 253쪽.

11) 阪元茂樹, 2004, 위의 책, 255~256쪽; 阪元茂樹, 2001, 「日韓은 舊條約 문제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 이태진 편저, 『한국병합, 성립하지 않았다』, 태학사, 86쪽. 사카모토 교수의 이러한 이해는, “국가는 단체인격이므로, 국가에 대한 강제라고 할 경우, 구체적으로는 국가원수나 대신이라고 하는 직무상의 기관에 강제가 가해졌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해에 입각한 것인데, 이 이해는 사사가와 교수와 이근관 교수에 의해 비판되고 있다. 笹川紀勝, 「日韓의 法的 ‘대화’를 목표하여」, 이태진 편저, 『한국병합, 성립하지 않았다』, 태학사; 이근관, 2003, 「국제조약법상 강박이론의 재검토: 일본의 한국병합과 관련하여」, 이태진 외,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참조.

12) 이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1995년 10월 13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하야시[林陽] 조약국장은, 체결과정에서 “교섭당사자, 체결자 개인에 대한, 신체에 대한 강박 혹은 위하”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1910년 조약의 유효를 주장했다. 『第134回 國會 衆議院 豫算委員會議錄 第4號』, 1995. 10. 13, 15쪽.

13) 笹川紀勝, 2001, 앞의 글, 144쪽.

에, 한일 간 조약들은 무효가 된다.

또한 19세기 말에도 “국가에 대한 강박이 ‘동의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절대적이라고 하면서 無效原因二分論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견해”도 있었다고 지적되기도 했다.¹⁴⁾

Ⅲ. 1910년 조약의 효력에 관한 합의의 문제

1_ 1965년의 ‘합의’

1910년 조약의 효력이라는 문제에 관해, 한국과 일본은 1965년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기본조약」) 제2조에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임을 확인한다”¹⁵⁾라고 합의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조문에 대해 해석은 둘로 나뉘었다. 한국 정부는, “해당 되는 조약 및 협정에 관하여는 1910년 8월 22일의 소위 한·일합병조약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정 의정서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간 합의문서는 모두 무효이며 또한 정부 간 체결된 것이건 황제 간 체결된 것이건 무효이다. 무효의 시기에 관하여는 ‘무효’라는 용어 자체가 별단의 표현이 부대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며 ‘이미’라고 강조되어 있는 이상 소급해서 무효(Null and Void)이다”¹⁶⁾

14) 박배근, 2003, 「韓國併合關聯條約 有無効論의 意義와 限界」, 『法學研究』 44-1, 부산대학교, 383~384쪽.

15) 「기본조약」은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그 모두가 “동등히 정본”이며,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16) 대한민국정부, 1965, 『한일회담백서』, 19쪽.

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그 조약들이 “과거 일본의 침략주의의 소산”¹⁷⁾이라는 것이었다. 그에 반해 일본 정부는 “이제는 무효”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이미 무효가 되어 있다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서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또한, 무효가 된 시기에 관해서는, 병합조약 이전의 조약들은 각각의 조약에 규정된 조건의 성취 또는 병합조약의 발효와 함께 실효했고, 병합조약은 한국의 독립이 이루어진 시기 즉 1948년 8월 15일에 실효했다”¹⁸⁾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체결되었다”¹⁹⁾라는 것, 다시 말해 “대등한 입장에서 또 자유의사에 따라 이 조약이 체결되었다”²⁰⁾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본조약」에 관한 해석의 차이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에 관한 해석의 차이로 이어졌다. 한일 양국은, 「협정」 제1조에서 일본국이 3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제2조에서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합의했다. 그런데 이 「협정」 제1조와 제2조의 관계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양자 사이에 상호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석한 데 대해,²¹⁾ 일본 정부는 “경제협력의 증진과 청구권문제의 해결은 동일한 협정

17) 1965년 8월 8일, 한일 간 조약과 제협정비준동의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의 이동원 외무부장관의 발언.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日本研究室 編, 1976, 『韓日關係資料集』第一輯, 高麗大學校出版部, 252쪽.

18) 穀田正躬 外 編, 1966, 『日韓條約と國內法の解説』(『時の法令』別冊), 大藏省印刷局, 14쪽.

19) 穀田正躬 外 編, 1966, 위의 책, 같은 쪽.

20) 1965년 11월 5일, 일본 중의원 日韓特別委員會에서의 사토오[佐藤榮作] 수상 발언. 『第50回 國會 衆議院 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條約及び協定等に關する特別委員會議錄 第10號』, 1965. 11. 5, 2쪽.

21) 1965년 8월의 「韓日間 條約과 諸協定批准同意案審査特別委員會」에서, 張基榮 경제기획원장관이 “이 청구권 제2항[제1조 1 (a)]를 잘못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됨]에 있는 소위 무상 3억 불은 청구권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는 배상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경제협력이 아니라 청구권이 주로 되어있[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高麗大學校

의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양자 사이에는 전혀 법률적인 상호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²²⁾라고 해석했다. 다만, 「협정」에 의해 해결된 청구권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는 “영토의 분리·분할에서 오는 재정상 및 민사상의 청구권”이 해결되었을 뿐 “일제의 36년간 식민지적 통치의 대가”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²³⁾, 일본 정부는 한반도 지배에 관한 언급은 없이 “조선의 분리독립”에 관한 청구권이 해결된 것이라고 밝혀,²⁴⁾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책임에 관해서는 해석의 차이를 보이면서도, 「협정」에 의해 해결된 문제의 범위에 관해서는 일정한 해석의 일치를 보였다.²⁵⁾

요컨대 「기본조약」 및 「협정」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① 1910년 조약은 애당초 무효였다, ② 따라서 35년간의 지배는 불법강점이었다, ③ 그래서 1965년에 그와 ‘관련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았다, ④ 하지만 그것은 “영토의 분리·분할에서 오는 재정상 및 민사상의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일제의 36년간 식민지적 통치의 대가”는 아니었다라고 해석·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① 1910년 조약은 당초에는 유효였지만 1948년 8월 15일에 무효가 되었다, ② 따라서 35년간의 지배는 합법이었다, ③ 그래서 1965년에 그에 ‘대해’ 아무것도 준 것이 없었다, ④ 하지만 “조선의 분리독립”에 관한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다라고 해석·주장한 것이다.

2_ 한일회담 문서를 통해 확인된 새로운 사실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에서 일련의 한일과거청산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亞細亞問題研究所 日本研究室 編, 1976, 앞의 책, 242쪽.

22) 穀田正躬 外 編, 1966, 앞의 책, 62쪽.

23) 대한민국정부, 1965, 앞의 책, 41쪽.

24) 穀田正躬 外 編, 1966, 앞의 책, 61~62쪽.

25) 이상의 기술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김창록, 2009, 「1965년 ‘한일조약’에 대한 법적 재검토」, 이태진·사사가와 노리가즈 공편, 『한국병합과 현대-역사적 국제법적 재검토』, 태학사 참조.

데 제기된 한일회담 문서공개 소송을 계기로,²⁶⁾ 2005년 8월 26일 한국 정부에 의해 한국 측 문서(약 3만 6천 매)가 전면 공개되고, 다시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에서 제기된 3차에 걸친 문서공개 소송 과정에서 일본 측 문서(약 6만 매)가 일부 공개되면서,²⁷⁾ 1965년의 ‘합의’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1910년 조약의 효력에 관한 한일 양국 정부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서, 우선 일본 측 자료인 1951년 10월 31일의 「일한 양국의 기본관계에 관한 방침(안)」²⁸⁾이 주목된다. 여기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은 교섭에 임하는 기본적인 태도로서, 일본에 의한 40년의 조선통치가 착취적 식민정치였다는 원칙을 내세울 것”이 예견되므로, “우리 측으로서의 원칙론으로서 이러한 태도를 논파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 “일본의 조선통치하의 한국인의 경제생활, 문화생활 향상의 실제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역시 일본 측 자료인 1952년 3월 12일의 「일한회담 제5회 기본관계위원회 의사요록」²⁹⁾도 주목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그날의 기본관계위원회 회의에서는, 일본 측의 오오노 카즈미[大野勝巳] 대표가, 한국 측 초안의 ‘무효’ 조항(대한민국과 일본국은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구 대한제국과 일본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에 관해, 1910년 조약은 “당초부터 성립 요건을 결여했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립되었지만 그 후 실효했기 때문에 현재 무효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의 유진오 대표는 “1910년 이전의 조약은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26) 문서공개 소송을 포함한 한국에서의 한일과거청산 소송에 관해서는, 김창록, 2007, 「한국에서의 한일과거청산소송」, 『法學論攷』 27, 경북대학교 참조.

27) 일본에서의 문서공개 소송과 일부 공개된 문서에 관해서는, ‘日韓會談文書·全面公開を求める會’의 홈페이지(<http://www7b.biglobe.ne.jp/~nikkan/>) 참조.

28) 「日韓兩國の基本關係調整に關する方針(案)」, 1951. 10. 31(<http://www.f8.wx301.smilestart.ne.jp/6ji-all/6ji-1/01186/2006-00588-1835-01-02-IMG.xdw>).

29) 「日韓會談第五回基本關係委員會議事要錄」, 1952. 3. 12(<http://www.nuis.ac.jp/~yosizawa/00892/2006-00588-0977-01-01.xdw>).

맞받았고,³⁰⁾ 이에 다시 오오노 대표는, 1910년 조약이 “국가 사이에 유효 적법한 조약이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귀국의 국민감정은 어떻든, 우리들 현대의 일본인은 적법한 병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잘라 말했다.

끝으로 한국 측 자료인 1965년 2월 18일의 「기본관계문서 실무자 회의 토의 요약」³¹⁾이 주목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일 양국 정부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진 가운데, 한국 측은 “are null and void”라는 표현을 제안하고, 일본 측은 “are confirmed (as) null and void now”, “have been invalidated and are null and void”, “are already null and void”라는 표현을 제안한 결과 양측이 최종적으로 “are already null and void”라는 표현으로 결착을 지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위에서 살펴본 1910년 조약의 무효시점에 관한 한일 양국 정부의 대립이 한일회담 시작 단계에서부터 그 전 과정을 걸쳐 이어졌으며,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already”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_ 1995년 이후의 변화

1) 일본의 변화

1995년 이후 「기본조약」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해석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30) 다만, 유진오 대표는 이어서 “그러나 이 법이론을 관찰할 때에는 실제로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이론은 제쳐두고, 어쨌든 무효로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 측에서는 병합조약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하고, 일본의 포츠담선언 수락에 의해 실효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규정에서는 위 한국 측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피하고, 또 포츠담선언 수락 때부터 실효했다고 하는 주장도 피하여, 막연히 어쨌든 무효를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위의 자료 참조.

31) 「기본관계문서 실무자 회의 토의 요약」, 1965. 2. 18, 『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1964.12-65.2』 (등록번호 1455).

생겼다. 일본의 ‘종전 50주년’을 맞아, 1995년 8월 15일 당시의 무라야마 토미이찌[村山富市] 수상이 발표한 담화³²⁾를 통해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의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의심할 수 없는 이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표명”했다. 그리고 1998년 10월 8일의 김대중-오부찌 케이조오[小淵恵三] 공동선언³³⁾을 통해서 “과거의 한 시기에 한국 국민에 대해 식민지 지배에 의해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02년 9월 17일의 「조일공동선언」³⁴⁾을 통해서도,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조선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가 1965년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을 상기하면, 이것이 적지 않은 변화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 이후에도, “식민지 지배의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엄한 반성을 하여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³⁵⁾라고 하면서도, 1910년 조약이 “법적으로 유효”였다³⁶⁾는 입장은 계속 고수함으로써 ‘법적 무책임의 원칙’을 이어갔다. 요컨대 ‘유효정당론’에서 ‘유효부당론’으로의 전환인 것이다.

32) 「戦後50周年の終戦記念日にあたって」, 1995. 8. 15 (http://www.mofa.go.jp/mofaj/press/danwa/07/dmu_0815.html).

33) 「日韓共同宣言-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 1998. 10. 8 (http://www.mofa.go.jp/mofaj/kaidan/yojin/arc_98/k_sengen.html).

34) 「日朝平壤宣言」, 2002. 9. 17 (http://www.mofa.go.jp/mofaj/kaidan/s_koi/n_korea_02/sengen.html).

35) 1995년 10월 17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의 무라야마[村山富市] 수상의 발언. 『第134回 國會 參議院 豫算委員會會議錄 第3號』, 1995. 10. 17, 34쪽.

36) 1995년 10월 5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의 무라야마 수상의 발언. 『第134回 國會 參議院 會議錄 第4號』, 1995. 10. 5, 19쪽.

2) 한국의 변화

한편 한국 측에도 변화가 생겼다. 2005년 8월 26일 대통령 소속기관인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 범위”에 관해,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동시에 민관공동위원회는, “한일협정 협상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하여 요구했던 강제동원 피해보상의 성격, 무상자금의 성격, ‘75년 한국 정부 보상의 적정성 문제’에 관해서는,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불은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 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75년 우리 정부의 보상 당시 강제동원 부상자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볼 때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하였”으므로, “도의적·원호적 차원과 국민통합 측면에서 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라는 결정을 내렸다.³⁷⁾ 그리고 이 결정에 따라 2007년 12월 10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게 되었다.³⁸⁾

위와 같은 한국 측의 일련의 조치는, 「협정」에 의해 해결된 청구권의 범위

37)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2005. 8. 26.

3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gangje.go.kr>) 참조.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0년 3월 22일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폐지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대체되었다.

및 무상 3억 달러의 성격, 그리고 한국 정부에 의한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연장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라고 한 점과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에 대한 지원의 확대라는 점에서는 일정한 변화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IV. 과제와 전망

1. ‘법’을 넘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910년 조약의 효력에 관해서는, 조약 체결 당시부터 한일 간에 대립이 있었고, 1965년의 「기본조약」에 의해서도 그 대립은 해소되지 않았다. 또한 1990년대 이래의 한일 학자들의 논의를 거친 지금도, 당시의 서양 국제법학자들의 저작을 근거로 한 유효론과 무효론의 대립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우선 “논쟁의 논리적 구조와 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³⁹⁾이 주목된다. 박배근 교수는 기존의 논쟁을 전면적으로 검토한 다음, “실제로는 제국주의적인 유럽 국가들의 편익에 따라 마음대로 조작된 법”인 “법실증주의 국제법학자의 저서 속에 서술되어 있는 국제법”에 의존하는 법적 삼단논법은, “법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서 제시되는 것은,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 자체가 정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시 무엇이 ‘법’이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39) 박배근, 2003, 앞의 글, 373쪽.

“‘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지의 여부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법적 문제에는 유일하게 옳은 하나의 해답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도 있”다라는 것이다.⁴⁰⁾ 매우 경청할 만한 주장이다. 제국주의 시대의 힘의 논리가 녹아 있는 ‘법’에 지금 의지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학자 개인의 학설이라는 형태로 존재한 법은 불명확하다. 무엇보다 법적 공방의 형태를 띤 그 대립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명확한 판결을 내려 줄 현실의 법정이 없다.

또한 법적인 차원보다 중요한 다른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면 지적도 주목된다. 운노 후쿠쥬[海野福壽] 교수는 “오늘날 세계적인 규모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고,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가 외면해버린, 식민지주의의 청산과 극복이라는 과제”⁴¹⁾야말로, 사카모토 시게키[阪元茂樹] 교수는 “식민지 지배의 가혹한 실상과 그러한 역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라는 보다 넓은 과제”⁴²⁾야말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오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 교수는 “법적인 책임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른 근거에 기초하여, 진지한 진심 어린 사죄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수행될 수 있는” “도의적 책임”⁴³⁾을 강조한다. 이들 주장 또한 경청할 만하다. 식민지주의·식민지 지배의 역사의 극복이야말로 근본적인 과제이며, 법적인 책임만큼 도의적인 책임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들 문제의식과 주장에 대해 한편으로 공감하면서도, 과연 ‘법’에 관한 논의를 넘어서는 것이 대립의 해소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대립의 출발점이 ‘법’이다. 애당초 일제의 한반도 지배에 대해 한국인

40) 박배근, 2003, 앞의 글, 386~389쪽.

41) 海野福壽, 2001, 「한국병합의 역사인식」, 이태진 편저, 『한국병합, 성립하지 않았다』, 태학사, 152쪽.

42) 阪元茂樹, 2001, 앞의 글, 98쪽.

43) 大沼保昭, 2007, 『「慰安婦」問題とは何だったのか：メディア・NGO・政府の功罪』, 中央公論新社, 164쪽.

들이 요구한 것은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여 억압하고 약탈했으니 그에 대해 책임을 지라’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일본 정부가 ‘합법이었으니까 책임 질 것이 없다’라며 완강히 거부했다. 그래서 그 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들은 ‘게다가 불법이었다’라고 거듭 추궁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합법’이라는 주장을 여전히 철회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식민지주의·식민지 지배의 청산이라는 과제의 해결이 저해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둘러싼 대립이 ‘법’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다음으로 대립의 현상으로부터도 ‘법’을 떼어낼 수 없다. 1982년 이래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의 뿌리에는 바로 ‘법’의 대립이 자리 잡고 있다. 2001년의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의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의 ‘자유주의사관’론자들에 의한 한반도 지배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는, 결국 ‘한국병합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에 터잡고 있는 것이다. 또, 1995년에 발족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피해자로부터 국가보상론 등의 요구가 제기”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숨을 죽이고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려고 한 “일본 정부의 체질”⁴⁴⁾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본 정부가, 추궁이 “법적인 논의”⁴⁵⁾로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도의적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편의적·정치적 고려에 터잡은 불성실한 책임 회피”⁴⁵⁾를 한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법’을 넘어서는 논의로는 대립의 의미 있는 해소를 가져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1990년대 이래의 진전과 변화는 실은 ‘법’에 주목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하고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보다 진전된 ‘법’에 관한 논의를 만들어낼 것인가이다.

44) 大沼保昭, 2007, 앞의 책, 170쪽.

45) 大沼保昭, 2007, 앞의 책, 164쪽.

2_ 새로운 ‘법적 틀’의 구축

‘법’과 연관된 하나의 해소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국주의 국제법을 전제로 한 법논쟁’이라는 법적 틀 자체를 다른 법적 틀로 대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국주의 국제법의 틀 대신에 식민지 지배 일반을 불법으로 선언하는 새로운 ‘법적 틀’을 구축하고 관철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근관 교수가 “당시의 근대 국제법은 유럽에 기원을 두고 있었으며 그 전반적 경향이 유럽강국에 의한 식민주의 또는 제국주의적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에서 출발하여, “기계적인 시 제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전통 국제법질서[와] 현안문제에 대한 오늘날의 규범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한 화해와 공생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규범적 지점을 확보”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⁴⁶⁾이 주목된다. 이 제안은, 아베 코요키[阿部浩己]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법을 협애한 ‘현재’라는 呪縛으로부터 해방하여, 그 시간적 사정을 과거를 향해 연장”시키는 것⁴⁷⁾이 될 터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의 선주민족의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운동, 나치즘의 피해자에 대한 독일의 보상,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미국의 보상, 남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에서 확산된 과거의 부정의에 대한 진상규명·가해책임 추구를 향한 투쟁, 그리고 이 글의 주제와 직접 관련된 대일과거 청산소송⁴⁸⁾ 운동을 비롯한 한일 간 과거청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 등, 최근에 전개된 일련의 ‘법적’ 노력은 “정의의 시간적 사정을 과거에로 伸張시키는”⁴⁹⁾

46) 이근관, 2006, 「한일병합조약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 관련 국제법 학술회의집』, 25~26쪽. 또한 백충현, 2003, 「일본의 한국병합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이태진 외,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39~241쪽도 참조.

47) 아베 코요키[阿部浩己], 김창록 역, 2007, 「戰後責任과 화해의 모색」, 『法學論攷』 26, 경북대학교, 405쪽.

48) 이에 관해서는, 우선 김창록, 2007,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한국인들에 의한 소송을 중심으로」, 『法史學研究』 35 참조.

49) 아베 코요키[阿部浩己], 2007, 앞의 글, 404쪽.

커다란 흐름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2001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에서 개최된 반인종차별 국제회의에서는 ‘마침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이 중요 의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채택된 더반선언은, 과거의 ‘가해국’들과의 타협을 강요받은 결과 법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자제되기는 했지만, 노예제와 식민지주의에 의해 야기된 “엄청난 고통과 참상”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으며,⁵⁰⁾ 특히 식민지주의와 관련해서는 “식민지주의에 의해 야기된 고통을 인정하고, 언제 어디서든 식민지주의는 비난 받아야 하며 재발이 방지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⁵¹⁾

전체적으로 볼 때, 식민지 지배 일반을 불법으로 선언하는 새로운 ‘법적 틀’은 아직 형성 중에 있지만, 현대의 국제사회에서 그것이 중요한 법적 이슈로서 등장한 것은 분명하다. 식민지주의 일반에 대한 역사적·법적 천착을 거듭함으로써, 그것을 하나의 명확한 흐름으로 만드는 것은, 일제의 한반도 지배에 대한 법적 평가의 제자리 찾기에도 기여할 터이다.

3_ 법과 역사의 상호 심화를 향해

하지만 ‘법’과 연관된 대립의 해소책으로서 ‘바로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법’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확정할 수는 있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현실의 법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 ‘확정’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확정을 의미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1990년대 이래 한일 양국의 학자들이, 조약의 효력에 관한 1900년대 초의 ‘법’을 상세하게 밝혀낸 것은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들의 노력에 의해 1900년대 초에 ‘복수의 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그 ‘복수의 법’ 사이의 우열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50) “Declaration” (<http://www.un.org/WCAR/durban.pdf>), at 17.

51) Id., at 7.

그렇다면 지금 1900년 한일조약의 효력이라고 하는 법적인 문제에 관해 판단하는 것은 결국 그 ‘복수의 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된다.⁵²⁾ 강박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는 유효론자도 무효론자와 마찬가지로이다. “대한제국에 대해 국가의 존망에 관한 압력이 일본으로부터 가해졌다는 사실은 누구의 눈에도 명백”⁵³⁾하며, “일본의 모략과 간계에 의해 굳어진 계획에 따라 한국에 위압을 가해, 병합조약을 강제 체결했다는 사실은 명백”⁵⁴⁾하다. 그런데도 유효론자는 그 ‘복수의 법’ 중 하나의 법을 선택하여 유효를 주장하고 있고, 무효론자는 다른 하나의 법을 선택하여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선택이 영원히 바뀌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선택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선택이다. 일본 정부의 최초의 선택인 ‘유효정당론’은, 요컨대 ‘합법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1995년에 이르러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에 의해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통절하게 반성하고 마음으로부터 사과해야 할,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했다. 그래서 ‘유효부당론’으로 전환한 것인데, 이 ‘유효부당론’이라는 것은, 요컨대 ‘합법이었지만 잘못된 것이 있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매우 웅색한 “자가당착”⁵⁵⁾에 빠져들게 되었다. ‘일본은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라이다’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형색이 되어버린 까닭이다. 그 초라한 모습을 겨우 가리고 있는 것이 ‘유효론’이라고 하는 ‘법’논

52) 이 점과 관련하여 사카모토 교수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시사적이다. “과거에 발생했던 사실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구별은 없다. 모든 것은 일어났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취급할까 하는 그 태도다” (阪元茂樹, 2001, 앞의 글, 99쪽). 사카모토 교수는 ‘과거에 발생했던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했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할 터이다.

53) 阪本茂樹, 2004, 앞의 책, 277쪽.

54) 海野福壽, 2000, 앞의 책, 387쪽.

55) 太田修, 2008, 「日韓財産請求權問題の再考－脱植民地主義の視覚から」, 笹川紀勝·李泰鎮 編, 『國際共同研究 韓國併合と現代－歴史と國際法からの再檢討』, 明石書店, 711쪽.

리인 셈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 ‘늑대들의 법’인 제국주의 국제법의 시대에도 존재했던 ‘양들의 법’이 그것이다. 당시에 우열을 확인할 수 없는 ‘복수의 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국제법의 원칙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늑대들의 법’을 버리고 ‘양들의 법’을 선택하는 데 어떠한 ‘법적’인 장애도 없다. 게다가 일본 정부의 새로운 선택은, ‘늑대들의 법’이 떠받치고 있던 제국주의 시대와의 진정한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며, 바로 그 제국주의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에게 ‘반성과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고, 專制와 隸從,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⁵⁶⁾하는 길인 것이다.⁵⁷⁾

물론 이러한 해소책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그 새로운 선택을 거부했고, 또 거부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무효’와 ‘불법’의 선언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 다시 말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⁵⁸⁾라는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을 터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현실이 있다. 일본 정부는 1995년 이후 기존의 입장을 바꾸었다고 하는 현실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의 문제는 별론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한일 양국 정부 사이의 대응의 차이는 더욱 현저하게 되었다고 하는 현실도 있다. 북한과의 관계는 여전히 미정이지만, 「조일공동선언」의 틀은 앞으로도 현실로서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새로운 선택은 반드시 비현실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56) 「일본국헌법」 전문.

57) 이에 관해서는 김봉진, 2001, 「한국병합 유효·부당론」을 묻는다, 이태진 편저, 『한국병합, 성립하지 않았다』, 태학사, 258쪽도 참조.

58) 阪元茂樹, 2004, 앞의 책, 279쪽.

V. 맺음말

지금까지 1910년 조약의 효력과 그에 대한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와 관련하여, 특히 1990년대 이래 어떤 진전과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토대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1910년 조약의 효력의 문제는, 한일 양국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과거인, 35년간에 걸친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한 문제이다. 또한 그것은 현재의 한일관계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1965년 조약의 애매성의 근본원인이기도 하다. 1910년 조약의 효력, 그리고 35년간에 걸친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한일 간의 진정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 그것을 통해 1965년의 애매성을 극복하고 한일관계의 확실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요망된다.

그러기 위해 일본 정부가 1910년 조약의 공포로부터 100년이 되는 올해에,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와 1998년의 김대중-오부찌 공동선언을 넘어서, 1910년 조약과 그것에 기초한 일제의 한반도 지배가 부당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것이었다고 선언하는 것이 요망된다. 그것은 한일 간의 “역사인식의 최소한의 통일을 도모”⁵⁹⁾함으로써 한일 간의 진정한 우호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식민지주의의 청산이라고 하는 인류적 과제의 해결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진전과 변화를 만들어낸 원천에 다시 한번 주목하고자 한다. 그 원천은 법에 주목한 역사 연구와 역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법, 요컨대 법과 역사의 상호 심화를 위한 노력이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로 상징되는 한일 간 과거청산을 위해, 피해자와 시민,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거리와 법

59) 和田春樹・藤原歸一・薑尙中, 2010. 1, 「討議 朝鮮植民地支配とは何だったのか」, 『世界』 800호, 145쪽.

정과 의회와 심포지엄 등에서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⁶⁰⁾

지금까지의 한일 양국의 역사학자와 법학자들의 대화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910년 조약 100년'을 맞는 2010년에는, 한일 양국에서 공개된 관련 문서에 대한 심화된 분석을 토대로, 한일 간 과거청산의 보다 큰 진전을 이루어내기 위해 그 대화를 더욱 심화·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후기]

논문을 탈고한 후 이 주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다. 하나는 지난 2010년 5월 10일에 한일 양국의 지식인 각각 100여 명(한국 측 109명, 일본 측 105명)이 서울과 토오쿄오[東京]에서 「한국병합」 100년에 즈음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을 발표하고,⁶¹⁾ 7월 28일에는 서명자를 1,000여 명(한국 측 587명, 일본 측 531명)으로 늘려 재차 발표한⁶²⁾ 것이다. 이 「공동성명」에서 양국의 지식인들은, “한국병합조약”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야말로 두 민족 간의 역사문제의 핵심이며, 서로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기본”이라고 자리매김하고, “병합조약 등은……당초부터 null and void였다고 하는 한국 측의 해석이 공통된 견해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그러한 “공통의 역사인식에 입각하여”, “한국과 일본 사이에 진정한 화해와 우호에 기초한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것을 호소했다.⁶³⁾ 이것은 위의 ‘맺음말’에서 적은 “한일 간 과거청산의 보다 큰 진전”의 가능성을 한층 키운 것이라고 할 것이다.

60) 일본 국내에서의 노력에 관해서는, 和田春樹 外 編, 1996, 『日本は植民地支配をどう考えてきたか』, 梨の木舎 참조.

61) 「韓日병합조약 무효」 한일 지식인 공동선언, 『연합뉴스』(인터넷판) 2010. 05. 10. 17: 18.

62) 「韓日 지식인 1천118명 “병합 원천 무효」, 『연합뉴스』(인터넷판) 2010. 07. 28. 18: 10.

63) 「한국병합」 100년에 즈음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 2010. 5. 10.

다른 하나는 지난 2010년 8월 10일에 칸 나오토[菅直人] 일본 수상이 담화⁶⁴⁾를 발표한 것이다. 칸 수상은 담화를 통해, “3·1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 서도 드러난 것처럼, 정치적·군사적 사정 아래에서, 당시의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나라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궁지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표명”했다. 위의 담화 중 “그 뜻에 반하여”라는 표현이 추가된 것은, 이전의 수상 담화와 비교할 때, 일정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지만, 그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 점은, 같은 날의 기자회견에서 칸 수상이 ‘1910년 조약이 무효라는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서, “일한병합조약에 관해서는, 1965년의 일한기본조약에서 그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으며, 그 입장을 답습했다”라고 대답한 데서도 확인된다.⁶⁵⁾ 올해가 ‘1910년 조약 100년’이고 게다가 위의 「공동성명」도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칸 수상의 담화가 ‘특별한 진전’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1910년 한일조약의 올바른 자리매김은 ‘100년’에도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4) 「內閣總理大臣談話」, 2010. 8. 10(<http://www.kantei.go.jp/jp/kan/statement/201008/10danwa.html>).

65) 「菅首相會見詳報(3)―「日韓基本條約の考え踏襲」」, 『産経新聞』(인터넷판) 2010. 8. 10, 17: 01.

참고문헌

〈홈페이지〉

日韓會談文書・全面公開を求める會 (<http://www7b.biglobe.ne.jp/~nikkan/>),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http://www.jiwon.go.kr/index.asp>).

〈자료〉

「기본관계문서 실무자 회의 토의 요약」, 1965. 2. 18, 『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 회의록 및 훈령, 1964.12-65.2』 (등록번호 1455).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2005. 8. 26.
內閣法制局官報課, 『官報 號外』, 1910. 8. 29 (http://kyujanggak.snu.ac.kr/GAN/GAN_MAINLIST.jsp).
「日韓兩國の基本關係調整に關する方針(案)」, 1951. 10. 31 (<http://www.f8.wx301.smilestart.ne.jp/6ji-all/6ji-1/01186/2006-00588-1835-01-02-IMG.xdw>).
「日韓會談第五回基本關係委員會議事要錄」, 1952. 3. 12 (<http://www.nuis.ac.jp/~yosizawa/00892/2006-00588-0977-01-01.xdw>).
「戰後50周年の終戰記念日にあたって」, 1995. 8. 15 (http://www.mofa.go.jp/mofaj/press/danwa/07/dmu_0815.html).
「日韓共同宣言-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 1998. 10. 8 (http://www.mofa.go.jp/mofaj/kaidan/yojin/arc_98/k_sengen.html).
「日朝平壤宣言」, 2002. 9. 17 (http://www.mofa.go.jp/mofaj/kaidan/s_koi/n_korea_02/sengen.html).
「內閣總理大臣談話」, 2010. 8. 10 (<http://www.kantei.go.jp/jp/kan/statement/201008/10danwa.html>).
“Declaration” (<http://www.un.org/WCAR/durban.pdf>).
『日本外交文書』 38-1.
吉田源治郎, 1911, 『日韓併合始末』.
寺內正毅, 1910. 11. 7, 「韓國併合ト軍事上ノ關係」, 『朝鮮總督報告韓國併合始末』.

日本國會, 1965. 11. 5, 『第50回 國會 衆議院 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條約及び協定等に關する特別委員會會議錄 第10號』.

日本國會, 1995. 10. 13, 『第134回 國會 衆議院 豫算委員會會議錄 第4號』.

日本國會, 1995. 10. 17, 『第134回 國會 參議院 豫算委員會會議錄 第3號』.

日本國會, 1995. 10. 5, 『第134回 國會 參議院 會議錄 第4號』.

「‘한국병합’ 100년에 즈음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 2010. 5. 10.

「韓日병합조약 무효’ 한일 지식인 공동선언」, 『연합뉴스』(인터넷판) 2010. 05. 10. 17: 18.

「韓日지식인 1천118명 “병합 원천 무효”」, 『연합뉴스』(인터넷판) 2010. 07. 28. 18: 10.

「菅首相會見詳報(3)－「日韓基本條約の考え踏襲」」, 『産經新聞』(인터넷판) 2010. 8. 10 17: 01.

〈단행본〉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日本研究室 編, 1976, 『韓日關係資料集〈第一輯〉』, 高麗大學校出版部.

대한민국정부, 1965, 『한일회담백서』.

李鍾學 編著, 2000, 『1910年韓國強占資料集』, 史芸研究所.

이태진 편저, 1995,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까치.

이태진 편저, 2001, 『한국병합, 성립하지 않았다』, 태학사.

이태진 외, 2003,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이태진 · 사사가와 노리가즈 공편, 2009, 『한국병합과 현대-역사적 국제법적 재검토』, 태학사.

康成銀, 2005, 『1905年韓國保護條約と植民地支配責任』, 創史社.

穀田正躬 外 編, 1966, 『日韓條約と國內法の解説』(『時の法令』別冊), 大藏省印刷局.

吉田源治郎, 1911, 『日韓併合始末』.

大沼保昭, 2007, 『「慰安婦」問題とは何だったのか：メディア・NGO・政府の功罪』, 中央公論新社.

笹川紀勝 · 李泰鎮 編, 2008, 『國際共同研究 韓國併合と現代-歴史と國際法からの再検討』, 明石書店.

- 阪元茂樹, 2004, 『條約法の理論と實際』, 東信堂.
- 海野福壽, 2000, 『韓國併合史の研究』, 岩波書店.
- 和田春樹 外 編, 1996, 『日本は植民地支配をどう考えてきたか』, 梨の木舎.

〈논문〉

- 김창록, 2001, 「1900년대 초 한일간 조약들의 ‘불법성’」, 『법과사회』 20.
- 김창록, 2007,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한국인들에 의한 소송을 중심으로」, 『法史學研究』 35.
- 김창록, 2007, 「한국에서의 한일과거청산소송」, 『法學論攷』 27, 경북대학교.
- 박배근, 2003, 「韓國併合關聯條約’有無效論의 意義와 限界」, 『法學研究』 44-1, 부산대학교.
- 박배근, 2009, 「시제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병합관련 ‘조약’의 효력: 조약 체결의 형식과 절차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54-2.
- 백충현, 1996, 「國際法으로 본 1900년대 韓日條約들의 문제점」, 『한국사 시민강좌』 19, 일조각.
- 아베 코오키[阿部浩己], 김창록 역, 2007, 「戰後責任과 和解의 모색」, 『法學論攷』, 26, 경북대학교.
- 이근관, 2006, 「한일병합조약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관련 국제법 학술 워크숍』.
- 이태진, 1999, 「약식조약으로 어떻게 국권을 이양하는가?」, 『전통과 현대』 10호.
- 金昌祿, 2010, 「一九一〇年韓日條約に關する法史學的再檢討」, 『季刊 戰爭責任研究』 2010年春季號.
- 和田春樹·藤原歸一·薑尙中, 2010, 「討議 朝鮮植民地支配とは何だったのか」, 『世界』 800호.

[ABSTRACT]

A Legal-Historical Reappraisal on the 1910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Kim, Changrok

The 1910 Treaty, which has been insisted as a legal basis of Japanese colonial rule of Han-peninsula, is still controversial, even after 100 years since it was concluded. The kernel of the question is the effect of the Treaty, which comprises two particular questions: the question of the effect of the Treaty itself and the ques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effect.

Through the serious discussions among Korean and Japanese scholars since 1990's, it has been made clear that the Emperor of the Great Han Empire was oppressed and there were many defects of procedure in the conclusion process of the Treaty. It has been also made clear that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f those days, which can be identified by the scholars' books, declared that the treaty concluded by oppression was null and void, even though there was a conflict of opinions on the intensity of the oppression. It has been made clear that the interpretations of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on the Article 2 of 1965 Basic Treaty set up in opposition from the beginning and that the opposition continued through the whole process of the conclusion of the Basic Treaty, as well.

On the other hand, since 1990'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expressed its deep remorse and heartfelt apology for the fact that

Japan caused tremendous damage and suffering to the people of Korea through its colonial rule. In 2005, the Korean government declared that the problems regarding inhumane wrongs such as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hould not be accounted as settled and thus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ose wrongs remains.

Regarding to the question of the effect of the 1910 Treaty, there is a suggestion that a fundamental reconsideration is needed on the logical frame of the argument based on the scholars' opinions in the era of imperialism. However, the starting point of the argument is law and the argument continues in the context of law.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to 'overcome' law.

The argument should be settled in the context of law. It would be one option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choose the international law of those days, which supports the invalidity of the Treaty, to overcome the suspicion about the authenticity of its remorse and apology. Another option would be that we build up a new legal frame to declare the illegality of the colonial rule in general, discarding the frame of the international law in the era of imperialism.

In 2010, the significant year after 100 years since the conclusion of the 1910 Treaty, the convers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should be deepen to achieve more progress in righting the wrongs of the past.

keywords

1910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Treaty of Annexation', Effect of Treaties,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greement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Problems in Regard to Property and Claims and Economic Cooperation, Righting the Wrongs of the Past



조약법을 통해 본 1910년 병합조약의 무효

- 강제에 의한 조약의 효력을 중심으로 -

성재호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머리말

1910년 8월 22일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¹⁾하는 조약이 체결되었다. 1904년 협정서(제1차한일협약)에 의해 고문정치가 시작된 이후, 1905년에는 을사늑약(제2차한일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통감정치가 실시되었

※ 투고일: 2010년 6월 28일, 심사일: 2010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27일.

1) '병합'이란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다. 혹자는 병합은 일본이 조약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옳은 용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강제병합' 또는 '병탄'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각에서는 '강제합병'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병합과 합병은 그 의미가 매우 다르다. 병합은 annexation을 지칭하는 것이고, 합병은 amalgamation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 용어 모두 복수국가의 합성형태와 관련되는 것이나, 전자는 힘에 의한 강제적 경우이고, 후자는 상호 합의에 의한 경우라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 김정균·성재호, 2005, 『국제법』, 박영사, 219~220쪽; 이런 관점에서 1901년 조약은 '병합'으로 칭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일한병합'이란 표현은 '일한'이란 수식을 덧붙여 병합의 본래적 의미인 강제를 희석시키고, 양자 간 합의적인 것으로 비취지게 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법적 평가와 달리 병합이란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도 있다. '병합'은 당시 일본 외무성 정무국장 구라

고, 통감정치로 실질적 국권을 빼앗은 일본은 허울만 남아 있던 대한제국을 병합조약을 통해 완전히 소멸시킨 것이다. 그 과정을 보면 1910년 7월 12일 ‘병합 후의 對韓 통치방침’을 마련, 통감으로 임명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병합 공작을 전개하였다. 8월 16일 데라우치는 총리대신 이완용과 농상공대신 趙重應을 통감관저로 불러 병합조약의 구체안을 알려 주고 18일 각의에서 합의케 하였다. 8월 22일에는 순종 황제 앞에서 형식상의 어전회의를 거쳐 이완용과 데라우치가 병합조약을 체결하였다.²⁾ 조약 체결 사실은 1주일간 비밀에 부쳐졌고, 8월 29일 이완용이 尹德榮을 시켜 황제의 어새를 날인하여 勅諭와 함께 병합조약이 공포되었다. 이와 같이 병합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사전공작과 매국적 배신, 군주와 신하에 대한 강박이 점철된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910년 병합조약이 국가 간의 합의로서 국제법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1969년에 채택된³⁾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조약법협약)은 조약의 무효사유로 여덟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 위반

치 데쓰기치의 작품으로 그가 1920년대에 남긴 『조선병합의 경위』라는 책을 보면, 그가 이 말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지 알 수 있다. 합방은 대한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합방은 대등한 조건에서 하는 것이므로, 일본 입장에서 보면 대한제국이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는 의미를 담을 수 없다. 사실에 부합하는 것은 집어삼킨다는 뜻의 ‘병탄’이지만, 이건 또 너무 노골적인 표현이다. 대안으로는 당시 널리 사용되던 ‘합병’이 있었지만, 이걸로는 약하다고 생각했다. 고심 끝에 그가 만들어낸 말이 바로 당시 거의 사용되지 않던 ‘병합’이다. 결국 ‘병합’이란 말은 일본이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교하게 고안한 것이므로, 우리는 병합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따라서 강제병합, 병탄, 경술국치 같은 표현이 본질에 부합한다. 한철호, 2010. 8. 17, 『주간경향』 888호, 24쪽.

- 2)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넘겨주는 마지막 어전회의가 뜻밖에도 간단히 또한 무난히 끝맺게 된 것은 1905년의 외교권 위임 당시 목숨을 내걸고 항거하던 때와는 너무나 현격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데라우치와 이완용의 용의주도한 謀策에 기인한 것이라 하였다. 노계현, 1970, 『일본의 한국병합과 열강의 반응』, 『국제법학회논총』 제15권 1호, 147~148쪽.
- 3) 우리나라는 1969년 11월 27일 서명하였고, 1977년 4월 27일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제84조 1항에서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1980년 1월 27일 발효되었다.

(제46조), 국가의 동의 표시 권한에 대한 특정 제한의 위반(제47조), 착오(제48조), 기만(제49조), 국가대표의 부정(제50조),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제51조), 무력사용이나 위협에 의한 국가의 강제(제52조), 일반국제법의 절대적 구범 소위 강행규범에 충돌하는 경우(제53조)가 그것이다. 1910년 병합조약의 무효와 관련하여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체결형식상 비준권자인 대한제국 황제의 수결이 없었다는 점과, 일본의 강제 또는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의 주장은 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 위반을 언급한 제46조와 관련된 사항이고, 후자는 조약법협약 제51조와 제52조에 관련되는 사항이다. 이 글은 비준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무효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제나 강박에 의한 조약의 무효를 근거로 1910년 병합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1910년 병합조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일본 학자는 한국병합 행위가 외형적인 형식을 갖추어 합법적 한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⁴⁾ 이는 당시 국제법학자의 다수 견해가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와 국가에 대한 강제를 구분하여 전자는 무효이나, 후자는 유효라는 설명에 기반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현행 국제법인 조약법협약과 1910년대의 국제법에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는데서 비롯된다. 즉 조약법협약은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와 국가에 대한 강제를 공히 무효로 명시하고 있으나, 1910년대의 저술에서는 양자를 구별하여 국가에 대한 강제는 유효라는 주장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시의 국제법 저술에서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와 국가 자체에 대한 강제를 구분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분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당시의 국제법 저술이 하나같이 이분법적 구분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분법적 구분을 행하는 학자 모두가 국가에 대한 강제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선행연구를 통해

4) 은노[海野] 교수는 “구조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식민지 통치를 합법적 강제를 통하여 행하였다”고 주장한다. 海野福壽, 1997. 7, 「韓國併合の歴史認識」, 『世界』, 274쪽.

양국 학자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논거를 추출하고, 일본 학자들이 인용한 서구 학자의 원전을 거시적으로 분석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국내 국제법학자의 선행연구는 1910년대의 국제법상 조약체결시 국가대표에 가해진 강제는 무효사유가 되나, 국가 자체에 가해진 강제는 유효라는 영국계 학자의 이분법적 설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⁵⁾

1910년대 당시의 조류는 정치적으로 절대주의를 취하고 있었고, 법적으로는 법실증주의를 따르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국제법에 대한 이해는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실정법의 존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전의 자연법주의와 달리 법실증주의는 국가관행의 체계적 연구를 통해 무엇이 법인가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⁶⁾ 법실증주의자들은 국가 간의 조약 및 국제관습법 등 실정법만이 국제법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현재의 조약법협약과 같은 일반적 성격의 조약이 없었으므로, 국제관습법에서 국제법의 실체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가관행에서 국제관습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이를 일반적 차원에서 인정할 수 없다면 보편적 국제법으로 승화시킬 수 없다. 일부의 국가관행에 그치거나, 제국주의 국가에 의한 편향성을 띠고 있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특히 당시 국제사회의 실증적 자료를 찾는 일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당시 학자들의 학론에서 단서를 찾을 수밖에 없다. 국가에 대한 강제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학론의 경우에도 그 근거에 차이가 있고, 학자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제한적 경우에만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서구 학자들의 견해 또한 통일된 형태로 존재한 것이 아니며, 조약체결시 국가에 대한 강제의 경우에도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적지 않다.

5) 백충현, 1996, 「國際法으로 본 1900년대 韓日條約들의 문제점」, 『한국사시민강좌』, 제16집, 일조각, 76~77쪽; 박배근 교수는 일부 저작물의 검토만으로 충분한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은 무효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박배근, 2003, 「韓國併合關聯條約有無效論의 意義와 限界」, 부산대학교, 『法學研究』 제44집, 380쪽.

6) Sean D. Murphy, 2006,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West, p. 12.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910년 병합조약의 체결과정에 강제가 있었다는 역사학자들의 선행연구⁷⁾를 전제로, 당시 서구 학자들의 저술에 대한 시제법적 검토를 통해 강제로 체결된 1910년 병합조약이 무효임을 밝히는 데 있다.

II. 조약의 무효사유와 병합조약시의 정황

1. 비준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무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학자들이 병합조약의 무효로 제시하고 있는 논거는 두 가지이다. 일본에 의한 강제 또는 강박이 있어 의사표시의 하자로 인한 무효라는 점과, 비준권자인 대한제국 황제의 수결이 없으므로 체결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무효라는 점이다.

1910년 병합조약의 역사적 검증을 통해 소중한 연구결과를 낸 바 있는 이태진 교수는 병합조약과 같은 중요한 조약은 정식조약으로 체결되었을 때 유

7) 경술국치 하루 전인 1910년 8월 28일 순종 황제가 수여한 훈장증은 가운데 찍힌 大韓國璽 위에 一心을 변형한 순종 황제의 수결이 뚜렷하나, 8월 22일 순종 황제가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이완용에게 써 준 전권위임장에는 붉은색 대한국새 위에 일본식으로 순종 황제의 이름 拓이 서명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태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순종 황제가 공식 즉위한 뒤 대부분 공문서에 황제의 수결은 일본식으로 순종 황제의 이름인 척 서명으로 바뀌었다”며 “조약의 공포 일을 앞두고 마지막 황제권을 행사하는 순종 황제가 정식 수결을 갖춘 문서를 통해 일제가 조작한 공문서의 부당성을 지적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자료”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7. 8. 28; 이상찬 교수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 문서의 물리적·외형적 특징을 비교한 결과 대한제국 측 문서와 일본 측 문서가 동일한 인물에 의해 함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태진 교수는 그 근거로 필체, 지질, 색깔과 제본, 봉인 방식이 같은 점을 꼽았다. 이는 대한제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던 일본 측이 양쪽 문서를 모두 작성해 일방적으로 체결을 강요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이태진 교수는 설명했다. 『동아일보』, 2009. 7. 7.

효한 것이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무효론을 주장하고 있다.⁸⁾

정식조약이란 전권위임장을 부여받은 교섭대표에 의해 체결되고 비준이 이루어진 조약으로서, 전권위임장이 부여되지 않았거나 비준이 이루어지지 못한 병합관련조약은 처음부터 조약으로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 순종 황제가 이완용을 전권위원으로 임명한 위임장, ㉡ 양국 전권위원이 서명 날인한 조약문, ㉢ 조약문을 조칙과 함께 공포하기로 한 양인의 각서, ㉣ 병합을 알리는 황제의 칙서가 존재하고 그 존재의 기반이 적법할 때 정식조약인 병합조약의 합법성이 보장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의 위임장과 ㉡의 조약문에는 형식상 하자가 없으나, 비준서와 관련하여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병합조약이 공포되는 순간 한국은 없어지는 나라가 되므로 비준 효과를 가지는 최종승인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어 ㉢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양측 대표는 조약문과 함께 병합을 알리는 양국 황제의 詔勅 반포로써 비준효과를 기하려 한 것이라 하였다. 일본 측은 미리 준비한 조약문의 제8조에서 이 조약은 이미 황제들의 재가를 받은 것이라고 명시해 두었지만, 조약문의 어떤 내용도 비준 이전에는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므로 조약문에 이렇게 재가사실을 미리 명시하는 것은 년센스라 하였다.⁹⁾ 뒤늦게 이를 보완하는 조치로 조칙을 발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한국 황제의 조칙은 재가란에 어새만 찍히고, 그 위에 당연히 있어야 할 황제의 이름자 서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907년의 정미조약이나 ㉠의 위임장에도 국새가 찍힌 위에 황제의 이름자가 서명되어 있다.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당시(순종대)의 모든 조칙, 칙령, 법령 문서들에 날인과 함께 황제의 이름자 서명이 들어 있는데, 유독 병합을 알리는 조칙에만 황제의 서명이 빠져 있다는 점에 주목한

8) 이태진 교수는 한 나라를 피보호국으로 만드는 조약이 정식조약이 아닌 형식으로 처리된 사례가 없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태진 편저, 2001, 『한국병합 이루어지지 않았다』, 태학사, 189~190쪽.

9) 이태진 교수는 조약의 사전승인이란 국제조약사에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사전승인 행위 자체가 협정 절차부터 강요된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하고 있다. 이태진 편저, 2001, 위의 책, 205쪽.

것이다.

더욱이 한국 황제의 어새는 실상 1907년 7월 24일 정미조약 이후로 한국 내정에 대한 통감의 사전 감독을 이유로 통감부가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날인 만으로는 결코 황제의 재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¹⁰⁾ 조칙문 문안 작성 완료에서 공포 예정일 사이에는 이틀(8월 27일~29일)의 여유밖에 없었고, 병합 공포일은 미국과 영국 정부에도 이미 통보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 황제 조칙 중 한국 황제 조칙에만 황제의 이름자 서명이 빠진 것은 결국 한국 황제가 그 이틀간 서명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으며, 이에 당황한 일본 측은 국제적으로 약속된 날을 넘길 수 없어 준비된 조칙문에 통감부가 소지하고 있던 어새만 찍어 내보낸 것으로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한국 황제가 ‘병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이 해석에 잘못이 없다면 일본의 한국병합은 법적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¹¹⁾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카모토 교수는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에 의하면 조약불이행의 정당화 근거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¹²⁾ 이에 대해 이태진 교수는 1910년의 병합조약과 관련하여 1960년대에 체결된 조약법협약을 인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당시에 체결된 많은 외교협정들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³⁾ 이러한 지적은 1910년의 병합조약을 1969년의 국제법을 갖고 들여다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인 것으로, 이른바 시제법의 관점에서 검토한 결론이어야 타당하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10) 이와 관련하여 『韓國痛史』에는尹德榮이 어새 날인을 요구하면서 황제를 협박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朴殷植, 1945, 『韓國痛史』, 達成인쇄, 283쪽.

11) 이태진 편저, 2001, 앞의 책, 54~62쪽.

12) 坂元茂樹, 1998, 9, 「日韓は舊條約の問題の落とし穴に陥ってはならない」, 『世界』 第652號, 200~201쪽.

13) 이태진 편저, 2001, 앞의 책, 109쪽.

2_ 조약체결시 가해진 강제로 인한 무효

조약법협약 제51조는 국가대표에게 정면으로 향한 행동 또는 위협을 통하여 그 대표에 대한 강제에 의하여 감행된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표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2조에서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제 원칙을 위반하여 힘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하여 조약의 체결이 감행된 경우 그 조약은 무효라고 하여 힘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한 국가의 강제 또한 무효임을 규정하고 있다.

강제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역사학자인 이태진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10년 일본은 대한제국의 병합조약에 이르기까지 ㉠ 1904년 2월 23일 자 의정서, ㉡ 1904년 8월 22일 자 협정서, ㉢ 1905년 11월 17일 자 을사늑약, ㉣ 1907년 7월 24일 자 한일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들은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한국의 국권 탈취를 목적으로 영토사용권(㉠), 외교권(㉡, ㉢), 내정권과 군사(㉣)를 탈취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강요된 것들로서, 이를 기반으로 병합조약을 통해 한국의 국권을 통째로 빼앗아 간 것이다. 종래 이 협정들에 대한 우리 측의 해석은 국제법상 상대방 대표를 위협해서 이루어진 조약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규정과 관례에 근거하여, 일본군의 위협을 받으면서 강요된 상황을 중심으로 무효를 주장하였다.¹⁴⁾ 그중 특히 을사늑약은 강제나 위협의 사실 또한 명백하여 이를 주된 논제로 삼았다. 조약법협약의 채택과 관련하여 UN국제법위원회가 1963년 UN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도 하버드조약법협약안을 인용하여 1905년 을사늑약의 수락을 위해 한국 황제와 대신을 위협한 것을 강제에 의해 체결된 조약의 대표적 예로 기술하고 있다.¹⁵⁾ 병합조약도 일본 측의 주장대로 절차나 형식에 법적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을사늑약에

14) 이태진 편저, 2001, 앞의 책, 36쪽.

15)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3, Vol. II, Documents of the fifteenth session including the reports of the Commission to the General Assembly, p. 50.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인무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장되었다.¹⁶⁾ 그 외에 『韓國痛史』를 보면 尹德榮이 어새를 청할 때 “皇后의 止哭을 懇請 日 如此히 하면 滅族의 禍를 當한다고 威脅으로 어새를 捺하야 完用에게 授하니 此功에 의하야 日本政府에서 德榮에게 子爵으로 封하고 四十萬圓을 賞賜하 니라”¹⁷⁾라는 구절은 강제나 그 위협이 동원되었음을 보여 주는 사실을 보여 준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 학자가 쓴 『日韓併合小史』에는 아카시 겐지로 [明石元二郎]의 말을 빌려 “기병연대를 용산에 이동시키는 것은 併을 위해 서 威力의 必要를 예상케 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는 강제를 통해 조약을 체결한 정황인 것으로 볼 수 있다.¹⁸⁾

이들 관련 사실을 조약법협약에 비추어 보면, 병합조약이 무효임은 부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69년 채택된 조약법협약은 1910년에 이루어진 병합조약에는 곧바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시제법의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이태진 교수의 글에서 “국제법상 상대방 대표를 위협해서 이루어진 조약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규정과 관례에 근거”하여 무효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 또한 당시 국제법의 관점에서 살펴야 하는 것이다. 혹자는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의 경우에는 무효이나, 국가 자체에 대한 강제의 경우에는 유효라고 보는 것이 당시의 유력한 견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가 자체에 대한 강제의 유효설이 당시 국제법 저술가 다수의 견해라는 점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다수의 견해라는 표현 자체만으로 1900년대를 풍미 하던 법실증주의의 기반인 실정법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가는 의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실증주의는 국가관행의 체계적 연구를 통해 무엇이 법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국가관행과 법적

16) 이태진 편저, 2001, 앞의 책, 35~36쪽; 을사늑약에 대한 강제의 자세한 논거는 동 편저 421~451쪽 참조.

17) 朴殷植, 1945, 앞의 책, 283쪽.

18) 山邊健太郎, 1972, 『日韓併合小史』, 岩波書店, 235쪽; 1910년 조약의 강제와 관련하여 Lord McNair의 저술은 “a treaty not unattended with acts of coercion” 라고 하고 있다. Lord McNair, 1961, *The Law of Treaties*, Oxford, p. 209.

확신을 명백히 거증하여야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학자들의 견해가 다수라고 해서 그 주장이 곧바로 당시의 국제법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올바른 결론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그러한 견해가 절대적 견해로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수준에 있었다면 별론이나, 그에 반대하는 주장도 다수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Ⅲ. 한일 양국 학자의 주장

1_ 일본 학자의 주장

일본 측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하나는 일본 정치인을 중심으로 하는 견해로서 현대 국제법의 관점에서나 국제도덕의 관점에서 합법적이었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병합 행위가 외형적 형식을 갖추어 합법적 한계 내에서 행해진 듯이 보인다 할지라도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견해이다. 전자는 일본의 한국병합이 역사적 기정사실로서, 후세대의 규범적 혹은 법적 평가로부터 자유롭다는 견해이다. 현재 이 견해를 견지하고 있는 학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¹⁹⁾ 후자의 주장에는 도덕적 정당성은 검토하지 않고, 당시 실정법이 금지하지 않는 행위였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입장은 오늘날 일본에서 그 지지가 점증하고 있는 견해로서, 적법성과 정당성을 구별하는 견해에 근거를 두고 있다.²⁰⁾ 아래에서는 한일병합조약이 유효라고 주장하는 일본 학자들의 논리를 살펴본다.

19) 백충현, 2004, 「일본의 한국병합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이태진 외,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21~222쪽.

20) 백충현, 2004, 위의 글, 222~223쪽.

(1) 사카모토 시게키[坂元茂樹]

사카모토 시게키 교수는 전통적 국제법에 의하면 강제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의 법적 효력은 그러한 강제가 국가대표자에 대한 협박인가 아니면 국가 자체에 대한 강제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²¹⁾ 그리고 1905년 당시 이러한 법리가 관습국제법으로 성립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사카모토 교수는 강박이 조약의 무효원인이 되는가에 대하여 Oppenheim, Hall, Bluntchili, Fiore 등의 설명을 근거로 “국가대표자에 대한 강제가 무효라고 하는 관습법규칙이 당시 성립되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도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다만 사카모토 교수는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과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이 법리적으로는 구별될 수 있지만, ‘개별 구체적 상황’에서 그러한 ‘이분법’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한다. 그 이유로 “조약의 무효원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자신의 의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가원수나 대신이라고 하는 직무상의 기관에게 가하는 강제와, 무효원인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강제를 구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들고 있다.²²⁾

사카모토 교수의 논리는 국가에 대한 강제는 무효가 될 수 없고, 국가원수나 대신 등 직무상의 기관에게 가하는 강제를 국가 자체에 대한 강제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뒤에서 설명하게 될 Oppenheim의 저술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사가와 노리가쓰[笹川紀勝]

사카모토 교수의 주장에 대하여 사사가와 노리가쓰 교수는 “강대국이 약소국

21) 坂元茂樹, 1995. 1, 「日韓保護條約の效力—強制における條約の観点から」, 『法學論集』第44卷 第4・5合併號, 關西大學, 339쪽.

22) 坂元茂樹, 1995. 1, 위의 글, 342쪽.

에게 자신의 의사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원수나 대신이라고 하는 직무상의 기관”에게 강제를 가한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적어도 Oppenheim의 초판 전후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국가와 국가대표자에 대한 두 가지 강제는 관습국제법으로 승인되어 있었으며 각각 정당화의 이유를 달리한다고 하였다. 국가대표자에 대한 강제에서는 개별적으로 폭력이나 강박(협박)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가에 대한 강제에서는 무력이나 협박을 행하는 당사국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 혹은 ‘권리보장’의 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사사가와 교수의 이러한 반론 역시 “국제법의 교과서와 학설사를 기초로 내재적으로 이해하고 검증하고자” 한 것으로서, Oppenheim의 국제법 교과서 초판(1905), 제4판(1927), 제9판(1996), Hall의 저서(1890) 및 Grosch의 저서 『국제법에서의 강제』(1912)를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²³⁾

(3) 운노 후쿠주[海野福壽]

운노 후쿠주 교수는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양국 간에 체결된 조약은 적어도 당시에는 유효하게 체결되었던 것이고, 따라서 한국을 식민지로서 지배하였던 것은 국제법상 합법이었다고 주장한다.²⁴⁾ 이 주장은 강박에 의한 조약이라 할 지라도, 그 효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2_ 한국 학자의 견해

한국 학자들은 일본의 한국병합은 정당하지도 못한 것은 당연하고, 불법행위

23) 笹川紀勝, 1999. 7, 「日韓における法的な對話をめざして」, 『世界』 第663號, 237~246쪽.

24) 海野福壽, 1999. 10, 「韓國併合の歴史認識-李教授韓國併合不成立論を再検討する」, 『世界』 第666號, 260~262쪽.

로 보고 있다.²⁵⁾ 1904년~1910년에 한일 간에 체결되었던 ‘한일의정서’, ‘협정서’, ‘을사늑약’, ‘한일협약’, ‘합병늑약’ 등의 모든 조약 및 국제적 약속은 양국 간의 합의가 결여된 강제조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체결절차상의 결함과 형식상의 하자가 있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즉 이들 조약은 불성립된 것이어서 일본에 의한 한국병합은 성립되지 않았고, 따라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은 일본에 의한 강점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²⁶⁾

(1) 백충현

병합의 시도에 이른 기간 동안의 역사적 사실과 사건들을 법적으로 분석함에 있어서, 국제법상의 적법성(legality)과 정당성(justice)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재검토하고, 일본의 한국병합 과정에서 체결된 조약과 협정에서 대한제국의 진정한 동의를 결여하고 있는 점, 본질적으로 불법한 국제법적 행위에 대하여 제3국이 기정사실로 승인한 행위의 국제법적 효력에 관한 적절성, 그리고 시제법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백충현 교수는 1900년대 초에 성립된 조약의 효력은 당시의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시제법의 원칙을 전제한 뒤, 전통국제법은 일반적으로 국가 자체의 의사에 대하여 강제력이 행사되어 조약이 강압적으로 체결되는 경우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의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만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Hall의 저서와 Oppenheim의 저서를 들고 있다.²⁷⁾ 1945년 이전까지의 전통적 견해는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과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을 구분하여, 전자는 조약무효화의 원인이 되나 후자는 조약무효화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이다.²⁸⁾ 이 원

25) 백충현, 2004, 앞의 글, 224쪽.

26) 이태진 편저, 2001, 앞의 책, 33~62쪽; 저간의 논의를 검토해 보면, 조약체결상의 흠결이나 형식상의 하자는 무효라는 논리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7) 백충현, 1996, 앞의 글, 76~77쪽.

28) 백충현, 2004, 앞의 글, 233쪽.

칙은 국제관계에서 무력사용을 합법적이라고 용인하는 관념의 당연한 논리적 결과였다고 할 수 있는데, 합법적 강제수단으로의 무력사용이 용인될 때 국가에 대한 강박수단을 사용하여 받아낸 동의를 무효로 다룰 수 없기 때문이라는 Oppenheim의 설명을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과 달리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의 경우 조약의 무효화 효과를 부인하는 이유는 전쟁 종료 후 전승국이 평화조약의 유효성을 담보하려는 현실적 필요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평화조약 이외의 경우에는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의 수단으로 체결된 조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려는 견해는 소수라고 보고 있다.

국가의 주권평등 이론에 의하면 위에서 논하는 범주 밖에 속하는 경우 조약의 유효성 인정 여부 판단은 사법상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원칙을 위반하여 체결한 국제조약의 규범적 정당성은 1910년 이전의 법실증주의 이론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없다.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 및 경찰관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체결된 1910년 병합조약은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하에서 체결된 조약으로, 평화조약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상호 동의의 기초하에 체결된 것도 아니어서 법적으로 유효성을 합리화할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 외에 한국 대표의 부패를 지적하여 관련된 요소와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정치학이나 국제관계학에서 강대국들이 승인한 병합이었다는 생각은 학문적으로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없으며, 어떤 상황에 대한 제3국의 인정은 상황에 대한 법적 평가의 차이로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에만 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백충현 교수의 논리는 1910년 전후의 시기에는 강제를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와 국가 자체에 대한 강제를 구분하고, 전자는 무효이나 후자는 유효라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다만, 평화조약을 들어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을 유효라고 하는 입장을 비판하여, 평화조약 이외의 강박에 의한 조약은 무효를 주장하는 논리를 따르고 있다.

(2) 이근관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과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을 구별하려는 McNair의 견해가 당시 통설적인 지위를 누렸다고 전제한 뒤,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과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간 구분의 실제적 적용에 있어 한국과 일본 양국은 상충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과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간의 구분을 역사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1905년 협약의 체결을 둘러싼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다라도 이것이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의 전형적 예라는 점에서 동 조약의 무효를 설명하고 있다.²⁹⁾

이근관 교수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전조가 되는 1905년 을사늑약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여서, 1910년 병합조약은 전제가 되는 조약이 무효이니 그 연속선상의 조약은 무효라고 보는 입장으로 판단된다.

(3) 박배근

국가에 대한 강박과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이라는 구분을 ‘이분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면서, 당시 조약의 무효원인에 관한 국제법이 존재하였다면 그것은 관습국제법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인바, Oppenheim과 같은 법실증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관습국제법 규칙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가관행과 같은 객관적 요소, 법적 확신과 같은 주관적 요소의 존재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결국 조약무효원인에 관한 이분법적 설명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국제법규칙을 확인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저자들의 思辨의 결과일 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³⁰⁾

29) 이근관, 2004, 「국제조약법상 강박이론의 재검토」, 이태진 외,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64~287쪽.

30) 박배근, 2003, 앞의 글, 14~15쪽.

박배근 교수는 강박을 국가대표에 대한 경우와 국가 자체에 대한 경우로 구분하는 이론이 국제관습임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관점에서, 강박에 의한 조약체결은 무효라는 논리인 것으로 파악된다.

IV. 주장의 근거가 되는 서구의 학론

이와 같이 효력의 유무를 다투는 배경은 1910년의 병합조약이 강제에 의한 것이나,³¹⁾ 강제에 의한 조약이 유효인가 무효인가에 대해서는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국가대표자에 대한 강제의 경우 해당 조약은 무효라는 주장에 이견이 없지만, 국가 자체에 대하여 강제가 가해진 조약은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Grotius는 조약체결시 평등원칙의 준수가 요구된다고 하고, 평등은 사실의 인식뿐만 아니라 선택의 자유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조약체결시의 공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전쟁 중이나 전쟁을 종료하기 위한 약속은 공포를 이유로 무효화할 수 없다 하였는데, 이는 전쟁이란 국가 간 합의에 의해 정당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위 正戰論의 입장에서 전쟁의 공포로 인한 경우의 조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정당하지 못한 전쟁의 공포는 무효사유가 될 수 없음을 유추케 하는 것이다.³²⁾ Vattel도 유사한 입장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조약체결의 대표가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그들의 동의는 상호적으로 적절히 표시되어야 한다고 밝

31)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태진 교수 등 사학자들의 국내 선행연구를 전제로 한다. 박배근 교수는 이들 조약 체결과정시의 '사실'의 존재는 당사자들이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고 있다. 박배근, 2003, 앞의 글, 379쪽.

32) Grotius, 1925, *De Jure Belli ac Pacis*, Book II, Ch. XII, Sec. X / Book II, Ch. XVII, Sec. XIX, *Classics of International Law*, Oxford.

힌 뒤, 강박이 終戰의 목적인 경우 강제조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 조약이 ‘부당(unjust)’하거나 ‘압제적(oppressive)’인 경우에는 ‘강제에 대한 청원(the plea of constraint)’이 가능하다고 하였다.³³⁾

그러나 19세기 학자들은 전쟁이나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무력사용 등으로 체결된 조약의 유무효에 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나, 개인에 대한 강박은 조약성립의 중요한 요소인 동의를 훼손한다고 보았다.³⁴⁾ 실레로 Woolsey와 Bernard 등의 학자는 강박으로 체결된 조약을 타당하다고 보고, 다른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조약협상자에 가해지는 개인적 강박(personal duress)은 국제합의의 근간인 동의를 훼손한다고 보았다.³⁵⁾ Moore 또한 이와 유사한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³⁶⁾ 혹자는 20세기 초반에는 강제에 의한 조약도 상황적 이유에서 유효라고 보는 입장이 다수(majority writers)의 견해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반대로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강제가 가해진 조약은 불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아래에서는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의 효력에 관한 학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본다.

1_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의 유효설

(1) McNair

Lord McNair는 강제에 의한 조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실증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을 밝히고, 학자의 견해나 국가들의 입장도 일관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

33) Emerich de Vattel, 1916, *The Law of Nations or the Principles of the Natural Law*, Ch. XII, *Classics of International Law*, Carnegie Institution.

34) Stuart S. Malawer, 1977, *Imposed Treaties and International Law*, pp. 7~8.

35) T. Woolsey, 1875,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 100(4th ed.) p. 172; M. Bernard, 1868, *Four Lectures on Subjects Connected with Diplomacy*, p. 184, recited in Malawer, *Ibid.*, p. 17.

36) J. Moore ed., 1906, *A Digest of International Law*, pp. 184~184, recited in Malawer, *Ibid.*, p. 17.

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조약체결 과정에서 이루어진 강제의 효과와 관련한 설명은 상당한 저술(abundant literary authory)과 일부 외교당국의 입장(a little diplomatic authority)에서 발견되고 있음을 전제한 뒤, 사법적 당국의 입장(almost no judicial authority)은 거의 발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존재하는 법과 존재하여야 하는 법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지난 반세기에 걸쳐 조약체결시의 강제에 관해 법과 공적 견해가 변경되어 왔다고 하였다.³⁷⁾

현재 강제 · 강박 · 폭력 · 무력의 사용을 통한 조약은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것임을 설명한 뒤, 이러한 유추가 과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³⁸⁾ 최근까지 다수의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전통적인 견해는 어느 국가가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하에서 조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조약은 그 국가에 대하여 구속력을 발휘하며, 강박이 조약을 무효화하는 것은 조약체결상의 최종행위(비준이 필요하지 아니한 조약의 서명시와 비준이 요구되는 조약에서의 비준시)를 행하는 국가대표에 대하여 강박이 행해지는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나 위협으로 서명되었다 할지라도 비준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자유롭게 비준된다면 서명한 개인에 대한 강제나 위협의 효과가 치유되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 구체적 예시로서 하버드조약법협약안을 들고, 다양한 문헌이 동일한 설명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³⁹⁾

그러나 McNair의 저술에는 1910년의 병합조약과 관련하여 유효인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명확히 무효라고 기술되어 있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⁴⁰⁾ 뿐만 아니라, McNair의 저술은 조약체결 과정시 강제의 효과와 관련하여 ‘일부의’ 외교당국의 입장(국가관행)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적고 있는 것은 당시 법실증주의하에서 보편적 또는 일반적 국제법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37) Lord McNair, 1961, *Law of Treaties*, Oxford, p. 207.

38) Lord McNair, 1961.

39) Lord McNair, 1961, pp. 207~208.

40) Lord McNair, 1961, pp. 208~209.

반대증거가 될 수 있다.

(2) de Visscher

국가대표에 가해진 강박은 무효이나,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은 유효라는 것이 학계를 지배하는 견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조약체결에 권한이 있는 기관 자신이 강박의 대상이 될 경우, 이러한 강박은 착오나 사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약을 무효화하며, 이는 조약이 다른 계약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권한 있는 기관이 자신의 기능을 수행할 완전한 자유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박이 국가 자체에 대하여 행해지는 경우, 또는 Westlake의 표현대로 국가의 의사 자체에 대하여 행해지고 그 결과 강박을 당한 국가가 자신보다 강력한 국가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경우 그 조약은 유효하다고 하였다.⁴¹⁾

Visscher의 주장을 따르다 할지라도, 그 설명에서 “권한 있는 기관이 자신의 기능을 수행할 완전한 자유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박이 가해진 경우를 전제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병합조약은 1905년의 을사늑약에 의해 국권, 즉 외교권이 박탈당한 상태이므로 Visscher가 주장하는 전제를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Oppenheim

1905년 간행된 Oppenheim의 초판은 국가에 대한 강제는 직접 논하고 있지 않고, 국가대표자에 대한 강제와 개인에 대한 강제로 구분하여 전자를 국가에 대한 강제로 이해하고 있다.⁴²⁾ 초판을 보면, 조약은 진정한 동의 없이는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계약당사국의 입장에서 절대적 자유가 요구된다고 전

41) Fernand de Visscher, 1931, “Des traités imposés par la violence,” *Recueil de droit international et législation comparée*, p. 515.

42) 이태진 편저, 2001, 앞의 책, 133~134쪽.

제한 뒤, 패전이나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위협과 같은 긴급한 압박상황은 조약내용에 동의하는 당사국의 행동의 자유를 배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와 같은 “행동의 자유”란 표현은 체약당사국의 대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국제법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체약국의 대표자에 가해진 위협을 통해 체결된 조약과 비정상적인 대표자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상황에 의해 굴복적 조건이 포함된 조약체결이 강제된 국가는 조약체결시 행동의 자유가 간섭받았다는 이유로 당해 조약의 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 한 것이다. 그 이유는 이를 부인하는 유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⁴³⁾

Oppenheim의 저술은 그의 사후 개정판을 집필한 학자들의 가필에 의해 조금씩 변화가 있다. Lauterpacht가 개정한 1958년의 제8판을 보면, 조약체결 당사국 대표의 진정한 의사(동의)는 해당 조약 유효성의 조건으로, 대표에 대한 협박이나 강제의 결과로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다.⁴⁴⁾ 그러나 국가로서 행동의 자유라는 관점에서(with regard to the freedom of action of the State as such) 국제연맹규약, 국제연합헌장, 부전조약 이전에 존재하였던 국제법은 조약체결시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행사하였던 강제의 효과는 무시하였다. 이러한 규칙은 법의 일반원칙이란 관점에서 비난받을 일이며 학자들과 정부들에 의해 비판받을 일이지만, 기존의 법을 변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쟁을 허용하는 데서 오는 필요한 추론이었다고 보고 있다. 전쟁은 강제의 합법적 수단이었고, 전쟁에 의한 동의(consent given in pursuance thereof)는 무효라고 간주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에는 UN헌장과 부전조약에 의해 전쟁이 금지됨으로써 변경되었다. 이들 규범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전쟁에 호소하는 국가는 법에서 허락된 방법으로 강제(force)를 적용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의 강박(duress)이 행해진다면 조약을 무

43) L. Oppenheim, 1905, *International Law*, Longman, p. 525.

44) L. Oppenheim, 1958, *International Law*, Eight Edition, Edited by H. Lauterpacht, Longman, p. 891.

효로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⁴⁵⁾

Oppenheim은 국제연맹규약, 국제연합헌장, 부전조약 이전에 존재하였던 국제법은 조약체결시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행사하였던 강제의 효과를 부정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전제가 바로 국가로서의 행동의 자유라는 점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국가에 대한 강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와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결국 그의 논리는 국가에 대한 강제 상황을 전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이분법 논리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4) Wheaton

Wheaton은 대부분의 문명국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폭력에 의해 이루어진 합의는 무효인바, 동의를 자유는 모든 합의의 유효성에 필수적이며, 강박에 의해 취득된 계약은 무효라고 설명한다. 그 이유는 사회의 일반적 복지는 그렇게 되어야 함을 요구하기 때문으로, 만약 그러한 합의나 계약이 구속력이 있다면 겁이 많은 자는 지속적으로 위협이나 폭력으로 자신의 권리를 내놓도록 강제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 규칙은 협상당사자가 개인적으로 협박당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하면서, 그 예로 왕위를 내놓도록 강요당한 찰스 4세의 사례와 1911년 하이티에 대한 조약체결시의 강박은 해당 합의의 유효성을 훼손하기에 충분한 개인적 강박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군대의 패배, 국민의 고통, 영토의 점령 등 강박하에서 국가가 행한 합의는 구속력이 있음은 사회의 복지(welfare of society)를 위해 요구된다고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복속이나 약자의 파괴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⁴⁶⁾

Wheaton의 논리에 따르면 합의의 상대방인 약자의 자유의사는 배제한 채

45) L. Oppenheim, 1958, p. 802.

46) A. Berried Keith, 1929, *Wheaton's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Sixth Edition, Vol. I, p. 50.

약자의 파괴라는 극단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강자의 힘의 논리에 따름으로써 '사회의 복지'를 이룬다는 것이 되는 것으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강자의 복지를 위함이지 '사회'의 복지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5) Smith

영국의 검찰총장 출신의 교수인 Ferederick Smith는 국가 간 계약과 사인 간 계약의 상호비교가 유용함을 전제한 뒤, 이러한 유추가 너무 많이 나가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동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많은 중요 조약이 항복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국가에게 가해진 강제나 위협의 결과이므로, 그러한 강제를 조약무효화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전쟁의 결과로 채택된 모든 조약의 근거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 강제가 조약협상자 개인에게 가해진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국가 자체에 대한 강제와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를 구별하고 있다.⁴⁷⁾

이러한 설명과 함께 협상자가 합의하도록 강요할 목적으로 회의장에 군대를 진입시키는 것은 명백히 해당 합의를 무효로 한다고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을사늑약이나 1910년 병합조약 당시의 史的 事實에 적용 가능한 것이다. Smith는 조약의 강제를 전쟁의 결과로 채택된 조약의 예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객체의 동일시 과정에서 인식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에 대한 강제로 체결된 조약의 모두가 전쟁의 결과로 인식하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6) Ullmann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결정적인 조약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는, 국가의사의 전

47) Sir Ferederick Smith, 1918, *International Law*, revised by Coleman Phillipson, Dent & Sons, pp. 141~142.

달자로서 법적으로 중요한 의사표시를 한 국가의 고위 공무원이 착오 또는 강박의 영향하에서 행위를 한 경우에 결렬된다. 여기서 또한 국가의 의사와 그 형성과 관련하여 주의해야만 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직무를 행하는 육체적인 사람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점이다.⁴⁸⁾ 즉 이러한 의사만이 착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와 그에 따른 조약이 결렬된다는 사실은 조약의 일반적인 본질에서 도출된다. 국가의 책임기관이 다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강박 상태 또는 긴급 상태의 명시적인 영향하에서 조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지배적인 견해는 특히 평화조약의 법적 영속성과 관련하여 국가 행동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며, 조약 체결시에 행위를 하는 대리인이 개인적으로 자유로우면 족하다고 한다.⁴⁹⁾ 조약 체결의 유효성을 배제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인 강박을 배제시키는 것은 국제법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렇지 않다면 특히 평화조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완전히 섬멸될 때까지 전쟁이 계속 진행되어서, 주지하다시피 조약에 의한 전쟁의 중지가 배제되는 사태(Debellatio)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를 것이다. 포로가 된 통치자와 체결하는 조약도, 그 의사표시가 강요, 강박, 협박에 의하여 야기되지 않았다면 유효하다.⁵⁰⁾ 적법한 이익을 주장하거나 또는 방어하기 위하여 자력구제의 방식으로 행사된 강박은, 자력구제가 국제법의 영역에서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한다. 단지 조약을 방해하지

48) E. von Ullmann, Völkerrecht, Tübingen, Verlag von J. C. B. Mohr (Paul Siebeck), 1908, S. 262.

49) Ibid. Vgl. Bluntschli, Völkerrecht § 408; Heffter-Geffeken §§ 85 ff.; Jellinek, Staatenverträge, S. 60 ff.; F. v. Martens II 403 ff.; Gareis § 72, IV, 1; Bonfils Nr. 818; Oppenheim I § 499.

50) 따라서 프랑스의 프란츠 1세와 칼 5세 간의 1520년 평화조약은 법적으로 영속적이었다. 마찬가지로 1814년 퐁텐블뢰(Fontainebleau)에서의 나폴레옹 1세의 퇴위도 마찬가지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그 사이에 다른 정부가 국가를 대표하기 위해 대리하지 않았더라면, 나폴레옹 3세에 의하여 빌헬름의 수준으로 평화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Vgl. Leopold Neumann, Grundriß S. 65; F. v. Martens I S. 404, Ullmann, 1908, S. 263.

않는 강박만을 적법한 강박으로 제한하려는 것에는, ‘커다란 실무상의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다. 왜냐하면 국가들이 자신들의 사건에 있어서 법관인 한, 국제법상의 강박의 적법성에 관한 객관적인 판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적법성이라는 요소를 수용함으로써, 평화조약으로 인하여 이에 구속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사실상 승전국의 의사에 맡기게 되며, 더 나아가 이를 통해 평화조약이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하게 된다. 이는 상대방의 권리와 전쟁을 도발했던 자기 자신의 불법에 의하여 국가가 납득당하는 사례는 역사에서 매우 드물기 때문이라 하였다.⁵¹⁾

(7) Jenks

강제를 국가 자체에 대하여 가한 경우와 국가의 대표에게 가한 경우로 나누어, 전통국제법에 대한 적지 않은 문헌들이 양자를 구별하여 후자만을 무효로 주장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⁵²⁾ 하버드조약법협약안은 고전국제법상의 조약 무효원인으로서 강박에 대한 국제법학자들의 서술을 매우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이론상황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강박을 두 가지로 나누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 때문인지 조약의 무효원인인 강박과 관련하여 국가에 대한 경우와 국가대표에 대한 경우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접근을 국제법상의 확립된 규칙이라고 보고 있다.⁵³⁾

Jenks의 저술은 조약체결시의 강박을 국가대표에 대한 경우와 국가 자체에 대한 것으로 구분하는 1960년대의 일반적 시각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의 설명은 별도의 논리적 기반을 갖춘 것이 아니라, 하버드조약법협약안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기존 연구를 옮겨 놓은 데 불과하다.

51) E. von Ullmann, 1908, S. 263.

52)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1966), p. 207.

53) C. Winfred Jenks, 1964, *The Prospects of International Adjudication*, p. 422.

2_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의 무효설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은 유효라는 견해가 당시 다수 학자의 견해였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1945년 이전의 시기에 있어서도 이 같은 학설만이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다. 한 부류의 학자들은 동의의 자유 원칙을 조약의 경우에도 전면적으로 적용하여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 역시 조약의 무효원인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Hall

Hall의 견해를 유효설에서 언급하는 학자도 있으나(사카모토 시게키, 이근관), 그의 주장을 분석하면 달리 평가할 수 있다.

Hall도 국가에 대한 강제와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를 구별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는 앞서 언급한 학자들과 동일하다. 그는 국제법상 무력과 위협은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며, 권리침해를 구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무력이나 위협 등 합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체결된 조약은 무효화될 수 없다고 하였다. 국제법을 위반하여 타국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가 과거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배상을 행하고, 장래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할 용의가 있을 경우, 피해 국가에 대하여 공여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범위 내에서 요구가 행해지는 한, 이러한 요구에 무력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이 요구에 기초하여 체결된 국제조약에 대한 동의는 자발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다.⁵⁴⁾

다만 주어진 사례에서 무엇이 적절한지, 무엇이 자신이 위협에 처했다고 주장하는 국가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국제법이 裁斷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나 위협의 사용과는 관계없이 모든 합의(compacts)가 '해당 국가의 독립

54) William Edward Hall, 1917, *A Treatise on International Law*, Oxford, Edited by A. Pearce Higgins, p. 336.

을 파괴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측면이 과도한 강제라면 해당 조약을 무효로 하는바, 그 이유는 배상에 의해 또는 다른 국가의 보호수단으로서 자발적인 자살을 시도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 하였다.⁵⁵⁾ 이러한 이론은 당사국 중 일방이 진정한 자유의사가 없는 경우의 무수한 합의에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나, 계약의 유효에 합치할 만한 상당한 수준의 위협이 없다면(unless a considerable degree of intimidation is allowed to be consistent with the validity of contracts) 전쟁의 말미에 일방의 복속이나 쌍방의 소진이 있어야만 종료됨을 지적하고 있다.⁵⁶⁾

(2) F. Nozari

Nozari의 저서는 1971년에 간행된 것이나, 1910년 전후의 학자(Hall, Hyde, Fauchille, Brierly)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조약은 국가 간의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사자에 의한 동의의 자유는 유효성이 필수적 요건이라 한 뒤, 사법상의 계약에 관한 원칙이 국제법에 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약에 대한 동의가 강제된 국가라도 국제법상 해당 조약의 의무에 구속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고 설명한다. 해당 동의가 강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국제계약에서는 자유롭게 주어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⁵⁷⁾ 이러한 중대한 하자는 전쟁의 종료와 강화조약의 체결에 대한 필요성 및 기대와 관련하여 설명되는 것으로, 그 실체는 승전국에 의해 명령되고 부과된 것이라 하였다.⁵⁸⁾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핵심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이를 인정하는 학자의 진정한 근거는 동의를 얻기 위한 강제의 사용은 조약을 무효화하지 않고,

55) William Edward Hall, 1917.

56) William Edward Hall, 1917, pp. 336~337.

57) Fariborz Nozari, 1971, *Unequal Treaties in International Law*, S-Byran Stundt & Co., pp. 64~65.

58) J. L. Brierly, 1978, *Law of Nations*, p. 318.

불법에 대한 배상 혹은 강화조약에 의한 평화의 수립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는 조약체결시 보다 강해지기를 원하는 개별 국가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하여 강제의 사용은 국제법상 허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국제법상 강박의 허용가능성이 강화조약을 위해 전쟁을 종결짓기 위한 것이었다면,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해결되어 왔을 것이다.⁵⁹⁾ 최근까지 다수의 학자들은 동의의 자유 규칙은 해당 국가의 대표의 자유에 국한하여 왔다. 이러한 학자들에 따르면 국가대표에 가해진 강제나 위협은 무효이나, 법인격으로서 혹은 집단적으로 국가인 국가에 대하여 강제나 위협이 사용된 경우는 달리 취급하여 왔다.⁶⁰⁾

이러한 견해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조약이 부과되면 계약적 의무의 문제는 더 이상 아니며 단지 입법수단에 의한 의무일 뿐이라고 한다.⁶¹⁾ 일부 학자들은 강제나 위협이 전체로서의 국가 자체에 대하여 가해진 경우와 조약체결권자에 가해진 경우를 구별할 수 없다고 한다. 양자의 경우 모두 근본적 요소는 자유로운 동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⁶²⁾

(3) C. C. Hyde

Hyde는 국가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당사자가 되는 합의(조약, agreements)에 대한 동의(consent)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문을 열고 있다.⁶³⁾ 동의가 강제되었다는 이유로 합의의 유효성이 침해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수락된 이론인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다.⁶⁴⁾

59) J. L. Brierly, 1978, p. 319.

60) Fariborz Nozari, 1971, p. 66.

61) Scelle, R.C.(1993, IV), 447~448 in Nozari, 1971, p. 66.

62) Whitton, R.C.(1934, III), pp. 258~259, Brierly, R.C.(1936, IV), 208 in Nozari, 1971, p. 66.

63) Charley Cheney Hyde, 1922, *International Law—Chiefly as Interpreted and Applied by the United States*, Vol. 2, Little Brown, and Company, p. 8.

64) Charley Cheney Hyde, 1922, p. 9.

그러나 교전권이 무제한의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20세기 초반 특히 제1차 세계대전 발발기부터 국제사회는 주민의 동의 없이 적국 영토를 할양받기 위해 강제를 가하는 정복자의 권리를 거부하여 왔음이 증가하여 왔다고 설명한다. 미국이 특히 그러한 입장에서 이를 강하게 부정하여 왔고, 조약이 그러한 상황에서 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이라면, 해당 합의는 그러한 범위에서 불법이라고 밝히고 있다.⁶⁵⁾

(4) Weinschel

국가에 대한 강박은 원칙적으로 국제법상의 조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국가기관에게 강박이 행사된 경우에는 조약의 구속력이 상실된다는 주장은 모든 저자들 또는 적어도 대부분의 저자들이 그러한 명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학문적인 논증을 한다는 점을 전제로 지지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한다. 통설에 대한 그의 논리적 설명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국가에 대한 강박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설은 평화조약에서 형성되어,⁶⁶⁾ 다른 조약에까지 파급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조약인 강제된 평화조약이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다면, 중요성 측면에서 평화조약에 훨씬 못 미치는 강박하에서 체결된 그 밖의 다른 조약은 더욱더 그래야만 할 것이다. 통설의 논증은 이러한 것으로, 전혀 법학적인 논증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 정치적인 고려를 함으로써 단지 법학적으로 논증할 수 있는 강제된 평화조약의 법적 구속력을 논증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논증을 찾았다고 믿은 이후

65) Charley Cheney Hyde, 1922.

66) 강제된 국제법상의 조약의 유효성은 *coactus voluit, sed tamen voluit* 라는 로마 격언에 의거하여 고수되어야만 하는바, 그렇지 않을 경우 거의 모든 평화조약은 승전국의 일정한 강박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평화조약이 무효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법학적인 논증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Weinschel, 1930, *Zeitschrift für Völkerrecht*, Band XV, S. 450.

에, 강박이 중요하지 않다는 명제는 항상 평화조약과 관련된 '논증'을 통해서 모든 다른 국제법상의 조약으로 확대된다. 조약의 개념은 전적으로 통일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강박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모든 조약을 고려해서만 연구될 수 있으며 모든 조약에 대하여 동일한 의미로 해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평화조약이라는 조약의 한 범주와 관련해서만 이 문제를 해명하고 그 해결방안을恣意的인 추론을 통하여 단순히 다른 조약에 대해서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⁶⁷⁾ 이와 반대로 국가에 대한 강박이 조약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한다는 견해가 드물게 지지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학자로는 아마리(Amari)와 라기(Laghi), 니폴트(Nippold)이다. 프라디에-포드레(Pradier-Fodéré)도 이 입장에 속할 수 있다 하였다.

Weinschel은 나아가 국가에 대한 강박과 조약체결 기관에 대한 강박을 구별하는 이론과 관련하여, 국가에 대한 강박이 존재하는가라는 본질적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국가 전체에 대한 강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강제를 받았다는 것은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국민이 강제를 당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국가에 가한 강제는 인격이 의제된 국가 개인이 강제당한 것이지 국민 전체가 강제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만일 그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국민 전체를 무력으로써 감옥에 넣을 때 등의 경우만이 국가에 강제가 가하여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따라서 국가 전체에 대한 강제는 있을 수 없으며, 거의 모든 경우가 국가대표 개인이 강제를 당하여 조약을 체결하게 되니 무효라는 것이다. 즉 강제조약은 무효라는 것이다.⁶⁸⁾ Weinschel의 주장은 Wheaton이 주장한 사회복지를 위해 강제가 가해진 조약을 유효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비판한 필자의 논리와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것이다.

67) Weinschel, 1930, SS. 450~451.

68) Weinschel, 1930, SS. 457~462.

(5) Verdross

조약은 모든 계약과 같이 일정한 대상에 관하여 계약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될 것을 전제로 하는바, 계약내용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합치된 내용이 너무 불명확해서 이로부터 계약당사자들이 무엇을 원했는지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효한 조약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의사의 일치가 법적으로 중요한 의사의 흠결로 인한 것일 때에는, 해당 조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의사의 흠결로서 고려되는 것으로는 사기, 본질적인 착오 및 강박(협박)이 있는데, 조약을 체결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강박을 사용하거나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 해당 조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반면에 다른 국가에 행사된 강박의 의미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다수설은 평화조약의 예를 들어 그러한 강박이 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그로티우스는 평화조약이 원칙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나 합의된 신뢰를 위반하는 부당한 협박 또는 폭력 사용에 의하여 강요된 조약인 경우 어느 누구도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Vattel이나 Heffter의 저술에서도 이러한 견해의 흔적이 존재한다. 이 문제에 대한 면밀한 연구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많은 저술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그들 모두는 정상적인 전쟁에 의한 강박과 예컨대 사전평화조약 또는 무력포기조약과 같이 해당 조약과 모순되게 행사된 모든 강박을 구별해야만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⁶⁹⁾

한편으로 전체 국가가 아니라 단지 개개의 인간 또는 인간의 집단만이 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강박’ 자체를 부정하는 Weinschel의 견해는 국가 공동체가 자신의 법의 중의 하나에 대하여 위협을 받는 경우에 국가에 대한 강박이라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강박은 항상 기관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관에 대한 강박과

69) Alfred von Verdross, 1937, *Völkerrecht*, Verlag von Julius Springer, S. 87.

국가에 대한 강박 간의 구별을 부정하는 de Visser의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 역시 기관이 자신에 관하여 강박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자신의 친족에 관하여 강박을 받을 수 있으며 또는 조약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국가영토에 대한 침입 또는 국가적 이익에 대한 다른 위법한 침해를 통해 위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로 인하여 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인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따라서 강박이 물론 항상 기관에 대해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강박을 할 때 나타나는 해악은 기관의 사적인 영역 또는 국가적인 법익을 겨냥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강박에 의하여 부과된 모든 조약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것으로 보는 일반적인 국제법상의 원칙이 증명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조약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모든 문화국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이러한 원칙에 의하면 위법한 강박에 의하여 강제된 조약은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평화조약도 전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평화조약을 야기하였던 전쟁에 의한 강박이 국제법적으로 위법한 것이 아닌 경우에만 평화조약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그러나 제3의 국가가 부담하는 이러한 '의무'가 일반적인 국제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반면, 피해를 입은 국가는 일반적인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평화조약이 임시평화조약에 반하여 위법한 강박으로 부과된 것인 한, 그러한 평화조약도 취소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베르사유조약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조약'은 독일 제국에게 사전정전조약에 반하여 군사적인 강박을 통한 협박으로 부과되었기 때문이다.⁷⁰⁾ 다만 그 성립에 있어서 법적으로 중요한 의사의 흠결이 있는 조약이 전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며, 그 조약은 다만 전부 또는 일부 취소(무효화)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70) Alfred von Verdross, 1937, S. 89.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다양한 학론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국가 자체에 대한 강제는 조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통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수의 견해라고 인정하더라도 그들의 법리전개는 일정한 문제점이 적지 않게 내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조약을 국가 간의 계약으로 이해하면서, 조약 체결시 당사국의 자유의사가 결여된 경우 사적 계약과는 다르다고만 할 뿐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강화조약을 예로 들어 국가에 대한 강제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바, 강화조약의 사례를 강제로 체결된 모든 조약의 경우로 일반화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여러 학자들의 저술에서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조약은 유효라고 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정법적 증거인 관행의 제시는 매우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한 상태에서 대한제국이 국가 간의 외교적 행위인 조약 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논리적인 모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조약체결의 성립요건으로 당사자 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동의를 언급하면서도 강제에 의한 조약이 유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아닐 수 없고, 유효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에도 논리적 한계와 모순을 완전히 극복하고 있지 못하다. 즉 조약을 국가 간의 합의라고 한다면 합의의 전제는 자유의사인바, 조약체결의 자유가 강제된 상황은 국가의 합의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강박에 의한 조약은 유효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합의의 성격과 관련하여 계약과 조약을 다르다고만 하고 있을 뿐, 어떻게 다른지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약이 사적 주체 간의 자유의사의 합치이고 조약은 국가 간의 합의라고 한다면, 사인 간의 계약과 국가 간의 조약이 별개의 법이론에 따라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비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조약은 단순히 계약으로 불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당사자 간 자유의사의 합치가 본질인 계약이어야 한

다고 설파한 리스트 등의 견해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⁷¹⁾

둘째, 국가에 대한 강제는 해당 조약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제시한 강화조약은 전쟁 종료에 따른 사후 처리의 형식이며, 이러한 특수 사례를 일반화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병합조약의 강제는 종전을 위한 강화조약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Weinschel의 논리처럼 강화조약의 정치적 상황을 법적 논리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학자들의 논거가 아닌 실증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일본이 1910년 병합조약과 관련하여 영국에 문의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⁷²⁾ 즉 일본이 영국에 1910년 병합조약의 유효 여부를 묻고 있다는 것은 당시 국제관습법상 국가에 대한 강박은 해당 조약의 유효를 인정하고 있는 보편적 국가관행이나 법적 확신의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 주는 간접증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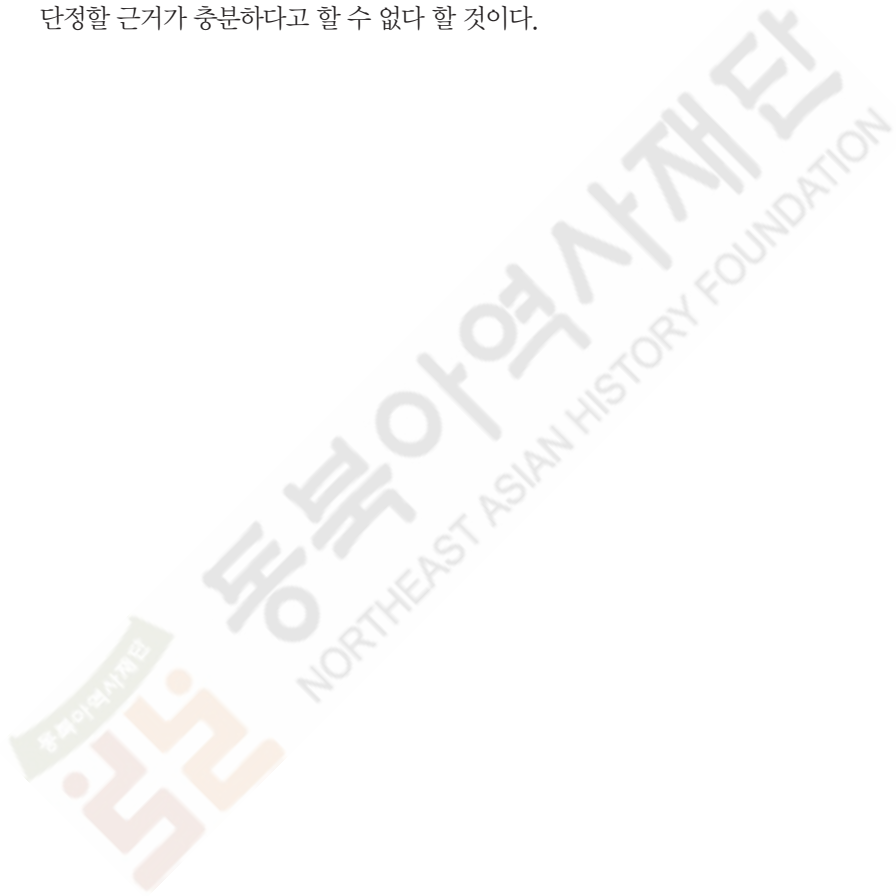
셋째, 20세기 초반의 법실증주의적 사고하에서 실정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주의가 풍미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강대국의 일방적 주장을 법적 영역으로 끌어들인 당시 학자들의 오류를 보게 되는 것이다. 20세기 초반 국제사회는 식민지를 확보하려는 국가와 식민지로 전략하게 되는 국가로 대별될 수 있는데, 보편적 국제법으로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식민지 국가의 강변이나 식민지 국가 국적의 학자들 견해만으로 국가에 대한 강제는 유효라는 논리를 일반화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 논리 또한 근거의 미비를 앞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뿐만 아니라 1905년 을사늑약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당한 상태였으므로, 대한제국의 대외적 의사표시는 당연히 주권의 표현이 아님은 명백한 것이다. 이는 일본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행사하는 일본기관과 병합조약을 체결한 형

71) Liszt-Fleischmann, 1925, *Völkerrecht*, 12. Aufl., S. 261; 조약과 계약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Hersch Lauterpacht, 1970, *Private Law Sources and Analogies of International Law-with special refernece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Archon Books, Ch. IV 참조.

72) Lord McNair, 1961, p. 209.

국인 것으로, 외교권이 없는 대한제국이 1910년 병합조약의 체결 주체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따라서 국내 사학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1910년 병합조약은 아예 불성립이라는 주장마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1910년 병합조약은 당시의 법리나 국제관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유효라고 단정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태진 편저, 2001, 『한국병합 이루어지지 않았다』, 태학사.

朴殷植, 1945, 『韓國痛史』, 達成인쇄.

山邊健太郎, 1972, 『韓日併合小史』, 岩波書店.

Bernard, M., 1868, *Four Lectures on Subjects Connected with Diplomacy*.

De Vattel, Emerich, 1916, *The Law of Nations or the Principles of the Natural Law*, *Classics of International Law*, Carnegie Institution.

Grotius, Hugo, 1925, *De Jure Belli ac Pacis*, Book II, *Classics of International Law*, Oxford.

Hall, William Edward, 1917, *A Treaties on International Law*, Oxford, Edited by A. Pearce Higgins.

Hyde, Charley Cheney, 1922, *International Law—Chiefly as Interpreted and Applied by the United States*, Vol. 2, Little Brown, and Company.

Jenks, C. Winfred, 1964, *The Prospects of International Adjudication*.

Keith, A. Berried, 1929, *Wheaton's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6th ed., Vol. I.

Lauterpacht, Hersch, 1970, *Private Law Sources and Analogies of International Law—with special reference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Archon Books.

Liszt-Fleischmann, 1925, *Völkerrecht*, 12, Aufl.

Malawer, Stuart S., 1977, *Imposed Treaties and International Law*.

McNair, Lord, 1961, *The Law of Treaties*, Oxford.

Moor, J., ed., 1906, *A Digest of International Law*.

Murphy, Sean D., 2006,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West.

Nozari, Fariborz, 1971, *Unequal Treaties in International Law*, A-Byran Stundt & Co.

Oppenheim, L., 1905, *International Law*, Longman.

Oppenheim, L., 1958, *International Law*, 8th ed., Edited by H. Lauterpacht,

Longman,

Smith, Sir Frederick, 1918, *International Law*, revised by Coleman Phillipson, Dent & Sons,

Von Ulmann, E., 1908, *Völkerrecht*, Tübingen, Verlag von J. C. B. Mohr (Paul Siebeck).

Von Verdross, Alfred, 1937, *Völkerrecht*, Verlag von Julius Springer.

Weinschel, 1930, *Zeitschrift für Völkerrecht*, Band XV.

Woolsey, T., 1875,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 100, 4th ed.

〈논문〉

노계현, 1970, 「일본의 한국병합과 열강의 반응」, 『국제법학회논총』 제15권 1호.

박배근, 2003, 「韓國併合關聯條約有無效論의 意義와 限界」,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백충현, 1996, 「國際法으로 본 1900년대 韓日條約들의 문제점」, 『한국사시민강좌』 제16집, 일조각.

백충현, 2004, 「일본의 한국병합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이태진 외,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이근관, 2004, 「국제조약법상 강박이론의 재검토」, 이태진 외,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笹川紀勝, 1999. 7, 「日韓における法的な對話おめざして」, 『世界』 제663호.

坂元茂樹, 1995. 1, 「日韓保護條約の效力-強制における條約の觀點から」, 『法學論集』 제44卷, 제4·5合併號, 關西大學.

坂元茂樹, 1998, 「日韓は舊條約の問題の落としに陥ってはない」, 『世界』 제62호.

海野福壽, 1997. 7, 『韓國併合の歴史認識』, 『世界』.

海野福壽, 1999. 10, 「韓國併合の歴史認識-李教授韓國併合不成立論お再検討する」, 『世界』 제666號.

Fernand de Visscher, 1931, “Des Traités imposés par la violence,” *Recueil de droit international et législation comparée*.

〈기사〉

동아일보, 2007. 7. 7.

동아일보, 2007. 8. 28.

한철호, 2010. 8. 17, 『주간경향』.

〈ILC Documents〉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3, Vol. II, Documents of the fifteenth session including the reports of the Commission to the General Assembly.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6.

[ABSTRACT]

Study on the Issues Regarding 1910 Annexation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in International Law

Sung, Jaeho

Whether the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concluded on August 22 1910(the Annexation Treaty) was valid or not? The Korean Scholars emphasized the treaty was invalid, while the Japanese scholars alleged valid. Since there was no signature of Korean Emperor on the treaty, and the treaty was concluded by coercion. The former is relevant to Article 46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y, and the latter was relevant to Article 51 and 52. However The Vienna Convention was conclude in 1969 after 50 years after the Annexation Treaty coerced to conclude. This research is confined to and focused on the latter issue with regard to invalidity of the Annexation Treaty.

Japanese scholars maintained that the annexation was proceeded within the legitimate scope with lawful formality. Because coercive measures against state do not nullify the treaty at that time, whereas coercion against representative of state makes the treaty invalid. They wrote that it was *lex lata* rather than *lex ferenda*, which was inter-temporal law. Some scholars including few Korean scholars, admitted that this opinion has been of majority writers ot that times.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and proves the theory admittable.

Some scholars argued that coercion against state cannot be a reason to nullify the treaty since all peace treaties can be nullified if the

assertion accepted. However, all treaties coercive against state will not be regarded as peace treaties. In addition to that, even the scholars accepting the valid theory admit the treaty is a kind of contract, as is mutual consent of free will. However, they do not clarify why the coercion treaty is different from a private contract and how the 'absence of free will' can make the treaty valid. Furthermore, certain publications in beginning of twentieth century show us that coercion against state cannot make the treaty valid. For example, German scholar Weinshel explained the coercion against whole state cannot be accomplished in case of all nationals were put into the jail. These arguments reveal that coercion against the state make the treaty valid is not accepted as a general rule of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s. Corollary, the Annexation Treaty is invalid if a coercive measure against the state do nullify the treaty as some writers insisted. The fact that diplomatic power was deprived by Japanese Government in 1905 is another reason for the treaty being not valid, since a state without diplomatic power could not conclude treaty by itself.

keywords

the 1910 Annexation Treaty, the Vienna Convention on Law of Treaties, invalidity of treaty, duress, coercion

논문



1587년 損竹島 倭變과 壬辰倭亂

김덕진 ■ 광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I. 머리말

1587년(선조 20)에 五島 · 平戶島 왜인들이 전라도 興陽縣 損竹島(현재 여수시 삼산면)를 점령한 후, 출동한 전라 수군을 무찌르고 남해안을 습격하여 많은 사람과 군선을 납치해 갔다. 이 사건을 ‘丁亥倭變’, ‘損竹島 事件’, ‘損竹島 海戰’, ‘損竹島 倭變’ 등으로 명명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발생지와 주체를 반영한 ‘손죽도 왜변’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손죽도 왜변은 을묘왜변(1555) 이후 최대 외침으로 호남 지역사회와 조선 국정운영은 물론이고 조일외교와 임진왜란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기축옥사(1589), 통신사 파견(1590), 이순신의 전라좌수사 임명(1591), 임진왜란(1592) 등 한국사상의 굵직한 사건이 모두 이와 연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왜변은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성격으로 단순한 침략 수준을 넘어 전면전 양상을 띠며 東西分黨과 北虜南倭로 혼미를 거듭하던 16세기 말기 조선 사회 전반에

※ 투고일: 2010년 4월 6일, 심사일: 2010년 5월 14일,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27일.

엄청난 파장을 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없어 그 실체를 자세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鹿島鎮(현재 고흥군 녹동) 萬戶 李大源(1566~1587)의 순국을 다룬 글,¹⁾ 庚寅通信使의 협상 조건을 다룬 글²⁾에서 이 사건의 전개과정에 대해 잠깐 언급되어 참고가 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한 기존의 일반적 연구는 이 사건으로 일본의 조선 침략 의도가 어느 정도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91년 통신사 귀국 보고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파악한 한계를, 16세기 후반 한·중·일 3국민의 이동이 납치와 매매에 의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나해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하는 3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긍정적 해석을 내린 한계를 노정했다.³⁾ 또한 이 시기의 격렬한 정치적 갈등 이면에 이 사건이 도사리고 있었던 점, 전라 수군이 임란해전에서 승리하고 호남 의병장이 개전 초기에 대대적으로 거병할 수 있었던 점도 주목하지 못했다. 따라서 임진왜란 직전 조선사 연구 심화를 위해 이 사건은 중요한 주제라고 여기어 이 글을 작성하였다.

이에 필자는 먼저, 손죽도 왜변의 전개를 五島와 平戸島인의 침략, 전라 좌수군과 우수군의 패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이어, 손죽도 왜변의 영향을 호남 지역사회의 반향(백성들의 순국자 추앙, 사족들의 무장단 조직)과 조선 국경운영의 반향(전라도 방비 강화, 1590년 통신사 협상)으로 나누어 알아보겠다. 마지막으로, 손죽도 왜변의 성격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탐색 전인가, 아니면 노예무역의 개시탄인가에 주목하여 살펴보겠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한국사상의 몇 가지 의문점들을 풀어보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임진왜란 직전 호남 지역사회의 분위기, 임진왜란의 전개방향, 조선 조정의 안보관 등을 파악하는 데에 있다.

- 1) 李殷相, 1980, 『高興 雙忠祠 事蹟』, 민족문화협회; 金德珍, 2009, 「李大源과 鄭運, 그리고 雙忠祠」, 『海洋文化研究』 2.
- 2) 金文子, 1994, 「島井宗室과 1590년 通信使 派遣問題에 대해서」, 『祥明史學』 2; 米谷均, 2002, 「豊臣政權期における海賊の引き渡しと日朝關係」, 『日本歴史』 650.
- 3) 무라이 쇼스케 지음, 이영 옮김, 1998, 『중세 왜인의 세계』, 소화; 米谷均, 2003, 「後期倭寇から朝鮮侵略へ」, 『天下統一と朝鮮侵略』, 吉川弘文館.

1_ 손죽도 사건의 전개

(1) 일본 五道人和 平戸島人の 침략

1510년(중종 5) 三浦倭亂 이후 잠잠하던 왜구들의 움직임이 1540년대에 접어들면서 심상치 않더니 1544년(중종 39)에 蛇梁倭變, 1555년(명종 10)에 乙卯倭變이 발생했다. 이후부터 왜선들이 한반도 서남해안에 자주 출몰하여 노략질을 하고 사람을 잡아갔다. 그런데 조선 수군은 영성하기 짝이 없었다. 임진왜란 때의 史草 소실로 부실한 『선조실록』을 감안하면 속단할 수 없지만, 전라감사를 역임한 柳希春(1513~1577)이 적을 방어하는 데에 板屋船 · 防排船 · 夾船 등이 매우 긴요한데도 병사가 없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건문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⁴⁾

이러한 상황에서 왜인들이 1571년(선조 4)에 순천 金鰲島에 나타나 정박 중인 鮑作船 10척과 伏兵船 1척을 공격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상하게 하였다.⁵⁾ 1573년에 河東 사람 9명을 잡아갔고,⁶⁾ 金鰲島에 또 나타나 搜討將과 싸웠다.⁷⁾ 1574년에는 배를 타고 조선을 거쳐 중국으로 향하는 왜인이 매우 많다는 사실이 전라감사에 의해 보고되었다.⁸⁾ 1575년에는 다수의 적도들이 배를 손질하는데, 어느 나라를 침범할지 모른다는 정보가 對馬島에서 들어왔다.⁹⁾ 1576년에는 防踏僉使가 왜선을 포획하였고 康津 사람 10여 명이 왜적에게 사로잡혀갔다.¹⁰⁾ 이 시기에 왜적 출몰이 갑자기 빈번해졌고, 그 지역은 전라도에 집중되고 있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兩南海邑의 수령을 문관에서 무관으로 교체하

4) 『선조실록』 5, 선조 4년 11월 29일.

5) 『眉巖日記』, 1571년 3월 17일.

6) 『선조실록』 7, 선조 6년 3월 14일.

7) 『선조실록』 7, 선조 6년 6월 9일.

8) 『선조실록』 8, 선조 7년 5월 14일.

9) 『선조실록』 9, 선조 8년 3월 17일.

10) 『선조실록』 10, 선조 9년 4월 3일.

고 파직된 무신을 서용하는 정도에 그쳤다. 침입한 왜구가 곧장 달아나는 것을 보고 늘 있는 행위나 전쟁할 의사가 없는 행위로 간주한 채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가령 1586년(선조 19)에 倭大船 1척이 제주도를 침략하여 旌義縣監과 접전을 펼치다 도주하자, 全羅右水使가 침략할 걱정이 없지 않으니 방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선조는 적선을 잡지 못했으므로 정의현감 金大頤와 別助防將 魚得洙를 잡아 가두라고 지시했다.¹¹⁾ 정부 대책은 적선을 막지 못한 장수를 문책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방비를 강화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1575년 동서분당 이후 조정은 정쟁에 몰두한 채 국정 전반에 거의 손을 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사도 당색에 따라 좌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1587년(선조 20) 봄, 처음에 왜선 몇 척이 녹도 근처에 나타났다가 얼마 안 되어 수십 척이 손죽도를 침범했다.¹²⁾ 이러한 점 때문에 출몰 시기와 왜선 규모에 대해 기록이 각각이다. 당시 순천에 있던 鄭起溟(1558~1589)은 왜선이 1월 16일에 처음 나타났고 손죽도에 30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¹³⁾ 반면에 『실록』은 18척이 홍양을 침범했다는 전라감사의 2월 26일 치계를 수록했고,¹⁴⁾ 趙慶男(1570~1641)의 『亂中雜錄』과 李廷穉(1541~1600)의 연보에도 2월에 침략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보성에 있던 安邦俊(1573~1654)은 3월에 16척이 손죽도에 이르렀고,¹⁵⁾ 나주 출신 梁山璠(1561~1593)도 3월이라고 했다.¹⁶⁾ 이처럼 기록이 상반되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가리기가 어렵지만, 『실록』 기록을 따라 2월에 모두 18척이 침범한 것으로 정리하고 논지를 전개하겠다.

날씨가 차고 바람이 휘몰아치던 2월에 九州의 五島와 平戶島 출신 왜인이

11) 『선조실록』 20, 선조 19년 6월 3일.

12) 『선조수정실록』 21, 선조 20년 2월.

13) 『松江集』 2, 伯氏遺稿, 「鹿島歌」.

14) 『선조실록』 21, 선조 20년 2월 26일.

15) 『隱峯全書』 6, 記事, 「壬辰記事」.

16) 『松川集』 7, 附錄 下, 「忠臣贈通政大夫承政院承旨兼經筵參贊官宣教郎守工曹佐郎 蟠溪公行狀」.

탄 선박 두어 척이 전라도 興陽縣 鹿島鎮 앞바다에 침범했다. 경향이 없던 鹿島萬戶 李大源이 주장인 左水使 沈巖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혼자서 수하병을 이끌고 출동하여 왜선을 치고 왜인 목을 베었다. 남은 적들은 도망가고 녹도진 군사들은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가 하나도 없는 승리였다. 이대원이 돌아와서 沈水使에게 전과를 보고하면서 수급을 올렸다.

선발대를 앞세워 녹도진에 상륙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왜적은 전 선박을 이끌고 수일 지나서 녹도진에서 수로로 남쪽 80리 지점 대양에 있는 損竹島를 침범하여 점령했다. 전통적으로 일본에서 전라도로 들어오는 길은 五島에서 동남풍을 타고 三島(현재 거문도)에 이르러서 묵고 강진 仙山島를 지나면 곧장 古今島나 加里浦에 도달하고, 쓰시마로부터 동북풍을 타면 蓮花島와 欲智島 두 섬 사이에 이르러서 묵고 곧장 남해의 彌助項이나 순천의 防踏에 이르는 두 개의 노선이 있다.¹⁷⁾ 그러니까 손죽도는 동남풍 바람길에 위치하여 돛을 올리면 쉽게 北九州에서 전라도로 들어올 수 있어 이전에도 왜구가 침범한 일이 있었다. 가령, 1525년(중종 20)에 왜선 4척이 손죽도, 平斗島 등지를 침범하자 전라좌수사가 병선 20척을 거느리고 예하 진장과 함께 출동하여 격퇴시켰다.¹⁸⁾

五島와 平戶島 사람들은 30여 년 전에 선박 70여 척을 이끌고 을묘왜변을 일으킨 장본인이지만,¹⁹⁾ 이번 침략은 그 목적이나 무장력 및 침략방법에 있어서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침략 목적은 뒤에서 언급하고 무장력과 침략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43년에 明으로 항해하다 南九州 鹿兒島 남쪽 種子島에 표착한 포르투갈인에 의해 鐵砲(鳥銃)가 전래되어 일본 전역에 급속히 보급되었다. 더군다나 ‘왜구왕’으로 불리는 중국인 王直이 五島와 平戶島를 근거지로 삼아 北九州 세력가인 오토모[大友]·마쓰우라[松浦] 씨와 손을 잡고 일본과 중국·남

17) 『海東繹史』 40, 交聘志 8, 「通倭海路」.

18) 『중종실록』 55, 중종 20년 9월 22일.

19) 윤성익, 2006, 「後期倭寇로서의 乙卯倭變」, 『韓日關係史研究』 24, 165쪽.

만을 연결하는 대외무역을 하고 있었고, 스페인인이 1584년에 平戶島에 내항하여 무역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五島와 平戶島에도 조총이 유입되었다.

이들은 조총으로 무장하고 이전부터 조선을 간헐적으로 침략하였다. 『미암일기』 1574년 4월 5일자에 따르면, 호남에 왜선 한 척이 침범해 와 樂安郡守 朴世賢이 힘써 싸워 승리를 거두고 배의 모든 적을 잡아 왜인의 머리 13급을 베었고, 順天의 代將軍官 金壽億이 힘을 합쳐 쏘아서 맞혀 머리 8급을 베고 왜의 銃筒, 箭, 鐵丸을 서울에 올려 보낸 적이 있다. 이 鐵丸이 총통환, 조총환, 조총 가운데 어느 것을 지칭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철환이 眞木 防牌를 뚫었고,²⁰⁾ 牛皮로 방패를 만들면 철환을 피할 수 있고,²¹⁾ 이순신이 왼쪽 어깨에 철환을 맞았다는 전후 기록으로 보아, 철환은 조총임에 분명하다. 이들은 조총을 가지고 간간히 침입하더니 마침내 대대적으로 침입하여 손죽도 해변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번에 가지고 온 조총은 이전 것과 비교하여 성능이 월등했던 것 같다. 이유는 중앙의 지원에 있었고, 결과는 조선군의 참패를 가져왔다.

이들은 조선인 沙火同²²⁾을 앞세워 서남해를 안방 드나들 듯 돌아다녔다. 사화동의 출신지와 도일계기에 대해서 자료가 엇갈린다. 南蕃에 팔려갔다가 도망쳐 중국을 거쳐 돌아온 金介同과 李彦世는 사화동이 珍島 출신으로 왜노에게 잡혀갔고,²³⁾ 이정암은 寶城 鮑作으로 왜국에 잡혀갔다고 했다.²⁴⁾ 이에 반해 안방준은 康津 출신으로 도망자이고, 趙憲(1544~1592)은 도망자라고 했다.²⁵⁾ 반면에 李德馨(1561~1613)의 연보, 조경남의 『난중잡록』, 이궁익의 『연려실기술』은 표류인이라고 했다. 출신지에 대해 진도, 보성, 강진 등이 거론된

20) 『명종실록』 25, 명종 14년 6월 6일.

21) 『선조실록』 26, 선조 25년 5월 5일.

22) 기록에 따라 沙乙火同, 沙火同, 沙乙蒲同, 沙乙背同 등으로 불리지만, 여기서는 沙火同으로 통일하겠다.

23) 『선조실록』 22, 선조 21년 11월 17일.

24) 『四留齋集』 8, 年譜, 「行年日記」.

25) 『선조수정실록』 21, 선조 20년 12월.

것으로 보아 전라도 해변인이 분명하다. 그리고 도일계기에 대해 표류, 납치, 망명, 등이 거론되지만 모두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표류는 바람과 해류에 의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납치는 당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도망은 동서 분당 이후 격렬한 정쟁 때문에 8도의 인심이 크게 이반되고 민원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경상도와 전라도 연해의 鮑作人들이 고을 수령의 침탈을 이기지 못하고 일본으로 도망을 가도 조정은 근심거리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九州 세력가들은 내투한 자들을 앞세워 손죽도 왜변을 일으켰던 것이다.

(2) 전라 좌수군과 우수군의 패전

1,000명 이상이 승선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18척의 왜선이 손죽도를 점령하자 1명(좌수영), 5관(광양, 순천, 홍양, 낙안, 보성), 5포(녹도, 발포, 사도, 여도, 방답)의 전라좌수군이 일제히 출동했다. 심암은 후방을 맡으면서 이대원을 최전방에 세웠다. 이때 이대원은 지금 날이 저물었고 또 군사들도 적어 덮어놓고 출전하는 것은 무모할 따름이니, 군사를 더 많이 모으고 선단을 크게 지어 내일 아침 날이 밝은 다음에 효과 있게 치자고 심암에게 진언했다. 그러자 심암은 도리어 험박까지 하면서 즉각 출전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에 이대원은 곧 이어 응원군을 거느리고 와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수일 전 전투로 피로에 지친 수하군사 100여 명을 이끌고 출전했다. 적군은 많고 아군은 적은 상태에서 손죽도 해상에서 3일간 전면전을 펼쳤다. 심암은 쳐다만 보고 구원병을 보내지 않았다. 10여 년 전에 영암군수를 맡으면서 주민들로부터 잘 다스린다는 호평을 받았고,²⁶⁾ 이 점에 대하여 유희춘으로부터 인정까지 받은 심암이 휘하 장수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면발치에서 보고만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생전 보지 못한 조충의 위력 때문이었다. 나머지 장수들도 조충이 무서워 모두 퇴주하고 말았는데, 이 점에 대해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 古阜

26) 『선조실록』 8, 선조 7년 7월 21일.

에서 사건을 접한 金齊閔(1527~1599)은 이대원이 노를 저어 먼저 나갔으나 나머지 장수들은 철환, 즉 조총이 무서워 모두 퇴주했다고 했다.²⁷⁾

이대원은 중과부적과 무원고립 및 화력열세 상태에서 모든 군사를 잃어버렸고 배조차 남김없이 깨지고 말았다. 水卒 孫大男만이 겨우 살아났다. 이대원은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칼을 들어 자기 손가락을 잘랐다. 그리고 속저고리를 벗어서 그곳에 손가락 피로 최후의 절명시²⁸⁾ 한 장을 써서 하인에게 주며 고향에 돌아가 장례하라고 말했다. 그 후 붙잡혀 항복하라고 위협을 받았으나 굴복하지 않자 왜인들은 그를 배의 돛대에 묶어 놓고 사정없이 때렸다. 그러나 이대원이 죽을 때까지 그의 입에서 꾸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마침내 손죽도 물으로 끌려나와 수하 병사들과 함께 살해당하여 22세의 청년 장군은 목숨을 잃었다. 왜인들이 만행을 저지른 곳을 현재 현지인들은 ‘무부장터’라고 하고, 당시 손죽도 사람들이 이대원 시신을 가묘를 써서 매장했다고 한다. 집안 사람들은 유명을 받들어 혈서로 쓴 옷을 가져다가 양성현 대덕산 아래에 장례했다.

조총을 앞세워 전라좌수군을 가볍게 격퇴한 왜인들은 손죽도에 이어 강진 해역 仙山島를 약탈한 후 馬島鎭(현재 강진 마량)을 거쳐 加里浦鎭(현재 완도)까지 넘어갔다. 이들의 공격으로 가리포 수군은 주둔지를 점령당하여 병선 4척을 빼앗겼고 첨사 이필은 왼쪽 눈에 화살을 맞고 퇴각하였고, 전라우수사 元壕까지 출동했으나 伏兵船 5척만 잃고 말았다.²⁹⁾ 왜인들은 전라우수군까지 전멸시켰다.

왜인들은 홍양에서 강진에 이르는 도서와 수군진 및 연해지역을 내투자들의 지리정보를 토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사람을 납치하며 군선을 나포한 후 이를 끌고 침략 5·6일 만에 돌아갔다. 예년 같으면 상륙하여 곡물과 같은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곧바로 쳐들어 올라오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도서·연해 지역에

27) 『鰲峯集』 1, 詩, 「悲李大源」.

28) 『研經齋全集』 外集 55, 識小類, 「李萬戶大源詩」.

29) 『선조실록』 21, 선조 20년 2월 27일. 나사침은 이필이 눈에 철환을 맞은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대한 기습공격으로 사람을 납치하고 군선을 나포하는 선에서 자진 퇴각하였다. 뒤에서 상술되었지만, 바로 여기에 그들의 침략 목적이 있었다.

당시 아군의 피해는 막대했고 전투 결과는 참혹한 패배였다. 적과 만나 대전하면서 이대원을 포함하여 장졸을 천여 명이나 잃었고 수많은 양민이 죽거나 납치되었고 군선이 납치되었건만 왜적의 머리 하나 참획하지 못할 정도였다. 최고 사령관 심암이 관망한 가운데 예하 장수들이 앞다투어 도망갔기 때문이다. 가령, 中衛將으로 출전한 순천부사 邊璣는 처음부터 힘써 싸우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달아나 숨으려다 적의 화살을 어깨에 맞았다. 朴仁鳳은 힘껏 싸우지 않고 병선 지키기만 급급했고, 申榮은 병선이 느리다는 핑계로 즉시 나가지 않았고 외양에 나가서는 화살 하나 쏘지 않고 가버렸다.³⁰⁾ 成天祉와 李弘明도 달아나기에 급급한 장수였다.³¹⁾ 또한 선산도 북병장은 노래를 즐기고 술에 취하여 방비하는 데에 마음을 쓰지 않다가 적에게 기습을 당해 화살을 맞고 먼저 달아나 수백 명의 백성들이 칼날 아래에서 목숨을 잃게 하였다.³²⁾ 이전의 침략과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은 이대원을 제외한 조선 장수들이 모두 도망쳤다는 것인데, 좀체 보기 드문 현상이다. 이는 난생 처음 접한 ‘고성능’ 조총의 위력에 겁을 먹은 결과였다. 임진왜란 개전 초기에 왜군 소리만 들으면 조선 군민 가운데 열에 아홉은 도망갔다고 하는데, 이 역시 손죽도 사건 때에 경험한 왜군들의 조총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대원의 용전은 단연 돋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임금은 3공과 비변사당상 및 병조당상을 소집하여 변방의 일을 논의하면서 한성 右尹 申砮를 右防禦使로 삼아 군관 30명을 거느리고 그날로 내려가게 하였다. 그리고 邊協을 左防禦使로 삼아 밤을 새워

30) 『선조실록』 21, 선조 20년 4월 4일.

31) 『선조실록』 21, 선조 20년 8월 9일. 박인봉, 신영, 성천지, 이흥명 등은 당시에 문이나 鎭의 수군을 거느리고 출전했던 장수들이다. 그런데 실록은 그들이 어느 읍, 어느 진의 수장인지를 기록하지 않았다. 필자는 그것을 찾기 위해 여러 기록을 뒤졌지만 역시 알아내지 못했다.

32) 『선조실록』 21, 선조 20년 11월 6일.

남쪽 지방으로 출정하게 하였고, 우참찬 金命元을 전라도 순찰사로 삼아 손죽도를 침범한 적을 치게 했다.³³⁾ 전라감사 韓準은 도내의 고을에 전령을 보내 군사를 일으켜 적을 막게 하였는데, 左道の 경우 南源 등지의 관들은 順天에 나아가 진을 쳤고 全州 등지의 관들은 樂安으로 나아가 진을 쳤고, 右道の 경우 각 읍은 모두 바다 연변으로 나아가 진을 쳤다. 그러나 5·6일이 지나도 해변에 적의 기척이 없어 각각 陣을 파하였다.³⁴⁾ 모두 왜구가 이미 물러난 뒤 뒷북치기였다.

심암은 병력, 무기, 전술, 기세 등 적의 전력을 소상히 보고하지 않았다. 스스로 군율을 어긴 것을 알고 적세가 대단하다고 거짓으로 아뢰고 내지의 군사를 징발하게 하여 정부의 대응전략 수립에 차질을 빚게 하기도 했다.³⁵⁾ 임금은 패전과 군율 미준수 책임을 물어 심암을 조사할 것도 없이 “의당 刑具에 채워 본도로 이송한 뒤, 轅門에서 참수하여 列鎭에 조리를 돌려야 된다”³⁶⁾고 하여 당고개에서 효수되었다. 이에 앞서 양산룡 등 전라도 유생들도 심암의 죄를 논하고 처형을 주장하자 임금은 참으로 가상하다고 답변했다.³⁷⁾ 우수사 元壕 또한 伏兵船 5척이 피침하였으나 따라가 잡지 않았다고 하여 국문을 받았다.³⁸⁾ 이 외에 여러 장수들이 힘써 싸우지 않았거나 늦게 출동했고, 달아나 숨었다는 이유로 문책을 받았다. 전라감사 韓準도 이대원이 패하여 죽을 당시 순천에 도착하였으나 적의 형세가 왕성하다는 말을 듣고 내지로 급히 돌아가자 노약자들이 길을 막고 붙들면서 호소했지만 돌아보지도 않고 벌벌 떨며 물러가 웅크렸기에 남쪽 백성들에게 욕을 먹었다고 하여 파직당했다.³⁹⁾ 한편 한준은 호조 참판과 우참찬을 거쳐 황해감사가 되어 정여립 사건을 최초로 고변하였으니, 전라도와 남다른 인연을 맺은 인물이다.

33) 『선조실록』 21, 선조 20년 2월 28일.

34) 『亂中雜錄』 1, 정해년 2월.

35) 『선조실록』 21, 선조 20년 3월 3일.

36) 『선조실록』 21, 선조 20년 3월 28일.

37) 『선조실록』 21, 선조 20년 4월 14일.

38) 『선조실록』 21, 선조 20년 3월 10일.

39) 『선조실록』 21, 선조 20년 6월 4일.

2_ 손죽도 사건의 영향

(1) 호남 지역사회의 반향

① 백성들의 이대원 추앙

손죽도 왜변은 재래식 무기로 재물이나 사람 몇 명을 약탈·납치하던 이전과는 달리 조총이라는 신무기로 대규모 인명을 납치했기 때문에 더더욱 큰 충격을 남겼다. 그래서 이 사건의 끝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사건 직후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였다. 나주에 머물던 羅士忱(1526~1596)은 이를 실로 심대한 변이라고 하며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우려된다고 하였다. 평화의 날이 오래되어 문무가 편안히 놀고 잤은 흥년으로 국가 저축이 없는데, 北亂이 진정되지 않고 南夷가 또 일어나니 조정에는 良將이 없다고 개탄하였다.⁴⁰⁾ 또한 김제민은 이로 인해 전라도 민간에서 騷動이 일어나고 있다고 당시 민심을 전했다. 그해 12월에 큰 바람이 불어 뜰의 대나무가 쓰러지고 한밤중에 새들이 놀라 온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접한 김제민이 감회를 시로 읊어 사람과 새가 같은 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⁴¹⁾ 그리고 왜변 당시 동래부사 盧堧는 왜구가 대거 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여 언관의 탄핵을 받고 이정암으로 교체되었는데, 이 점에 대하여 『실록』은 노준이 술에 빠져 공무를 살피지 않고 모든 일을 下輩·軍官에게 위임하고 왜인에게 料米를 지급할 때에 문제를 일으킨 점 때문에 파직당했다고 상반된 사실만 기록했다.⁴²⁾ 한마디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지만, 당시 조정은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그것을 『실록』은 그대로 수용하는 수준이었다. 조총의 경우만 보더라도 여러 개인 일기에 수록된 사실을 당시 당국자나 『실록』 편찬자는 흔적마저 남기지 않았으니, 정권 안보가 국가 안보보다 앞선 일이었다는 의혹을 벗어

40) 『錦湖遺事』 1, 著述, 「丁亥日記抄」.

41) 『鰲峯集』 1, 詩, 「丁亥臘月大風吹動衙竹……」.

42) 『선조실록』 21, 선조 20년 3월 3일.

나기 어렵다.

손죽도 왜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직접 겪은 호남지방에서 가장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전 명종대에 강진에서 진도에 이르는 서남해 일대를 강타했던 을묘왜변을 연상시켜 더더욱 그러하였다. 호남인들이 겪은 충격은 자연스럽게 이대원에 대한 애도와 추모 열기로 이어졌다. 각 진과 여러 고을의 수군들은 적과 서로 마주보는 곳에 진을 치고 두려워 웅크리고만 있었고, 오직 이대원만이 나아가 힘을 다해 싸웠으나 전세가 곤궁하게 되자 깃발을 들어 원군을 불렀지만 여러 장수들이 아무도 가서 구해 주지 않아 왜적에게 사로잡혀 장렬하게 전사하였기 때문이다.

장수를 잃은 녹도진 수군들은 鎭城 안에 鹿島祠라는 사당을 지어 이대원을 배향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홍양 사람들은 적의 위세에 뒷걸음질만 한 심암의 태도에 분개하면서 이대원의 죽음을 애도하여 「이대원가」라는 가련한 노래를 지어 불렀다.⁴³⁾ 鄭澈의 큰아들 정기명은 1585년 하반기에 동인의 공세에 못 이겨 낙향한 아버지를 따라 내려와 순천 백부 鄭沼 댁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여기서 손죽도 사건을 듣고 「鹿島歌」를 지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당시 15세이던 안방준은 이 소식을 듣고 이대원의 절의를 높이 사 「이대원전」을 지었다(현재 원문은 전하지 않음). 김제민은 力戰을 하다 敗死한 이대원의 충절을 애통해하며 「悲李大源」이란 시를 지어 애도하였다.

손죽도는 화살용 箭竹이 많아 붙여진 이름인데, 이 점은 현지 답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대원이 죽자 온 나라 사람들이 슬퍼하며 손죽도를 損大島라고 했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하여 李暉光은 “만력 정해년에 왜군이 전라도를 침범하였을 때에, 녹도만호 이대원이 외로운 군사를 가지고 손죽도에서 항거하여 싸우다가 구원이 끊어지매 패전하여 죽으니 나라 사람들이 슬퍼하였다. 損竹島를 세상에서는 損大島라고 한다. 우리나라 말에 竹을 대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대는 大元의 대와 같은 음이다. 손대도는 곧 대원을 잃

43) 『藥泉集』 17, 神道碑銘, 「全羅左水使李公神道碑銘」.

은 섬이라는 말과 통한다”⁴⁴⁾는 기록을 남겼다. 竹을 우리말로 대로 부르기 때문에 이대원 순국 이후 조선 사람들은 손죽도를 손대도라고 불렀고, 결국 손대도는 이대원을 잃게 한 섬이라는 말이 되었다. 이대원의 ‘대’자와 음이 서로 같아서, 이대원을 손상시킨다는 말이 은연중 포함되어 있다고 이수광은 민간의 떠도는 말을 채록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이러한 호남 지역민들의 이대원 애도 물결은 어떤 결과를 냈을까? 이대원의 죽음은 호남인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져 주었다. 이 점에 대해 南九萬(1629~1711)은 「이대원신도비」에서 “임진왜란에 호남지방이 유독 완전하여 다시 나라를 일으키는 근본이 되었으니, 이는 공이 먼저 왜적에게 몸을 맡겨서 사람들의 마음을 장려하고 분발시킨 효험이 아니라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고 기술하였다. 임진왜란의 극복은 호남의 보존에 있고, 그 원동력은 이대원의 장렬한 죽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남구만의 생각이다. 특히 홍양 주민들은 장렬하게 순국한 22세 청년 장군 녹도만호 이대원에 대한 제사와 사우 건립을 곧바로 단행했고, 그를 추모하는 노래 「이대원가」를 지어 부르며 대일 항전의지를 불태웠다. 그리하여 전라좌수군의 5관 5포 가운데 1관 4포를 차지한 그들은 전라좌수군의 가장 용맹한 주력군으로 무장하여 임란해전 승리의 기둥이 되었는데, 이순신의 일급참모들이 대부분 홍양 출신이었던 것이 그 사실을 증명한다. 결국 손죽도 왜변은 임진왜란 때에 호남을 사수하게 된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

② 사족들의 무장단 조직

전라도 사람들이 겪은 충격은 이대원에 대한 애도와 추모 열기에 그치지 않고, 자위책 강구로 이어졌다. 전에 보지 못한 신무기 조종 앞에 수군이 참패하고 수령들이 앞장서 도망가 전라도 방어 전선이 무력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스스로 자위책을 강구했다. 정부는 방어사를 전라도에 파견하고 전라감사는 거병을 독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남 사족들도 자발적으로 거병하였다.

44) 『芝峯類說』 2, 地理部, 島.

그 대표적 인물이 鄭汝立(1546~1589)이다. 정여립은 서인의 이이, 성혼과 수학한 후 이이의 천거로 관직에 진출하였으나, 이이가 銓郎 제수를 반대하자 이이 사후 동인으로 돌아섰다. 스승을 배반했다는 서인의 공격에 시달린 정여립은 1585년(선조 18)부터 향리 전주에 내려와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⁴⁵⁾ 그는 전주, 금구, 태인 등 인근 고을의 무사에서 천인에 이르는 상하인을 규합하여 계를 만들고 大同契라 이름을 붙였다. 매월 15일에 일제히 한곳에 모여 과녁에 활쏘기 승부를 겨루며 회합 때에 소요되는 술과 고기를 여러 고을에 편지를 띄워 요청하였다. 계원들이 정여립을 칭찬하며 말하기를, “우리 동방에 先儒들이 많았지만 단지 禮學을 할 뿐이었고, 활 쏘는 技藝에 대해서는 이제야 처음으로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왜변이 일어나자 전주부윤 南彦經이 정여립에게 군사와 말을 징발하자고 요청하였다. 이에 정여립이 한번 호령하자 군사가 모두 모여들었는데, 감히 낙오하는 자가 없었다. 정여립은 여러 군사를 나누어 부대를 편성하고 각각 장수를 계원 중에서 선발하여 정하였다. 왜적이 물러나자 정여립은 군사들을 해산하고 장수들에게 “훗날에 만일 오늘처럼 변고가 생기면 너희들은 각자 부대를 이끌고 일시에 오라”고 호령하고, 명부 한 통을 가지고 돌아갔다. 남언경이 “鄭公은 학문을 하는 선비일 뿐만 아니라 그 재주도 또한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다”고 탄식하였다. 이어 정여립이 황해도사와 김제 군수가 되고자 했을 때, 사람들이 “여립은 幕佐와 수령이 되는 것을 구할 사람이 아닌데”라고 말하며 그를 의심했다고 한다.⁴⁶⁾ 정여립의 거병은 2년 8개월 뒤 그가 모반을 도모하려고 한 단서로 西人에 의해 규정되어 己丑獄事(1589. 10)의 결정적 빌미가 되었다. 정철은 기축옥사 때 “정여립이 호남에서 군사를 일으키자 영남에서 일어나는 자도 있고 서울에서 일어나는 자도 있습니다”⁴⁷⁾고 계달하며 영남과 서울의 동인 인사를 정여립과 연결시켰다. 이에 따라 거병

45) 우인수, 1988, 「정여립 역모사건의 진상과 기축옥의 성격」, 『역사교육론집』 12, 75쪽.

46) 『隱峯全書』 5, 「己丑記事」.

47) 『선조실록』 195, 선조 39년 1월 22일.

을 요청한 남언경도 기축옥사 때에 拿鞠을 받았다.⁴⁸⁾ 큰 전란을 겪지 않았던 당시에 자의적인 거병은 쉽게 용납되지 않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특히 東人의 공세에 밀려 극심한 수세에 처한 서인은 동인 인사의 거병에 매서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며 옥사를 확대하고 마침내 정권을 차지하였다.

이렇듯 손죽도 왜변 때 정여립의 무장 활동은 나중에 기축옥사의 빌미가 되어 호남지방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간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직접 거병하지는 않았지만 대일 자위책을 강구한 사람도 있었으니 金千鎰(1537~1593)이 대표적이다. 관직에서 물러나 나주 향리의 克念堂이라는 서재에 머물고 있던 그는 녹도만호 이대원의 죽음을 접한 후 상소를 올려 대응책의 잘못과 상벌의 혼란을 논하였고, 낮에는 학문을 강론하고 석양에는 말타기와 활쏘기를 하였고, 제자들로 하여금 兵馬의 일을 익히게 하였다.⁴⁹⁾ 향리에서 들은 倭情이 예사롭지 않아 김천일은 자위책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왜변이 일어난 해 9월에 내왕한 다치바나 야스히로[橘康廣]의 활동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민심이 급격히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1588년 1월에 서울의 선비들이 무려 백명, 천명으로 떼를 이루어 미친 짓, 괴이한 짓들을 하는데, 그것이 천태만상으로 해괴하기 짝이 없었다. 때로는 무당 흥내를 내면서 덩실거리고 ‘등등곡[登登曲]’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도 하고, 혹은 초상과 장사지내는 일을 꾸며 꺾충거리고 흠을 다지기도 하며, 동으로 갔다 서로 달렸다 웃었다 울었다 하였다. 그리고는 저희들끼리 묻기를, “무슨 일로 우느냐? 무슨 일로 우느냐?” 하고는 큰 소리로 스스로 답하기를, “將相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어서 웃는다. 국가가 위태롭고 망해 가고 있어서 우는 거다” 하면서, 다시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웃고는 하였다. 당시 이것을 주창한 사람은 鄭孝誠, 白震民, 柳克新, 金斗南, 李慶全, 鄭協, 金誠立 등 30여 인이었고, 이들을 추종하여 법석을 떤 자들은 부지기수였다.⁵⁰⁾ 백진민(백유양의 아들), 유극신(유

48) 『선조수정실록』 23, 선조 22년 12월 1일.

49) 『健齋集』 부록 3, 年譜.

50) 『亂中雜錄』 1, 무자년 1월.

몽학의 아들), 이경전(이산해의 아들), 정협(정언신의 아들), 김성립(허엽의 사위)은 명문가 출신의 젊은 엘리트였다. 이들이 동요하는 상황에서 백성들 또한 동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상한 행동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나타났다. 당시 歌曲에는 樂時調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처량하며, 머리를 내젓고 뒷덜미를 놀리고는 하여 부끄러움도 없이 몸을 움직였다. 또 啓眠調가 있는데 그 소리가 슬프며 가련하고 서글펐다. 또 於平調, 偶調, 邐邐調는 다 비참한 것을 숭상하고, 옷은 흰 것을 숭상하여, 식자들은 소리가 애처롭고 옷이 희다 해서 상서롭지 못한 징조라고 여기었다. 자학적 행위와 슬픈 곡조의 갑작스런 유행은 전쟁 발생 예상에 따른 심리적 동요를 반영한 것이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조선에 퍼진 시기는 통신사 일행이 돌아온 1591년 1월이나 3월이라는 것이 기존 이해이다. 그런데 이보다 먼저 손죽도 왜변 때에 전례 없는 예감이 나돌았고, 다치바나 야스히로에 의해 일본 정세 변화와 통신사 요청이 전국에 알려진 1588년 초기에 전쟁설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실제 임금도 1588년 3월 26일에 왜변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비변사로 하여금 무사를 서용하게 하도록 명하였다.⁵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인과 서인의 싸움이 이때부터 더욱 심각해져서 각자가 자기의 이해를 도모하고 나랏일은 버려두고 잊어버렸다. 급기야 1589년에 기축옥사가 일어나 수많은 선비가 살육되는 참화를 겪고 말았다. 사상초유의 정쟁 앞에 대외 방비책을 강구할 틈도 없이 1590년에 통신사가 출발하여 이듬해 1591년에 돌아왔다. 통신사에 의해 일본의 침략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정국은 본격적으로 소용돌이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전라도 민심이 급격히 동요하기 시작하면서 재지사족들도 자구책 마련에 긴박하게 움직였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전란에 대비하는 사람들이 속출하였다. 남원 출신 安瑛(1565~1592)은 통신사 귀국 이후 왜침을 예상하고 보검을 매입하여 집에 보관하는 등 무장을 서둘렀고,⁵²⁾ 옥과 출신 柳彭老

51) 『선조실록』 22, 선조 21년 3월 26일.

52) 『旌忠錄』 3, 「淸溪安公事實」.

(1564~1592)는 자신의 마을 뒤 玉出山の山城峙 깊은 골짜기에 수년 전에 집 3칸을 지었는데, 그중 한 칸에 冶匠奴 5·6명을 두어 날마다 무기를 만들게 하고, 또 한 칸에 針線婢 5·6명을 두어 날마다 군복을 만들게 하고, 또 한 칸에 捧稅米 수백 석을 비축하여 전쟁에 대비하였다.⁵³⁾ 충청도 출신이지만 1591년 7월에 전라도 錦山 大菴山에 들어온 趙憲은 독서를 하지 않고 산곡을 해매며 높은 산에 올라 먼 데를 보며 나라 일을 탄식하다가, 하루는 승려 4인과 식사를 같이하며 “명년에는 반드시 왜란이 있을 것이며 나는 의병을 일으켜 임금을 모실 것이니 이 밥을 먹는 사람은 함께 와서 나라를 돕자”고 하였다. 이들은 모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4~5월에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하였다. 그들이 개전한 지 1개월도 안 되어 발 빠르게 의병진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전란 전부터 준비한 결과였다.

(2) 조선 국정운영의 반향

① 전라도 방비 강화

을묘왜변이 일어난 1555년 5월에 왜구가 전라도의 달랑포에 침략하여 진도, 나로도, 어란포, 영암 등지를 보름 가까이 휩쓸고 갔다. 이 아픈 기억이 채 아물기도 전에 전라도 연해지역은 손죽도 왜변을 겪으며 또다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조정은 전라도 방비책 마련에 부심하기 시작했다.

왜변 발생 20일 이상 지난 2월 27일에 3정승, 비변사 당상, 병조 당상이 집결한 어전회의에서 전라도와 인접 충청도가 불안하다는 의견에 따라 대응력이 부족한 감사를 교체하는 일이 벌어졌다.⁵⁴⁾ 경상도에도 申恪을 방어사로 내려 보냈다.⁵⁵⁾ 바로 이어 임금은 적이 비록 물러났으나 이는 우리를 유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후 戰具를 닦고, 烽燧나 瞭望 등의 일을 단속하여 경계 태세를 태

53) 『月坡集』 3, 日記, 1592년 5월 16일.

54) 『선조실록』 21, 선조 20년 2월 27일.

55) 『선조실록』 21, 선조 20년 2월 30일.

만히 하지 말도록 전국에 지시했다.⁵⁶⁾ 물러난 적들이 언제 다시 나타나 전면전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판단한 임금은 병조에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병조는 적의 침략이 예상되는 전라도의 加里浦와 珍島 및 濟州 등 3읍과 法聖倉과 群山倉 등 2창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고, 武臣과 雜類 및 公私賤으로 활쏘기에 능한 사람을 선발하고 대오를 편성해서 유사시를 기다리게 하고, 弓矢와 銃筒 및 鐵甲과 鐵丸 등 무기를 갖추어 놓겠다고 답변했다.⁵⁷⁾ 전국이 준전시 상황에 접어들 정도로 긴박하게 움직였지만, 초점은 전라도에 맞춰져 있었다.

그리고 1588년 3월에 임금은 남방에 왜변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비변사로 하여금 罪廢 중에 있는 쓸 만한 무사를 抄啓敍用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軍律·贓濫을 범하였거나 欺罔한 죄를 범하였던 자가 서용되었고 성적이 하등인 자도 여기에 참여되었다.⁵⁸⁾ 또한 1589년 1월에는 비변사에서 무신을 불차 채용한다고 하자, 각 신로들이 이순신을 포함하여 40명 가까운 명단을 올렸다.⁵⁹⁾ 남방 연해 적로의 요충이 되는 곳에 城을 쌓고 濠를 파도록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비책도 기축옥사 여파로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전해에 떠났던 통신사가 1591년 3월에 귀국하여 일본 정국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전라도 중심의 대일 방비책이 강구되었다.

이러한 전라도 방비책은 용력 있는 무신을 신분의 귀천과 전과를 불문하고 호남 연해지역으로 불러들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 李舜臣(1545~1598)이다. 그는 1586년 1월에 함경도 조산보 만호가 되었고, 1587년 8월에 녹둔도 둔전관을 겸하였다. 둔전관 때에 섬이 외롭고 멀리 있기 때문에 군사를 더 파견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절도사 李鑑이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적이 군사들을 몰고 와서 섬을 에워싸자 이순신이 적의 괴수를 쏘아 죽여 물리쳤다. 이일이 자기 죄를 면하려고 이순신을 패군한 것으로 무고하여 이순신은

56) 『선조실록』 21, 선조 20년 3월 3일.

57) 『선조실록』 21, 선조 20년 3월 2일.

58) 『선조실록』 22, 선조 21년 3월 26일.

59) 『선조실록』 23, 선조 22년 1월 21일.

조정으로부터 평복으로 종군하라는 명을 내려 받았다. 그래서 이순신은 1588년 윤6월에 집으로 돌아왔다. 이때 조정에서 무신 중에 서열을 따지지 않고 뽑아 쓸 만한 인물을 천거하였는데, 이순신이 그 둘째에 들어 있었다. 1589년에도 채용설이 제기되었다.⁶⁰⁾ 이로 인해 이순신은 1589년과 1590년에 정읍현감과 고사리진·만포진 첨사에 천거되었으나 대간들의 비판으로 임명되지 못하다가, 드디어 1591년 2월에 전라좌수사에 임명되었다. 당시 왜적의 태도가 날로 극성스러워지자 임금께서 비변사에 명령을 내려 뛰어난 장수를 천거하라고 하자, 유성룡이 천거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이순신은 전라좌수사로 부임해 온 즉시 일본의 침략이 있을 것을 알고 방비책 강화에 들어갔다. 그는 왜구들이 반드시 올 것을 알고 본영과 부속 진의 무기를 수리·정비하였고, 쇠사슬을 만들어 앞바다에 가로 늘어놓았으며, 거북선을 건조하였다. 그리고 손죽도 왜변 때에 참전하였던 병사들을 자신의 주위에 포진시켰다. 그들은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휘하에서 왜정을 제공하며 분전하였다. 高風孫의 경우를 살펴보자. 왜변 후 정부가 전황을 파악하기 위해 참전하였던 병사들을 조사할 때에 그도 당국자로부터 심문을 받았다. 그는 좌수영의 鮑作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심문을 받을 때에 일본의 침략이 沙火同의 소행이란 사실을 언급하여 당국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임진왜란 때에도 참전하여 한산도 대첩 때에 이순신이 타고 있는 배의 格軍으로 분전하다 鐵丸을 맞고 부상을 당하였다.⁶¹⁾

손죽도 왜변 이후 대일 방어태세를 전라도를 중심으로 강구하고 있을 때 선조는 변협과 만나 상황 점검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임금이 “우리나라의 사정을 저들이 죄다 알고 있으니 만약 우리나라가 전라도에 주력하는 줄을 알고 단 道로 들어오면 어찌할 것인가?”라고 묻자, 변협이 “小賊이라면 天城·加德鎭이 염려되지만, 大賊이야 어느 곳엔들 들어오지 못하겠습니까?”라고 답변하

60) 『선조실록』 23, 선조 22년 7월 28일.

61) 『李忠武公全書』 2, 狀啓 1, 「見乃梁破倭兵狀」.

였다.⁶²⁾ 1591년에 소 요시토모[宗義智]가 부산에 들어왔다가 공갈협박을 하고 돌아간 후 일본인은 부산에 들어오지 않았고, 부산포에 머물고 있던 자들조차 하나 둘 자취를 감추더니 이윽고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게 되자 그곳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여겼다. 이러한 지적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일 방어태세는 전라도 중심으로 강구되었고, 마침내 임진왜란 당시 왜적은 방비가 튼튼한 전라도로 들어오지 않고 근래 외침을 거의 겪지 않은 부산포로 들어왔다. 조선의 실패한 대책, 일본의 허를 찌른 공략이었던 것이다.

② 1590년 통신사 협상

쓰시마[對馬島]는 1587년 6월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편입되었다. 동시에 조선 국왕의 입조 교섭권이 쓰시마에 주어졌다. 그리하여 1587년 이후 3회에 걸쳐 쓰시마 사신이 들어와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였다.

도주 소 요시시게[宗義調]는 1587년 9월에 다치바나 야스히로를 특송사로 조선에 파견하여 일본에서 이미 신국왕이 즉위하였고,⁶³⁾ 그 사신이 이미 쓰시마까지 와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였다.⁶⁴⁾ 이를 보고받은 조선 조정은 동평관에 머물고 있는 덴케이[天荊]에게 새 국왕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선조는 일본은 국왕을 폐한 나라이므로 그 사신을 접대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하지만 사신이 들어오면 접대하는 것이 전례라는 중신들의 청에 의해 吏曹正郎 柳根을 宣慰使로 부산에 파견하였다.⁶⁵⁾ 다치바나는 유근을 따라 12월에 상경하여 서계를 전달하며 通信使 파견을 요청하였다.⁶⁶⁾ 일본의 통신사 요청에 대하여 조선 조정은 논의를 편 결과 1588년 3월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⁶⁷⁾ 이에 다치바나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쓰시마로 돌아

62) 『선조실록』 23, 선조 22년 8월 1일.

63) 『선조실록』 21, 선조 20년 9월 7일.

64) 『선조실록』 21, 선조 20년 10월 20일.

65) 『선조실록』 21, 선조 20년 10월 22일.

66) 『선조실록』 21, 선조 20년 12월 22일.

67) 『선조실록』 22, 선조 21년 3월 4일.

갔다.⁶⁸⁾ 이렇게 하여 제1차 통신사 파견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그런데 다치바나가 상경시 인동과 상주에서, 그리고 서울 체류시 연회석상에서 조선이 망할 날이 멀지 않다고 발언하였는데, 이는 침략전쟁이 추진되고 있는 일본 내부 사정을 표한 것이었다.

다치바나가 귀도하자, 소 요시시게는 1588년 12월에 정사에 博多 승려 겐소[玄蘇], 부사에 소 요시토모[宗義智], 수행원에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로 구성된 제2차 통신사 협상단을 파견하였다.⁶⁹⁾ 이들은 부산 왜관에 머물며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였으나, 조선 정부는 의견만 분분한 채 결정을 내지 못하자 그들은 귀국하고 말았다. 교섭 중에 도주 소 요시시게가 사망하고 소 요시토모가 뒤를 이었다. 그 사이에 쓰시마는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조선의 입조에 대한 독촉을 거듭 받았다.

이에 1589년 6월에 정사 겐소, 부사 소 요시토모, 하카다 상인 시마이 소시쓰[島井宗室] 등 25명으로 구성된 제3차 협상단이 들어와 李德馨이 선위사로 임명되어 맞이하였다.⁷⁰⁾ 조정의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선조는 강경하게 반대하였다. 그러던 선조는 8월 4일에 파도의 험난함을 이유로 계속 거절한다면 우리를 의심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방책을 제의하였다. 즉, 저들에게 답하기를 왜변을 일으킨 五道·平戶島の 도주와 괴수, 왜적을 인도한 사화동, 그리고 납치된 사람을 보내도록 하면 어떠할지에 대해 대신, 비변사, 예조는 충분히 의논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다.⁷¹⁾ 이는 이미 1587년 12월에 公州提督 조헌이 “봄에 홍양 경내에 침구한 적의 괴수와 嚮導者를 잡아 보내어 국법을 밝게 보이라”고 상소로 밝힌 바 있어 새로운 제안은 아니다.⁷²⁾ 이에 8월 11일에 대신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쓰시마 사신을 접견할 것을 결정하였다.⁷³⁾ 그리하여 선조

68) 『선조실록』 22, 선조 21년 4월 10·22일.

69) 『선조수정실록』 22, 선조 21년 12월.

70) 『선조실록』 23, 선조 22년 6월 30일.

71) 『선조실록』 23, 선조 22년 8월 4일.

72) 『선조수정실록』 21, 선조 20년 12월.

73) 『선조실록』 23, 선조 22년 8월 11일.

는 8월 28일에 소 요시토모 일행을 접견하여 압송과 송환을 요구하였고 그것을 일본 측이 수락하였다. 마침내 9월 21일 임금이 종2품 이상을 불러 인견한 자리에서 조정의 논의에 따라 통신사를 보내도록 하였다.⁷⁴⁾ 11월 18일에는 통신사 정사에 황윤길, 부사에 김성일, 서장관에 허성을 임명하였다.⁷⁵⁾

조선의 통신사 파견 결정 소식은 宗義智 → 小西行長 → 淺野長政을 거쳐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겐소와 소 요시토모는 야나가와 시게노부로 하여금 적과 · 반민 압송과 포로 송환에 대한 명령을 내리도록 하였다. 시마이 소시쓰와 고니시 유키나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일본은 1590년 2월에 반민 사화동과 적왜 3인, 그리고 孔大元 등 피로인을 조선에 보냈고,⁷⁶⁾ 사화동은 힐문을 받고 성 밖에서 참형되었다. 五道와 平戶島 도주를 보내 주라는 조선 측 요구를 묵살하고 단지 해변인만을 보낸 것이다. 이에 따라 3월 6일에 통신사 일행이 서울을 출발하여⁷⁷⁾ 이듬해 3월에 귀국하였다. 이렇듯 손죽도 사건 때 발생한 피로인 송환은 통신사 파견 결정의 최대 전제조건이었다.

3_ 손죽도 사건의 성격

(1) 豊臣秀吉의 탐색전인가?

손죽도 침략을 기획한 자와 그 배후는 누구이고, 침략군을 단순 노략질을 일삼는 왜구(해적)로 볼 것인가 아니면 막강 정치세력의 휘하에 있는 훈련된 정규군으로 볼 것인가? 이를 기획한 자는 九州 五島 · 平戶島 세력가임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 행위가 이들의 단독 결정인가 아니면 배후세력에 의한 의도된 계산이었는가가 궁금해진다. 통신사 협상시 쓰시마 측은 사화동이 五道인을

74) 『선조실록』 23, 선조 22년 9월 21일.

75) 『선조실록』 23, 선조 22년 11월 18일.

76) 『선조실록』 24, 선조 23년 2월 28일.

77) 『선조실록』 24, 선조 23년 3월 6일.

끌어들여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고 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필자는 일본 정국의 진행 방향을 감지한 유력 세력가가 조총으로 무장한 훈련된 군대를 동원하여 의도적으로 침략 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손죽도 왜변을 해석하고, 이 정보는 곧바로 도요토미에게 제공되어 조선 침략으로 직결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사실은 五道와 平戸島 세력가들이 小西行長·宗義智와 함께 임진왜란 때 제1진으로 도해했던 점이다. 조총으로 무장한 훈련된 군대의 침략 행동은 조선 전체를 깜짝 놀라게 하였고, 그 결과는 조선을 침략하려는 도요토미의 계산을 굳히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도요토미는 1585년(선조 18) 7월에 일본 최고 실권자인 關白이라는 지위를 받았다. 바로 이어 9월에 家臣들에게 入唐 의지를 표명하며 해외 침략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조선 침략 의사가 손죽도 왜변 1년 6개월 전에 처음 표현되었던 것이다.

중국 정벌 계획은 1586년 3월에 大坂城에서 耶蘇會 선교사단에게도 공개되었는데, 이때 도요토미는 선교사단에게 조선과 중국 정벌에 필요한 2,000척의 군선을 만들기 위한 목재를 이미 벌채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 놓았다. 이어 4월에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에게 九州를 평정한 후 조선에 도해하겠다는 계획을 알렸고, 6월에 對馬島主 소 요시시게[宗義調]가 서간과 헌물을 보냈을 때 도요토미는 “조선을 공격하는 병력이 준비되면 파견하여 평정할 예정이니 그때는 충절을 바치도록 하라”고 명령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⁷⁸⁾ 8월에 安國寺 에케이[惠瓊]와 구로다 요시타카[黒田孝高]에게 薩摩藩主 시마즈[島津] 씨 항복 후 명 정복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렸다. 그리고 12월에 豊臣이라는 성을 천황으로부터 부여받으며 그의 집권과 명 정벌 계획은 기정 사실화되었다. 바로 이때 五島領主 우쿠 스미하루[宇久純玄]는 동생을 大坂에 보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豊臣姓 부여와 關白 전임을 축하하였다. 우쿠 스미하

78) 田中敏昭, 1999, 「豊臣政權の日本統合과 對馬島主 宗氏の朝鮮交渉」, 『東西史學』 5, 89쪽.

루는 도요토미로부터 薩摩를 안내하는 데 협조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의 동생은 고니시 유키나가를 대면하면서 도요토미가 薩摩 정벌 의향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이 과정에서 宇久와 豊臣·小西의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졌다.⁷⁹⁾ 그런데 우쿠 스미사다[宇久純定]는 平戸島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마쓰우라[松浦] 씨와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1577년에 화친을 맺었고 그의 손자 우쿠 스미하루는 마쓰우라 시게노부[松浦鎮信]의 딸을 처로 삼을 정도로 양 세력은 매우 밀접한 관계였다.

그리고 이듬해 1587년 2월에 도요토미는 전라도 연해에 해적선을 침입시켜 무력 도발을 감행하도록 했다. 이 점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왜냐하면 일본 전국에 중국을 정복한다는 계획이 선언되고 나서 어떤 사람은 선박을 새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선박을 만들게 하고, 그 밖의 사람은 무기나 탄약을 조달하거나, 유산이나 전답을 처분하여 준비를 갖추는 등 그 열의·공리·배려는 지금까지 일찍이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⁸⁰⁾ 이 점에 대하여 안방준은 「壬辰記事」에서 사화동을 길잡이로 삼아 약간의 배를 보내어 우리나라 병력의 강약을 시험했고, 나사침은 「丁亥日記」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허실을 자세히 관찰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북한에서도 “1586년에 도요토미는 사쓰마 정벌에 앞서 조선 출병 계획을 쓰시마 영주에게 알리면서 조선 국왕의 일본 방문을 요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전라도 흥양과 가리포에 해적선을 침입시켜 무장 도발을 감행하도록 하였다”⁸¹⁾고 파악하였다. 손죽도 왜변을 도요토미가 정권을 잡은 후 조선 침략을 감행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전력을 탐지하기 위한 예비전으로 성격 규정을 내린 것이다.

의도대로 손죽도 왜변이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도요토미는 3월 1일에 직접 군대를 이끌고 大坂을 출발하여 5월 8일 薩摩의 大平寺에서 시마즈 요시

79) 金文子, 1994, 앞의 글, 118쪽.

80) 국립진주박물관, 2003, 『임진왜란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부키, 176쪽.

81) 사회과학원, 1980, 『조선전사』 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54쪽.

히사[島津義久]의 항복을 받고 九州 정벌을 종결지었다. 여기에 五道の 우쿠[宇久] 씨, 平戶島의 마쓰우라[松浦] 씨 등이 동참하였다. 당연히 공상이 내려졌는데, 우쿠 스미하루[宇久純玄]는 도요토미로부터 1만 5,000석 정도의 소유권을 인정받아 大名으로 발전하였다. 도요토미는 薩摩 정벌시 진중에서 처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려 왕에게 일본의 궁궐에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처벌하겠다고 빠른 배를 보내어 전하였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唐國까지 손에 넣을 생각이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인 세력에 本願寺光佐에게 보낸 朱印狀에서도 조선 왕으로 하여금 입조하게 하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쓰시마도 도요토미 세력에 편입되고 말았다. 도주의 사자인 아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가 熊本에 가서 도요토미와 회견하였는데, 도요토미는 조선 출병 및 조선 국왕으로 하여금 일본에 입조하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리하여 9월에 도주 소 요시시게[宗義調]는 조선으로 하여금 조공과 함께 가도입명을 하도록 하였다.

1588년에 도주 자리를 이어받은 소 요시토모[宗義智]는 조선을 드나들며 조공과 가도입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고니시 유키나가의 딸과 결혼한 후 장인에게 일본군이 쉽게 조선에 침입할 수 있는 방법과 그에 알맞은 지식과 기술에 대해서 매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사실을 고니시가 도요토미에게 전하자 대단히 기뻐하며 그들에게 선봉장으로 출진하도록 명령하였다.

조선이 입공을 거절하자, 도요토미는 1591년에 전국의 大名을 京都에 불러 조선 출병을 선포한 후, 가신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平戶島에서 12리 정도 떨어진 名護屋을 조선 침략의 전초기지로 삼았다. 그런데 名護屋 지역은 벽지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고 식량뿐만 아니라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손이 닿지 않은 황무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한반도 출구였던 博多를 선택하지 않고 名護屋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전라도 공략에 있었다. 명호옥~전라도 노선은 바람과 해류를 이용한 최단거리 일본~조선 노선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조선 조정도 조헌이 “조정의 의논은 왜적이 湖海諸島를 침공하리라 하여 영남지방을 버려두고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것은 크나큰 실책인 줄로 압니다”라고 우려할 정도로 전라도 방어에 주력하였다.

(2) 노예무역의 개시탄인가?

왜란 7년 동안 10만 명 가량의 조선인이 납치되어 일본으로 끌려갔고, 그중 상당수가 포르투갈 상인에게 팔려 나갔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노예무역전쟁’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⁸²⁾ 그런데 일본군은 5년 전 손죽도 왜변 때에 수백 명의 조선인을 납치하여 데리고 갔다. 사상 유례없는 대량 납치는 침략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위인가, 아니면 노예무역을 위한 계산된 행위인가가 궁금하다.

사실 일본인의 조선인 납치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멀리는 신라와 고려 때부터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1429년(세종 11)에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朴瑞生은 왜적들이 일찍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우리 인민을 붙잡아 노비로 삼고 혹은 먼 나라에 轉賣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행 길에 정박하는 곳마다 잡혀 간 사람들이 다투어 도망해 오려고 해도 그 주인이 枷鎖를 하고 굳게 가두어서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⁸³⁾ 손죽도 왜변 직전에도 납치행위가 있었는데, 1573년에 河東 사람 9명이, 1576년에 康津 사람 10명이 왜적에게 잡혀갔다. 이들 가운데 포르투갈 상인에게 팔려 나간 자도 있었다.

그런데 손죽도 왜변 때에는 10여 명 납치하던 이전과 달리 수백 명을 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중에 상당수가 동남아시아에 팔려 나갔다. 이러한 행위에 적극 가담한 지역은 九州의 平戶島와 그 인근 五島였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납치에 나선 데에는 조선과 거리가 가장 가깝다는 지리적인 요인과 서양과 통교를 하고 있는 長崎를 가까이 두고 있다는 현실적인 요인이 작용하였다. 따라서 九州의 長崎 주변 세력가는 임진왜란 이전부터 조선인을 납치하여 노예무역을 진행했고 그 사실은 조선 인사들에게도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다. 임진왜란 때에도 대규모 납치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으로 보아, 손죽도 왜변과 임

82) 이원순, 1985, 「임진·정유재란시의 조선부로노예문제-왜란 성격 일모」, 『변태섭 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삼영사.

83) 『세종실록』 46, 세종 11년 12월 3일.

진왜란의 전개양상 상당부분이 九州 세력가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손죽도 왜변 당시 일본 침략군은 수백 명에 이르는 조선 수군과 양민을 납치하여 일본으로 끌고 갔다. 그 가운데 일부는 쇄환되었고, 일부는 동남아에 팔려 나갔다. 그런가 하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본에 잔류한 사람도 있었다. 이 네 가지 경우를 하나씩 살펴보겠다.

① 쇄환자

쇄환인의 숫자와 쇄환 시기에 대해 자료마다 약간 차이가 나고 있으니, 하나씩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申欽은 “1589년(선조 22) 5월에 秀吉이 또 平義智 · 玄蘇 · 世俊 등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와서 孔雀 한 쌍과 말 한 필을 바치게 하고, 포로가 된 우리나라의 변방 백성 金大璣 · 孔大元 등 1백 16인을 쇄환하는 동시에 본국의 叛民 沙火同과 정해년의 賊倭 緊時要羅 · 三甫羅 · 望古時羅 등 3인을 묶어 보내면서 말하기를 ‘入寇했던 일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그것은 바로 귀국의 반민 사화동이 五島의 왜인을 유혹하여 변방의 요새를 약탈한 것인데 지금 묶어 보낸다’ 하며 간절하게 使者를 보내 주기를 청하였다”⁸⁴⁾고 하여, 1589년 5월에 116명이 쇄환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선조수정실록』 선조 22년 7월조에서는 “일본국 平秀吉, 平義智, 玄蘇 등이 본국의 포로 金大璣 · 孔大元 등 1백 16인을 쇄환하고 또 叛民 沙火同 및 정해년의 賊倭 緊時要羅 · 三甫羅 · 望古時羅 등 3인을 포박하여 보내며 말하기를, ‘入寇한 일은 우리는 모르는 것이고, 곧 귀국의 반민 사화동이 五島의 왜인을 유인하여 邊堡를 약탈한 것이므로 지금 잡아 보내어 귀국의 처치를 기다립니다’ 하고, 이어 우리 使者가 나라에 와서 修好해 주기를 간청하였다”⁸⁵⁾고 하여, 1589년 7월에 116명이 쇄환되었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李恒福은 “신이 庚寅 연간에 비변사의 낭관으로 있었는데,

84) 『象村集』 56, 志, 「壬辰倭寇構變始末志」.

85) 『선조수정실록』 22, 선조 22년 7월.

그때에 賊酋 秀吉이 우리에게 통신사를 요청하면서 우리나라의 叛民인 沙火同 및 五島의 賊倭로서 누차 우리의 변경에 入寇했던 信三甫羅, 緊時要羅, 望古時羅 등 세 倭人을 결박하여 보내고, 인하여 다시 우리 백성들로서 포로로 잡혀간 남녀 1백 30여 명을 쇄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쇄환된 백성들 가운데 金大璣, 孔太元 등 2인은 제법 영리하여 문자를 알았고, 스스로 五道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그 島酋의 행위와 토지의 肥瘠과 人民의 多少와 風俗, 形勝 등에 관하여 매우 자상하게 말해 주었으므로, 지금까지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⁸⁶⁾고 하여, 1590년(선조 23)에 130명이 쇄환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1590년은 “진도의 거민 沙乙火同이 왜국에 투항하여 그들이 노략질하는 데 嚮導 노릇을 해 왔는데 일본에서 그를 쇄환시켜 왔으므로, 상이 인정전에 나아가 獻俘禮를 거행했다”⁸⁷⁾는 『실록』 기사로 보아, 2월 28일임에 분명하다.

이렇게 보면, 시기에 대해 1589년 5월, 1589년 7월, 1590년 2월 28일 등이 보인다. 이 중에서 통신사를 임명해 놓고 있던 1590년 2월 28일이 쇄환 날짜로 추정된다. 조선은 이들의 쇄환을 확인한 후 통신사를 출발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인원에 대해 116명, 130명이 보인다.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정확한 숫자인가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다. 많게는 130명, 적게는 116명이 쇄환된 셈인데(80명, 160명이라는 설도 있음), 그 가운데 金大璣와 孔太元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은 조선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김대기는 쇄환 즉시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1591년(선조 24) 3월에 김대기를 조사한 최립은 하교를 받고 10월 24일에 선조에게 倭情을 보고하였다. 그는 奏本에서 김대기가 “畠山殿州라는 이름의 그쪽 지역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국왕이 전함을 대대적으로 갖추고 금년에 大明을 쳐들어 갈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關白 平秀吉이 군대를 일으켜 諸島 60여 州를 병탄하였고, 琉球와 南蠻의 諸國도 모두 복종하며 귀의해 왔다. 그런데 嘉靖 연간에 사

86) 『白沙集』別集 1, 啓辭, 「舟師事宜啓」.

87) 『선조실록』 24, 선조 23년 2월 28일.

신을 보내 조공하려고 했을 때 대명이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대로 원망하며 한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품어 왔다. 그래서 명년 3월 사이에 대명으로 쳐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병선이 지나가다 보면 혹 귀국의 정내를 소란스럽게 할 염려도 있을 듯싶다”고 진술하였다고 보고하였다.⁸⁸⁾ 김대기가 진술한 점에 대해서 柳成龍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유성룡은 “신이 또한 먼저 항목에서 말한 쇄환인 김대기 등이 진술한 말을 참조해 보면, 지난해 6월경 그곳에서 들은 것이니, 이른바 중국에 쳐들어가고자 한다는 내년 봄은 바로 금년을 가리키는데 이미 맞지 않았습니다. 이어 倭僧과 쓰시마의 平義智가 와서 공갈하고 으름장을 놓은 것에 의하면 실은 금년 5, 6월경인데, 쳐들어오는 시기는 또 내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앞뒤 말이 번거롭게 자주 변하여 터무니없는 듯하니, 공갈하여 오직 간악한 꾀를 이루려는 데 뜻이 있는 것은 더욱 확실한 듯합니다.”⁸⁹⁾고 하면서, 조선을 거쳐 명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名護屋에 전함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김대기의 증언을 도요토미의 사기극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당시 여러 관료들에게 나타났었다.

공태원(혹은 孔大元)은 손죽도 왜변 때 왜인에게 납치되었다가 풀려 돌아와 임진왜란 때에 좌수영 鎭撫로 참전하였고, 이순신 곁에 있으며 통역을 맡았고 왜정을 전해 주었다. 1593년 3월에 이순신 함대는 당포 해전에서 일본군 2명을 나포했다. 이를 심문한 사람이 일본말을 잘 아는 공태원이었다. 공태원은 하루 종일 심문했다. 한 명은 宋古老(宗五郎)로 나이 27이고 약간 글자를 알고, 또 한 명은 要沙汝文(與左衛門)으로 나이 43이었다. 이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은 出雲 출신으로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중 바람을 만나 표류하다가 잡혔기 때문에 일본군의 동정을 자세히 모른다고 발뺌을 하자 처형해 버렸다.⁹⁰⁾ 그의 통역 일은 1594년 5월 4일에도 있었다. 경상우수사의 권관이 이순신에게 와서 “왜적 3명이 中船을 타고 楸島에 온 것을 만나 붙잡아

88) 『簡易集』 1, 奏, 「辛卯奏十月二十四日奉教製」.

89) 『西厓集』 3, 奏文, 「陳倭情奏文辛卯」.

90) 『李忠武公全書』 3, 狀啓, 「討賊狀」.

왔다”고 하자, 이순신이 압송해 와서 심문하도록 하였는데, 공태원이 통역을 맡아 “왜적들이 바람을 따라 배를 몰고 본토로 향하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 배를 조종할 수가 없어 떠다니다가 이 섬에 댈 것이라고 하였다”고 전하였다.⁹¹⁾ 그리고 『난중일기』에 따르면, 그는 1595년 7월 14일에 이순신이 한산도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좌수영에서 들어와 이순신 가족 소식을 전해 주었고, 10월 21일에는 몹시 싸늘한 바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순신의 부름에 불려가 왜적의 정세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1596년 1월 7일에는 항복 왜인 5명에 대한 통역자로 뽑힌 적도 있었다.

② 매매자

손죽도 사건 때에 납치된 사람 가운데 南蠻에 팔려간 사람도 있었다. 일본에서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南蠻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말레이반도와 필리핀을 점령하였다. 일본인은 납치 조선인을 포르투갈인이나 스페인인에게 팔아 가가는 중국(절동과 절서)이나 동남아, 멀리는 유럽으로 팔려갔고 일본으로 되팔려온 사람도 있었다.⁹²⁾ 팔려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상당수 되었던 것 같다. 통신사 파견의 전제 조건으로 납치인 송환을 조선에서 강력히 주장하였기 때문에 쓰시마는 팔려간 사람들에 대한 송환도 수행하였다. 그런데 그 실적이 미미하였던지 金誠一은 쓰시마 측에 “여러 섬에 공문을 내려 보내 아직까지 잔류한 포로들을 찾아 돌려보내라고 하였소. 그리고 곧이어 남만에서 쇄환한 우리 백성 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내 주었소. 그뿐 아니라 그 아드님을 쓰시마까지 보낸다고 하니 우리는 족하의 은혜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소.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바가 어찌 각 섬에 잔류한 자뿐이겠소? 남만으로 팔려간 사람들까지 차례로 모두 돌려보내 주시도록 한다면 더 더욱 고맙겠소”⁹³⁾라고 하문을 분발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91) 『李忠武公全書』 6, 『亂中日記』 2, 1594년 5월 4일.

92) 『重峯集』 8, 疏, 「請斬倭使疏辛卯三月十五日」.

93) 『鶴峰集』 5, 書, 「擬與副官平調信」.

전매된 사람 중에 쇄환된 사람 외에 도망쳐 나온 사람도 있었다. 전라도 좌수영 鎭撫였던 金介同과 李彦世가 그들인데, 두 사람 가운데 이언세는 長興 출신이었다. 그는 손죽도 싸움에서 왜구에게 잡혀가 五島에 머물다가 南蠻에 팔려갔다. 배를 타고 주야 40일을 가서야 중국의 廣西 香山縣 땅에 닿았다. 한 배에 탄 중국 상인에게 물어서 그곳이 명나라 지방인 것을 알았다. 그는 동반자인 김개동과 함께 밤을 타 도망쳐 그 지방 知縣에게 호소하니 지현이 처음에는 蠻인이 올린 告狀이라고 하여 팽개쳐 버리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자 며칠을 울부짖으니 그제서야 조사 심문하였다. 이언세는 글을 좀 알았는데 ‘朝鮮國의 長興 사는 사람으로, 해전을 하다가 왜적에게 사로잡혀 오래간 배에 넘겨졌다’고만 썼다. 그것을 본 지현이 南雄府에 압송하니 三司官이 그 문초에 의거, 북경으로 이송했다. 그때 마침 5월 20일에 서울을 출발한 謝恩使 右議政 柳堧이 북경에 도착하였으므로, 그 사행과 같이 11월 12일에 서울에 돌아오게 되었다.⁹⁴⁾

이들은 돌아와 사화동의 부역, 납치자와 납치선의 정황 등 중요한 사실을 조선에 알렸다. 또한 이들은 임진왜란 때 좌수영 수군으로 참전했다. 부산포 해전에서 좌수영 우후 이몽구가 일본군 두 명의 목을 베었다. 그중 한 명은 본래 왼쪽 귀가 없었다. 이를 본 김개동과 이언세는 “소인을 (정해년에) 잡아간 왜인은 본시 왼쪽 귀가 없었는데, 이제 왜인의 머리를 보니 얼굴이 그와 같으며 이 왜인은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 두목이 되어 도적질을 일삼고 사람 죽이기를 즐겨 하였다”고 말했다.⁹⁵⁾

③ 참전자

손죽도 왜변 당시 납치된 사람 가운데 임진왜란 때에 일본군과 함께 들어와 통역관과 길잡이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 낮선 이국 조선 땅에서 전쟁을 원할

94) 『惺所覆瓿藁』 26, 附錄, 「鶴山樵談」.

『선조실록』 22, 선조 21년 5월 20일.

『선조실록』 22, 선조 21년 11월 12일.

95) 『李忠武公全書』 2, 狀啓, 「釜山破倭兵狀」.

하게 수행하기 위해, 일본은 현지 사정에 정통하고 언어를 소통할 수 있는 안내원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납치인을 현지 안내원으로 양성하였다. 현지 부역자만으로는 원활한 전쟁 수행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준비작업이었다.

전쟁에 참여했던 일본 무장들의 일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기 전부터 조선어 통역사를 양성하였고 그들을 데리고 조선에 들어왔다고 한다.⁹⁶⁾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역관으로 양성하였겠는가 궁금하다. 일본인으로 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조선인으로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 중에서 손죽도 왜변 때에 납치한 조선인에게 일본어 교육을 시켜 통역관으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본은 조선 곳곳을 안내할 길잡이로 손죽도 왜변 때에 납치한 조선인을 앞세웠다. 이 일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조현이 「비왜지책」에서 “연해 여러 진의 정박할 곳을 외국 사람은 실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향도하는 사람을 얻어야만 온전하게 돌아갔으며, 그 밖에 널리 정박한 배는 도서와 해변에 많이 걸쳐서 부서지고 없어진 것이 매우 많으니 왜적의 큰 근심이었다. 그러므로 늘 흑산도, 추자도 등의 섬에서 전복잡이를 하는 어부를 포로로 얻으면 큰 보배로 여기어 전복을 많이 주고 향도인으로 삼고 있습니다”고 말한 바와 같이, 굴곡이 심하고, 섬이 많고, 갯벌이 넓고,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한 조선 해안을 일본인은 정보원 없이는 들어올 수 없었다. 이처럼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현지 정보 수집과 정보원 확보를 위해 손죽도 왜변 때에 사상 유례없는 납치를 자행하였던 것이다.

④ 잔류자

통신사 협상시 쓰시마는 100명 이상의 포로를 송환해 주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일본에서 포로를 송환할 때에 바빠 모았던 관계로 낙오되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통신사들이 일본에 와서

96) 김문자, 2008, 「16세기 동북아 국제질서 변동과 전쟁」, 『일본역사연구』 27, 226쪽.

들은 바에 따르면, 포로 송환 상황이 본국에서 들은 내용과 대체로 같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따르면, 송환되지 못하고 일본에 잔류한 조선 포로들이 상당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九州지역 그리스도교 신자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593년에 長崎에서 그리스도교 세례를 받은 100명 중에 과반수는 조선인 노예였다고 한다.⁹⁷⁾ 이 50명 이상의 조선인 세례자 가운데 1년 전 임진왜란 때에 납치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이전 손죽도 왜변 때에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일본에 잔류하여 17세기 전반에 가서야 존재가 확인된 사람도 있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1634과 1642년에 平戸島에서 작성된 포로인과 그 가족 관계를 기록한 「平戸町・構瀬浦町人數改帳」, 「平戸町人別生所糺」이라는 문서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손죽도 왜변 때에 납치되어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조선인이 있었다. 이는 甚五左衛門의 부인으로 7살 때인 1587년에 平戸島에 들어왔다. 문서에 부모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혼자 건너왔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당시 유년들도 대거 납치되었음에 분명하다. 이 여자는 3세 연상의 甚五左衛門과 결혼하여 平戸島 영의 相ノ浦에서 어민으로 생활하다 1636년에 長崎로 이주하였다.⁹⁸⁾

II. 맺음말

1555년 을묘왜변 이후 소규모 내침을 자행하던 일본인들은 1587년에 손죽도 왜변을 일으켜 또다시 대규모 침략을 감행했다. 손죽도 왜변은 지방 세력가에 의해 노략질을 일삼던 이전의 왜변과는 달리 새로이 일본 집권자로 등장한 도

97) 中村質, 1992, 「秀吉 政權과 壬辰倭亂의 特質」, 『아시아문화』 8, 23쪽.

98) 中村質, 1992, 「壬辰丁酉倭亂の被虜人の軌跡」, 『한국사론』 22, 174쪽.

요토미와 연결된 규슈 세력가에 의해 자행된 임진왜란의 전초전 성격을 띠었다. 총통과 조총으로 중무장한 침략군 앞에 전라 좌우수군은 무기력하게 무너졌지만, 녹도만호 이대원은 중과부적에도 불구하고 손죽도 해전에서 전력웅전하다 장렬하게 순국했을 뿐만 아니라 사족들은 직접 거병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 호남 사족들은 무장단을 조직하여 자위체제를 다졌고, 연해민들은 이대원을 애모하는 마음을 널리 가졌을 뿐더러 정부는 이순신을 전라좌수사로 보내는 등 전라도 해안지역 방어에 주력했다. 이는 호남 연해민들의 대일의식을 고조시키고 호남 연해지역의 방어력을 증대시켜 임진왜란 당시 전라수군이 조선수군의 주력군으로 전란극복의 원동력이 되고 호남의병이 개전 초기에 거병하였던 배경이 되었다.

전라도 사족들은 왜적을 물리치기 위해 거병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정여립인데, 정여립의 거병은 2년 8개월 뒤 그가 모반을 도모하려고 한 단서로 서인에 의해 규정되어 기축옥사의 결정적 빌미가 되었다. 이에 따라 거병을 요청한 전주부윤 남언경도 기축옥사 때에 처벌을 받았다. 큰 전란을 겪지 않았던 당시까지 자의적인 거병은 쉽게 용납되지 않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특히 동인의 공세에 밀려 극심한 수세에 처한 서인은 동인 인사의 거병에 매서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며 옥사를 확대하고 마침내 정권을 차지하였다. 이 외의 재지사족들도 자구책 마련에 긴박하게 움직였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전란에 대비하는 사람들이 속출하였는데, 나주 출신 김천일, 남원 출신 안영, 옥과 출신 유팽로, 충청도 출신 조현 등이 그들인데, 이들은 모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4~5월경에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하였다. 그들이 개전한 지 1개월도 안 되어 발 빠르게 의병진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전란 전부터 준비한 결과였다.

왜군들은 퇴각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수백 명의 조선 인질을 연행해 갔다. 이들을 동남아시아에 매각하는 노예무역을 단행했고 임진왜란 때 조선 침략의 향도로 활용했다. 매매자 가운데 일부는 탈출하여 귀국한 후 중요한 왜정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로인 쇄환은 경인통신사 협상의 카드로 활용되어 100여 명이 넘는 숫자가 쇄환되었는데, 일부는 왜란 당시 이순신 옆에서 통역과 정보

요원으로 활약하였다. 또한 일부는 현지에 잔류하여 17세기에 가서야 존재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손죽도 왜변은 일본이 조선 침략을 위하여 방어태세를 파악하고 정보·요원을 확보하기 위한 예비전 성격을 띠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사료〉

『簡易集』, 『健齋集』, 『錦湖遺事』, 『亂中雜錄』, 『眉巖日記』, 『白沙集』, 『四留齋集』, 『象村集』, 『西厓集』, 『惺所覆瓿藁』, 『松江集』, 『松川集』, 『藥泉集』, 『研經齋全集』, 『鰲峯集』, 『月坡集』, 『隱峯全書』, 『李忠武公全書』, 『旌忠錄』, 『朝鮮王朝實錄』, 『重峯集』, 『芝峯類說』, 『鶴峰集』, 『海東釋史』.

〈단행본〉

국립진주박물관, 2003, 『임진왜란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부키.
 무라이 쇼스케 지음, 이영 옮김, 1998, 『중세 왜인의 세계』, 소화.
 사회과학원, 1980, 『조선전사』 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李殷相, 1980, 『高興 雙忠祠 事蹟』, 민족문화협회.

〈논문〉

金德珍, 2009, 「李大源과 鄭運, 그리고 雙忠祠」, 『海洋文化研究』 2.
 金文子, 1994, 「島井宗室과 1590년 通信使 派遣問題에 대해서」, 『祥明史學』 2.
 김문자, 2008, 「16세기 동북아 국제질서 변동과 전쟁」, 『일본역사연구』 27.
 米谷均, 2002, 「豊臣政權期における海賊の引き渡しと日朝關係」, 『日本歴史』 650.
 米谷均, 2003, 「後期倭寇から朝鮮侵略へ」, 『天下統一と朝鮮侵略』, 吉川弘文館.
 우인수, 1988, 「정여립 역모사건의 진상과 기축옥의 성격」, 『역사교육론집』 12.
 윤성익, 2006, 「後期倭寇로서의 乙卯倭變」, 『韓日關係史研究』 24.
 이원순, 1985, 「임진·정유재란시의 조선부로노예문제-왜란 성격 일모」, 『변태섭박사 화갑기념사학논총』, 삼영사.
 田中敏昭, 1999, 「豊臣政權の日本統合과 對馬島主 宗氏の朝鮮交渉」, 『東西史學』 5.
 中村質, 1992, 「秀吉 政權과 壬辰倭亂의 特質」, 『아시아문화』 8.
 中村質, 1992, 「壬辰丁酉倭亂の被虜人の軌跡」, 『한국사론』 22.

[ABSTRACT]

A Study on Japan's Invasion of Sonjukdo in 1587

Kim, Deokjin

In 1587 Japan which had executed small-scale invasions of Korean territory carried out a wide-scale invasion of Sonjukdo of Heungyang, Jeolla-do. The invasion of Sonjukdo wa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invasions by Japanese local power-holders in that it was a precursor to Imjin Waeran, invasions executed systematically by Toyotomi Hideyoshi, the newly-appeared leader, and his allies who exerted influential power in Kyushu. Accordingly, it had a great impact on the governing of Joseon as well as the governing of the community of Jeolla-do.

The Jeolla navy was hopelessly defeated by the invaders armed with firearms and hundreds of Joseon people were kidnapped to Japan. Lee Dae-won, Manho of Nokdojin, died gloriously while fighting bravely against the invaders at the sea of Sonjukdo. In the wake of this, those living at the coast of Jeolla-do lamented the death of Lee Dae-won and enhanced their anti-Japanese sentiments. In addition, they reinforced defense power and strengthened the Jeolla navy, leading it to grow as the main force of the Joseon navy which played the leading role in fighting against Japan. Besides, Yangbans in Jeolla-do organized the righteous army called Uibyeong to defend their native places. Jeong Yeo-rip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Yangbans who organized Uibyeong. Jeong Yeo-rip's organization of the righteous army became the decisive

cause of the accusations of high treason of 1589 when it was defined by Westerners as the clue of his attempt to raise insurrection two years and eight months after the organization. As Joseon had no experience of a large-scale war until then, the voluntary organization of an army was considered to be a very dangerous action and was not easily accepted. Westerners who had been suppressed by Easterners' aggressiveness made suspicious glances at the righteous army organized by one of Easterners, expanding the accusations and finally gaining the power. In addition, Yangbans in Jeolla-do organized armed groups and made self-defense system, moving under high tension. Lots of people prepared for the potential invasion from Japan. Kim Cheon-il from Naju, Ahn Yeong from Namwon, Yu Paeng-ro from Okgwa, Jo Heon from Chungcheong-do also made preparation for the invasion. After Imjin Waeran broke out, they organized righteous armies between April and May and gave a great blow to the Japanese army. As they made preparations for the war, they could rapidly organize righteous armies in less than one month after the break out of the war.

Japan's invasion of Sonjukdo stirred unrest not only in Jeolla-do but also all over the nation. The news that the war was impending was spread throughout the nation, causing the public to become agitated. In response, the government punished the commanders of the Jeolla navy for failing to defeat the Japanese soldiers who invaded Sonjukdo. Besides, it reinforced defenses in Jeolla-do. It ordered the province to enhance military power by constructing a fortress and repairing military equipments. It also sent brave commanders to the province, including Lee Sun-sin as naval commander of left Jeolla-do and Jeong Un as Manho of Nokdo. Although the Joseon government had focused on strengthening defenses along the coast of Jeolla-do, Japanese military

chose Busan, which they had not invaded recently, as the first place they attacked during Imjin Waeran instead of Jeolla-do, overpowering Joseon military at the beginning of the war. However, Lee Sun-sin and Jeong Un successfully led Joseon navy, playing leading roles in reversing the tide of the war.

Through the invasion of Sonjukdo, Japan wanted to collect information for its future wide-scale attack on Joseon and assess Joseon's military power. Therefore, Japanese military invaded Joseon territory through Sonjukdo of Heungyang and moved into Garipo of Gangjin, taking hundreds of Joseon hostages to Japan. Some of them were sold as slaves to Southeast Asian nations, some used as guides during Imjin Waeran, some came back to Joseon and some had to live in Japan though they wanted to come back. Disporting the hostages was discussed during the negotiation over Joseon's dispatch of its emissary called Tongsinsa to Japan. After refusing persistently Japan's strong request for Tongsinsa, Joseon finally allowed the dispatch of Tongsinsa on the premise that Japan had to repatriate Joseon hostages. As a result, about 100 hostages returned home. In addition, out of the people sold to Southeast Asia, a few escaped and came back. These people worked as Lee Sun-sin's interpreters or intelligent agents during the war. Thanks to the important information on Japanese military provided by them, Lee Sun-shin could defeat Japanese soldiers on the southern coast.

keywords

Jeolla-do, Sonjukdo, Lee Dae-won, Imjin Waeran, Tongsinsa

냉전체제 형성기(1945~1948)

中華民國의 한국인식

- 국민당 언론의 한국 기사를 중심으로 -

이재령 |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부교수

I. 머리말

戰後 韓國은 美·蘇에 의해 38도선을 경계로 분할 점령됨으로써 민족과 국가의 장래가 외세에 의해 결정되었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정치 이념과 통치체제를 이식시키는 동안 중국은 한국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國共內戰으로 전후처리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그 결과 항일전쟁과정에서 긴밀했던 한·중 관계는 점차 멀어졌고, 한국 독립과정에 중국은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중 양국의 오랜 역사적 유대관계와 지리적 접근성으로 볼 때 전후 한국문제에 관한 중국인식은 그 이후의 상호관계를 결정짓는 토대가 되었다. 현재 양국의 폭넓은 경제·문화 교류에도 불구하고 정치·외교·군사 분야에서 명확한 한계를 안고 있다. 이것은 전후 남북분단에 기인한 것으로, 한·중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냉전체제 형성기 중국의 對韓認識을 밝혀야 한다.¹⁾

※ 투고일: 2010년 4월 14일, 심사일: 2010년 5월 11일,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27일.

전후 한·중 양국의 상호 인식과 교류는 남한과 북한, 중국대륙과 타이완으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서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와 지배체제에 기초한 냉전 구도가 만들어짐으로써 경직되었다. 1978년 중국대륙이 개방되고,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 비로소 폭넓은 교류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는 일제강점기 중국의 國共兩黨과 한국임시정부 및 독립운동세력 간의 군사·교육·재정 지원을 통한 상호 협력과 연대활동에 관심이 모아졌다.²⁾ 또한 1931년 7월 한·중·일 세 나라가 서로 얽힌 萬寶山事件과 조선화교배척사건처럼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각국의 정파 및 언론의 현실 인식을 통해 서로를 어떻게 기억하고 바라보았는가를 규명하였다.³⁾ 근래에는 항일을 위한 무장투쟁과 상호 연대를 중심으로 1940년대의 한·중 관계가 집중 검토되었다.⁴⁾ 그렇지만 20세기 중반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시발점인 남북 분단에 관한 중국의 인식 및 대응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미·소 군정기간은 한반도에 독립정부를 세우기 위한 국제 논의와 내부의 민의수렴 및 통치 시스템의 구축과정이었다. 세부적으로는 미·소공동위원회

- 1) 일반적으로 한반도에서의 미·소 대립에 영향을 미친 냉전이 출현한 시기는 유럽에서 냉전을 공식 선언한 트루먼 독트린이 선포된 1947년 3월 12일보다 앞선 1946년 초부터 출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완범, 2007, 『한국해방 3년사』, 태학사, 163쪽. 이 글에서 '냉전체제 형성기'는 종전 후 미·소 양국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고 자국의 영향력 아래 별개의 정부를 조직함으로써 분단이 고착화된 시기(1945. 8~1948. 9)를 의미한다.
- 2) 기존 연구는 한국독립운동사의 일부로 진행되었다. 石源華, 1995, 『韓國獨立運動與中國: 1919~1945』, 上海人民出版社; 石源華, 1996, 『韓國獨立運動史新論』, 上海人民出版社.
- 3) 孫乘會, 2003, 「萬寶山事件과 中國共產黨」, 『東洋史學研究』 第83輯, 東洋史學會; 李在鈴, 2004, 「南京國民政府시기 中國의 韓國認識-萬寶山事件에 관한 여론동향을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第31輯, 中國史學會.
- 4) 장세운, 1993, 「解放日報에 보도된 華北朝鮮獨立同盟의 활동」, 『五松李公範教授停年紀念東洋史論叢』, 지식산업사; 장세운, 1995, 「항일전쟁기 중국공산당의 한국독립문제 인식과 대응」,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김지훈, 2006, 「중일전쟁시기 『解放日報』의 한국인식」, 『史林』 제25집, 수선사학회; 이재령, 2007, 「抗戰時期(1937~1945) 國共兩黨의 韓國觀-『中央日報』·『新華日報』를 중심으로」, 『中國學報』 第56輯, 韓國中國學會 등이 있다.

(이하 미·소공위로 약칭)와 유엔한국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제헌의회에서는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헌법과 각종 제도가 만들어졌으며, 집권을 위한 정치세력 간 실력다툼이 치열하였다. 이 시기의 한·중 관계 연구는 종전 이후 중국에 남아 있던 임정세력과 독립군의 처리 및 在中韓人의 귀환문제 등에 집중되었다.⁵⁾ 최근 대한민국의 정부수립과 그 과정에 나타난 국내 정치세력의 갈등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新中國 건설의 반면교사로 삼으려 했던 중국의 對韓認識에 주목하고 있다.⁶⁾

대체로 국가 간의 교류·접촉과 상호인식은 늘 우호관계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월이나 차별의 위계의식이 깔려 있기 마련이다. 이제껏 중국 학자들은 20세기 전반의 한·중 관계를 전통적 中華主義에 기초한 ‘手足’, ‘脣齒’, ‘同病相憐’, ‘兄弟’ 등으로 표현하며 뿌리 깊은 연대의식을 강조하였다. 특히 일제침략기 중국 내의 한국 독립운동과 중일전쟁에서의 공동투쟁을 우호협력의 실질적 연대로 해석하였다.⁷⁾ 반면 우리 학계는 독립운동과정에서 보여준 중국의 人的·物的 지원과 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내재된 중화의식의 지속과 변용을 지적하고 그로부터 발생된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⁸⁾

종전 이후 한·중 관계의 이해는 한국 독립을 둘러싼 국제 논의와 미·소의 분할점령 및 군정실시, 신탁통치에 관한 국내 정치세력의 대립, 미·소공위와 유엔한국위원회의 활동 및 한계, 남한 총선거와 대한민국 정부수립 등 정치이슈를 중심으로 중국의 對韓認識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

5) 염인호, 1996a, 「해방후 한국독립당의 중국 관내지방에서의 광복군학군운동」, 『역사문제연구』 1, 역사문제연구소; 염인호, 1996b, 「해방후 한국독립당의 중국동북지방 진출과 재중국독립당의 정책(45. 8~47. 2)」, 『역사교육』 60, 역사교육연구회; 정병준, 1998, 「1945~48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중국내 조직과 활동」, 『사학연구』 55·56합집(신재홍정년논문집), 한국사학회.

6) 임상범, 2008, 「중국의 남한 정부수립에 대한 인식」, 『史叢』 제67집.

7) 胡春惠 著, 辛勝夏 譯, 1978, 『中國안의 韓國獨立運動』, 단국대학교출판부; 石源華, 1995, 앞의 책; 石源華, 1996, 앞의 책; 崔丞, 1992, 『近代東北亞國際關係史研究』, 東北師範大學出版社; 黃定天, 1999, 『東北亞國際關係史』, 黑龍江教育出版社.

8) 박명희 외, 2008, 『근현대 전환기 중화의식의 지속과 변용』, 단국대학교출판부.

으로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자신들이 배제된 채 분단으로 치닫는 과정을 지켜본 중국 언론의 시각을 통해 냉전체제에 관한 초기 인식을 확인해 보는 것이다.⁹⁾ 왜냐하면 미·소의 분할점령으로 시작된 남북한의 대결구도가 전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였고, 아직까지도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본구도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전후 한국 분단과 미군정에 관한 중화민국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냉전형성기 한·중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¹⁰⁾ 미군정 시기 남한의 좌우분열과 독립방법을 둘러싼 관련 기사를 통해 동시대 중국인들이 동아시아의 냉전요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시 중국의 대표적 민영지로 天津에서 발행된 『大公報』¹¹⁾와 민영지이면서 국민당에 의해 上海에서 발행된 『申報』,¹²⁾ 국민당 기관지로 중앙정부의 관영지 성격을 띤 『中央日報』의 한국 관련 보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요컨대 동시대 중화민국 언론을 대표한 『中央日報』·『申報』·『大公報』에 실린 한국과 관련된 보도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한반도의 분단과 해방정국에 대한 중국 여론을 파악하려는 것이다.¹³⁾ 종전 직후 국민당의 영향력이 절

9) 이 시기 중국 언론의 한국관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면 국공 양당에 의해 발행된 신문은 물론 민영 신문까지 비교 분석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戰後時期 중화민국 정부를 이끈 국민당 신문들을 먼저 분석하고, 『人民日報』·『解放日報』·『群衆』 등의 공산당 언론은 지면관계상 별도의 글을 통해 비교 분석할 것이다.

10)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李在鈴, 2010, 「美軍政時期(1945~1948) 中國國民黨 言論의 對韓認識-『申報』를 中心으로」, 『東洋學』 第47輯 참조.

11) 일본의 패망 이후 『大公報』는 1945년 11월 1일 上海에서 復刊되었고, 한 달 뒤 본래 근거지인 天津에서 신문이 재발행되어 1949년 1월 15일까지 계속되었다. 周雨, 1993, 『大公報史』, 江蘇古籍出版社, 54~60쪽.

12) 上海에서 발행된 『申報』는 1928년에 발행부수가 14만 부에 이르는 중국 최대의 민영 일간지로, 1934년 社主人 史量才가 反蔣 성향의 民權保障同盟에서 활동하던 중 국민당에 의해 암살당하였다. 이후 『申報』는 친국민당 성격을 띠었으며, 중일 전쟁 동안에 漢口·香港·上海 등지로 옮겨 다니며 停刊과 復刊을 반복했다. 1945년 말 國民黨의 潘公展과 陳訓愈가 6개월간 관리한 후 1946년부터 정부 소유로 바뀌었고, 1949년 5월 27일 『申報』는 紙齡 第25,599號를 마지막으로 終刊되었다. 宋軍, 1996, 『申報의興衰』,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30~237쪽.

13) 『中央日報』는 국민당 중앙기관지로서 1945년 9월 10일 南京에서 공식 복간되었

대적이었던 만큼 『中央日報』와 『申報』의 시각은 중화민국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표적 민영지로 『申報』와 더불어 오랜 역사와 많은 부수로 영향력이 컸던 『大公報』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 시기의 보편적 韓國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II. 남북분단과 미·소공동위원회

일본의 패망 이후 한반도는 미·소에 의해 분할 점령되어 군정이 실시되었다. 중국에서는 국공 양당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국내경제가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이 시기에 중화민국의 주요 언론들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연대관계를 맺어왔고 항일전쟁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한반도의 미래를 예의주시하였다. 종전 후 중화민국 정부는 한국에서 미·소의 지리적 분할지배를 반대하고 연합국 네 나라, 곧 미국·영국·중국·소련의 공동협의를 거친 자유·독립·통일국가의 건설을 주장하였다. 전쟁기간 동안 연이은 카이로회담, 알타회담, 포츠담회의에서 이미 합의된 전후처리방안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회의가 1945년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미·영·소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참여하였고, 중국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고, 국민당 중앙선전부의 관리와 지도를 받았던 『申報』과 『新聞報』는 1945년 11월 전후로 복간되었다. 方漢奇, 1996, 『中國新聞事業通史』第2卷, 中國人民大學出版社, 987~988쪽.

- 14) 方漢奇 等, 2004, 『大公報百年史』,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98~306쪽. 당시 중국 신문은 기사의 취재와 보도, 신문배포 등의 제반 언론활동이 국민당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신문마다 기사내용에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특정사안의 보도 횟수와 신문지면의 편집방향, 사론 및 분석기사 등을 통해 개별 언론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모스크바 3상회의는 미·소의 타협에 의해 신탁통치를 결정하였고, 중화민국 정부는 “신탁기간을 확실히 정하면 한국의 완전한 독립에 이로울 것”이라며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¹⁵⁾ 아울러 중국의 동북지역에 대한 주권보장과 평화통일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5년간 신탁기간 동안에 미·소 두 나라가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데 반대하였다.¹⁶⁾ 종전 직후 중국이 군사·경제 등 대외역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며 한국문제에 간여할 수 있는 방법이란 託治國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한국 독립과정에 연합국과 함께 참여하는 신탁관리방안이 실현되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¹⁷⁾ 이 때문에 중화민국 정부는 전후 한국문제처리에 있어서 자국까지 포함된 4개국 신탁통치방안을 찬성하면서도 미·소 양국의 분할 지배에 반대하는 이중 태도를 취하였다.

한국에서 반탁운동으로 인한 좌우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미·소는 신탁통치방안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국의 점령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꾀하였다.¹⁸⁾ 이때에 국민당 언론은 신탁통치의 수용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한국 내의 좌우충돌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였다.¹⁹⁾ 우선 『申報』는 반탁운동이 일부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국 독립을 위해 모스크바의 결의를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시위의 자제를 촉구하였다.²⁰⁾ 남한에서 반탁운동을 주도한 李承晩과 金九의 정치노선은 처음부터 서로 달랐다. 이승만은 유엔과 미국에 대한 직접 외교활동을 통해 한반도의 공산화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신속한 독립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²¹⁾ 이를 위해 본인이 직접

15) “我國政府發言人談三強會議託管韓國實有助於獨立”, 『申報』(1945. 12. 30).

16) “韓人反對託治制度”, 『申報』(1945. 12. 30).

17) 이재령, 2006, 「20세기 중반 韓中關係의 理解—韓國獨立에 관한 中華意識의 二重性」, 『中國近現代史研究』 제29집, 101~2쪽.

18) “美擬單獨進行建朝鮮政府”, 『申報』(1946. 7. 7).

19) “韓慶祝獨立紀念 左右派發生衝突”, 『申報』(1947. 3. 3).

20) “韓國人群情憤激反對託管制度”, 『申報』(1945. 12. 31).

21) “李承晩在美爲韓獨立呼吁”, 『申報』(1947. 3. 6).

미국으로 건너가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후원해 주도록 요청하였다.²²⁾

한편 임정 출신의 인사들은 자주적이며 완전한 독립을 주장했는데, 임정 중심의 통일독립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연합국의 지원을 희망하였다.²³⁾ 중국에 머물고 있던 임정대표단은 중·미·영·프·소 다섯 나라에 “임정의 승인, 미·소 점령군의 조기철수, 신탁통치안의 폐지, 4개국의 기술 및 건설 지원” 등을 요청하는 비망록을 보냈다.²⁴⁾ 이처럼 남한정국의 향방은 임정의 ‘자주적 통일정부’ 수립과 이승만의 ‘조기 단독정부’ 수립으로 크게 나뉘어졌다. 독립방안을 둘러싼 남한 내의 정파 간 갈등에 대해 국민당 언론은 한국의 내부 문제라기보다 미·소의 세력대결에 의한 국제문제로 인식하였다.²⁵⁾

訪美活動을 끝낸 이승만은 귀국길에 중국으로 건너가 蔣介石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과 접촉하였다. 이즈음 국민당 신문들은 역사적으로 긴밀했던 한·중 관계를 새삼 강조하고, 앞으로 한국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당연시하였다. 중화민국 관영지 『中央日報』는 “中·韓 양국이 영토를 서로 맞댄 형제의 나라로 지난날 중국의 국민혁명과 조선의 독립운동은 불가분의 관계였으며, 서로 유사한 점이 많아 중국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다”면서 중국이 한국의 미래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로 지리적 접근성과 현실적 영향력을 들었다.²⁶⁾

미·소 균정에 대해 비판적이던 『申報』는 한반도의 분할점령이 한국 민족의 자주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분열시켜 통일독립을 무기한 연장시키고 미·소 관계를 더욱 갈라놓을 것으로 보았다. 더욱이 남북한의 대결구도가 중국 동북지역은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까지도 저해할 것으로 예견하였다.²⁷⁾ 특히 『신보』는 한·중 간의 밀접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북한 공산화의 영향이 곧바로 동북지역에 미칠 것으로 우려하였다. 이런 이유로 다른 국민당

22) “李承晩主張韓南獨實行武裝”, 『申報』(1947. 2. 26).

23) 閔石麟, “聲援李承晩博士赴美呼吁韓國獨立”, 『中央日報』(1947. 1. 3).

24) “韓向五強致備忘錄 呼吁擁護獨立權利”, 『大公報』(1947. 3. 7).

25) “美將發表對韓政策聲明”, 『中央日報』(1947. 3. 23).

26) 馮覃燕, “祝韓國前途光明—迎李承晩先生”, 『中央日報』(1947. 4. 12).

27) “韓國必須獲得獨立—歡迎李承晩博士來華(社論)”, 『申報』(1947. 4. 10).

신문들도 남한의 미군정뿐만 아니라 북한지역의 군비증강과 공산당의 조직 활동, 경제상황 등을 상세히 보도하며 남북한의 정세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웠다.²⁸⁾

미군정에 관하여 『신보』는 전통적 한·중 관계를 근거로 “중국 인민은 三韓의 인민들과 손발처럼 밀접한 관계”이고, 중국과 한국은 “이와 입술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국의 통일독립이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전후 한국문제처리를 주도한 미국의 對韓政策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방임적이라고 비판하였다.²⁹⁾ 그 이유로는 남한 내에서 좌우분열이 격화되고, 북한이 조기에 공산화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이 크다고 본 것이다. 『대공보』도 미군정의 對韓政策을 부정적으로 보았는데, 식민지 경제구조를 해체시키지 못한 결과 남한의 경제부흥에 실패하였고, 정치적 재건 역시 중요한 과제였지만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주된 근거로 미군정이 우익세력에게만 식민시대의 정치적·경제적 특권을 허용한 반면 진보적 민중조직과 운동을 철저히 탄압함으로써 남한 주민들의 거센 저항을 초래했다는 것이다.³⁰⁾ 이처럼 국민당 언론은 미군정의 소극적 혹은 편향적인 점령정책의 결과로 남한 내 정치적·경제적 갈등이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보았다.

본래 미국의 對韓政策은 한반도 남부를 동아시아의 防蘇기지로 묶어두려는 것이 최초의 동기였다. 또 다른 목표는 한국에서 식민지 유산을 뿌리 뽑고 자유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 비취친 미국의 점령정책은 전자만 강하게 부각되었을 뿐 후자를 인식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대공보』는 남한의 군정통치를 통해 미국이 아시아인들에게 민주주의와 평화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이끌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지만 이러한 기회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면서 미국의 민주적 위신을

28) “組織韓國政府麥師表示贊助”, 『申報』(1947. 4. 14); 陸鏗, “韓國人感戴蔣主席”, 『中央日報』(1947. 3. 17).

29) “朝鮮國勢顯露陽光(社論)”, 『申報』(1947. 4. 15).

30) “美國在朝鮮的成績”, 『大公報』(1947. 3. 10).

재확립하려면 점령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¹⁾ 이렇듯 국민당 언론은 미·소 양국의 독점적 한국 지배와 일방적인 군정통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아울러 미·소에 의탁한 한국의 정치세력이 신탁통치의 허용여부로 극심한 분열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對韓認識은 국공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중국 내부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남북한의 대결양상이 격화될수록 자신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1947년 초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기존의 공산주의에 대한 중립태도를 포기하고 적극적인 반공노선으로 전환하였다.³²⁾ 이로부터 한반도는 防蘇을 위한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재인식되어 미·소 대립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미국의 마셜 국무장관은 소련 외무장관에게 “분할지역에서 경제·정치·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고 최후 목적은 興隆한 통일조선을 성립하는 것”이라고 미군정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밝히었다.³³⁾ 이를 위해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미·소공위를 회복하려 했고, 전제조건으로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언론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⁴⁾

한반도에서 분단위기가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당 언론은 미국의 도의상 책임을 거론하였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한국인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미군정의 점령정책과 소련과의 세력대결이 한국을 냉전의 첫 희생자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대공보』는 한국만의 불행이 아닌 인류 전체의 불행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미·소가 먼저 철수방법을 협의해야 하고, 4개국의 전면 협상에 의해 완전한 통일독립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⁵⁾ 『중앙

31) 앞의 글, 『大公報』(1947. 3. 10).

32) 미·소 냉전은 1947년 초 트루먼 독트린의 발표로 시작되었지만 실제 냉전의 개시는 트루먼 대통령이 취임한 1945년 4월 중순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 견해이다. 이우진, 1998, 「미국의 대한반도정책(1945~194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I -해방정국과 미소군정』, 오름, 42쪽.

33) “對韓國問題我國將有表示”, 『中央日報』(1947. 4. 15).

34) “敦促美蘇恢復談判 馬歇爾致函蘇外長”, 『中央日報』(1947. 4. 12).

35) “韓國獨立問題的前瞻”, 『大公報』(1947. 4. 19).

일보』도 미·소 분할정책을 비난하면서 카이로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최대 오류이고 앞으로 해결방안은 연합국 4개국의 전면 협상과 한국 내부의 단결뿐임을 강조하였다.³⁶⁾ 국민당 언론은 카이로회담에서 한국 독립을 처음 약속했던 미·영·중 3국이 도의적 책임을 함께 지고 있지만 중국은 역사적·지리적 관계 때문에 한국의 운명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4개국 협상에 의한 한국 독립’을 주장하였다. 마침내 1947년 4월 16일 중화민국의 王世杰 외교부장이 미국의 마셜 국무장관에게 한국 독립에 관한 중화민국 정부의 기본입장을 전달하였다.³⁷⁾ 중국의 제안은 열강들이 한국 독립의 권리를 존중하여 신속히 군대를 철수시키고 내정 간섭을 하지 않으면 내란을 피할 수 있고, 완전한 평화방안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이전 모스크바 3상회의의 합의에 따라 제1차 미·소공위가 1946년 3월 소집되었지만 시작과 동시에 협의대상이 될 한국의 정당·사회단체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느냐의 문제로 미·소의 견해차가 너무 컸다.³⁸⁾ 그 후 1년여 만인 1947년 6월 25일 미·소공위가 다시 재개되었지만 미·소는 여전히 종전 주장만 되풀이하여 미·소공위의 참여범위가 남한 정파의 주요 갈등요인으로 작용하였다.³⁹⁾ 예컨대 남한의 정당대표로 안재홍·여운형·장덕수·박헌영 등이 참석했지만 실제 영향력이 큰 이승만과 김구는 불참하여 정치적 분열이 심하였다. 이러한 남한 내 정파의 갈등을 『신보』는 미·소의 분할지배에 따른 폐해로 인식하였는데, 전후 유럽에서 시작된 미·소의 세력대결이 아시아에서 그대로 재현된 것으로 판단하였다.⁴⁰⁾ 『중앙일보』도 “지금 세계는 두 종류의 사상으로 쪼개어져 의견이 엇갈리는데, 이는 조선에서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이념대립을 국제문제로 인식하였다.⁴¹⁾

36) 秉直, “解決朝鮮問題的關鍵”, 『中央日報』(1947. 5. 16).

37) “韓國獨立問題的前瞻”, 『大公報』(1947. 4. 19).

38) 김영명, 1998, 「남한의 정치적 동태와 미군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I』, 오름, 88~89쪽.

39) “商談韓國統一問題馬歇爾函詢蘇方意見”, 『中央日報』(1947. 5. 4).

40) “南韓會議昨揭幕四百政黨社團參加協商”, 『申報』(1947. 6. 26).

41) “韓局極待澄清 蘇組編北韓軍近二十萬人”, 『中央日報』(1947. 7. 30).

한편 『대공보』는 한국인에 대해서 “약소국가가 독립을 원한다면 먼저 자강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강권정치에 의지하면 결국 소용돌이에 휩싸여 벗어날 방법이 없다”면서 미·소에 의탁한 한국 정치세력의 분열을 지적하고, 건국의 진통 중 최대 난관은 정치적 단결이라는 점을 새삼 강조하였다.⁴²⁾ 이렇듯 국민당 언론은 한국의 정치적 갈등이 미·소의 이념대립에 따른 결과이지만 여기에附和雷同하고 있는 국내 정치세력도 함께 비판함으로써 소련의 지원 아래 내전을 확대시키고 있는 공산당에 대한 여론공격을 강화하였다.

남한 내부에서 좌우갈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중국 동북지역의 위기도 고조되어 소련군의 지원을 받은 북한과 중국공산당의 연계가 현실화되었다.⁴³⁾ 중화민국 정부는 국공내전과 남북한 분단으로 표출된 동아시아의 이념대립이 사실상 소련과 연계된 국제문제로, 그 해결의 열쇠는 한반도에 조속히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⁴⁴⁾ 미·소의 세력팽창에 의한 남북한의 대립구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화민국은 역사적·지리적·문화적 연계성을 배경으로 한국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면서 전통적 ‘事大字小’의 중화의식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다. 예컨대 식민지에서 해방된 한국의 운명은 미·소 점령군에게 좌우된다면서도 과거 중화질서에 의한 책봉관계를 부각시켰고, 현재 중화민국의 역할은 孫文의 三民主義에 입각하여 해방과 자유를 쟁취하려는 민족을 동정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한국 독립에 적극 개입하려고 했다.⁴⁵⁾ 그 방법은 외교적 후견인으로서 도의적 의무와 국제적 책임을 내세우며 중화민국을 포함한 4개국의 전면 협상을 주장한 것이었다.⁴⁶⁾

처음부터 어려움이 예견된 미·소공위의 좌절로 국민당 언론은 미·소의 군정지배를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남북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분열의

42) 앞의 글, 『大公報』(1947. 4. 19).

43) “蘇聯配備韓軍協助共匪叛亂”, 『中央日報』(1947. 7. 26); “韓軍六萬入東北”, 『大公報』(1947. 7. 26).

44) 王璧岑, “水豐電權與中韓關係”, 『中央日報』(1947. 5. 19).

45) 紀云, “美蘇分治下的朝鮮”, 『中央日報』(1947. 5. 30).

46) “王世杰部長在參政會談韓國問題”, 『中央日報』(1947. 5. 23).

1차 책임이 4개국 연합국에 있지만 최종 책임은 미국과 소련에 있다면서 이제라도 미·소 양국이 한국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려면 중국·영국과 함께 4개국 회담을 적극 고려할 때라고 주장하였다.⁴⁷⁾ 국민당 언론은 전후 한국문제 처리에 있어서 주권국가의 자주독립방식이 아닌 오랜 역사적 연고와 외교상 도의적 책임 및 지리적 인접성을 이유로 중국까지 포함된 4개국 협상론을 제기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담보하려고 했다. 이것은 한국 독립을 미·소의 독점 지배 아래 두지 않고 연합국의 다자간 협상에 맡김으로써 가능한 한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해 보려는 중화주의의 현실적 변용이었다.

Ⅲ.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과 동시철수론

한국문제의 해결을 위한 미·소공위의 활동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를 계기로 중화민국이 주장한 4개국 협상론이 다시 부각되었다.⁴⁸⁾ 미국 정부는 중국·영국·소련에 대해 워싱턴에서 한국의 통일정부 수립방안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제의했고, 중화민국 정부는 즉각 찬성하였다.⁴⁹⁾ 4개국 협상안에 대해 국민당 언론은 대부분 지지하였다. 미·소 군정에 매우 비판적이던 『대공보』는 한국문제에서 이념대결을 가장 큰 걸림돌로 보았고, 한국 독립에 관한 국제합의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연합국 4개국이 한국 독립을 보증하여 5년간 신탁통치를 거친 후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고 임시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방식이었다. 구체적으로 미·소가 이념대결을 포기하고 한국문제의 해결을 위해 4개국이 공동으로 ‘조선의 영구중립’을 보증하는 것으로, 여

47) “潘世憲：漢城會議展望”，『申報』(1947. 8. 22).

48) “蘇對四強朝鮮會議事尚未答復”，『中央日報』(1947. 9. 6).

49) “四強會商韓政局 我政府同意參加”，『申報』(1947. 8. 31).

기에 소련의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하였다.⁵⁰⁾ 그러나 소련이 4개국 회의를 곧바로 거절함으로써 이는 수포로 돌아갔고,⁵¹⁾ 미·소의 한국문제 담판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미국은 유엔의 간섭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⁵²⁾

미국에 의한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은 이전부터 예상되고 있었다. 한국 독립에 대한 미·소 간 양자 협의도 어려운데 4개국 협상이란 더욱 곤란한 문제였던 것이다. 따라서 4개국 협상안은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을 내심 결정한 미국이 예비단계로 제시한 의례적 외교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⁵³⁾ 물론 유엔에서 우월적 역량을 가진 미국의 위상도 대한정책의 수정을 가져온 주요한 배경 중 하나였다. 이에 대해 소련은 유엔에서의 한국문제처리를 반대하면서 자주적 해결과 미·소의 동시철군을 주장하고 나섰다.⁵⁴⁾ 이미 내전상태였던 중화민국은 미국의 경제·군사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미국도 전후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재편과정에서 소련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한반도의 공산화를 어떻게든 저지해야만 했다. 이처럼 미·소의 세력대결이 구체화되면서 미국과 중화민국의 상호 협력은 더욱 절실해졌고, 한국 독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마침 미국이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을 제안하자, 중화민국 정부는 적극 옹호하면서 4개국 협의를 강조하였다. 미국의 제안은 유엔 내에 특별위원회를 조직한 후 한국 정세를 면밀히 조사하고, 유엔의 지도·감독하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조직한 후 유엔과 미·소 군대의 철수시기를 결정하자는 내용이었다.⁵⁵⁾

유엔 중화민국 대표 顧維鈞은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에 즉각 동의하였다.⁵⁶⁾ 아울러 그는 한국에서 일정기간 동안 신탁통치를 실시하자는 내용을 유엔 계

50) “四強真誠要合作—論朝鮮問題”, 『大公報』 (1947. 9. 2).

51) “解決韓國問題僵局 美國務院正在研究”, 『中央日報』 (1947. 9. 12).

52) “美將要求聯合國干涉韓國僵局”, 『中央日報』 (1947. 9. 17).

53) “朝鮮問題我決參加討論”, 『申報』 (1947. 9. 2).

54) “王外長在聯大記者招待會上談朝鮮問題, 蘇拒將朝鮮問題提交聯大”, 『中央日報』 (1947. 9. 20).

55) “美國將朝鮮問題正式提交聯大會”, 『申報』 (1947. 9. 19).

56) “我代表團闡述贊成美國建議理由 但保留對韓獨立主張”, 『申報』 (1947. 9. 23).

획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지만 미국에 의해 거부되었다.⁵⁷⁾ 이로써 연합국 4개국의 신탁통치에 의한 한국 독립을 줄곧 주장해 온 중화민국의 전후구상이 최종적으로 좌절되었다. 또 다른 연합국의 일원인 영국은 미국의 제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 반면, 소련은 이에 맞서 남북한 주둔군을 이듬해 봄까지 모두 철수시키자는 주장을 폈다.⁵⁸⁾

유엔에서 미·소의 한국 독립방안이 대립하는 동안 소련의 ‘동시철수론’은 남한 내의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문제는 동시철군의 시기와 방법으로, 남북한 정파들의 견해가 크게 달랐다. 이승만을 비롯한 극우파는 미군 철수에 절대 반대하였고, 중도파나 온건우파는 소련의 동시철군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통일론자들은 미·소 점령군이 통일의 장애요인이라는 관점에서 신속한 철수를 주장하였고,⁵⁹⁾ 미국과 남한 극우파는 미군 철수 이후 북한군에 의해 한반도가 공산화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에 동시철군을 반대하였다.

이러한 동시철군 논란에 대해 『대공보』는 미·소 양국이 임시정부를 통해 앞으로 수립될 정식정부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보았다. 또한 한국인들이 “독립자위를 쟁취하려면 스스로 먼저 분쟁을 멈춤으로써 미·소의 투쟁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다. 그러므로 소련의 동시철군은 실제 결과가 어떠하든지 독립 쟁취를 위해 한국인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단지 어떤 방법으로 주둔군을 내보낼 것인가로 고민해야 한다면서, 철군문제를 논쟁거리로 삼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었다.⁶⁰⁾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군사동향에 가장 예민했던 중화민국 정부는 외교부장 王世杰의 성명을 통해 미·소 주둔군의 철수는 유엔과 모스크바협정에 참여한 4개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소련의 제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였다. 다만

57) “美對朝鮮問題新建議 中英表示原則贊同”, 『申報』 (1947. 10. 13).

58) “聯大通過美國提案朝鮮問題列入議程”, 『大公報』 (1947. 9. 25); “對撤退蘇美駐軍 韓人反響不一”, 『中央日報』 (1947. 9. 28); “促成韓政治獨立應由聯合國監視”, 『申報』 (1947. 9. 29).

59) “蘇駐北韓軍隊傳將自動撤離”, 『中央日報』 (1947. 10. 7).

60) “中國關心朝鮮問題”, 『大公報』 (1947. 10. 4).

군대철수 이후 한국에서 무정부상태나 내전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므로 유엔에서는 한국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면 군대 철수의 시기와 조건을 함께 결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연합국 4개국과 협의할 것을 주장하였다.⁶¹⁾ 내전에 휩싸인 중화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세력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소련의 동시철군을 곧바로 수용하기는 어려웠다. 왜냐하면 이미 소련군에 의해 장악된 북한지역은 물론, 좌우대립으로 혼란스러운 남한에서 미군 철수란 곧 힘의 공백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전후 동북지역을 점령한 중국공산당이 소련군의 지원을 받아 점차 내전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지역의 군사동향은 매우 중요하였다. 소련은 이곳을 점령한 직후 줄곧 무장 세력을 키웠지만 미국은 남한의 군사력 증강에 소홀하였다. 그 결과 남북한의 군사력 차이가 갈수록 커졌고, 중화민국 정부는 소련의 동시철군 제안을 의심하면서 한국이 독립된 이후에야 미군 철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 때문에 유엔 중화민국 대표 顧維鈞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미·소 주둔군의 철수조치나 방법에 관한 중화민국의 발언권을 강조하며 사전협의를 요구하였다.⁶²⁾ 그는 미·소 군대가 동시 철수할 경우 한반도의 공산화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곧바로 중국의 동북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⁶³⁾ 이런 이유로 중화민국은 미·소 주둔군의 철수문제와 관련하여 양국의 일방적 조치가 아닌 4개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중화민국 정부는 장차 한국에서 발생하게 될 어떤 사건이든지 국경을 접한 동북지역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았고, 역사적으로도 우월한 지위를 유지해 온 한국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간여하려는 의지가 강하였다. 이 때문에 중화민국은 한국 독립에 관하여 카이로회담의 합의사항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웠지만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국제합의란 아무런 구속력이

61) “王外長發表聲明韓國應早予獨立”, 『申報』 (1947. 10. 21); “對解決韓國問題 王外長發表聲明”, 『中央日報』 (1947. 10. 21).

62) “我聲名對韓境駐軍措施應有發言權”, 『申報』 (1947. 11. 6).

63) “聯大政委會否決蘇聯關於朝鮮問題的建議”, 『中央日報』 (1947. 11. 6).

없었다. 마찬가지로 미·소 군대의 철수시기, 방법, 사전조치 등에 관하여 중화민국은 모스크바협정에 참여한 4개국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주장했지만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⁶⁴⁾ 미국이 제기한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이란 새로운 상황에서 중화민국의 역할은 ‘4개국 신탁통치’를 대신하여 ‘유엔한국위원회의 지도감독에 의한 한국 독립방안’을 제출하고 참여하는 것이었다.⁶⁵⁾

한국 독립문제가 마침내 미국의 주도로 유엔정치위원회에서 토의되었다. 유엔 내에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지는 미국안과 미·소 주둔군의 동시철수 및 남북한 대표를 유엔에 출석시켜 직접 의견을 청취하지는 소련안이 함께 상정되었다.⁶⁶⁾ 유엔정치위원회는 이틀간 회의를 거쳐 41대 0표로 미국의 제안을 통과시켰다.⁶⁷⁾ 이어서 중국과 필리핀 및 인도가 수정 제의한 한국 독립방안을 확정지었다.⁶⁸⁾ 그 후 유엔은 한국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중국·인도·시리아·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프랑스·필리핀·엘살바도르의 9개국 대표들로 구성되었고, 중국의 胡世澤이 전체 대표로 뽑혔다.⁶⁹⁾ 유엔 총본부는 유엔한국위원회를 1월 2일 소집하였고, 1월 9일부터 한국에서 활동을 개시하였다.⁷⁰⁾ 그러나 유엔대표단의 한국 활동은 시작부터 벽에 부딪혔다. 소련군이 노골적으로 유엔대표단의 입북을 거부하였고,⁷¹⁾ 북위 38도선 변경에서는 미·소 점령군 사이에 무력충돌이 빈번히 발생하였다.⁷²⁾ 남

64) “韓國問題我贊同美蘇同時撤兵”, 『申報』 (1947. 11. 2).

65) “聯大政委會通過韓國獨立計劃”, 『中央日報』 (1947. 11. 7).

66) “聯大辯論韓國獨立問題”, 『中央日報』 (1947. 10. 30); “聯大政治委員會通過美關於朝鮮問題的建議”, 『中央日報』 (1947. 11. 1).

67) “朝鮮問題聯大政委會通過美修正案 我代表支持美國立場”, 『申報』 (1947. 11. 1).

68) “朝鮮獨立案全文”, 『申報』 (1947. 11. 7); “聯大對韓國獨立問題通過美建議”, 『中央日報』 (1947. 11. 16).

69) “聯大通過朝鮮獨立案成立九國委員會”, 『申報』 (1947. 11. 16).

70) “聯合國朝鮮委會定期在漢城會議, 聯合國朝鮮委員會首次會議將在漢城舉行由胡世澤率領下月出發”, 『中央日報』 (1947. 12. 12); “聯合國朝鮮委員會離美越韓”, 『中央日報』 (1948. 1. 3).

71) “聯合國赴韓代表團 昨舉行首次會議”, 『中央日報』 (1948. 1. 13); “聯合國朝鮮委員會致函蘇方要求准入北韓聯合作”, 『中央日報』 (1948. 1. 17).

72) “美蘇占領區軍警時有衝突”, 『中央日報』 (1948. 1. 20).

한에서도 총선거를 반대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아 수개월 동안 치안이 혼란스러웠고 폭력사태도 빈번하였다.⁷³⁾ 이런 이유로 국민당 언론은 한국을 전후 냉전체제의 대표적 희생양으로 꼽았다.⁷⁴⁾

이때부터 국민당 언론의 관심사는 남북한의 정국을 누가, 혹은 어떤 세력이 주도하고, 어떻게 정부를 수립할 것인가의 문제로 옮겨갔다. 당시 국민당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남한의 정치지도자는 극우파를 대표한 이승만과 온건우파를 대표한 김구였다. 유엔대표단은 두 지도자와 면담을 가졌는데, 시국 대응에 관한 견해가 너무나 달랐다. 영어가 유창한 이승만은 유엔대표단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면서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여 하루빨리 독립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⁵⁾ 이에 대해 김구는 소련 점령지인 북한에도 주민들이 있고, 강대한 우익세력의 지배 아래 있는 남한에서는 경찰의 우경화로 자유로운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면서 유엔대표단의 활동에 대해 회의적이었다.⁷⁶⁾ 온건우파와 중간파를 비롯한 대다수 남한의 정치세력들도 단독정부 수립에 부정적이었다.

유엔한국위원회는 남북한에서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본래 사명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지역의 활동이 곤란한 상황에서 남한만의 총선거를 먼저 실시하는 방안을 중국·프랑스·필리핀의 지지로 수정 제의하였다.⁷⁷⁾ 이 시기에 남한에서도 유엔대표단의 활동을 반대하는 열차탈선사고, 총파업 등이 잇달아 발생하여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웠지만 유엔 소위원회는 찬성 31, 반대 2, 기권 11표로 남한 총선거안을 통과시켰다.⁷⁸⁾ 애당초 중화민국 정부는 한국 독립이 자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안전과 불가분관계라면서 유엔대표단의 활동

73) “蘇聯拒絕北韓代表團進退維谷，蘇聯拒絕聯合國朝鮮委員會 代表團進入北韓”，『中央日報』(1948. 1. 25).

74) “聯合國朝鮮委員會明日舉行會議”，『中央日報』(1948. 1. 11).

75) “李承晚請聯合國於南韓單獨選舉”，『中央日報』(1948. 1. 27).

76) “南韓單獨選舉金九表反對”，『申報』(1948. 1. 28).

77) “中非法三國贊同 南韓立即單獨選舉”，『中央日報』(1948. 2. 5).

78) “小型大會通過決議案 南韓決進行選舉”，『申報』(1948. 2. 28).

을 적극 지지하였다.⁷⁹⁾ 특히 남한 총선거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은 일종의 연대감을 가졌는데 미국은 전후 남한의 점령국이었고, 중국은 인접국으로서 도의적 책임감을 내세웠다.⁸⁰⁾ 두 나라는 남한 총선거에 의한 정부수립을 유엔결의라는 국제 명분과 남한 인구의 우세라는 국내 조건을 내세워 정당화시켰다.

남한 단독선거를 결정한 유엔결의에 대해 남한 지도자들의 반응은 상이하였다. 이승만은 즉각 환영담화를 발표하고 큰 만족감을 표시한 반면, 김구는 남북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반대의를 표시하였다.⁸¹⁾ 남한 지도자들은 각자의 정치위상과 지지세력에 따라 총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하지만 이전의 반탁운동처럼 좌우파로 확연히 구분되어 서로 대립하기보다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남한 단독선거가 현실화되면서 38도선을 경계로 미·소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고 남한에서는 선거방해활동이 더욱 거세어졌다.⁸²⁾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주도로 남북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가 개최되어 남한 총선거를 조직적으로 반대하였다.⁸³⁾ 국민당 언론은 평양의 남북한 연석회의에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남한 정당들의 참가 여부와 규모 및 남북한 정파의 협력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 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미·소의 분할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았고, 그렇게 되려면 좌우연대가 무엇보다 절실했기 때문이다.

『신보』는 남북한의 독자행보를 보면서 유엔한국위원회의 활동이 실패한

79) “外部時司長發表談話 違反協定所建政府我不予考慮”, 『申報』(1948. 2. 19).

80) “美要求小型聯大 在南韓進行選舉”, 『大公報』(1948. 2. 25); “中美建議小型聯大令赴韓代表團促成總選”, 『中央日報』(1948. 2. 26).

81) “金九李承晚反響不一致”, 『申報』(1948. 2. 28).

82) “挖掘壕溝虛置砲位 北韓蘇軍修築防線”, 『中央日報』(1948. 3. 30); “南韓選舉登記處 遭暴徒惡意騷擾”, 『中央日報』(1948. 4. 6). 1948년 4월 초 한반도의 최남단 제주도에서 대규모 폭동이 발생하자 미군정은 5·10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공산세력의 불법폭동으로 규정하였다. “南韓發生暴動 朝鮮人十七人遇害”, 『中央日報』(1948. 4. 8).

83) “金九金奎植 赴北韓籌開會議”, 『申報』(1948. 4. 10); “南北韓聯席會進行中”, 『中央日報』(1948. 4. 24).

것으로 판단하였고, 단독선거에 의한 정부수립방안도 실효성이 없다고 보았다. 그 대신에 동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통일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방법은 자주적이며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면 미·소가 동아시아 전쟁을 피하려면 마땅히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⁸⁴⁾ 『신보』는 자주적·평화적 통일독립정부의 수립이란 대원칙을 강조하고 절차상 미·소 군대의 철수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한편 『중앙일보』는 사실보도에 치중하였는데, 평양의 남북한 연석회의에서 발표한 「전국동포서」,⁸⁵⁾ ‘회의 결정사항’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⁸⁶⁾ 특히 『대공보』가 남북한 연석회의에 대해 ‘조선 통일의 서광’이라면서 큰 기대를 걸었다. 그 이유는 남북한의 46단체 545명의 대표가 참가하여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⁸⁷⁾ 유엔의 남한 총선거 실시 결정으로 남북통일이 비관적인 상황에서 국민당 언론은 남북한 연석회의를 새로운 돌파구로 받아들였고,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도 자주적 통일독립정부의 수립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었음을 알 수 있다.

Ⅳ. 남한 총선거와 대한민국 정부수립

남한 총선거는 예정대로 5월 10일 막이 올랐다.⁸⁸⁾ 『신보』는 남한 선거를 서양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막후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미군

84) “韓國南北分合의關頭(社論)”, 『申報』 (1948. 4. 7).

85) “南北韓聯席會議結束 發表告全國同胞書”, 『中央日報』 (1948. 4. 26).

86) 그 내용은 외국군대의 즉각 철수, 내전불허, 전조선정치회의에서 민주정부의 조직 및 헌법공포 등이었다. “平壤聯席會議發表公報 反對南韓總選決設立統一政府”, 『中央日報』 (1948. 5. 6).

87) “朝鮮統一的曙光”, 『大公報』 (1948. 4. 28).

88) “南韓總選候選人近千”, 『中央日報』 (1948. 4. 25).

의 대한정책에 대해 신랄히 비판하였다.⁸⁹⁾ 북한에서는 소련의 통제경제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반면 남한에서 미군정의 자유경제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고, 특히 미국의 일본 부흥정책이나 남한에서 친일세력의 득세가 반미의식을 불러일으켰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남한에서 폭동이 끊이지 않았는데, 남한 총선거가 의외의 파장을 일으켜 ‘동방의 화약고’를 폭발시킬 것으로 우려하였다.⁹⁰⁾ 『대공보』도 미군정이 실패했다면서 그 이유를 친일세력의 비호에서 찾았고, 그에 따른 민심의 이반이 한국인을 반미로 내몰았다고 주장하였다.⁹¹⁾

그렇지만 『중앙일보』는 남한 총선거를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최선책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선거의 성격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대결이 아닌 반공우익세력의 역량을 실험하는 계기로 이해하였다. 특히 『중앙일보』는 우익세력 내부의 주도권 다툼에 주목하였는데, 친미·반일·반공 성향의 이승만이 미국식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한 반면, 친일자본가 출신으로 반공을 내세운 김성수는 프랑스식 분권형 대통령제를 옹호하여 양자 타협과 갈등 여부에 관심이 높았다.⁹²⁾ 한편 『대공보』는 남한 총선거를 반민족적·반애국적 행위라고 비판하였다.⁹³⁾ 남한에서 이승만과 일본 주구들을 제외한 모든 정당지도자와 절대 다수의 인민들이 결사적으로 남한 총선거를 반대한 사실을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미국이 강제적으로 남한 단독정부를 만들려고 하지만 그 수명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김구·김규식·조소앙·홍명희 등의 남북협상을 지지하였다.⁹⁴⁾

온갖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 가운데 남한의 5·10 총선거는 예상 밖으로 평온하게 마무리되었다. 『중앙일보』는 높은 투표율을 근거로 남한만의 단독선거는 비록 몇 곳에서 소동이 발생했지만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평

89) “南韓選舉期近幕後競爭益烈”, 『申報』(1948. 5. 5).

90) “正視朝鮮的危局(社論)”, 『申報』(1948. 5. 7).

91) “朝鮮統一的曙光”, 『大公報』(1948. 4. 28).

92) “南韓大選今舉行”, 『中央日報』(1948. 5. 10).

93) “韓今天選舉”, 『大公報』(1948. 5. 10).

94) “美決成立南韓政府 不願蘇方撤軍準備”, 『大公報』(1948. 5. 10).

가하였다.⁹⁵⁾ 미군정과 유엔한국대표단은 전체 유권자 800만 명 중 85% 내외가 투표에 참가하였으며 진행도 순조로워 투표결과를 낙관적으로 받아들였다.⁹⁶⁾ 그러나 남한 총선거 이후 전개될 한반도 정세에 관한 국민당 언론의 시각은 각양각색이었다.

우선 『신보』는 향후 남북한 정세를 비관적으로 보았는데, 외세에 의한 남북분단이 冷戰에서 熱戰으로 변질될 것을 염려하였다. 무엇보다 남한 단독선거로 별도 정부가 출현하게 된 것은 동아시아의 앞날에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신보』는 앞으로 야기될 남북한의 대치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미·소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였다.⁹⁷⁾ 남한 선거에 호의적이던 『중앙일보』는 “이번 선거가 성공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은 남북한의 분열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고, 조선을 제2의 그리스로 예상한다. 사실 남북한의 분열을 이번 선거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면서 남한 단독선거를 분단의 요인으로 보지 않았다. 다만 남한 총선거를 공산당 및 극좌파 인사들이 완강히 반대한 점과 우파의 김구나 중간파의 김규식 등이 참여하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였다. 또한 미군정이 친일자본가의 이익을 대표하며 한국인들로부터 ‘일본의 주구’라고 비난받아 온 金性洙의 경선 참가를 허용한 것은 이번 선거의 한계라고 지적하였다.⁹⁸⁾ 그러므로 『중앙일보』는 “남한 선거에 공산당 무리들이 파괴의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공포수단을 동원하여 방해했지만 순리대로 진행되었다. …… 2년 동안 한국은 불안한 정세가 계속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뛰어넘기 어려운데 세상 사람들의 이상과 거리가 멀고 모든 한국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하면서 반쪽 성공으로 총선거의 의미를 부여하였다.⁹⁹⁾

95) “南韓選舉順利完成”, 『中央日報』 (1948. 5. 11).

96) 위의 글, 『中央日報』 (1948. 5. 11); “聯合國代表稱讚南韓選舉”, 『中央日報』 (1948. 5. 12).

97) “南韓普選以後的朝鮮政局”, 『申報』 (1948. 5. 19).

98) “南韓選舉順利完成”, 『中央日報』 (1948. 5. 11).

99) “選舉前後的韓國局勢”, 『中央日報』 (1948. 5. 12).

『대공보』는 애초부터 남한 단독선거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다. 선거란 民意를 존중하고 측정하는 것으로, 민주정치의 핵심인데, 이번 남한 선거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남한 선거의 입후보자 900여 명이 하나같이 우파로, 선거결과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승만이 스스로 “나는 조선을 대표한다. 나는 공산당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좌파와 중간파도 반대한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삼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체통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선거과정도 “미국의 민주정치가 사실상 남한에서 드러난 면모는 동아시아 및 세계에 교육적 의의가 크다. 남한 선거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전혀 없어 세계에 나쁜 사례를 열어놓았다”고 지적하였다.¹⁰⁰⁾ 억압적인 선거분위기와 우파 일색의 일방적 선거결과가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의 위신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남한 단독선거의 영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 비극을 만들어,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동아시아 지역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으로 내다보았다.

『대공보』는 남한 총선거의 승리자인 이승만과 김성수가 각각 대표적 친미, 친일성향으로 이번 선거에서 유일한 경쟁자이자 최악의 콤비였다고 비아냥거렸다. 국내의 조직기반이 약한 이승만과 친일행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김성수가 궁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공보』는 남한을 미국과 일본의 연합식민지로 인식하였고, 김구·김규식·조소앙 등 독립운동가들은 미군정하에서 결코 환영받을 수 없으며,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¹⁰¹⁾ 이런 상황은 전후 일본에서 천황제를 존속시키고 경제부흥을 통해 안정적인 防蘇·反共체제를 구축하려던 맥아더의 대아시아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남한의 극우파가 한 축으로 편입된 것이다.

남한 총선거가 끝난 후 국민당 언론의 한국 관련 보도는 궁극적 목표인 통일독립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로 초점이 옮겨갔다. 『중앙일보』

100) “南韓의選舉”, 『大公報』 (1948. 5. 17).

101) 위의 글, 『大公報』 (1948. 5. 17).

는 현재 정세로 볼 때 남북한 협작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 북한 정권의 합법성 문제, 한국 민주당파의 내부분열과 갈등, 북한 공산세력의 무장 등 세 가지 불리한 상황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한국 독립은 광범위한 국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한국 자신의 존망뿐만 아니라 중국의 엄중한 문제이며, 아시아로부터 세계의 안전까지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하였다.¹⁰²⁾ 이러한 대외 인식을 토대로 『중앙일보』는 남한 총선거 이후 한국 정세가 분명하게 정리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한국 관련 보도를 통해 남북분단의 진상이나, 북한 공산화에 따른 심각성을 폭로하며 중국공산당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 요컨대 전후 한반도에서 형성된 냉전구도를 내전 중인 자국의 반면교사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남한의 총선거가 끝난 후 국민당 언론은 김구와 이승만의 상반된 근황을 집중 보도하였다. 『중앙일보』는 서울특파원을 통해 한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이승만과 단독 기자회견을 갖고 그의 미군철수 불가론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¹⁰³⁾ 선거 이후 이승만은 왕성한 정치활동을 통해 미군의 계속 주둔을 주장하고 나섰다.¹⁰⁴⁾ 반면 김구는 모든 활동을 멈추고 마곡사에 칩거하였는데,¹⁰⁵⁾ 국민당 언론은 “이승만의 최대 강적인 김구가 잠시 휴식을 선포한 것으로, 남한에서 가장 역량 있는 정치인 중 한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도함으로써 김구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다.¹⁰⁶⁾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이 현실로 다가오자 국민당 신문들은 냉전체제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정세변화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신보』는 “조선의 비극은 이미 결정되었다. 조선의 분열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극동의 위기이며, 황해시대의 거대한 파도”라고 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념대립

102) “選舉前後的韓國局勢”, 『中央日報』(1948. 5. 12).

103) “李承晚談韓局現狀”, 『中央日報』(1948. 5. 19).

104) “李承晚吁請美軍繼續留駐”, 『申報』(1948. 5. 21).

105) “盛傳金九暫擬退隱”, 『申報』(1948. 5. 20).

106) “金九退休養病”, 『中央日報』(1948. 5. 21).

을 우려하였다.¹⁰⁷⁾ 미·소의 분할점령에 의해 남북한의 정치적·군사적 대결 구도가 단독정부의 수립으로 굳어졌고, 이러한 한반도 상황이 중국의 장래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 것이다.

한국 분단의 근원에 대하여 『신보』는 포츠담회담에서 38선을 경계삼아 미·소 양군이 남북으로 분할점령하고, 혼합점령방식을 취하지 않은 점이 결정적 오류라고 지적하였다. 분할점령 이후 남한에서는 유엔과 미국의 지지 아래 이승만·김성수의 친미보수정부가 탄생되었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親蘇 공산정부가 세워져 분단이 굳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 정치구도에서 김구와 김규식 등 중도성향의 지도자들이 좌파로 기울게 된 것은 곧 미군정의 실패를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⁰⁸⁾ 국민당 언론이 선거 이후 한반도 상황을 비판적으로 파악한 것은 국공내전 중 궁지에 몰린 자신들의 위기감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한국 분단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한 것은 동아시아의 냉전구도에서 미국의 강력한 군사개입과 경제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일보』는 남한 총선거가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축과정에서 평화를 애호하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고 평가하였다. 왜냐하면 일본의 항복 이후 분할 점령된 한반도는 미군 점령지인 남한에서 모든 것이 자유로운 반면, 소련 점령지인 북한에서는 공산당 이외의 정치활동을 허용하지 않았고 공산주의 이외의 어떤 사상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남한 총선거가 마무리되어 이승만과 합작한 우익세력이 다수의 지지를 얻은 사실에 주목하였다. 또한 한국 분단이 전후 미·소의 세력 대결에 따른 분할점령으로 시작되어 단독선거를 치르면서 더욱 굳어졌기 때문에 냉전체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통일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¹⁰⁹⁾ 남북한의 대치국면을 이승만과 김일성의 단순한 좌우대립이 아닌 민주주의와 공산

107) “強權政治與韓國悲劇(社論)”, 『申報』 (1948. 7. 17).

108) 위의 글, 『申報』 (1948. 7. 17).

109) 蔣君章, “朝鮮選舉問題”, 『中央日報』 (1948. 5. 16).

주의의 이념대결로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중화민국 정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남한과 서로 비슷한 점을 들어 이승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하루빨리 독립정부를 수립하여 양국 간 긴밀한 유대관계의 구축을 희망하였다.¹¹⁰⁾

이렇듯 『중앙일보』는 한국 분단의 주요 원인을 남한 단독선거에서 찾지 않고 전후 미·소의 이념갈등과 체제대결의 산물로 보았다. 또한 남한 총선거 이후의 당면과제로 한반도의 완전한 통일독립보다 신속한 자유민주정부의 실현에 큰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냉전체제를 기정사실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한국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변화는 이승만의 대한민국 정부와 우호관계를 적극 모색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중앙일보』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과제가 미국의 원조를 받아 경제건설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조언하였다.¹¹¹⁾ 여기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 미국의 대한정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운 국민당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친미반공을 내세운 이승만 정부의 등장은 내전 중 궁지에 몰린 국민당의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었다. 국민당은 국공내전을 내부분제가 아닌 동아시아 지역의 냉전체제와 연계시킴으로써 그 해결책 역시 미국을 필두로 한 아시아의 반공연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요컨대 전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첨예하게 진행된 냉전구도에서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의 반공체제를 필요로 한 미국의 적극 대응을 기대하였다.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신보』를 비롯한 국민당 신문들은 곧장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항일독립운동과 카이로선언에서 보여준 중국의 우호적 역할을 강조하였다.¹¹²⁾ 『중앙일보』는 이승만 대통령과 이시영 부통령을 한국 독립운동의 권위자로 추

110) 李果, “南北韓的對台戰”, 『中央日報』(1948. 6. 11).

111) “朝鮮行憲政府 傳說月底可成立”, 『中央日報』(1948. 7. 8).

112) “韓國獨立統一의曙光—慶祝李承晚博士當選首任總統(社論)”, 『申報』(1948. 7. 22). 앞으로 수립될 남한 정부의 정통성은 유엔의 관리감독과 민주평화방식에 의해 보증될 것이라고 세삼 주장하였다. “社論—韓國的是非”, 『中央日報』(1948. 7. 14).

켜세우며 “두 독립혁명지도자들이 한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에 당선된 것은 중·한 양국의 우의교류와 합작을 굳건히 하는데 크게 공헌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동시에 소련이 주도한 코민테른의 위협 아래 신생국가의 주권과 국제 평등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면서 공산당에 대한 경계심을 강조하였다.¹¹³⁾

『대공보』는 한반도를 동유럽의 베를린에 비유하여 ‘동방의 화약고’로 규정하고, 한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당선되었지만 오히려 남북한 대립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제헌의원들을 “이승만과 김성수의 주머니 안에 있는 인물”들이라면서 북한과 합작을 거절한 채, 다른 당파를 압박하며 김구를 끝내 배척한 점을 비판하였다. 『대공보』는 남북한 대립과 관련하여 북한 공산세력의 책임도 지적하였다. 주로 유엔 합의에 따른 독립절차를 일방적으로 무시해버린 것이나, 남한에서 폭력적인 반정부활동을 조장한 점 등을 비판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남한이 공동전선을 결성하고 있는데, 만약 전쟁의 불꽃이 점화된다면 한국이란 화약고는 순식간에 폭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견하였다.¹¹⁴⁾

『대공보』는 남한에서 미국이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않은 채 친일세력을 군정에 참여시킨 것이나 단독선거로 이승만과 김성수 등 친미·친일세력의 권력을 합법화시켜 준 것은 남한 주민들의 열망을 외면한 것으로, 이 때문에 남한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남북한의 분열은 미·소의 대립이란 외부요인도 작용했지만 지나치게 대외의존적인 우파와 공산세력들 때문에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국의 남북분단과 좌우대립에 대해 외부요인을 중시한 『신보』·『중앙일보』와 달리 『대공보』는 국내정파의 지나친 외세의존과 내부분열, 그리고 남한 정치세력의 책임을 함께 지적한 것이다.

이승만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이윤영을 총리후보로 지명했는데, 국회비

113) “李承晩當選韓國總統”, 『中央日報』 (1948. 7. 22).

114) “朝鮮—遠東的火藥庫”, 『大公報』 (1948. 7. 27).

준에 실패하였다.¹¹⁵⁾ 이승만은 곧바로 이범석을 초대 국무총리로 다시 지명했고,¹¹⁶⁾ 국회는 110 대 84표로 첫 내각총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¹¹⁷⁾ 국민당 언론은 무당파인 이범석의 총리 인선에 대해 현명한 처사라고 평가하였다. 그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직접 가해질 정치압력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미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¹¹⁸⁾ 그만큼 국민당 언론은 이범석 초대 총리에 대해 호의적이었고, 앞으로의 역할에도 큰 기대를 걸었다.

이로부터 자주·독립·통일에 초점을 맞추었던 국민당 언론의 한국 관련 기사가 공산세력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폭로하고 민주역량의 승리를 알리는 쪽으로 옮겨갔다. 전후 한국의 완전한 통일독립정부 수립이란 기본원칙이 미·소의 세력팽창과 체제대결이란 냉전 논리에 매몰된 것이다. 그 결과 중화민국은 해방정국에서 김구를 중심으로 한 親中정부의 구성을 기대했던 정책에서 탈피하였다.¹¹⁹⁾ 중화민국 외교부장 王世杰이 8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다는 공식성명을 발표하였고, 劉馭万을 주한 중국 대사로 파견할 것과 대통령 취임식에 潘朝英·王皓明 두 사람이 참석할 예정임을 미리 통보하였다.¹²⁰⁾ 이승만 대통령은 중앙통신사 기자와의 회견에서 중화민국이 가장 먼저 대한민국 정부를 지지했다면서 蔣介石 총통과 王世杰 외교부장의 우호 표시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¹²¹⁾

1948년 8월 15일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국민당 언론은 한국의 독립 축하와 더불어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는 성명을 앞다투어 발표하였

115) “李承晩首遇挫折 李允榮任總理遭否決”, 『中央日報』 (1948. 7. 30).

116) “韓首任總理人選 決再提出李範奭”, 『中央日報』 (1948. 7. 30).

117) “韓首屆內閣昨組成”, 『中央日報』 (1948. 8. 5).

118) 이범석은 중국의 雲南講武學堂 제12기, 중경 중앙훈련단 제3기 졸업생으로 25년 이상을 중국에서 거주하였다. “李範奭任韓國總理 組閣工作日內完成”, 『中央日報』 (1948. 8. 3).

119) “李承晩電謝朱部長家驊”, 『中央日報』 (1948. 8. 6).

120) “潘朝英等飛赴漢城觀禮”, 『中央日報』 (1948. 8. 11); “我承認韓國政府派劉馭萬氏爲外交代表”, 『申報』 (1948. 8. 13).

121) “我承認韓國照會 昨已送達李承晩”, 『中央日報』 (1948. 8. 14).

다. 『중앙일보』는 전후 냉전체제의 희생양에서 온갖 곤란을 이겨내고 끝내 독립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은 “이승만·김구 등 온건한 정치가들에 의해 지도되고, 중·영·미 3개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신속히 동아시아의 새로운 역량으로 완성되기를 기원한다”라는 축하 메시지와 함께 중화민국의 희망을 전하였다.¹²²⁾ 『신보』는 “중·한 양국이 전통적으로 手足과 같은 情을 갖고 있으며 이와 입술처럼 아주 밀접한 관계”라면서 역사적 연고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보』는 자국을 아시아의 ‘말이’로 위치짓고, 중국이 분발하여 강대해지고 창의를 앞세워 아시아의 신생국가들과 연합하여 평화와 번영을 옹호한다면 동아시아의 밝은 미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²³⁾ 이러한 국민당 언론의 한국 독립 관련 보도는 전후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질서를 구축하려던 대외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비판적 현실여건에도 불구하고 내재된 大國主義를 엿볼 수 있다.

그 후 중화민국 정부는 주중 한국 대표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파견한 외교 대표를 정식 승인하였다. 외교부차장 葉公超는 “한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중국 정부는 어떤 한국 단체도 승인을 해 줄 수 없었고, 한국인을 그 대표로 보았다”라고 밝혔다.¹²⁴⁾ 이러한 언급은 그동안 중화민국 정부가 임정 대표를 주중 한국 대표로 예우한 것과 다른 태도로, 종전직후 중화민국 정부의 대한정책이 임정을 통한 주도권 확보였다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계기로 반공·친미에 기초한 새로운 공식관계가 시작되어 질적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122) “大韓民國呱呱墜地”(寄稿), 『中央日報』(1948. 8. 20).

123) “東亞的新氣象”, 『申報』(1948. 8. 16).

124) “中國承認韓正式代表”, 『中央日報』(1948. 9. 14).

V. 맺음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였던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열강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전후 미·소 양국의 세력대결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은 동아시아의 전략요충지로 떠올랐고, 급기야 냉전 이데올로기의 각축장이 되었다. 소련·중국과 국경을 접한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일본·미국의 태평양으로 뻗어나간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은 미·소 양국에게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전후처리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빠짐없이 거론되며 열강의 대결무대로 탈바꿈하였고, 끊임없는 항일독립투쟁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쟁취한 해방이 아닌 전승국의 점령지로서 장래 운명이 타율에 의해 강제되었다.

종전과 함께 동아시아는 미·소 주도의 냉전체제로 급속히 재편되었고, 그 소용돌이에 중국과 한국은 점차 빠져들었다. 중국은 외형상 전승국이었지만 곧장 국공내전에 휩싸여 대외적으로 군사·외교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전후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재편과정에서 주체가 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내전이 악화되면서 중화민국은 미국의 지원과 협력에 의해서만 생존이 가능할 만큼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결국 미·소에 의해 강제 분할되어 분단국가로 전락해버린 한반도나 국공내전 끝에 둘로 쪼개진 중국대륙은 전후 동아시아 냉전구도의 두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종전 후 한반도의 분단과정을 지켜본 국민당 언론의 시각과 인식은 주체적이라기보다 미·소의 대외정책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한국 관련 보도의 초점과 비중이 개별신문의 성향이나 현실 관심에 따라 약간 편차가 있었지만 대부분 정치와 군사문제에 집중되었고, 이념 대립의 시각으로 점차 고정되어 갔다. 이런 이유로 한국 관련 보도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된 신탁통치 방안과 그에 따른 좌우분열 및 반탁운동, 미·소공위의 참여범위, 정부수립의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즉시독립론과 통일독립론의 갈등, 미·소 군대의 철수 시기와 방법, 공산당의 조직 확대와 폭력사태, 유엔한국위원회의 활동과 단독

선거 실시, 각종 법제 제정 및 정부수립 등 정치·군사·인물에 관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를 통해 국민당 언론은 새로운 독립국가 건설의 효과적인 수단과 국가 구성원 간 정치·경제의 갈등해소를 위한 학습효과를 기대하였다.

당시 국민당 언론에 보도된 한국 기사는 대부분 중국의 현실 및 미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었다. 예컨대 전후 한국의 통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국제논의 및 이행, 정부수립을 둘러싼 정파의 동향과 대응, 정치이념의 선전과 통치체제의 구축, 국가현안에 관한 민의수렴방법 등이 주요 관심사였다. 또한 근대 국민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폭넓은 민의형성과 수렴, 실천을 위한 민주적 절차와 제도 및 실현방법 등도 자주 보도되었다. 이 밖에 한국 내 화교의 경제상황과 교육실태, 한·중 교역의 확대방안 등 경제문제도 다루어졌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한반도의 전후처리과정에서 중화민국은 모스크바 3상회의와 미·소공위 등 미·소의 주도로 진행된 국제논의에 직접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단지 역사적·현실적으로 긴밀한 연대관계와 대외적 후견인 역할을 담당해 온 도의적 책임론을 내세워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 독립문제에 관한 자국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중화민국은 자기 역량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미국의 후원과 협력에 의해 제한된 역할만 가능하였다. 이 때문에 카이로회담에서 한국독립을 국제적으로 확인한 자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그것을 실행에 옮긴 모스크바 3상회의의 '4개국 협의에 의한 신탁통치'를 한국 독립방안으로 관철시키려고 했다.

1947년 9월 17일 미국 정부가 한국문제를 유엔에 이관하여 1943년 카이로 회담 이후 '연합국 합의에 의한 통일독립정부의 수립'이란 기본원칙이 '남한 총선거를 통한 단독정부 수립'으로 전환됨으로써 미국의 영향력이 극대화되었다. 중화민국의 입장에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우월지위가 무너지고 한국문제에 직접 간여할 수 있는 명분과 통로가 제한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냉전적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자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구축을 모색한 중화민국의 전후구상은 虛想으로 끝났다. 그뿐만 아니라 중화민국 스

스로 미·소가 주도하는 냉전체제의 틀 속에 갇히게 되었다.

남북분단을 가져온 미·소 군정 3년의 평가와 관련하여 국민당 언론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특히 종전직후 미·소 양국이 한국을 혼합점령하지 않고 38도선을 경계로 나누어 점령한 것부터 잘못된 것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지리적 분할지배가 정치이념과 통치체제의 분리로 이어지고 결국 한반도의 영구분단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럽에서의 세력대결로 악화된 미·소 관계가 동아시아의 세력재편과정에서 또다시 재현되어 냉전체제로 굳어졌고, 한국은 첫 희생물이 되었다.

국민당 언론은 해방정국에서 한국의 정치세력들이 신탁통치와 건국의 성격 및 방식을 놓고 서로 대립한 것도 분단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한국 분단의 1차 책임과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원인 제공자는 미국으로 보았다. 전후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공산당의 폭력성과 팽창주의가 충분히 예견되었고 유럽에서는 이미 현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실책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예로 식민지에서 해방된 한국을 패전국 독일처럼 점령지 취급을 하고, 남한의 미군정 지배도 편의주의로 일관하여 친미의 탈을 쓴 친일세력의 득세를 막지 못한 결과 해방정국이 왜곡되었다는 것이다.

국민당 언론은 미군정 3년 동안, 남한에서 건국을 위해 새로운 정치제도와 통치세력이 형성되었지만 한국인의 열망과 민의를 담은 정당성과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외인식은 국공내전이란 엄혹한 현실 속에서 분단 한국에 대한 동정이자 자국의 앞날에 대한 깊은 우려와 자괴감의 표현이었다. 전후 한국과 중국은 항일시기의 우호, 협력을 토대로 새로운 연대관계를 모색할 수 있었지만 자기역량의 부족으로 미·소에 의해 조성된 냉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한국은 南北으로, 중국은 兩岸으로 각각 분리된 채 20세기 중반을 맞이하였다.

참고문헌

〈자료〉

- 『大公報』.
『申報』.
『中央日報』.
『近代中韓關係史資料彙編』 12冊, 1990.
『資料韓國獨立運動』 1~5, 1972.
『中朝關係文件資料彙編』 (1919~1949), 1999.
『中華民國史檔案資料彙編』 第5輯 外交編, 1999.
『자료로 본 대한민국 건국사』, 2007.

〈단행본〉

- 方漢奇, 1996, 『中國新聞事業通史』 第2卷, 中國人民大學出版社.
方漢奇 等, 2004, 『大公報百年史』, 中國人民大學出版社.
石源華, 1995, 『韓國獨立運動與中國: 1919~1945』, 上海人民出版社.
石源華, 1996, 『韓國獨立運動血史新論』, 上海人民出版社.
宋軍, 1996, 『申報的興衰』,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周雨, 1993, 『大公報史』, 江蘇古籍出版社.
崔丞, 1992, 『近代東北亞國際關係史研究』, 東北師範大學出版社.
胡春惠 著, 辛勝夏 譯, 1978, 『中國안의 韓國獨立運動』, 단국대학교출판부.
黃定天, 1999, 『東北亞國際關係史』, 黑龍江教育出版社.
박명희 외, 2008, 『근현대 전환기 중화의식의 지속과 변용』, 단국대학교출판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1998,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I』, 오름.

〈논문〉

- 김지훈, 2006, 「중일전쟁시기 『解放日報』의 한국인식」, 『史林』 제25집, 수선사학회.
孫乘會, 2003, 「萬寶山事件과 中國共產黨」, 『東洋史學研究』 第83輯, 東洋史學會.
李在鈴, 2006, 「20세기 중반 韓中關係의 理解-韓國獨立에 관한 中華意識의 二重性」, 『中國近現代史研究』 第29輯, 중국근현대사학회.
李在鈴, 2007, 「抗戰時期(1937~1945) 國共兩黨의 韓國觀-『中央日報』·『新華日報』

를 중심으로, 『中國學報』 第56輯, 韓國中國學會.

李在鈴, 2010, 「美軍政時期(1945~1948) 中國國民黨 言論의 對韓認識-『申報』를 중심으로, 『東洋學』 第47輯,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임상범, 2008, 「중국의 남한 정부수립에 대한 인식, 『史叢』 第67輯, 고려사학회.

장세운, 1993, 「解放日報에 보도된 華北朝鮮獨立同盟의 활동, 『五松李公範教授停年紀念東洋史論叢』, 지식산업사.

정병준, 1998, 「1945~48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중국내 조직과 활동, 『사학연구』 55 · 56 합집(신재홍정년논문집), 한국사학회.



[ABSTRACT]

China's Understanding toward Korea in the Formative
Period (1945~1948) of the Cold War System: Focusing on
Korea-related Reports of Chinese Nationalist Party
Mass Media

Lee, Jaeryoung

This study intends to understand the Korean-Chinese relation of the early Cold War through the Korea-related news by the Dagongbao, the Shenbao and the Zhongyang ribao, which were the main press of China after ending the war. After having had the 1945 Liberation, Korea was rapidly reorganized into the Cold War system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led. Despite being a victor nation, it was impossible for China to display its foreign ability and play a major part in rearranging order in East Asia because it was experiencing the Chinese Civil War.

China, in the process of solving postbellum conditions in Korea, has no room for intervening in the international disputes which the U.S. and the U.S.S.R. were leading. It just tried to speak its intention carefully with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both countries and moral responsibility toward Korea claiming. However, it could simply serve a restrictive duty to be feasible only by the help and the cooperation of the U.S. because of being lacking in its diplomatic competence. For this reason, Korean independence based on agreement of four countries and the pullout of the U.S. armed forces and the Soviet army, which were supported by China, could not be realized in the end.

Chinese newspapers generally held fast to its negative opinion about assessing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ey considered the division, especially, to bring separation of political ideology and system and also draw a conclusion, that is, permanent division of a territory. They thought discor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provoked by a power grab in Europe was reappeared in East Asia and then was continued the Cold War system. They also regarded it as the origin which made the first victim of Korea. Therefore, they finally treated America and Russia as the cause of Korean division.

Chinese media had different views concerning several pending problems: the division of Korea into north and south, a political movement against trusteeship, a failure of a joint the U.S.-the U.S.S.R. commission, the south-only-election, and so on. For all that, they arrived at the same understanding that the U.S. military government policy toward Korea failed in the end. They gave the main reason why it protected the pro-Japanese party putting on a pro-American mask, while it totally overrode the wishes for independence of the people and the activities of the Korean interim government. They also mentioned that it cruelly rode roughshod over the desire for independence and the right for the united nation. They said that it was necessary for North and South Korea to run into an extreme aspect of the Cold War and Korean leaders like Mr. Kim Gu and Mr. Kim Ku-sik who were a middle-of-the-roader could not help missing the last chance to win the confidence of the people in the end.

Korea-related reports by Chinese press took a converted line after May's single elections by South Korea in order to criticize Communism containing illegality and violence and to establish liberal democracy in

Korea. In the extension line, China looked upon the Chinese Civil War as not an internal problem but a by-product of the Cold War and sought to find a solution from a national union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hinese government would like to find out a key to the victory of its civil war through military intervention by the U.S. as well as the Cold War system. The appearance of South Korea to advocate a pro-American and anti-Communist government urged China to alter its policy line. It was inevitable for Korea and China to be bound by a ideological or systematical confrontation between democracy and communism rather than the facing subject for independence and unity by themselves in the process the Cold War system was formed.

In short, after the war, the ideological dispute and the struggle contes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Soviet Union would take concrete shape soon into the division of Korean peninsula and the new cold war system in East Asia. China, in this way, could not choose but grope for its victory of the Chinese Civil War in this international situation and simultaneously take charge of a pivotal role in this new cold war order. Although both Korea and China in this period was able to seek the innovative development of their relationship, on the basis of close friendship and cooperation from an anti-Japanese struggle, they failed to free themselves from restraints of the Cold War created by the U.S. and the U.S.S.R. Contrary to their expectations, Korea and China have no choice but to face with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with each country separated into China and Taiwan as well as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n the front of the Cold War in East Asia.

keywords

The Cold War System, Dagongbao, Shenbao, Zhongyang ribao, Chinese Nationalist Party, U.S Military Government, The Korean-Chinese Relationship, The Korean Independence, A joint the U.S.-the U.S.S.R. commission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를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독도연구소장, 역사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요성과 실의
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
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 · 제척 · 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
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 · 중세 · 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역사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에서 실무총괄담당자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실무총괄 담당자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0년 4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실림,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A)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B) (A, B, B) (B, B, B) (A, A, C)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B, C) (A, B, D) (B, B, C) (B, C, C) (A, C, C)

4)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예 : (A, C, D) (A, D, D) (C, C, C) (B, B, D) (B, C, D) (C, C, D) (D, D, D)

5)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 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투고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historyfoundation.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 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요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자”, “연도”, “위의 글(책)”, “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자”, “연도”, “앞의 글(책)”, “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 .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景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鵠擁, 是人也”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요 시 인용 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29호(2010. 9)

초판 1쇄 인쇄 2010년 9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10년 9월 30일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7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